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I)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ld abuse prevention and abused children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 occurrence structure of child abuse
: Focusing on child abuse within the Child Care Centers

홍영오 · 김남희 · 박미숙 · 추지현 · 윤수경 · 조수정 · 김춘례

KICJ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I)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

홍 영 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리학박사

공동 연구자

김 낭 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복지학박사

박 미 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법학박사

추 지 현 서울대학교 교수

윤 수 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박사

조 수 정 Southern Illinois University-Carbondale 교수

김 춘 례 Saint Joseph's University 교수

연구 지원

홍 영 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오 은 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턴연구원



발간사

가장 신뢰하고 의존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은 일생동안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으므로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이들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발견된 아동만도 총 50명이고, 아동학대사례로 판단된 사례가 총 37,605건이나 될 정도로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아동복지법」을 통한 처벌에서 나아가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역시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처벌강화를 통한 사법적 대응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부모(82.7%)이나 유치원교직원, 보육교직원, 위탁부모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10.9%) 역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 이외에도 대리양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양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부산 사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원에서는 2022년 1차 연도에 진행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23년도에는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도 원칙적으로 금지되

었습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60.7%에 불과하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금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체벌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 체벌 사용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체벌금지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연구가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피해대아동 지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여러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면담에 응해주신 학대피해 아동의 가족 및 옹호·지원 전문가, 전·현직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기관 전문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APO) 등 여러 분들께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으로 정년을 앞두고도 북유럽 사례분석을 해주신 박미숙 박사님, 아동학대 관련 많은 분들을 일일이 면접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연구책임의 역할을 해주신 김남희 박사님, 1차 연도에 이어 판결문을 분석해 주신 추지현 교수님과 연구팀원들, 빅데이터 분석과 아동학대 정책과 제도를 분석해 주신 윤수경 박사님, 해외 사례를 분석해 주신 조수정 교수님과 김춘례 교수님, 그리고 판결문 수집과 통계자료, 심층면접 녹취 등 많은 일들을 해주신 홍영은 조사연구원님과 오은영 인턴연구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선임연구위원 홍 영 오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홍영오·김남희·추지현·윤수경

서론 11

제1절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16

제3절 연구 방법 18

1. 판결문 조사 18

2. 심층면담 22

3. 설문조사 24

4. 빅데이터 분석 26

제2장 홍영오·윤수경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쟁점 29

제1절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31

1.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31

2.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 분석 49

3. 소결 58

제2절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 60

1. 교사요인 61

2. 아동 및 부모요인 64

3. 환경요인 65

ii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제3절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정책	68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68
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	70
3. 소결	75
제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제도 현황	78
1. CCTV 설치·운영 의무화	78
2. 아동학대 예방교육	80
3. 어린이집 모니터링	86
4. 소결	94
제5절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96
1. 체벌에 대한 인식	97
2. 보육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인식	101
3.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	103
4. 소결	105

제3장 홍영오·추지현

보육기관내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판결문 분석

제1절 사건 현황	111
1. 심급과 법적 다툼	111
2. 적용법조 및 경합범	114
3. 피해 인지 경로	119
제2절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119
1.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19
2.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20
3. 가해자의 범죄경력	121
제3절 시설 및 보육 업무 특성	122
1. 시설 특성	122
2. 가해자의 종사상 지위와 직무	123
제4절 피해 특성	124

- 1. 학대 당시 상황 124
- 2. 피해의 증복과 지속 125
- 3. 피해 결과 129
 - 1. 보호조치 및 행정처분 129
- 제5절 처벌 및 처분 129
 - 2. 선고형 131
 - 3. 합의 132
 - 4. 법적 다툼과 쟁점 134
 - 5. 부수처분 136
- 제6절 아동학대 요인별 판결 사례 137
 - 1. 교사요인 137
 - 2. 아동요인 146
 - 3. 환경요인 147
- 제7절 소결 및 제언 153

제4장 조수정·김춘례

해외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155

- 제1절 해외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현황 157
 - 1. 미국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157
 - 2. 영국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159
 - 3. 호주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162
 - 4. 기타 국가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163
- 제2절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 164
 -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164
 - 2. 성적 학대(Sexual Abuse) 165
 - 3. 의식적 학대(Ritual Abuse) 167
 - 4. 협박 / 공포 조성 행위(Threats / Terrorizing Acts) 168
- 제3절 아동학대의 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요인 169
 - 1. 가해자 특성 169

2. 피해자 특성	174
제4절 국가별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 정책	177
1. 미국	177
2. 캐나다	184
3. 영국	186
4. 호주	188
제5절 국가별 아동학대 대응 체계	191
1. 미국	191
2. 캐나다	194
3. 영국	196
4. 호주	200

제5장 김남희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면담 203

제1절 심층면담 개요	205
제2절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 특성	206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아동’ 관련 특성	206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가족’ 관련 특성	207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교사’ 관련 특성	209
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특성	213
제3절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상황 특성	216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아동’ 관련 특성	216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가족’ 관련 특성	217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교사’ 관련 특성	218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특성	220
제4절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상황 특성	221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아동’ 관련 특성	221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가족’ 관련 특성	222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교사’ 관련 특성	223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특성 …… 224

제5절 요약 및 소결 …… 225

1. 연구결과 요약 …… 225

2. 논의 및 제언 …… 227

제6장 홍영오·김남희·박미숙·추지현·윤수경

결론 …… 231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 233

1.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 233

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한 이슈 …… 234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제도 현황 …… 235

4. 체벌과 훈육,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 …… 236

5.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정책 …… 238

6. 판결문 분석 결과 …… 238

7.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심층면접 결과 …… 239

제2절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 …… 241

1. 공식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 제언 …… 241

2.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 242

3. 아동학대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 243

4. 아동학대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 244

5.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 …… 247

6.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 248

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 …… 249

제3절 종합 결론 …… 256

1. 아동학대 대응체계 …… 257

2. 가정 내 아동학대와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 258

3.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 …… 262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권리의 법규정화 …… 269

5.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료 …… 272

참고문헌 277

Abstract 293

부록 303

표 차례

〈표 1-1〉 조사 범위(적용 법조)	19
〈표 1-2〉 조사표 구성	21
〈표 1-3〉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면담대상	23
〈표 1-4〉 조사 설계	25
〈표 1-5〉 조사 항목	26
〈표 2-1〉 아동학대 발생 장소(2018 이후)	32
〈표 2-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8 이후)	33
〈표 2-3〉 재학대상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8 이후)	34
〈표 2-4〉 사망아동과 학대행위자 간 관계(2018 이후)	36
〈표 2-5〉 시도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37
〈표 2-6〉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38
〈표 2-7〉 시도별/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40
〈표 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현황(2018~2022.8)	42
〈표 2-9〉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성별(2012~2017)	43
〈표 2-10〉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연령(2012~2017)	43
〈표 2-11〉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특성(2012~2017)	44
〈표 2-12〉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성별(2012~2017)	45
〈표 2-13〉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연령(2012~2017)	46
〈표 2-14〉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특성(2012~2017)	46
〈표 2-15〉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사례 유형(2012~2017)	48
〈표 2-16〉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사례 유형(2012~2017)	48
〈표 2-17〉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2012~2017)	49
〈표 2-18〉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2012~2017)	49
〈표 2-19〉 관계도 분석 결과	55
〈표 2-20〉 연관어 가중치와 빈도	57
〈표 2-21〉 연관어를 통해 도출한 주요 이슈	58
〈표 2-22〉 201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주요 내용	71
〈표 2-23〉 201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주요 내용	72

viii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표 2-24〉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주요 내용	75
〈표 2-25〉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책 발전 과정	78
〈표 2-26〉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제공기관	82
〈표 2-27〉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중 보육교직원 대상 학대예방 교육 관련 항목	82
〈표 2-2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중 아동권리, 아동학대 관련 교과목	83
〈표 2-29〉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	84
〈표 2-30〉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중 영유아 대상 학대예방 교육 관련 항목	85
〈표 2-31〉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87
〈표 2-32〉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 중 영유아 학대 관련 지표	88
〈표 2-33〉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	90
〈표 2-34〉 부모 모니터링 지표	92
〈표 2-35〉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부모 모니터링 지표	93
〈표 2-36〉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97
〈표 2-37〉 체벌을 훈육으로 판단하는 기준	98
〈표 2-38〉 체벌의 효과성	99
〈표 2-39〉 체벌에 대한 정당성	99
〈표 2-40〉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인식	100
〈표 2-41〉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	101
〈표 2-42〉 가해자에 대한 인식	102
〈표 2-43〉 장소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102
〈표 2-44〉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학부모 인식	104
〈표 3-1〉 심급	111
〈표 3-2〉 상소 제기 주체	112
〈표 3-3〉 1심 변호인 선임 여부	113
〈표 3-4〉 1심 변호인과 종사상 직위	114
〈표 3-5〉 심급 및 적용법조	115
〈표 3-6〉 경합범	117
〈표 3-7〉 아동학대 관련 이중경합의 적용법조	118
〈표 3-8〉 피해 인지 및 입건 경로	119
〈표 3-9〉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	120
〈표 3-10〉 피고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및 장애 여부)	121
〈표 3-11〉 범죄 및 수사경력	121
〈표 3-12〉 시설 유형	122
〈표 3-13〉 CCTV 설치 여부	122

〈표 3-14〉 가해자 지위	123
〈표 3-15〉 가해자의 주 업무	124
〈표 3-16〉 학대상황 빈도	124
〈표 3-17〉 학대 도구	125
〈표 3-18〉 피해자 수	126
〈표 3-19〉 피해자와 피고인 인원	126
〈표 3-20〉 피해자 수와 공범 여부	127
〈표 3-21〉 피해자 수와 학대지속 여부	127
〈표 3-22〉 공범 여부와 학대지속기간	128
〈표 3-23〉 피해지속기간	128
〈표 3-24〉 피해 결과	129
〈표 3-25〉 피해자 보호조치	130
〈표 3-26〉 시설행정처분	130
〈표 3-27〉 양형 기준 적용 여부	131
〈표 3-28〉 선고형	132
〈표 3-29〉 합의 여부	133
〈표 3-30〉 징역 및 집행유예의 기간	133
〈표 3-31〉 종사상 지위와 1심 무죄 선고 여부	134
〈표 3-32〉 다툼의 쟁점(무죄)	135
〈표 3-33〉 다툼과 쟁점(전체)	136
〈표 3-34〉 부수처분	137
〈표 4-1〉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총합	160
〈표 4-2〉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환경별	160
〈표 4-3〉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공식 아동 보호 조사(영국 16개지방 자치 단체의 데이터)	162
〈표 4-4〉 성적 학대 유형	166
〈표 4-5〉 아동학대 위험 요인	172
〈표 4-6〉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175
〈표 4-7〉 피해자의 보호시설 기록	176
〈표 5-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아동' 관련	207
〈표 5-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가족' 관련	209
〈표 5-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교사' 관련	212
〈표 5-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215

x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표 5-5〉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아동’ 관련	217
〈표 5-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가족’ 관련	218
〈표 5-7〉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교사’ 관련	219
〈표 5-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220
〈표 5-9〉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아동’ 관련	222
〈표 5-10〉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가족’ 관련	223
〈표 5-1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교사’ 관련	223
〈표 5-1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224
〈표 6-1〉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예방	251
〈표 6-2〉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절차지원	254
〈표 6-3〉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보호, 지원, 재학대 예방	256
〈표 6-4〉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식	263
〈표 6-5〉 훈육 및 학대에 대한 의견	264
〈표 6-6〉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인식	265
〈표 6-7〉 체벌정도에 따른 훈육 및 학대에 대한 인식	266
〈표 6-8〉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이유	266



그림 차례

[그림 2-1] 키워드 트렌드 분석	50
[그림 2-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관계도 분석	54
[그림 2-3]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57
[그림 2-4]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68
[그림 2-5] 아동학대 발생 시 사법처리 절차	69
[그림 2-6]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요사건과 정부정책	76
[그림 2-7]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86
[그림 4-1]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학대 유형(영국 59개 지방 자치 단체의 데이터)	161
[그림 4-2] 학대 공개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사용하는 위협	169
[그림 4-3] 가해자의 보육기관 내의 역할(Perpetrators' roles in day care centers)	170
[그림 4-4]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2Gen방식 채용	193
[그림 4-5] MASH 신고 분류	197
[그림 4-6]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방임 후 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199
[그림 4-7] 성적학대 후 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200

1.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 배경

2019년부터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양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부산 사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등이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위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법적 대응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아동학대사범의 처벌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학대의 현실을 파악하고 발생구조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1차 연도에 진행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 이어, 2차 연도에는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아동학대 관련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각 연도별 아동학대 주요 통계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현황 및 보육기관 현황 분석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안 발목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 언론 기사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보육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분석

2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판결문 조사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발생 및 처벌 실태를 파악하고자 판결문 분석. 어린이집 학대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행정직원 등인 경우로서, 최종 분석 대상 사건은 1심 선고 기준 210건, 피고인 329명, 피해자 781명

○ 심층면접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맥락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실시. 아동·가족 측, 보육교사 측, 원장·기관 측, 경찰·공무원 측 27명

○ 설문조사

어린이집/유치원 내 발생 상황별 학대 인식뿐만 아니라 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인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 일반 국민 1,000명

□ 주요 연구내용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2022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사례 27,971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2,738건(81.3%), 학교 1,654건(5.9%), 집근처 또는 길가 1,353건(4.8%), 어린이집 613건(2.2%) 순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2018~2022년 중 2019년(4.6%), 2018년과 2021년(3.3%), 2022년(2.2%), 2020년(2.1%) 순, 건수는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 2022년 613건으로 증감을 반복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관련 주요 이슈

키워드 트렌드 분석 결과, 최근 약 14년간(2010~2023.9)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학대 관련 기사는 총 4,707건이었으며 거시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상향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0년에 비해 2023년에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된 기사

건수가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간의 관계도를 살펴본 결과 가장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 보육교사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도출된 용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벌과 관련한 용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처벌과 훈육,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

체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체벌에 대한 부모의 명확한 기준과 설명, 아동 스스로가 훈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서 행해진 체벌의 경우 훈육이라고 응답한 비율, 즉 체벌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경우 훈육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체벌로 아동의 행동이 교정되었을 경우, 즉 결과에 따라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비동의의 비율이 다소 높았음

체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체벌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감소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 25% 내외로 나타나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체벌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폭력 행동의 교정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벌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의 비율이 48.1%에 달함. 즉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체벌이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부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경우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 목적 이외의 이유로 체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정책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체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조사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체계로 이원화 되어있음.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하게 되며 이를

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기반으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게 됨.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됨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책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음

» **〈표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책 발전 과정**

구분	정책	특성
부재기 (2010년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부재 • 관련 정책 부재
도입기 (2010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형성 • 정책의 필요성 인식 • 개념 정립 • 피상적 대책 마련
확대기 (2013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201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상승 • 단편적 대책 마련 • 구체적 대안 제시
성장기 (2015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201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증대 • 다차원적 대책 마련 • 구체적 대안 제시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제도 현황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과 조기발견, 보육교사와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부와 부모에 의한 정례적인 현장 모니터링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판결문 분석을 통한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타 형태의 아동학대와도 유사했음. 다만 살인, 사체유기,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거나 성적 학대를 수반한 비율,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중상해나 상습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음

1심에서의 무죄 선고 및 변호인 선임, 상소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으며, 이때 다툼의 주요 쟁점은 훈육의 정당성 여부로 그 비율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음

원장, 시설장 등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부과되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전체의 8.5%를 차지했음

○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심층면담을 통한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에서 아동은 코로나, 저출생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아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른 나이에 사회로 내몰리며 집단생활을 강요받고,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기본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상황에 놓임.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며 보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에 일임하나, 육아 및 보육정보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때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보육교사가 발달지연을 의심할 때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교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동학대 발생 전 보육교사는 상당한 보육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추가피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에서 소외당하기도 하며, 직접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아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나 방치되고 있음. 가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CCTV 열람을 하고 싶어도 이를 요청하면 어린이집과의 신뢰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낌.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이슈화하면서 학부모 공동체와 멀어지고 별난 학부모라는 낙인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도 어려움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아동은 치료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아동은 학대판결 시 학대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차별을 경험하기도 함. 피해아동 가족은 전 가족이 피해자가 되어 가족 회복력이 붕괴되는 상황에 놓이며, 아동학대 신고 후 대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음.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함. 교사 역시 아무런 지원체계가 없으며, 무혐의 결정이 나와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

6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정책제언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슈 중심의 단발적 사건에 대한 반응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수립, 홍보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행위자 처벌에 집중된 관심을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자 처벌강화로만은 해결될 수 없으며 아동과 부모,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사례관리가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에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부모 또한 포함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함

○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제언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구분되는 부주의한 지도 개념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주의한 지도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에 대한 보육현장과 부모의 의견 일치와 선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과 그 차이를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현재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개념이 보육현장에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까지 해당 개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수준이 낮음. 보육현장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도 부주의한 지도의 개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여 보육교사와 부모 사이의 부주의한 지도와 학대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더욱 많았으며, 공범은 4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보육교사들의 상호 묵인과 방조 속에서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바, 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조직 차원의 문제, 예컨대 고립된 보육 노동과 상호지지가 결여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지만, 이들의 학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가 필요함

학대 신고가 만연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게 사례 판정의 적정성 제고나 조정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들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의 비율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커 보였음.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변호인 선임), 심리적 지원, 그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심층면담을 통한 정책제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의견은 대체로 일반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언급됨. 주요 주제는 ‘개방과 협력적 보육’, ‘발달수준을 고려한 보육’, ‘보육전문성 강화’, ‘교사 노동환경 개선’, ‘실현적 예방교육’, ‘관리자 리더십 강화’, ‘객관적 외부자의 모니터링’으로 도출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절차지원의 대안으로는 ‘아동중심의 관점’, ‘아동학대신고 절차지원’, ‘내부신고자 보호’, ‘중재기구 설치’, ‘사례결정시 보육전문가 참여’ 등이 필요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호·지원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예산, 인프라 확충’, ‘가족중심 치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처우 강화’, ‘어린이집 특화 대응체계 마련’이 언급됨

8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표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예방

주제	소주제	내용
개방과 협력적 보육	보육공간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볼 수 있게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음 • 보육공간을 개방하면 떳떳해 질 수 있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음 • 특정 아동의 부모가 잠깐 왔다 가면 아이들이 어수선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화가 되면 됨
	학부모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활동에 수시로 참여하며 상호협력적 보육에 참여해야 함 • 차량운행을 지양하고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수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제도적 부모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바우처 수령시 부모교육 의무화 • 원장이 부모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보다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의무교육 실시. 원장이 교육하는 것은 잔소리로 받아들임
	공간개방 기능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공간적 개방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CCTV 설치지원처럼 통유리설치 등 기능보강 지원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보육	아동발달 사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소 전에 아이 기질, 부모 성향 파악 등을 의무적으로 해주면 좋겠음 • 입소할 때 아이가 너무 특수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기관 인계가 되어야 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순회지원을 와서 특수성을 보이는 아이를 발견하고 부모상담을 조언하여 담임, 순회지원교사, 학부모가 상담을 한 사례가 있음(확대추진)
	아동발달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여부를 포함하여 월령에 따라서도 아동발달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 장애, 월령 등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 자격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만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격취득이 너무 쉬움. 보육교사 진입 시 가치를 높이는 게 필요함
	대안적 보육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 말라'는 것은 많지만 대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부족함. 대안적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면 좋겠음
교사 노동환경 개선	현실적 인력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비 아동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함 • 아동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비담임교사 인력 충원이 필요함 • 인력이 현실적으로 충원되어야 교사스트레스를 낮추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
	시공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휴게시간 확보 • 보육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적합한 근로환경 조성
실현적 예방교육	사례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된 사례중심, 소그룹 토의 등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필요함
	아동학대 적용범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다른 아동학대 적용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모름(예: 정서학대)
	교육시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 주말 교육 시 근무시간 인정
관리자 리더십 강화	원장 관리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아동학대는 일어나지 않음 •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면 교사들도 조심함 • 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의하는 역할 수행 필요함

주제	소주제	내용
객관적 외부자의 모니터링	아동학대 예방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 점검 후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자의 아동학대 예방 책임 강화 필요함
	객관적 외부자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CCTV 모니터링을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인이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 필요함

» **〈표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절차지원**

주제	소주제	내용
아동 중심의 관점	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에게 아동학대 처리절차, 결과에 대해 안내
	어린이집 즉각분리 지침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 아동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지침 명료화 및 실효성 있는 이행 필요
아동학대 신고 절차지원	CCTV 열람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열람에 감정적, 불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 절차개선 필요
	학대피해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 신고를 한 이후 수사절차, 행정처분과정, 서비스기관 등 전체 내용을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서비스체계 필요
	법적절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과 개인적인 마찰을 줄이고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요한 내용을 안내해 주는 절차 필요
	내부신고자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신고 절차 지침을 명확화 하고, 내부신고자 보호 방법 마련
중재기구 설치	회복적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하자마자 당장 경찰조사, 소송,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중재할 수 있는 위원회 체계가 바람직 서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생활사고는 치료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함 경찰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중립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와 부모는 착하고, 보육교사는 악한, 이분법적 사안이 아님. 여러 쟁점을 중재할 기구 필요 양쪽을 다 절충할 수 있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체계 필요
	법적 지위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재기구는 법적기구로 구성.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함
사례결정위원회 보육전문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에 보육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안전관리, 생활지도, 어린이집운영 등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사례판정에 타당성 확보 필요

» **〈표 4〉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보호, 지원, 재학대 예방**

주제	소주제	내용
예산, 인프라 확충	예산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아동가족이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보험급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피해아동가족 심리치료 보험급여 적용
	지역 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은 자원이 매우 부족함. 특히 장애아동어린이집 경우는 폐원을 하면 대안이 없음. 서비스 자원 확대 필요함

10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주제	소주제	내용
	보육공백 지원	• 하루아침에 폐원하여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이후 전원 등의 절차 이행
가족중심 치료	일상회복에 초점	•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재학대피해 위험은 적음. 아이와 가족 모두 일상회복이 가장 포커스임
	부모치료 지원	• 가정, 직장 그리고 소송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치료지원 강화 필요함(예: 술, 정신과 약물에 의지하지 않도록 치료지원) • 외부인에 의한 학대이므로 부모 역할이 중요. 아이가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려면 학부모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함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처우 강화	재취업 제약	• 아동학대 범죄경력에 있는 교사에 대해 재취업 제약이 필요함
	원장처벌 강화	•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의무가 있음. 원장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면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할 수 없음. 원장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체계화	• 학대행위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 등 처우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범죄자로 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어린이집 특화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 대응체계 다양화	•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있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많아 대응 체계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 중심임. 아동학대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국선변호사 인력양성	•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장애, 아동학대 인력풀이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중심으로 세팅되었음 •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를 대해야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학대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특수성에 맞는 인력 풀 구성이 필요함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	• 현행 아보전 체계는 가정 내 아동학대 중심이므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함

○ 종합 결론

- 훈육과 체벌 대한 인식 전환 : 체벌금지법의 긍정적 효과
- 유엔아동권리협약내 아동권리의 법규정화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 적극적인 캠페인과 홍보 및 비폭력인 부모양육방법 상담/교육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료

□ 주요 키워드

※ 아동학대, 체벌금지,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아동학대 대응체계, 학대피해아동

제 1 장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서론

홍영오·김남희·추지현·윤수경

제1절 | 연구목적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이루어진 사례판단에서 아동학대 사례는 총 37,605건으로, 18세 미만 추계아동인구를 기준으로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은 3.85%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례는 2016년 18,700건, 2017년 22,367건, 2018년 24,605건, 2019년 30,045건, 2020년 30,905건, 2021년 37,6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27,971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 발견율 역시 2016년 2.15%에서 2017년 2.64%, 2018년 2.98%, 2019년 3.81%, 2020년 4.02%, 2021년 5.0%로 증가하다가 2022년 3.85%로 감소하였다.

2022년 아동학대 사례에서의 학대행위자 대부분은 부모(82.7%)이나 유치원교직원, 보육교직원, 위탁부모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10.9%)가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가정 이외에도 대리양육을 담당하는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원장 60명과 보육교직원 316명이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아 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월 보육교사에 의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부모모니터링, CCTV 설치 의무화, 신고포상금제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

1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보육교직원의 행동요령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 및 해소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21년 8월에는 “부주의한 지도”를 도입하고, 학대 발생 가능 상황별 부주의한 지도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학대 예방을 위해 원장·보육교사·부모 간 협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에도 양산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부산 사하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사건 등이 언론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는 등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처벌강화와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처벌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법적 대응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충격적인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인천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 등 아동에 대한 유기·방임으로 인한 사망 사건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 격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집, 학교 및 방과 후 교실 등 돌봄의 공백, 고용불안으로 인해 보호자 생계 부양 능력의 상실 등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된 사회 내에서 아동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향을 노동과 고용, 사회복지, 교육 등 전사회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개인적 자질의 문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문제, 보육교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의 부족이라는 개인적이고 사안대응을 중심으로 발생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 역시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 내지 CCTV 설치 등 관리·감독 강화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한계가 있어, 보육교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이나 보육기관 내 조직적 요인 등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동학대 조사와 별도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입해서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통해 학대의 후유증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는 신체적 발달 지연뿐만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나 자아기능 손실 등 심리적 후유증도 심각하고 정신질환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학대피해자에게는 조기에 개입하여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조기에 극복하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또다시 범죄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학대피해아동 사후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2021년 1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제13조),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제16조)’ 조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아동의 조기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나 심리상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일반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에 취약한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 아동학대 발생요인 등을 분석하고, 외국의 아동학대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여, 아동학대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및 보호지원 등 사후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사범의 처벌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정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학대의 현실을 파악하고 발생구조를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에 대한 방임·유기,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이 발생한 원인과 요소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가정 내 또는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기관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구조에는 기존의 결혼이나 입양 등 가족제도,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정책, 보육교사 등 돌봄노동에서의 고용형태와 처우 등 아동 양육을 둘러싼 노동, 사회복지, 교육 등의 제도 및 정책이 포함되며, 부모 내지 보호자의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등 아동 양육 및 돌봄에 대한 담론의 사회적 구조까지 확장된다.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사법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및 노동정책의 차원에서 대응정책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가정과 보육기관(어린이집)은 그 발생구조와 요인, 그리고 대응방향에 있어 차별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는 1차 연도에 진행된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연구에 이어, 2차 연도에는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의 실태와 원인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차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절 |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다음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및 학대행위자로서의 보육교직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2018~2022)를 통해 아동학대 발생 장소,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재학대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사망아동과 학대행위자 간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사례에 대한 통계는 2018년 이후에는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제공되지 않아서, 아동학대 주요통계 이전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2~2017)를 통해 부득이하게 2012년에서 2017년 통계만 분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둘째,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양적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관련된 이슈를 발굴하였다.

셋째,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발생 및 처벌 실태를 파악하였다. 사건 중심으로는 피해자 특성, 시설 특성, 사건에서의 쟁점을 중심으로, 피고인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특성, 노동 상황, 학대 특성, 양형, 임시 조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파악하였다.

넷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특히 학부모의 관점과 보육교사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와는 구분되는 개념인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아동학대 판단에 있어 부모의 관점과 보육현장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섯째,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조사 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체계로 이원화되어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섯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호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일곱째, 어린이집/유치원 내 발생 상황별 학대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인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여덟째, 해외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현황 및 예방정책을 알아보았다. 아동학대의 취약성과 위험요인 및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별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제3절 | 연구 방법

1. 판결문 조사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발생 및 처벌 실태를 파악하고자 판결문을 분석했다. 관련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구축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해 축적되었지만 자료 접근이 제한된 점, 이를 기반으로 보건복지부가 공개하는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을 통해서는 공범 여부나 피해 지속기간 등 세부적인 피해 실태나 적용 법조, 형벌과 보호처분의 중복 부과 등 처벌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힘든 점을 고려했다. 따라서 본 조사 자료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음을 일러둔다.

가. 조사 범위: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연구의 대상인 보육기관은 어린이집에 국한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에서는 “보육”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여 보육기관이 어린이집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년간의 판결문에 대한 파일럿 조사 결과 후자에 해당하는 사례가 극히 적어 통계적 비교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는 1차 연도의 연구 범위와 동일하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로 정의했다. 해당 법조는 아래 <표 1-1>과 같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동법 제7조에 따른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74조(행위자의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법인 또는 사용자인 개인에 대하여도 처벌토록 하는 양벌규정)가 적용되는 점에 있어 가정 내 아동학대와 차이가 있어 해당 조항이 적용된 사례까지 포함했다.¹⁾

1)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달리 보육시설이라는 조직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필요한 상황, 이 주의의무에 대한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양형 분석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원장 등이 직접 학대 행위에 가담

▶▶ <표 1-1> 조사 범위(적용 법조)

법률	조문 및 죄명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제6조 (상습)
	제7조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호] (아동매매)
	제71조제1항제1의2 [제17조제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3호] (신체적학대)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5호] (정서적학대)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6호] (유기·방임)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7호] (장애아동관람)
	제71조제1항제2호 [제17조제8호] (구걸강요·이용)
	제71조제1항제4호 [제17조제9호] (곡예강요·제3자인도)
	제71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0호] (양육알선금품취득)
	제71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1호] (아동금품유용)
	제72조 (상습)
	제73조 (아동매매미수)
	제74조 (양벌규정)

나. 자료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신고가 이뤄진 사건의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신청을 통해 수집했다. 위의 법조가 적용된 사건 전수를 읽고 발생 장소가 어린이집, 학대 행위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행정직원 등인 경우만을 추출해 내는 작업이 이뤄졌으며, 최종 분석 대상 사건은 1심 선고 기준²⁾ 210건³⁾, 피고인 329명, 피해자 781명이었다.

하지 않고 양벌규정으로만 처벌받는 사례까지도 포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 동일 사건 및 열람제한 사건은 제외. 해당 기간 내 2심 혹은 3심이 이뤄진 경우는 해당 기간을 넘어서더라도 하급심 판결문 포함

3)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2:28)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판단된 37,605건(사건 기준)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경우는 1,233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

다. 분석 방법

1) 기록 조사

판결문 분석을 위해 사건 및 피고인 단위의 조사표를 마련했다. 보육교직원 및 원장의 전문성 부족, 동료의 학대를 인지한 후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직 문화(정선아 외, 2018), 보육교사 간 소통이나 활동 관찰을 어렵게 만드는 직무 강도와 스트레스(박진아·이경숙, 2015), 아동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규모(권혜진·이순형, 2001), CCTV의 성능(김우태, 2017)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 및 영향 요인, 대책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조사표를 구성했다. 사건, 피해자, 피고인 단위의 조사표 가안을 토대로 100여 건의 판결문에 대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한 바, 1차 연도의 분석 대상인 가정 내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단순한 점, 피해자의 연령, 성별 혹은 평소 가해자와의 관계나 피해 이후의 상황 등 피해자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점이 확인됐다. 반면 동일한 어린이집 내에서 다수의 피해자 혹은 다수의 가해자가 존재하거나 범죄일람표가 빈번히 작성될 정도로 학대가 지속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포착됐다. 이에 피해자 개인보다는 어린이집이라는 발생 장소 중심의 사건 단위에서 피해의 전반적 발생 현황이나 조직 특성(지역, 규모, 시설 형태 등)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피해자 단위의 조사표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사건 단위 조사표에서 피해자 관련 정보(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를 일부 파악했다.

사건 단위에서는 총 피해자 및 가해자 수, 해당 어린이집의 유형과 소재 지역, 학대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경로, 설치가 의무화된 CCTV가 실제 설치돼 있는지, 그 밖의 법적 다툼의 쟁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었다. 피고인 단위의 조사표는 양형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양벌규정의 적용(원장 등과 기타 보육교직원의 차이)에 따른 형량 및 변호인 선임 형태의 차이를 아울러 살펴보고, 돌봄노동 당시의 상황과 종사상 지위, 연령 등 가해자 특성 그리고 공범 여부나 피해자 수, 학대 지속기간 등 범행 특성, 임시조치나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체크했다. 전체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 <표 1-2>와 같다.

»» **〈표 1-2〉 조사표 구성**

작성단위	구분	항목
사건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번호 • 최종심 • 항소, 상고 이유 • 총 피해자/피고인 수
	피해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연령 • 장애 여부 • 기타 평소 행동/정서 어려움 여부 • 피해 영향 • 피해 인지 경로
	시설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유형(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직장/가정/민간 등) • 지역 규모
	다툼과 쟁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진술 증거능력,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해석 등 • CCTV 설치 여부 및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피고인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장애 여부 • 기타 평소 행동/정서 어려움 여부 • 연령대 • 형사처분 전력
	노동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상 지위(시설장, 보육교사, 대체교사, 강사, 행정직원 등) • 전담 업무(영아, 장애아, 방과후 및 야간 등)
	학대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이기, 재우기, 입히기, 훈육, 보육 전반에서의 부작위 • 도구사용 여부 • 공범 여부 • 총 피해자 • 학대 지속 기간
	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법조 • 경합범 여부 • 아동학대 관련 이종경합 죄명 • 변호인 선임 여부 • 선고형 및 형량 • 부수처분 •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및 양형 인자 • 합의 여부
	임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로부터의 격리, 피해자 인도, 접근금지, 가해자 상담 위탁, 유치 등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 및 휴원 명령, 평가인증취소, 지원 중단, 자격 정지 등

2) 기초 통계분석

위의 조사표 입력 자료를 토대로 아동학대 발생 양상에 대한 기초 통계를 산출했다. 시설의 유형과 지역, 피고인의 종사상 지위와 직무 및 연령 등에 따른 학대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했으나 해당 변수들에 결측값이 많아 심층 분석은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사례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적 설명이 어려운 경우는 판결문에 대한 내용 분석으로 대체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성을 2022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의 결과(3장에서의 “가정 내 아동학대”로 명명)와 비교해 살펴보았다. 해당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선고일자가 2020. 1. 1.~2021. 12. 31. 2년간이라는 점, 적용 법조는 위 <표 1-1>에서 음영처리된 것을 제외한 것⁴⁾으로 본 연구의 범위와 차이가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보육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연령 대도 상이하다. 그 밖에도 본 연구와 비교 가능한 동일한 조사 항목이 많지 않고 대다수가 다중응답으로서 통계적 검증이 어려웠으나 최대한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정책 방향 모색에 필요한 쟁점을 발굴하고자 했다.

2. 심층면담

가. 조사대상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발생 맥락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초기 면담을 계획하며 아동학대 피해자(아동·가족)와 행위자(교사·원장) 측을 면담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되는 교사와 기관 측이 서로 상이한 입장을 가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면담대상은 세 부류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면담대상은 아래 <표 1-3>과 같이 1) 아동·가족 측, 2) 보육교사 측, 3) 원장·기관 측, 4)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경찰(APO) 측으로 구분하고, 총 2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4)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사건은 1심 판결문 기준 883건, 피고인 기준 960건, 피해자 기준 1,223건이다.

학대피해 아동·가족 측은 피해자 대변인과 옹호·지원 전문가 3명, 그리고 10명의 가족 집단을 면담하였고, 보육교사 측은 전·현직 보육교사 5명을 면담하였다. 기관·원장(관리자) 측은 현직 어린이집 원장과 관련기관 전문가 5명을 면담하였고,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경찰(APO) 측은 4명을 면담하였다.

면담대상을 네 집단으로 구분하기는 하였으나 면담 목적이 아동학대 발생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탐색하는 것에 있으므로 집단 간 대립되는 의견을 구분하기보다 논의된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 <표 1-3>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면담대상

구분	연번	면담대상	연령대	성별
아동·가족 측	C1	대변인 및 관련기관 전문가	40대	여성
	C2	대변인 및 관련기관 전문가	50대	여성
	C3	대변인 및 관련기관 전문가	40대	여성
	C4	피해아동가족 집단(10명)	-	-
보육교사 측	T1	보육교사	50대	여성
	T2	보육교사	50대	여성
	T3	보육교사	20대	여성
	T4	보육교사	20대	여성
	T5	보육교사	40대	여성
원장·기관 측	O1	어린이집 원장	60대	여성
	O2	관련기관 전문가(전직 원장)	30대	여성
	O3	관련기관 전문가	50대	여성
	O4	어린이집 원장	50대	여성
	O5	관련기관 전문가	40대	남성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경찰	P1	경찰(APO)	40대	여성
	P2	경찰(APO)	40대	여성
	P3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30대	여성
	P4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40대	여성

주) 아동학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면담대상의 구체적 정보는 제시하지 않음

나. 조사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은 2023년 8월~9월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면담에 활용하였다. 면담은 약 90~120분 진행하되, 면담 진행 상황에 따라 시간을 조정

2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하였다. 면담방법은 일대일 심층면담을 기본으로 하되 피해가족, 보육교사 일부는 집단을 구성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면방식은 면담참여자 요청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였다. 면담 전 내용 정리를 위해 녹취 동의를 구하였다. 다만, 피해자 가족집단은 집단취약성을 고려하여 녹음 없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기록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면담질문지 주요 내용은 1)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관점, 2)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호지원에 대한 의견, 4) 정책적 대안으로 구성하였으며, 집단의 특성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면담내용을 종합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보호·지원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에 관한 주제를 도출하였다. 각 집단별로 상충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견 간 충돌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3. 설문조사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최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처벌강화, 법 제도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법적 대응만이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응 방향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어린이집/유치원 내 발생 상황별 학대 인식뿐만 아니라 학대에 대한 일반적 인식, 아동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 보호절차,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인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악되지 못한 아동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본 조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부모의 아동학대 피해 경험, 체벌에 대한 부모의 태도, 훈육방식 등이 아동학대 경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나. 조사 설계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연령 기준 30~50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월 10일~2023년 1월 25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 **〈표 1-4〉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연령 기준 30~50대 일반 국민
표본크기	총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0%
표본추출방법	다단계층화추출
자료수집방법	온라인 접근 패널(Online Access Panel)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기간	2023년 1월 10일 ~ 2023년 1월 25일 (Working day 기준 총 10일)
조사기관	(주)트루이스

다. 조사 항목

본 조사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함,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등)을 학대로 생각하는지를 비롯하여,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훈육시키기 위해 체벌하는 이유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의 심각성 등 보육기관에서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항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 정도(예를 들어, 맨손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행위 등), 체벌 필요성 등 1차 연도와의 통합된 정책 제언을 위한 문항도 포함하였다.

» **〈표 1-5〉 조사 항목**

구분	주요 조사 내용	문항수
1	훈육 방법	7
2	훈육 및 학대의 구분에 대한 동의정도	10
3	훈육을 위한 체벌 정도에 대한 인식	1
4	아동학대 심각성	4
5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인식	3
6	아동학대 및 아동발달 영향에 영향을 주는 학대행위자	2
7	유년시절 체벌 및 학대 피해 경험	3
8	상황별 학대 인식	21
9	체벌 및 학대 인식	5
10	체벌 정도에 따른 훈육 및 학대 인식	4
11	어린이집/유치원에서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이유	2
12	어린이집/유치원 내 발생 상황별 학대 인식	18
13	독립적인 인격체로서의 아이에 대한 인식	1
14	자녀체벌 금지법에 대한 인지 여부 및 인식	4
15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정책	1
16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교사에 의한 훈육/학대 기준	2

4. 빅데이터 분석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빅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양적 연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는 연구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백지은, 2022). 또한 인터넷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은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한 분석이라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안 발굴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 언론 기사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보육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는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현상을 드러내 주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을 공개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

공의 수단이기 때문에 뉴스 분석을 통해 그간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분석방법으로는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빅카인즈 서비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언론사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통합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로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이세원, 2021).

연구를 위해 자료수집은 빅카인즈 빅데이터 소스(source) 중 국내 전국일간지 11개⁵⁾에서 발간된 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0년 1월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지난 약 14년간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는 ‘어린이집’, ‘학대’로 문장 최소단위인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4,9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이 중 유사도가 높은 기사와 인사, 부고, 동정, 사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207건의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4,702건의 기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5)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제 2 장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쟁점

홍영오·윤수경

제2장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쟁점

제1절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1.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가. 아동학대 발생 장소

2022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사례 27,971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2,738건 (8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학교 1,654건(5.9%), 집근처 또는 길가 1,353건 (4.8%), 어린이집 613건(2.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가정 내 학대 비율은 2018~2022년 중 2020년(87.4%)이 가장 높았으며, 다른 연도에서도 약 80%대 비율을 차지하였다.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하는 비율은 2018~2022년 중 2019년(4.6%), 2018년과 2021년(3.3%), 2022년(2.2%), 2020년(2.1%) 순이었다. 건수로는 전년도인 2022년이 613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건수를 보였으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32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표 2-1〉 아동학대 발생 장소(2018 이후)**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24,604(100.0)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27,971 (100.0)
가정 내	소계	19,748 (80.3)	23,883 (79.5)	26,996 (87.4)	32,454 (86.3)	22,738 (81.3)
	아동 가정 내	19,365 (78.7)	23,270 (77.5)	26,249 (84.9)	31,675 (84.2)	21,995 (78.6)
	학대행위자 가정 내	383 (1.6)	613 (2.0)	747 (2.4)	779 (2.1)	743 (2.7)
집근처 또는 길가	소계	352 (1.4)	683 (2.3)	586 (1.9)	870 (2.3)	1,353 (4.8)
친척집	소계	143 (0.6)	156 (0.5)	193 (0.6)	210 (0.6)	331 (1.2)
이웃집	소계	30 (0.1)	36 (0.1)	42 (0.1)	73 (0.2)	172 (0.6)
어린이집	소계	811 (3.3)	1,371 (4.6)	658 (2.1)	1,233 (3.3)	613 (2.2)
유치원	소계	187 (0.8)	139 (0.5)	129 (0.4)	129 (0.3)	101 (0.4)
학교	소계	2,086 (8.5)	2,277 (7.6)	893 (2.9)	1,152 (3.1)	1,654 (5.9)
학원	소계	154 (0.6)	220 (0.7)	174 (0.6)	295 (0.8)	200 (0.7)
병원	소계	58 (0.2)	63 (0.2)	55 (0.2)	57 (0.2)	46 (0.2)
복지시설	소계	417 (1.7)	575 (1.9)	639 (2.1)	336 (0.9)	229 (0.8)
	아동복지시설	357 (1.5)	500 (1.7)	605 (2.0)	237 (0.6)	178 (0.6)
	기타복지시설	60 (0.2)	75 (0.2)	34 (0.1)	99 (0.3)	51 (0.2)
숙박업소	소계	94 (0.4)	87 (0.3)	126 (0.4)	138 (0.4)	113 (0.4)
종교시설	소계	31 (0.1)	40 (0.1)	37 (0.1)	36 (0.1)	18 (0.1)
기타	소계	493 (2.0)	515 (1.7)	377 (1.2)	622 (1.7)	403 (1.4)

출처: 보건복지부, 『2018-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나.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8년 이후)

2022년 전체 아동학대행위자 중에는 부모가 8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리양육자 10.9%, 친인척 3.1%, 타인 2%의 비율을 보였다.

부모 중에는 친부가 45.7%, 친모가 34.2%로 대다수 비율을 친부모가 차지하였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초·중·고교 직원이 5.7%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가 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부모의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 70%대를 보이다가 2020년 82.1%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도 80% 초반대를 유지하였다.

대리양육자는 2018년 15.9%, 2019년 16.6%에서 2020년과 2021년은 9%대로 감소하였고, 2022년은 10.9%로 2021년 대비 증가하였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2018년 3.3%, 2019년 4.6%, 2020년 2.1%, 2021년 3.2%, 2022년 2.1%로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표 2-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8 이후)**

단위: 건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27,971 (100.0)	
부모	소계	18,920 (76.9)	22,700 (75.6)	25,380 (82.1)	31,486 (83.7)	23,119 (82.7)
	친부	10,747 (43.7)	12,371 (41.2)	13,471 (43.6)	16,944 (45.1)	12,796 (45.7)
	친모	7,338 (29.8)	9,342 (31.1)	10,945 (35.4)	13,380 (35.6)	9,562 (34.2)
	계부	480 (2.0)	557 (1.9)	578 (1.9)	702 (1.9)	511 (1.8)
	계모	297 (1.2)	336 (1.1)	312 (1.0)	340 (0.9)	201 (0.7)
	양부	36 (0.1)	58 (0.2)	40 (0.1)	68 (0.2)	29 (0.1)
	양모	22 (0.1)	36 (0.1)	34 (0.1)	52 (0.1)	20 (0.1)
친인척	소계	1,114 (4.5)	1,332 (4.4)	1,661 (5.4)	1,517 (4.0)	879 (3.1)
	친조부	147 (0.6)	194 (0.6)	231 (0.7)	193 (0.5)	114 (0.4)
	친조모	229 (0.9)	304 (1.0)	374 (1.2)	383 (1.0)	215 (0.8)
	외조부	74 (0.3)	76 (0.3)	131 (0.4)	99 (0.3)	68 (0.2)
	외조모	118 (0.5)	143 (0.5)	230 (0.7)	177 (0.5)	112 (0.4)
	친인척	352 (1.4)	390 (1.3)	429 (1.4)	435 (1.2)	246 (0.9)
	형제, 자매	194 (0.8)	225 (0.7)	266 (0.9)	230 (0.6)	124 (0.4)
대리 양육자	소계	3,906 (15.9)	4,986 (16.6)	2,930 (9.5)	3,609 (9.6)	3,047 (10.9)
	부, 모의 동거인	270 (1.1)	363 (1.2)	444 (1.4)	403 (1.1)	193 (0.7)
	보육교직원	818 (3.3)	1,384 (4.6)	634 (2.1)	1,221 (3.2)	600 (2.1)
	유치원교직원	189 (0.8)	155 (0.5)	118 (0.4)	140 (0.4)	100 (0.4)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176 (0.7)	320 (1.1)	208 (0.7)	319 (0.8)	254 (0.9)
	초·중·고교 직원	2,060 (8.4)	2,154 (7.2)	882 (2.9)	1,089 (2.9)	1,602 (5.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13 (1.3)	408 (1.4)	556 (1.8)	217 (0.6)	175 (0.6)
	기타시설 종사자	27 (0.1)	63 (0.2)	12 (0.0)	93 (0.2)	69 (0.2)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33 (0.1)	87 (0.3)	14 (0.0)	58 (0.2)	8 (0.0)
	위탁부	7 (0.0)	3 (0.0)	4 (0.0)	6 (0.0)	2 (0.0)
	위탁모	2 (0.0)	8 (0.0)	16 (0.1)	17 (0.0)	9 (0.0)
	아이돌보미	11 (0.0)	41 (0.1)	42 (0.1)	46 (0.1)	35 (0.1)

3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타인	소계	360 (1.2)	663 (2.2)	565 (1.8)	658 (1.7)	573 (2.0)
	이웃	146 (0.6)	224 (0.7)	211 (0.7)	200 (0.5)	119 (0.4)
	낯선사람	214 (0.9)	439 (1.5)	354 (1.1)	458 (1.2)	454 (1.6)
기타	소계	304 (1.2)	364 (1.2)	369 (1.2)	335 (0.9)	353 (1.3)
파악불가	소계	-	-	-	-	-

출처: 보건복지부, 『2018-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다. 재학대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22년 재학대 행위자 중에는 부모가 전체의 96.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친인척 2.2%, 대리양육자 0.9%, 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중에는 친부 49.9%, 친모 43.3%로 친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친부모 이외 부모 중에는 계부 비율(2%) 높았다.

대리양육자는 부 또는 모의 동거인이 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밖에 초·중·고교 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각 0.2%), 보육교직원(0.1%)이 포함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대리양육자 비율은 2018~2020년 1%대 중반~2%대 초반이었으나 2021년 0.8%, 2022년 0.9%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1년 대비 2022년 재학대 건수가 증가한 대리양육자는 보육교직원(2021년 4명, 2022년 5명)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2021년 3명, 2022년 7명)이었다.

▶▶ <표 2-3> 재학대사례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8 이후)

단위: 건, (%)

아동과의 관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543 (100.0)	3,431 (100.0)	3,671 (100.0)	5,517 (100.0)	4,475 (100.0)
부모	소계	2,427 (95.4)	3,244 (94.5)	3,492 (95.1)	5,294 (96.0)	4,320 (96.5)
	친부	1,386 (54.5)	1,784 (52.0)	1,878 (51.2)	2,778 (50.4)	2,233 (49.9)
	친모	946 (37.2)	1,328 (38.7)	1,480 (40.3)	2,306 (41.8)	1,945 (43.5)
	계부	52 (2.0)	72 (2.1)	91 (2.5)	123 (2.2)	91 (2.0)
	계모	39 (1.5)	47 (1.4)	32 (0.9)	74 (1.3)	41 (0.9)
	양부	1 (0.0)	9 (0.3)	7 (0.2)	8 (0.1)	4 (0.1)
	양모	3 (0.1)	4 (0.1)	4 (0.1)	5 (0.1)	6 (0.1)
	소계	71 (2.8)	100 (2.9)	103 (2.8)	156 (2.8)	97 (2.2)
친인척	친조부	8 (0.3)	20 (0.6)	7 (0.2)	22 (0.4)	14 (0.3)
	친조모	19 (0.7)	27 (0.8)	32 (0.9)	53 (1.0)	26 (0.6)

아동과의 관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외조부	3 (0.1)	8 (0.2)	7 (0.2)	6 (0.1)	5 (0.1)
	외조모	7 (0.3)	9 (0.3)	29 (0.8)	28 (0.5)	13 (0.3)
	친인척	23 (0.9)	19 (0.6)	16 (0.4)	23 (0.4)	26 (0.6)
	형제·자매	11 (0.4)	17 (0.5)	12 (0.3)	24 (0.4)	13 (0.3)
대리 양육자	소계	38 (1.5)	72 (2.1)	65 (1.8)	44 (0.8)	42 (0.96)
	부,모의 동거인	29 (1.1)	36 (1.0)	50 (1.4)	36 (0.7)	23 (0.5)
	초중고교 직원	-	16 (0.5)	1 (0.0)	-	7 (0.2)
	유치원교사, 교직원	1 (0.0)	-	-	-	-
	보육교직원		19 (0.6)	-	4 (0.1)	5 (0.1)
	기타시설 종사자		1 (0.0)	-	-	-
	교원	1 (0.0)	-	-	-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3 (0.0)	-	12 (0.3)	3 (0.1)	7 (0.2)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1 (0.0)	-	-	-	-
	위탁부	2 (0.0)	-	-	-	-
	위탁모	1 (0.0)	-	2 (0.1)	1 (0.0)	-
타인	소계	1 (0.0)	-	3 (0.1)	1 (0.0)	1 (0.0)
	이웃	1 (0.0)	-	2 (0.1)	1 (0.0)	1 (0.0)
	낯선사람	-	-	1 (0.0)	-	-
기타	소계	6 (0.2)	15 (0.4)	8 (0.2)	22 (0.4)	15 (0.3)

*보건복지부, 『2018-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라. 사망아동과 학대행위자 간 관계

2022년 기준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68명으로 확인되었고,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82.4%(56명)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13.2%(9명), 친인척 2.9%(2명) 순이었다.

대리양육자 9명은 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4명, 보육교직원과 위탁모 각 2명, 위탁부 1명으로 확인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아동을 사망케 한 학대행위자는 2022년 68명으로, 이는 지난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2018년(30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부모는 2018년 25명에서 2019년 50명으로 두 배 증가한 이후 40명대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56명으로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대리양육자는 2018년 4명에

36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서 2019년 1명으로 감소하였다가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여 오면서 2022년 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18~2022년을 합한 결과, 대리양육자 총 21명 중 7명이 보육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리양육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 <표 2-4> 사망아동과 학대행위자 간 관계(2018 이후)

단위: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총계			30 (100.0)	53 (100.0)	51 (100.0)	54 (100.0)	68 (100.0)	256
동거 유형별	동거	소계	19 (63.3)	48 (90.6)	44 (86.3)	48 (88.9)	65 (95.6)	224
	비동거	소계	11 (33.3)	4 (7.5)	4 (7.8)	6 (11.1)	3 (4.4)	28
	기타 (자료 없음 등)	소계	-	1 (1.9)	3 (5.9)	-	-	4
피해 아동과의 관계별	부모	소계	25 (83.3)	50 (94.3)	44 (86.3)	42 (77.8)	56 (82.4)	217
		친부	9 (30.0)	20 (37.7)	13 (25.5)	18 (33.3)	15 (22.1)	75
		친모	16 (53.3)	26 (49.1)	26 (51.0)	19 (35.2)	38 (55.9)	125
		계부	-	2 (3.8)	2 (3.9)	1 (1.9)	1 (1.5)	6
		계모	-	-	2 (3.9)	2 (3.7)	0 (0.0)	4
		양부	-	1 (1.9)	-	1 (1.9)	1 (1.5)	3
		양모	-	1 (1.9)	1 (2.0)	1 (1.9)	1 (1.5)	4
	친인척	소계	1 (3.3)	-	3 (5.9)	5 (9.3)	2 (2.9)	11
		외조모	-	-	1 (2.0)	-	0 (0.0)	1
		외숙부	-	-	1 (2.0)	-	-	1
		외숙모	-	-	1 (2.0)	-	-	1
		조부	-	-	-	1 (1.9)	0 (0.0)	1
		조모	-	-	-	2 (3.7)	0 (0.0)	2
		이모부	-	-	-	1 (1.9)	-	1
		이모	-	-	-	1 (1.9)	-	1
	친인척	-	-	-	-	2 (2.9)	2	
	대리양육자	소계	4 (13.3)	1 (1.9)	3 (5.9)	4 (7.4)	9 (13.2)	21
		부모의 동거인	-	1 (1.9)	1 (2.0)	1 (1.9)	0 (0.0)	3
		보육교직원	3 (10.0)	-	-	2 (3.7)	2 (2.9)	7
		아이돌보미	1 (3.3)	-	2 (3.9)	-	0 (0.0)	3
산모도우미		-	-	-	1 (1.9)	-	1	
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		-	-	-	-	4 (5.9)	4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위탁부	-	-	-	-	1 (1.5)	1
	위탁모	-	-	-	-	2 (2.9)	2
기타 (자료 없음 등)	소계	-	2 (3.8)	1 (2.0)	-	1 (1.5)	4
기타 (부모의 전 동거인, 친부의 지인, 낯선 사람)	소계	-	-	-	3 (5.6)	0 (0.0)	3

출처: 보건복지부, 『2018-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마. 시도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국회로부터 공개된 자료 2018~2020년을 합한 결과, 전국 시도 중 경기도의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비율이 25.67%(728건)로 가장 높았고, 11.64%의 경상북도(330건), 9.59%의 충청북도(272건), 9.41%의 서울특별시(267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각 시도의 아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검토한 결과에서는 아동 인구당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비율이 충청북도(1.12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울산광역시(1.012%), 경상북도(0.899%), 광주광역시(0.602%), 전라북도(0.411%) 순이었다.

아동 인구수 고려하지 않았을 때,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가 높았던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를 아동 인구수를 고려한 후 살펴본 결과,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8번째(0.335%), 경상북도(0.899%)는 3번째, 충청북도(1.123%)는 1번째, 서울특별시(0.223%)는 15번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표 2-5> 시도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단위: 건 (%), 명, %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추계아동인구 (만0~17세) (2020 기준)	(총계/추계아동 인구)*1000
총계	818 (100.0)	1,384 (100.0)	634 (100.0)	2,836 (100.0)	-	-
강원	21 (2.57)	55 (3.97)	6 (0.95)	82 (2.89)	208,639	0.393
경기	175 (21.39)	433 (31.29)	120 (18.93)	728 (25.67)	2,174,093	0.335
경남	32 (3.91)	39 (2.82)	50 (7.89)	121 (4.27)	529,971	0.228

38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추계아동인구 (만0~17세) (2020 기준)	(총계/추계아동 인구)*1000
경북	67 (8.19)	235 (16.98)	28 (4.42)	330 (11.64)	366,978	0.899
광주	112 (13.69)	20 (1.45)	15 (2.37)	147 (5.18)	244,226	0.602
대구	16 (1.96)	56 (4.05)	23 (3.63)	95 (3.35)	355,528	0.267
대전	10 (1.22)	31 (2.24)	15 (2.37)	56 (1.97)	231,275	0.242
부산	30 (3.67)	83 (6.00)	13 (2.05)	126 (4.44)	436,150	0.289
서울	150 (18.34)	63 (4.55)	54 (8.52)	267 (9.41)	1,199,002	0.223
세종	1 (0.12)	4 (0.29)	2 (0.32)	7 (0.25)	80,815	0.087
울산	28 (3.42)	20 (1.45)	143 (22.56)	191 (6.73)	188,742	1.012
인천	61 (7.46)	47 (3.40)	17 (2.68)	125 (4.41)	445,512	0.281
전남	11 (1.34)	23 (1.66)	33 (5.21)	67 (2.36)	255,937	0.262
전북	11 (1.34)	17 (1.23)	80 (12.62)	108 (3.81)	262,910	0.411
제주	1 (0.12)	36 (2.60)	3 (0.47)	40 (1.41)	116,760	0.343
충남	36 (4.40)	21 (1.52)	17 (2.68)	74 (2.61)	340,092	0.218
충북	56 (6.85)	201 (14.52)	15 (2.37)	272 (9.59)	242,263	1.123

출처: 보건복지부, 강득구의원실

바.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2020년의 자료를 합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 중 민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47.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입력을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14.07%, 국공립 어린이집이 10.4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3.98%,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3.24%였다. 한편 협동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건수가 0.11%(3건)로 가장 낮았다.

▶▶▶ <표 2-6>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단위: 건 (%)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총계	818 (100.0)	1,384 (100.0)	634 (100.0)	2,836 (100.0)
국공립	56 (6.85)	199 (14.38)	41 (6.47)	296 (10.44)
직장	8 (0.98)	17 (1.23)	11 (1.74)	36 (1.27)
민간	465 (56.85)	611 (44.15)	263 (41.48)	1,339 (47.21)
가정	46 (5.62)	264 (19.08)	89 (14.04)	399 (14.07)
법인·단체 등	0 (0.00)	78 (5.64)	14 (2.21)	92 (3.24)

	2018년	2019년	2020년	총계
협동	0 (0.00)	0 (0.00)	3 (0.47)	3 (0.11)
사회복지법인	10 (1.22)	29 (2.10)	74 (11.67)	113 (3.98)
유형 미입력	45 (5.50)	23 (1.66)	7 (1.10)	75 (2.64)
어린이집 미입력	188 (22.98)	163 (11.78)	132 (20.82)	483 (17.03)

출처: 보건복지부, 강득구의원실

사. 시도별·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년 시도별·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자료를 먼저 유형을 기준으로 살핀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기도(26건)가, 직장 어린이집은 인천광역시(5건)가, 민간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106건)가, 가정 어린이집은 경상북도(13건)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경상남도(7건)가 가장 많았다.

2019년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충청북도(59건)가, 직장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9건)가, 민간 어린이집은 경기도(272건)가, 가정 어린이집은 경상북도(180건)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29건)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15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기도(12건)가, 직장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3건)가, 민간 어린이집은 울산광역시(87건)가, 가정 어린이집은 경기도(49건)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경상북도(7건)가, 협동 어린이집은 서울특별시(3건)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전라북도(67건)가 가장 많았다.

한편 동일 자료를 각 시도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의 경우 2018년은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이, 2019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2020년은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학대 건수를 기록했다.

경기도와 대전광역시는 2018년과 2019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2020년은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학대 건수를 보였다.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2018년, 2019년, 2020년 모두 민간 어린이집이 학대가 가장 많았다.

경상북도는 2018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2019년은 가정 어린이집이, 2020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학대 건수를 기록했다.

40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8년은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2019년과 2020년은 민간 어린이집의 학대 건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했다.

부산광역시는 2018년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2019년과 2020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학대가 가장 많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8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2019년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2020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학대 건수를 보였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2019년은 가정 어린이집이, 2020년은 직장 어린이집이 학대가 가장 많았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2018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2019년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2020년은 민간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학대 건수를 기록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2018년과 2019년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2020년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2019년은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2020년은 직장 어린이집이 학대가 가장 많았음을 확인했다.

» **〈표 2-7〉 시도별/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2018~2020)**

단위: 건

년도	시도	총합계	어린이집 미입력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법인· 단체등	협동	사회 복지 법인	유형 미입력
2018	소계	818	188	56	8	465	46	0	0	10	45
	강원	21	8	3	0	3	0	0	0	0	7
	경기	175	53	26	2	85	5	0	0	0	4
	경남	32	2	0	0	18	3	0	0	7	2
	경북	67	19	7	0	15	13	0	0	2	11
	광주	112	6	0	0	106	0	0	0	0	0
	대구	16	3	0	0	6	6	0	0	0	1
	대전	10	1	0	1	8	0	0	0	0	0
	부산	30	9	0	0	14	6	0	0	0	1
	서울	150	54	15	0	67	4	0	0	0	10
	세종	1	0	0	0	1	0	0	0	0	0
	울산	28	0	4	0	19	2	0	0	0	3
	인천	61	12	1	5	37	4	0	0	0	2

제2장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쟁점 41

년도	시도	총합계	어린이집 미입력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법인· 단체등	협동	사회 복지 법인	유형 미입력
2019	전남	11	6	0	0	5	0	0	0	0	0
	전북	11	8	0	0	2	0	0	0	0	1
	제주	1	0	0	0	0	0	0	0	1	0
	충남	36	6	0	0	26	1	0	0	0	3
	충북	56	1	0	0	53	2	0	0	0	0
	소계	1,384	163	199	17	611	264	78	0	29	23
	강원	55	6	20	4	23	2	0	0	0	0
	경기	433	47	52	1	272	23	28	0	2	8
	경남	39	0	5	0	29	5	0	0	0	0
	경북	235	12	0	0	41	180	1	0	1	0
	광주	20	0	0	9	10	0	0	0	0	1
	대구	56	35	0	0	12	2	4	0	1	2
	대전	31	0	0	0	27	1	0	0	2	1
	부산	83	2	37	2	26	0	0	0	15	1
	서울	63	28	14	0	9	10	1	0	0	1
	세종	4	0	0	0	1	3	0	0	0	0
	울산	20	2	0	1	13	1	0	0	3	0
	인천	47	5	8	0	8	8	15	0	0	3
	전남	23	11	0	0	7	5	0	0	0	0
	전북	17	2	0	0	9	1	0	0	5	0
제주	36	1	0	0	5	1	29	0	0	0	
충남	21	4	4	0	9	4	0	0	0	0	
충북	201	8	59	0	110	18	0	0	0	6	
소계	634	132	41	11	263	89	14	3	74	7	
2020	강원	6	2	0	0	0	3	0	0	1	0
	경기	120	31	12	2	24	49	0	0	0	2
	경남	50	2	4	0	38	4	1	0	1	0
	경북	28	6	0	0	12	3	7	0	0	0
	광주	15	1	2	0	8	0	0	0	4	0
	대구	23	2	0	0	20	0	1	0	0	0
	대전	15	9	0	0	0	6	0	0	0	0
	부산	13	3	4	0	3	3	0	0	0	0
	서울	54	13	5	3	15	6	4	3	0	5
	세종	2	0	0	2	0	0	0	0	0	0
	울산	143	46	10	0	87	0	0	0	0	0
	인천	17	3	3	0	7	4	0	0	0	0

42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년도	시도	총합계	어린이집 미입력	어린이집 유형							
				국공립	직장	민간	가정	법인· 단체등	협동	사회 복지 법인	유형 미입력
	전남	33	10	1	0	20	2	0	0	0	0
	전북	80	0	0	0	12	0	1	0	67	0
	제주	3	1	0	2	0	0	0	0	0	0
	충남	17	2	0	0	10	4	0	0	1	0
	충북	15	1	0	2	7	5	0	0	0	0

출처: 보건복지부, 강득구의원실

아.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현황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2022년 8월 자료 확인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019년 68명, 2020년 75명, 2021년 80명, 2022년 8월 현재 6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원장은 2019년 7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7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육교사는 2018년(75명)에 가장 많은 수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되었다. 2019년에는 6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현황(2018~2022.8)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총계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합계	85	68	75	80	68	376
	원장	10	7	13	13	17	60
처벌받은 경우	보육교사	75	61	62	67	51	316

출처: 보건복지부, 최연숙의원실

자. 보육교직원 학대피해아동 성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아보다 남아의 피해율이 더 높았다. 성별 비율 차가 가장 컸던 연도는 2014년으로, 남아 피해율이 65.8%, 여아 피해율이 34.2%로 확인되었다.

▶▶ <표 2-9>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성별(2012~2017)

단위: 건 (%)

구분	남	여	총계
2012	56 (50.9)	54 (49.1)	110 (100.0)
2013	91 (45.0)	111 (55.0)	202 (100.0)
2014	194 (65.8)	101 (34.2)	295 (100.0)
2015	253 (59.3)	174 (40.7)	427 (100.0)
2016	342 (58.3)	245 (41.7)	587 (100.0)
2017	522 (62.1)	318 (37.9)	84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차. 보육교직원 학대피해아동 연령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1~3세 아동 피해율이 4~6세 피해율보다 더 높아, 영아와 저연령 유아 아동의 학대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은 2010년대 초반에는 1~2명이었으나, 2015년 9명, 2016년 7명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21명으로 확인되어 큰 증가 폭을 보였다.

▶▶ <표 2-10>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연령(2012~2017)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10 (100.0)	202 (100.0)	295 (100.0)	427 (100.0)	587 (100.0)	840 (100.0)
1세 미만	2 (1.8)	1 (0.5)	2 (0.7)	9 (2.1)	7 (1.2)	21 (2.5)
1~3세	69 (62.7)	83 (41.1)	177 (60.0)	281 (65.8)	428 (72.9)	558 (66.4)
4~6세	39 (35.5)	109 (54.0)	103 (34.9)	134 (31.4)	151 (25.7)	240 (28.6)
7~9세	0 (0.0)	6 (3.0)	6 (2.0)	3 (0.7)	0 (0.0)	3 (0.4)
10~12세	0 (0.0)	2 (1.0)	7 (2.4)	0 (0.0)	1 (0.2)	18 (2.1)
13~15세	0 (0.0)	1 (0.5)	0 (0.0)	0 (0.0)	0 (0.0)	0 (0.0)
16~17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카. 보육교직원 학대피해아동 특성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파악 안 됨'을 제외하면 모든 연도에서 절반 이상이 '특성 없음'으로 나타났다.

4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그 밖에 정서·정신건강 특성이 대부분 연도에서 2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12~2017년 합계 결과 정서·정신건강 특성(602건) 중에는 불안(198건), 주의산만(187건)이 많았다.

2012~2017년 합계 결과, 발달·신체건강 특성(154건)에서는 언어문제(60건)가 가장 많았다. 적응행동 특성(98건) 중에는 반항·충동·공격성(47건)이, 장애(46건)에서는 정신적 장애(21건)와 장애의심(17건)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 <표 2-11>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특성(2012~2017)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	
총계	272 (100.0)	420 (100.0)	326 (100.0)	495 (100.0)	734 (100.0)	882 (100.0)	-	
장애	소계	0 (0.0)	13 (3.1)	13 (4.0)	6 (1.2)	8 (1.1)	6 (0.7)	46
	신체적 장애	0 (0.0)	0 (0.0)	3 (0.9)	2 (0.4)	1 (0.1)	2 (0.2)	8
	정신적 장애	-	8 (1.9)	8 (2.5)	1 (0.2)	2 (0.3)	2 (0.2)	21
	장애의심	0 (0.0)	5 (1.2)	2 (0.6)	3 (0.6)	5 (0.7)	2 (0.2)	17
정서· 정신 건강	소계	71 (26.1)	89 (21.2)	69 (21.2)	111 (22.4)	204 (27.9)	58 (6.6)	602
	주의산만	18 (6.6)	60 (14.3)	19 (5.8)	31 (6.3)	47 (6.5)	12 (1.4)	187
	과잉행동	6 (2.2)	9 (2.1)	6 (1.8)	16 (3.2)	29 (3.9)	6 (0.7)	72
	불안	27 (9.9)	9 (2.1)	30 (9.2)	43 (8.7)	64 (8.7)	25 (2.8)	198
	애착문제	3 (1.1)	10 (2.4)	5 (1.5)	8 (1.6)	5 (0.7)	7 (0.8)	38
	무력감	0 (0.0)	0 (0.0)	0 (0.0)	3 (0.6)	0 (0.0)	0 (0.0)	3
	우울	8 (2.9)	1 (0.2)	0 (0.0)	2 (0.4)	33 (4.5)	4 (0.5)	48
	낮은 자아존중감	1 (0.4)	0 (0.0)	2 (0.6)	0 (0.0)	1 (0.1)	0 (0.0)	4
	성격 및 기질문제	8 (2.9)	0 (0.0)	5 (1.5)	6 (1.2)	23 (3.1)	4 (0.5)	46
	탐식 및 결식	-	0 (0.0)	2 (0.6)	2 (0.4)	2 (0.3)	0 (0.0)	6
적응 행동	소계	3 (1.1)	19 (4.5)	6 (1.8)	17 (3.4)	45 (6.1)	8 (0.9)	98
	반항·충동· 공격성	0 (0.0)	8 (1.9)	4 (1.2)	11 (2.2)	19 (2.6)	5 (0.6)	47
	거짓말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도벽	0 (0.0)	4 (1.0)	0 (0.0)	0 (0.0)	0 (0.0)	0 (0.0)	4
	약물·흡연· 음주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1
	성문제	3 (1.1)	0 (0.0)	0 (0.0)	0 (0.0)	1 (0.1)	0 (0.0)	4
	부적응	0 (0.0)	1 (0.2)	0 (0.0)	0 (0.0)	1 (0.1)	1 (0.1)	3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합
찾은결석, 무단결과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0
늦은귀가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1
학습문제	0 (0.0)	2 (0.5)	0 (0.0)	0 (0.0)	3 (0.4)	1 (0.1)	6
폭력행동	0 (0.0)	0 (0.0)	2 (0.6)	5 (1.0)	17 (2.3)	0 (0.0)	24
불건전한 또래관계	0 (0.0)	1 (0.2)	0 (0.0)	0 (0.0)	0 (0.0)	0 (0.0)	1
대인관계 기피	0 (0.0)	1 (0.2)	0 (0.0)	1 (0.2)	4 (0.5)	1 (0.1)	7
발달·신체건강							
소계	28 (10.3)	25 (6.0)	20 (6.1)	32 (6.5)	36 (4.9)	13 (1.5)	154
신체발달 지연	1 (0.4)	0 (0.0)	3 (0.9)	5 (1.0)	4 (0.5)	0 (0.0)	13
언어문제	5 (1.8)	5 (1.2)	8 (2.5)	17 (3.4)	19 (2.6)	6 (0.7)	60
위생문제	11 (4.0)	0 (0.0)	3 (0.9)	1 (0.2)	2 (0.3)	2 (0.2)	19
찾은 병치레 하약	11 (4.0)	10 (2.4)	1 (0.3)	0 (0.0)	0 (0.0)	2 (0.2)	24
영양결핍	-	0 (0.0)	0 (0.0)	0 (0.0)	0 (0.0)	1 (0.1)	1
대소변 문제	-	9 (2.1)	3 (0.9)	5 (1.0)	3 (0.4)	1 (0.1)	21
주요병력	-	1 (0.2)	2 (0.6)	1 (0.2)	8 (1.1)	1 (0.1)	13
특성없음	160 (58.8)	263 (62.6)	214 (65.6)	310 (62.6)	422 (57.4)	169 (19.2)	1,538
기타	10 (3.7)	11 (2.6)	4 (1.2)	19 (3.8)	19 (2.6)	7 (0.8)	70
파악안됨	-	-	-	-	-	621 (70.4)	621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타.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성별

모든 연도에서 남성 보육교직원보다 여성 보육교직원의 학대 행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5년에는 여성 99.8%, 남성 0.2%로 거의 대부분이 여성이었다.

▶▶▶ <표 2-12>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성별(2012~2017)

단위: 건 (%)

구분	남	여	총계
2012	5 (4.5)	105 (95.5)	110 (100.0)
2013	3 (1.5)	199 (98.5)	202 (100.0)
2014	7 (2.4)	288 (97.6)	295 (100.0)
2015	1 (0.2)	426 (99.8)	427 (100.0)
2016	3 (0.5)	584 (99.5)	587 (100.0)
2017	38 (4.5)	802 (95.5)	84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질환문제	0 (0.0)	1 (0.1)	0 (0.0)	0 (0.0)	1 (0.1)	0 (0.0)
성격 및 기질문제	52 (18.0)	67 (9.2)	61 (7.5)	34 (5.9)	87 (9.3)	11 (1.2)
위생문제	0 (0.0)	0 (0.0)	0 (0.0)	1 (0.2)	1 (0.1)	0 (0.0)
나태 및 무기력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난독해, 난작문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22 (7.6)	117 (16.0)	51 (6.3)	46 (8.0)	99 (10.5)	31 (3.5)
어릴적 학대경험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폭력성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전과력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성문제	0 (0.0)	0 (0.0)	1 (0.1)	0 (0.0)	0 (0.0)	0 (0.0)
원치않은 아동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부부 및 가족갈등	0 (0.0)	0 (0.0)	3 (0.4)	0 (0.0)	0 (0.0)	0 (0.0)
종교문제	0 (0.0)	0 (0.0)	0 (0.0)	0 (0.0)	0 (0.0)	0 (0.0)
특성없음	61 (21.1)	122 (16.7)	368 (45.4)	129 (22.4)	229 (24.4)	123 (13.8)
파악안됨	28 (9.7)	87 (11.9)	51 (6.3)	69 (12.0)	25 (2.7)	644 (72.3)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거. 보육교직원 학대유형

중복학대를 포함하여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연도에서 중복학대가 30~40%대를 보이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복학대 양상으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중복이 가장 많았다(〈표 2-15〉 참조).

중복학대를 별도 분류하지 않고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2년과 2013년과 2015년은 신체학대가, 2014년과 2016년과 2017년은 정서학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표 2-16〉 참조).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간 비율 차이는 모든 연도에서 대체로 작으나, 방임은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26.6%)에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다(〈표 2-16〉 참조).

48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표 2-15>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사례 유형(2012~2017)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10 (100.0)	202 (100.0)	295 (100.0)	427 (100.0)	587 (100.0)	840 (100.0)	
신체학대	42 (38.2)	60 (29.7)	49 (16.6)	141 (33.0)	133 (22.7)	146 (17.4)	
정서학대	9 (8.2)	57 (28.2)	68 (23.1)	78 (18.3)	144 (24.5)	144 (17.1)	
성학대	4 (3.6)	0 (0.0)	1 (0.3)	0 (0.0)	0 (0.0)	4 (0.5)	
방임	11 (10.0)	8 (4.0)	32 (10.8)	25 (5.9)	76 (12.9)	273 (32.5)	
중복 학대	소계	44 (40.0)	77 (38.1)	145 (49.2)	183 (42.9)	234 (39.9)	273 (32.5)
	신체학대·정서학대	34 (30.9)	73 (36.1)	122 (41.4)	126 (29.5)	166 (28.3)	228 (27.1)
	신체학대·방임	5 (4.5)	0 (0.0)	0 (0.0)	2 (0.5)	9 (1.5)	1 (0.1)
	정서학대·성학대	-	0 (0.0)	0 (0.0)	0 (0.0)	0 (0.0)	18 (2.1)
	정서학대·방임	4 (3.6)	2 (1.0)	8 (2.7)	21 (4.9)	33 (5.6)	11 (1.3)
	신체학대·정서학대·성학대	0 (0.0)	2 (1.0)	0 (0.0)	0 (0.0)	0 (0.0)	0 (0.0)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	1 (0.9)	0 (0.0)	15 (5.1)	34 (8.0)	26 (4.4)	15 (1.8)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2-16>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사례 유형(2012~2017)

단위: 건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155 (100.0)	281 (100.0)	455 (100.0)	644 (100.0)	847 (100.0)	1,128 (100.0)
신체학대	82 (52.9)	135 (48.0)	186 (40.9)	303 (47.0)	334 (39.4)	390 (34.6)
정서학대	48 (31.0)	134 (47.7)	213 (46.8)	259 (40.2)	369 (43.6)	416 (36.9)
성학대	4 (2.6)	2 (0.7)	1 (0.2)	0 (0.0)	0 (0.0)	22 (2.0)
방임	21 (13.5)	10 (3.6)	55 (12.1)	82 (12.7)	144 (17.0)	300 (26.6)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중복학대를 별도분류하지 않고 중복경험한 학대를 각 유형에 포함시킨 결과

너.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조치결과

보육교직원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를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모든 연도에서 원가정 보호가 98% 이상이었다(<표 2-17> 참조).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최종조치를 연도별로 살핀 결과, 고소·고발·사건처리되는 경우가 증가추세를 보여 80%대를 기록하였다(<표 2-18> 참조).

▶▶ <표 2-17>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피해아동 초기조치결과(2012~2017)

단위: 건 (%)

구분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사망	총계
		친인척보호	일시보호	장기보호	소계		
2012	108 (98.2)	1 (0.9)	0 (0.0)	1 (0.9)	2 (1.8)	-	110 (100.0)
2013	199 (98.5)	3 (1.5)	0 (0.0)	0 (0.0)	3 (1.5)	-	202 (100.0)
2014	294 (99.7)	0 (0.0)	1 (0.3)	0 (0.0)	1 (0.3)	0 (0.0)	295 (100.0)
2015	424 (99.3)	3 (0.7)	0 (0.0)	0 (0.0)	3 (0.7)	-	427 (100.0)
2016	586 (99.8)	0 (0.0)	0 (0.0)	0 (0.0)	0 (0.0)	1 (0.2)	587 (100.0)
2017	835 (99.4)	0 (0.0)	5 (0.6)	0 (0.0)	5 (0.6)	0 (0.0)	84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표 2-18> 보육교직원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2012~2017)

단위: 건 (%)

구분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 ·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총계
2012	62 (56.4)	9 (8.2)	36 (32.7)	3 (2.7)	110 (100.0)
2013	92 (45.5)	16 (7.9)	93 (46.0)	1 (0.5)	202 (100.0)
2014	73 (24.7)	14 (4.7)	208 (70.5)	0 (0.0)	295 (100.0)
2015	58 (13.6)	9 (2.1)	360 (84.3)	-	427 (100.0)
2016	74 (12.6)	10 (1.7)	501 (85.3)	2 (0.3)	587 (100.0)
2017	136 (16.2)	5 (0.6)	692 (82.4)	7 (0.8)	840 (100.0)

출처: 보건복지부, 『2012~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관련 이슈 분석

가. 분석방법

제1장의 연구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안 발굴을 위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된 언론 기사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여 보육기관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는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 현상을 드러내주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인 뉴스분석을 통해 그간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다.

50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분석은 빅카인즈 빅데이터 소스(source) 중 국내 전국 일간지 11개에서 발간된 기사 중 2010년 1월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지난 약 14년간의 자료를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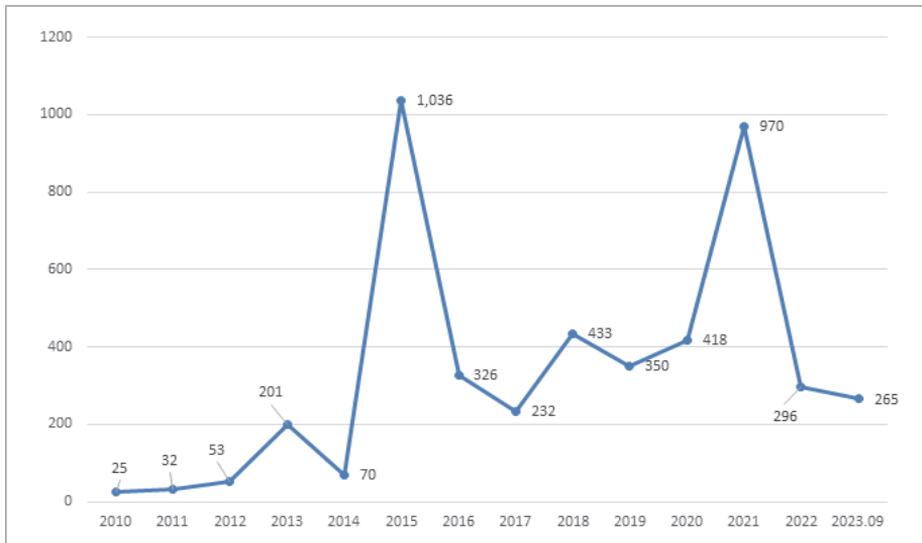
분석에 사용된 키워드는 ‘어린이집’, ‘학대’로 문장 최소단위인 형태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4,90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고 이 중 유사도가 높은 기사와 인사, 부고, 동정, 사진 등 유의미한 분석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운 내용을 담은 207건의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하고 4,702건의 기사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분석결과

1) 키워드 트렌드 분석

2010년 1월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어린이집 학대’가 포함된 언론기사의 수를 시계열 그래프로 제시한 키워드 트렌드 분석결과는 [그림 2-1]과 같다.

» [그림 2-1] 키워드 트렌드 분석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약 14년간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학대 관련 기사는 총 4,707건으로, 거시적인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우상향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으며 2010년에 비해 2023년에 어린이집 학대와 관련된 기사 건수가 약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대한 사회적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가 2010년 이래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3년, 2015년, 2018년, 2021년에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해당 연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0년은 인천 소재의 어린이집 원장에 의해 발생한 상습적 학대 행위가 담긴 CCTV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해이다⁶⁾. 해당 사건으로 인해 그간 인지되지 못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2013년은 2012년에 실시된 무상보육 정책과 함께 어린이집이 보편적인 영유아 돌봄체계가 됨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 또한 급증하게 된 해이다. 이에 그간 감춰져 있던 어린이집 아동학대 또한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빈번히 보도되기 시작하였다. 부산지역에서 연달아 발생한 어린이집 상습학대사건, 어린이집 급식 부실 문제, 횡령사건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를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였다(경향신문, 2013.11.20.⁷⁾; 세계일보, 2013.05.27.⁸⁾). 특히 해당 사건들의 가해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처벌 수위가 높아져 사법처리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었으며(세계일보, 2013.05.02.⁹⁾),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비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과 관련된 기사들이 보도되었다(서울신문, 2013.05.04.¹⁰⁾; 국민일보, 2013.05.27.¹¹⁾). 2013년은 무상보육이 처음 실시된 2012년

6) 서울신문, 2011.10.25., “벌써 식어버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2010년 12월 그날을 잊었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5009013> (검색일: 2023.08.03.)
 7) 경향신문, 2013.11.20.,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 8명 216차례 상습 학대”,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311202233585> (검색일: 2023.06.08.)
 8) 세계일보, 2013.05.27., “나랏돈 빼들려 쓰레기 급식…어린이집 ‘횡령 백태’”,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527003835> (검색일: 2023.04.19.)
 9) 세계일보, 2013.05.02.,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원장·교사 구속영장 신청”,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502002870> (검색일: 2023.05.17.)
 10) 서울신문, 2013.05.04., “아동학대 교사·원장 10년간 재개원 못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04007013> (검색일: 2023.04.19.)

의 다음 해로 어린이집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급증하기 시작한 해에 해당된다.

2015년에는 인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만 4세 재원아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서울신문, 2015.01.14.)¹²⁾.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또다시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기사가 급증하였다(서울신문, 2015.01.29.¹³⁾; 국민일보, 2015.01.26.¹⁴⁾; 동아일보, 2015.01.21.¹⁵⁾). 또한 이를 계기로 같은 해에 그간 논란이 있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고(동아일보, 2015.01.29.¹⁶⁾),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원장과 가해 보육교사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었다(국민일보, 2015.01.16.¹⁷⁾).

2018년도에는 보육교사의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관련 기사가 또다시 증가하였다(국민일보, 2018.07.27.¹⁸⁾; 중앙일보, 2018.07.25.¹⁹⁾). 또한 같은 해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의심을 받던 보육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이와 관련한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서울신문, 2018.11.20.²⁰⁾).

-
- 11) 국민일보, 2013.05.27., “비리백화점 어린이집… ‘匾의원 원장’ 등 국고 300억 끌궜”,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219244&code=11131100> (검색일: 2023.07.12.)
 - 12) 서울신문, 2015.01.14., “인천 소재 어린이집 폭행 교사, 4세 여아 김치 안 먹는다고 머리 내리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4500122> (검색일: 2023.08.03.)
 - 13) 서울신문, 2015.01.29., “어린이집 아동학대 “20대 보육교사, 학대 103건” 얼마나 학대받았나 보니”,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9500247> (검색일: 2023.05.18.)
 - 14) 국민일보, 2015.01.26., “국공립 어린이집서도 아동 학대 빈번 ‘충격’”,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78513&code=61121211&cp=kd> (검색일: 2023.05.17.)
 - 15) 동아일보, 2015.01.21., ““울음 그쳐라” 22개월 男兒 입에 물티슈-수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121/69193849/1> (검색일: 2023.06.13.)
 - 16) 동아일보, 2015.01.29.,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시 포상금이 무려? CCTV 열람 거부하면… ‘깜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129/69343935/5> (검색일: 2023.03.30.)
 - 17) 국민일보, 2015.01.16., “당정, 어린이집 폭력 발생 시 즉각 폐쇄… CCTV 의무화”,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46605&code=61111111&cp=kd> (검색일: 2023.05.17.)
 - 18) 국민일보, 2018.07.27.,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학대, 피해아동 4명 더 있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7291&code=61121211&cp=kd> (검색일: 2023.05.17.)
 - 19) 중앙일보, 2018.07.25., “어린이집서 소장 파열 사망, 11년만에 재조명된 ‘성민이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32780#home> (검색일: 2023.07.12.)
 - 20) 서울신문, 2018.11.20., “김포 보육교사 사망사건… ‘학대 주장’ 학부모, 원장 고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0500019> (검색일: 2023.06.09.)

2021년은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민감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 또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들이 CCTV 영상과 함께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하였다.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동학대사건(세계일보, 2021.02.16.²¹), 울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사건(국민일보, 2021.01.22.²²; 조선일보, 2021.03.18.²³), 영유아를 압박해 질식사하게 한 사건(세계일보, 2021.04.27.²⁴)외에도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수법을 통해 재원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학대를 가한 사건들이 보도되었다(국민일보, 2021.05.20.²⁵). 일부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가해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더욱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경향신문, 2021.12.31.²⁶; 중앙일보, 2021.09.09.²⁷; 서울신문, 2021.09.06.²⁸).

이상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2010년 이래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사회적 관심 또한 급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2) 관계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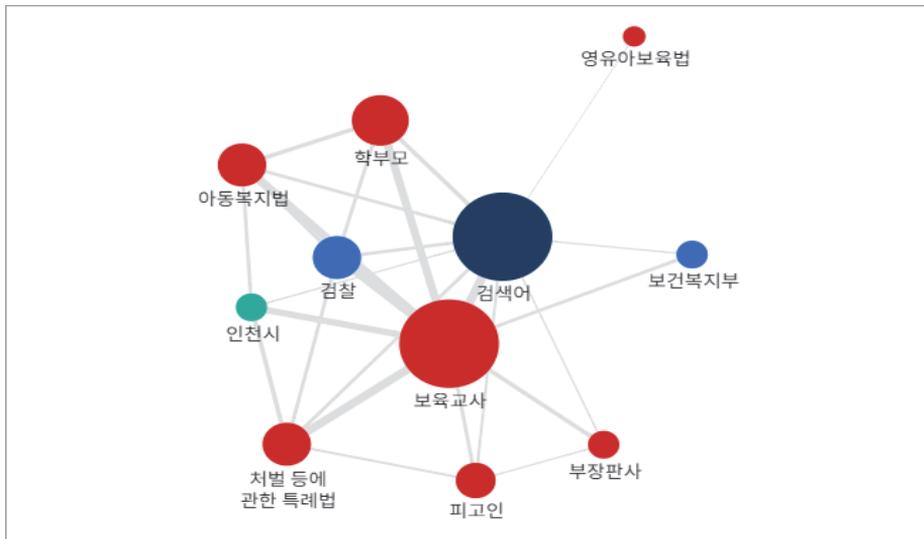
빅카인즈를 활용한 관계도 분석은 검색어와 관련된 뉴스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
- 21) 세계일보, 2021.02.16., “장애아동 상습 학대’ 인천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점”,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6518434> (검색일: 2023.06.08.)
 - 22) 국민일보, 2021.01.22., “‘물고문 어린이집 부실수사…경찰 파면하라’ 피해 부모 청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56953&code=61121111&cp=kd> (검색일: 2023.06.09.)
 - 23) 조선일보, 2021.03.18., “6세 아이 밟고 던지고…원장 딸 어린이집 교사 구속”,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3/18/7GNLZTEP3FFTVMSC73SZZXH53M/> (검색일: 2023.03.30.)
 - 24) 세계일보, 2021.04.27., “어린이집서 21개월 아이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 구속”,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7504682> (검색일: 2023.06.09.)
 - 25) 국민일보, 2021.05.20., “57일간 300번… CCTV에 다 찍힌 제주 어린이집 학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66050&code=61121111&cp=kd> (검색일: 2023.06.13.)
 - 26) 경향신문, 2021.12.31., “5살 여아 성적 학대한 ‘원장 아들’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2311336001> (검색일: 2023.06.08.)
 - 27) 중앙일보, 2021.09.09., “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원생 서로 때리게 시킨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818#home> (검색일: 2023.04.19.)
 - 28) 서울신문, 2021.09.06., “‘장애아동 집단학대’ 인천 보육교사 6명 실형…원장도 법정구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6500167/> (검색일: 2023.07.24.)

뉴스를 추출하여 검색어와 관련되어 도출된 개체명(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²⁹⁾ 사이의 연결관계를 시각화하여 나타내주는 분석으로, Structural SVM(Support Vector Machine)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텍스트 내에서 특정 의미 범주를 가지는 개체명과 관련된 기사 건수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추출하는 방식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빅카인즈를 활용한 관계도 분석은 관련 내용들의 전체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언론진흥재단, 2020; 김미향 외, 2021³⁰⁾).

관계도 분석 결과에서 빨간색은 키워드, 파란색은 기관, 녹색은 장소를 의미하며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어 가중치가 높을수록 원의 크기가 커지며 개체 간 관계가 높을수록 연결선의 굵기가 굵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를 5 이상 80 이하로 설정하였다. 관계도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2-2]와 같으며 각 개체명에 해당되는 가중치는 <표 2-19>와 같다.

▶▶ [그림 2-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관계도 분석



29) 개체명은 홍길동(인물), 국회(기관), 서울시(장소)와 같이 특정 의미 범주를 가지는 단어를 의미하며 주로 고유명사인 경우가 많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30) 김미향·박영주·이주현(2021). COVID-19 시대, 캠핑 체험의 의미 변화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3), 245-257.

▶▶ <표 2-19> 관계도 분석 결과

개체명	분류	가중치
보육교사	키워드	79
학부모	키워드	38
아동복지법	키워드	29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키워드	29
검찰	기관	28
피고인	키워드	22
인천시	장소	18
부장판사	키워드	16
보건복지부	기관	12
영유아보육법	키워드	8

분석결과 관계도에서 기관 2건, 장소 1건, 키워드 7건이 제시되었다. 개체명 중 높은 원에 해당하는 키워드의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개체명 중 인물, 기관,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형태소가 키워드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체명 중 키워드가 포괄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미향 외, 2021).

관계도 분석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가중치가 높은 장소는 '인천시'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기사내용에 포함된 지역 중 인천시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해당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면 인천 내 소재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을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검색어와 관련된 기관을 살펴보면 '검찰'과 '보건복지부'로 나타났다. 검찰은 아동학대행위자 처벌과 관련된 기사에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사법 처리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언급과 함께 자주 등장하였다. 관련 기사에서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 처분, 아동학대 예방정책 등이 언급되었다.

관계도 분석결과 나타난 키워드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주제에 해당되는 보육교사와 학부모의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피고인, 부장판사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과 사법체계

와 관련된 용어가 도출되었다.

가장 가중치가 높게 나타난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관계도를 살펴보면 주요 주체인 학부모와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검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과의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피고인, 부장판사 등이 사법 체계와 관련된 형태소가 관련되어 있어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사법적 판단과 관련된 용어들이 연결망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개체명을 중심으로 한 관계도 분석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계가 높은 장소로는 인천 지역, 기관으로는 검찰과 보건복지부, 키워드로는 보육교사, 학부모,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사법관련 용어로 나타났다.

3) 연관어 분석

연관어 분석은 검색어와 관련된 기사 중 정확도 순으로 상위 1,000개의 뉴스를 추출하고 토픽랭크(TopicRank)³¹⁾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의미적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형태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분석방법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워드클라우드의 검색어와 관련된 연관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의 핵심 분석기법 중 하나이다.

연관어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관어 상위 20개를 워드클라우드 형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그림 2-3]과 같으며 연관어에 대한 가중치와 빈도수는 <표 2-20>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관계도 분석과 키워드 트렌드 분석에서 언급되었던 연관어가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중치가 높은 순으로 연관어 20개를 살펴보면 보육교사, 특례법 위반 혐의, 인천, 아이들, 아동복지법, 장애아동, 벌금형, 징역형, 인천, 연수경찰서, CCTV, 집행유예, 원생들, 불구속 입건, 구속영장, 부장판사, 부모들, 학부모, 교사들, 원생 10명, CC, TV 순으로 나타났다. CCTV의 경우 일부 기사 내에서 '(CC)TV' 등으로 표기되어 분석 시 CCTV와 별개로 분석되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의미적 유사도는 더 높은 연관어로 유추할 수 있다.

31) 토픽랭크란 검색어 기반의 검색결과를 통해 공시적 분석과 워드 클러스터링을 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시맨틱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 [그림 2-3]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관어 워드클라우드



▶▶ <표 2-20> 연관어 가중치와 빈도

연관어	가중치	빈도수
보육교사	321.25	2,768
특례법 위반 혐의	171.63	226
인천	130.34	1,149
아이들	82.09	700
아동복지법	68.07	425
장애통	63.96	230
벌금형	61.63	176
징역형	60.56	154
인천 연수경찰서	60.45	53
CCTV	59.09	1,080
집행유예	58.08	354
원생들	56.99	323
불구속 입건	48.65	166
구속영장	48	221
부장판사	46.29	185
부모들	38.74	477
학부모	37.05	607
교사들	32.59	760
원생 10명	32	104
CC	31.86	1,392
TV	30.12	1,432

이상의 연관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2-2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아이들·부모들 등의 연관어

는 주요 주체를 의미하며, 벌금형·징역형·특례법 위반 혐의·불구속 입건·구속영장·부장판사·아동복지법 등의 연관어는 가해자 처벌 및 사법적 판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애아동·인천·인천 연수경찰서 등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주요 사건으로 정의되며 마지막으로 CCTV를 주요 이슈로 선정하였다.

▶▶▶ <표 2-21> 연관어를 통해 도출한 주요 이슈

도출 이슈	연관어
주요 주체	보육교사
	아이들
	원생들
	부모들
	학부모
	교사들
가해자 처벌/사법 판단	벌금형
	징역형
	특례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불구속 입건
	구속영장
	부장판사
	아동복지법
주요 사건	장애아동
	인천
	인천 연수경찰서
	원생 10명
CCTV	CCTV

3. 소결

2022년을 기준으로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27,971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613건(2.2%)이었다.

전체 아동학대행위자 중에는 부모가 8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리양육자 10.9%, 친인척 3.1%, 타인 2%의 비율을 보였다. 부모 중에는 친부가 45.7%, 친모가

34.2%로 대다수 비율을 친부모가 차지하였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초·중·고교 직원이 5.7%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가 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재학대 행위자 중에는 부모가 전체의 96.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친인척 2.2%, 대리양육자 0.9%, 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각 0.2%)와 보육교직원(0.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68명으로 확인되었고,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82.4%(56명)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13.2%(9명), 친인척 2.9%(2명) 순이었다. 대리양육자 9명은 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4명, 보육교직원과 위탁모 각 2명, 위탁부 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2020년의 자료를 합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 중 민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47.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입력을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14.07%, 국공립 어린이집이 10.4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3.98%,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3.24%였다.

또한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2022년 8월 자료 확인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019년 68명, 2020년 75명, 2021년 80명, 2022년 8월 현재 6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원장은 2019년 7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7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2018년(75명)에 가장 많은 수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되었다. 2019년에는 6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도출한 이슈를 시기, 중요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관련 기사의 양으로 대변될 수 있다. 2010년 이래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의 수는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즉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관심과 인식 수준은 꾸준히 증가하였으

나 여전히 자극적인 사건 위주의 단발성 이슈에 그치는 경향 또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언론에 보도된 뉴스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CCTV 영상과 함께 아동학대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사와 이후 가해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정부정책을 다룬 기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슈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와 관련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간의 관계도를 살펴본 결과 가중치가 가장 높은 키워드인 보육교사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도출된 용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벌과 관련한 용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행위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빅카인즈 관계도 분석은 분석 가능한 개체명이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의미 범주 분류에 의한 관계를 살펴보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관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한 결과 주요 주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사법적 판단, 주요 사건, CCTV로 나타났다. 연관어 역시 앞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이나 관계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아동학대 발생과 처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절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원인

Bronfenbrenner(1979)의 발달생태학적 체계 이론(Bioecological Theory of Human development)에 따르면, 인간의 발달은 다른 수준의 중첩된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각 개인이 각각 서로 다른 시스템이나 개인과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받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아동은 가족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사회문화적 가치

의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확장되는 다양한 사회 체계 내에서 발달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7). 따라서, 보육기관 내에서의 아동학대 관련 연구자들은 발달생태학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아동, 부모, 가족, 이웃, 지역사회 및 더 넓은 사회적 요소들로 아동의 학대 취약성을 설명해 오고 있다. 즉, 아동학대 다원적 모델은 다양한 도메인에서의 다양한 위험 및 보호 요인이 아동학대와 방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한다. 아동학대 원인들에는 가해자와 관련된 요소, 보육 기간 내의 보호 대상인 아동, 보육환경의 특성(크기, 권력 구조, 직원 감독), 외부 양육자와 관련된 요소, 지역 및 아동 보호·환경 시스템, 아동의 사회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관계 등이 포함된다(Carr et al., 2019; Smith & Freyd, 2014). Margolin(1990)은 아동학대를 아동이 어떻게 자신이 당한 학대 경험을 부모에게 폭로하는지, 부모가 아동의 언어, 행동 및 생리적 변화를 통해 학대의 발생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교사가 어떻게 아동을 학대하고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 아동의 행동과 부모, 그리고 돌봄 교사의 아동 돌보기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은 크게 교사요인, 아동 및 부모요인, 환경요인 등 3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교사요인

교사요인은 1) 교사 생애주기 변화, 2) 전문성 및 능력(아동 이해 부족), 3) 교사 간 갈등 및 소통 부재(교사 간 부정적 관계), 4) 학대 목적 시 개입 및 대응을 어려워함, 5) 소진(번아웃), 6) 아동행동에 대한 피해인식, 7) 부정적 자아, 8)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 9) 직무스트레스, 10) 과거 부모의 양육태도, 11) 효능감, 12) 직무만족, 13) 교사가 지각하는 교권 수준, 14)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 15) 인성, 16) 윤리의식, 17) 성격적 문제, 18) 정신적 문제(분노조절 문제 등)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교사 생애주기 변화와 관련해서, 강복화(2022)는 중년기를 지나며 경험하게 되는 호르몬의 변화가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신체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보육 교사로서 평정심을 갖기 어려운 경우 등 생애주기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받게 되는 스트레스와 갈등의 총체적 요인은 보육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며, 교사 자신의 자녀 돌봄과 관련한 문제를 경험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보육교사 및 원장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정선아 외(2018)는 아이에게 온정적이지 않게 반응하거나 식사지도에 문제가 있거나 체벌과 가혹행위를 훈육으로 알고 있고 이를 강요함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집단 운영이 어렵거나(스킬부족), 아동보호를 적절히 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안전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고, 어린이집 운영 규칙 준수를 잘 못함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교사 간 갈등 및 소통 부재(교사 간 부정적 관계)와 관련해서, 정선아 등(2018)은 교사 간 반목, 교사 간 소통 부재, 원장과 교사 간 갈등 등이 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학대 목격 시 개입 및 대응을 어려운 문제와 관련해서, 우진경과 차인영(2021)은 각 학급은 독립적 영역으로서 동료 교사에 의해 서로 학대에 대한 제재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동료 간의 개입은 쉽게 갈등 관계로 이어지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교사들은 관리자의 권한을 통해 학대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 경우 역시 원장과의 관계 및 원장의 아동학대 관리에 대한 의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을 관리하고 임용권자인 원장의 학대를 발견한 경우, 그리고 원내의 문제를 외부에 알리게 되는 경우 자신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감당이 어려우며, 만일 학대로 확실하게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자신에게 돌아올 상황들에 더 큰 두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우진경·차인영, 2021). 또한 기관에서 이루어진 학대문제가 원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거나 원아, 동료, 학부모가 겪을 수 있는 혼란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으로 학대를 발견해도 신고를 잘 못하게 되며, 학대문제 이후더라도 교사들끼리 서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게 되고, 학대문제를 두고 조용히 가기를 바라는 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사도 있어서 관계적 측면을 생각하다 보니 적극적으로 문제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소진(번아웃) 및 아동행동에 대한 피해인식과 관련해서, 아동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느끼고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되거나, 혹은 아동과 거리를 두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성은 번아웃을 초래하고, 교사지도를 거부하는 아이의 행동을 '아이로부터 거부당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게 하여(아동행동에 대한 피해인식), 학대 가해 행위를 정당화

할 위험성이 높다(현정환, 2022).

부정적 자아와 관련해서, 교사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수록(예: 나는 좋은 사람이다), 방임 행위를 보았을 때 이것이 방임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다. 또한 어떤 행위에 대해 학대라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학대 행위를 덜 하게 된다(이용주·조숙영, 2022).

교사의 직무수행 정도와 관련해서, 교사가 보육활동, 아동보호 관련 업무 등 자신이 맡은 사무에 성실히 임하고 이를 잘할수록 아동학대 수준은 감소하였고, 보육활동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강영욱·채신영, 2021).

또한, 과거 부모의 양육태도가 민주적이었을수록 현재 아동학대 행위는 적었고, 교사가 직무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할수록 아동학대 행위는 많아졌다(김영미·강지연, 2015). 영유아에게 적절한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식을 잘 갖추고 교사로서의 신념과 책임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고, 교사가 지도하기 어려운 영유아라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으로 영유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을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권성민·권화숙, 2020).

미혼 보육교사는 보육직무에 불만족할수록 소진이 커져 영유아 학대 인식 수준이 더 낮아진다(영유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신속하고 민감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며, 더 나아가 영유아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된다). 기혼 보육교사의 경우, 자신의 보육업무와 가정 및 전반적 생활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조화롭게 영위하지 못하여 스스로가 불만족하고 업무와 생활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록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가 낮아져, 소진율이 높아지고 영유아 학대인식이 저하된다(이주연·최지훈, 2019).

원장이 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제시하며 기관의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수준이 높을수록, 원장이 절차를 합리적으로 준용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며 원장과 교사 간 존중의 정도가 높을수록,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예방행동을 더 많이 한다. 또한 교사의 학대인식과 관련해서는 교사가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떠한 행동이 아동학대인지 등을 정확히 알수록 아동학대 예방행동을 더 많이 한다(이용주, 2020).

교사의 그릇된 아동관 및 보육관은 학대의 원인이 되었고(박정은 외, 2021), 교사가

자신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지켜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규범과 행동준칙을 잘 지키고자 하는 의식수준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인식 수준이 높다(박소윤 외, 2017). 또한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할 때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등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할수록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학대에 대한 잠재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전희정 외, 2019).

2. 아동 및 부모요인

아동 및 부모요인은 1) 아동 개인특성(행동장애, 습관문제, 장애, 연령), 2) 부모 양육태도, 3) 무분별한 부모 커뮤니티, 4) 교사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존중하지 않음, 인신공격, 교사와의 불신 관계), 5) 부모의 과한 요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이의 개인적 특징 즉 영악한 아이, 돌발적 행동을 하는 아이,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많으며, 예민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굉장히 크게 많이 우는 아이, 교사 말은 하루 종일 무시하고 친구들을 해코지하고 다니는 아이, 지속되고 반복된 공격적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을 하는 아이, 큰소리 우는 아이 등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일어났을 때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과잉 행동, 공격적 행동, 반항 등 행동 문제는 단체생활에 부적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 있다. 그 밖에 아동의 식사 습관 문제, 소리 지르거나 뛰어다니는 등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행위 등이 일어났을 때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강복화, 2022; 박금식 외, 2022; 양미선 외 2019).

부모의 양육태도 부족도 문제인데, 가정에서 배워야 할 기본생활 습관조차 보육 교사에게 요구하고, 부모가 어린이집의 지도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부모나 주양육자의 양육 태도나 방법의 부족으로 기본 습관이나 태도를 형성하지 못한 채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고 개별이 아닌 집단생활을 하며 아동은 더 큰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금식 외, 2022).

또한 학대와 관련되어 부모의 요인으로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무분별한 커뮤니티 확산 및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이 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부모들은 즉시 지역 커뮤니티 등에 아동학대를 기정사실처럼 글을 올려 사실 여부와 관계없

이 공론화되어 아동학대로 낙인이 찍힌다. 이는 보육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의 필요성을 무가치하게 여기게 만드는 낙인 효과를 만든다. 낙인 효과란 상대방에게 낙인이 찍힌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당한 당사자가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현상이다(강복화, 2022). 또한 유아의 대답만으로 학부모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말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너 선생님이 때렸니?”하고 부모가 물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끄덕이고, 부모는 아이 말을 듣고 달려와서 교사에게 이야기한다. 또한 일부 학부모는 보육교사를 교사로서 존중하지 않으며, 보육교사를 단지 아이를 돌봐주는 도우미처럼 생각하거나, 아이에게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자아존중감도 높아지게 되며, 직무 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교사로 하여금 질 좋은 보육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하여 학대 위험이 줄어들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 학대 위험은 높아진다(고영숙·이대균, 2018; 박정은 외, 2021). 하지만, 아동학대에 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고영숙·이대균, 2018)에 따르면, 외부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해 긍정적 효능감이 떨어진다고도 하였다. 보육 이외에 문서나 행정작업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육교사들이 하루하루를 보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지만, 마스크를 통해 보육교사와 관련된 안 좋은 이슈들이 보도되면, 모두가 다 그런 사람처럼 바라보는 시선에 두려움을 느끼고, 죄인이 된 것 같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로서의 긍정적 효능감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주변의 시선을 통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로 인해 교사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박금식 외, 2022).

3. 환경요인

환경요인은 1) 부실한 자격증 취득과정, 2)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의 불명확성(개념이 포괄적이며, 훈육과 구분이 어려움), 3) 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돌봄의 질 저하, 4) 적정 교사 대비 아동 수 초과(투담임 미확보), 5) 과다 업무, 6) 초과근무 대비 시간 외 수당 지급 미비, 7) 물리적 환경(협소하고 구분되지 않은 실내공간, 부족한 실외공간, 사적이고 숨겨진 공간), 8) 낮은 임금(호봉 걱정), 9) 기관 중심적인 양육지원 제도, 10) 교사를 향한 외부의 부정적 시선(사회적 인식), 11) CCTV 의식, 12) 형식적이

고 부족한 교육(교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인성교육), 13) 위계적 조직문화, 14) 약한 처벌 수준, 15) 범조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음, 16) 교사 대상 상담 및 지지체계 부재, 17) 학대신고 교사 보호체계 미비, 18) 학대 사후관리체계 미비, 19) 보육기관 유형, 20) 휴식 시간 및 공간 부족, 21) 전문인력 관리 부족, 22) 높은 교사 이직률, 23) 학대 사례판정 과정 문제(보육현장 고려 필요, 체계적 조사 필요, 신고 전 교사와 부모 간 의견 조율 조정기관 필요 등), 24) 모니터링 체계 부실(지자체 점검 미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효성 부재), 25) 비체계적 장학제도, 26) 장애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재 등이 있다.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과정의 수월성 문제로서, 평생교육원, 사이버, 학점은행제 등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이 타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수월하여 보육교사의 인성이나 자질,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누구나 쉽게 취득하고 특히, 경제 단절 여성의 사회·경제 활동 수단으로 인식되는 현 제도를 유지한다면 향후 보육의 질 향상의 저해 요인일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부족으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강복화, 2022).

어린이집의 하루 일과 중 일정 시간 이후 통합반 운영으로 인한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증가, 돌발적 상황으로 인한 보육 아동 증가, 등·하원 시 보육교사의 차량 동승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 보육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게 현실이나,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노동 강도로 아동학대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강복화, 2022).

기관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실시간 자녀의 일상을 보고자 하는 부모나 주양육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연령에 맞지 않는 행사나 지나친 사진 촬영 및 제공 기관이 늘어났다. 기관 간 과도한 경쟁구도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활동에만 집중되어 아동발달에 적합한 보육 서비스는 오히려 미루게 될 수 있다. 특히 사진을 찍어 매일 SNS에 탑재하는 업무는 아동에게 웃음만을 강요하여 아동의 정서적 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부모나 주양육자의 욕구에 맞춘 보육활동으로 인해 가중되는 보육 이외의 업무는 보육교사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 학대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강복화, 2022).

훈육과 학대 간 경계가 모호하다는 문제로서, 최근 보육교사들이 경험하는 아동학대의 경우 '훈육 및 교육 행동'과 '아동학대 행동' 간 경계가 개개인의 이념에 따라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유아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교사로서 교육적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들의 요구사항 앞에서 보육교사들의 철학과 가치관은 무너지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 심지어, 아이가 예뻐도 안아주면 안 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고영숙·이대균, 2018).

CCTV 의식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 혹은 역할을 멈추는 문제로서, 아이들과 놀아주다가도 CCTV 때문에 멈칫 할 때도 있다. 유아들의 놀이참여자로서 적극적으로 함께 반응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다가도 본인의 뒷모습이 CCTV에 비춰지는 상황을 의식적으로 판단하여 놀이참여자로서 보육교사의 역할 수행을 의도적으로 멈추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보육현장 흐름의 단절은 아동에게도 바람직한 경험이 아니다(고영숙·이대균, 2018).

휴식 때 영유아와 분리되지 않은 환경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보육교사는 하루에 12시간 동안 잠시도 아이들과 분리되지 못하고 영유아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 장시간의 업무와 학부모와의 잦은 접촉, 동료교사와의 협력관계 등의 근무 형태가 타 직종보다 감정 노동이 많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 소진과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김혜진, 2008).

직무자체, 근무환경, 보수에 대한 낮은 만족도의 문제로서, 보여주기식의 불필요한 서류작업이 많고, 행사 및 교재교구 제작으로 인해 야근을 자주 하고,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많은 문제가 있다(김혜정·김세곤,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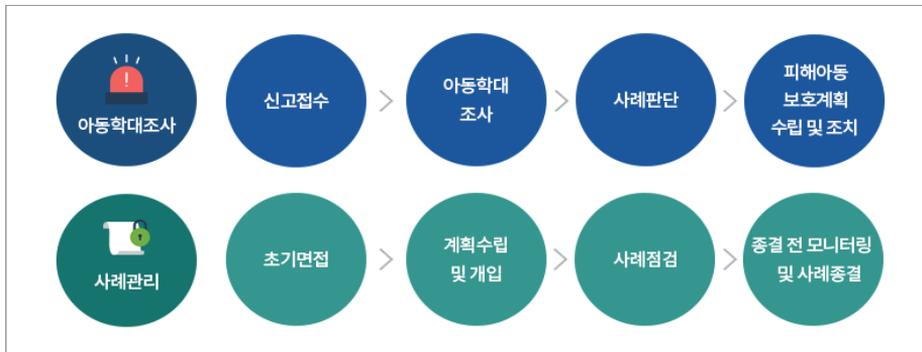
과도한 직무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로서, 장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야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교사 대 아동 비율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연령별 정원 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만 4세, 만 5세의 경우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민간 어린이집에서 인원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기타 보육교직원 배치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나 도우미, 영유아의 보건 및 급식, 차량 운전 등을 담당하는 직원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리원을 제외하고 채용 비율이 낮다. 1일 근무 시간은 평균 9시간 43분이며, 주당 총 근무시간은 50시간 31분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40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금식 외, 2022).

제3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정책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의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의 절차에 따라 사건의 처리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응 업무체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아동학대 조사체계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체계로 이원화 되어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지자체 아동보호팀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을 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을 위한 사례관리를 수행하게 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³²⁾).

» [그림 2-4] 아동학대업무 흐름도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3.9.28.).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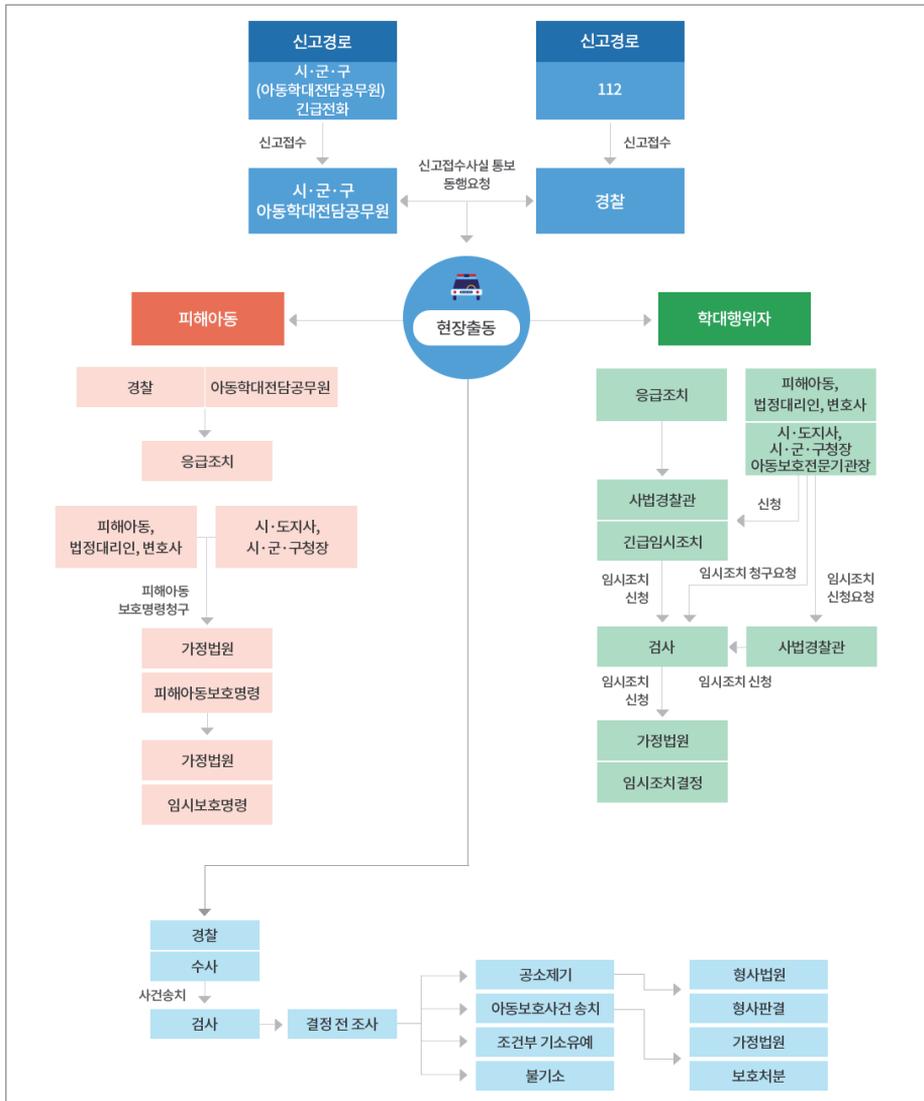
다음으로 아동학대 발생 시의 사법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로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정법원이 주요 사법기관이 된다. 가정 내의 학대행위

32)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3.09.28.).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3>

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 또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신청 등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가 주를 이룬다. 학대행위자 처벌을 위한 사법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절차를 따르며 경찰이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아동권리보장원, 2023).

» [그림 2-5] 아동학대 발생 시 사법처리 절차



출처: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2023.9.28.).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3>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의 아동보호체계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부모 혹은 주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보육교사나, 가족이 아닌 행위자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체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2010. 12. 20)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하는 시기마다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해 왔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중점을 둔 최초의 정부정책은 2010년에 12월에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다.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은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금지에 대한 명문화, 학대행위자 및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신고·감시체계 강화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유아보육과 관련한 유관 법령에 영유아에 대한 체벌을 비롯한 일체의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학대의 범위에 체벌이나 폭행 등의 신체적 학대, 폭언·고함·위협·욕설 등의 정서학대, 부실 급식 등의 방임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해석을 폭넓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 2010.12.20.).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 및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현행법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격정지·취소처분 이외에도 행정적인 처분을 통해 보육업무에 영구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학대 가해자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각종 정부지원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0.12.20.).

처벌강화에 이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제시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인권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어린이집에 대해 CCTV 설치를 유도하

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유도를 위해 포상금을 상향조정 하여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부, 2010.12.20.).

이외에도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발생 시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당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고발하고 관할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12.20.). 이상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와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22>와 같다.

▶▶ <표 2-22> 201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아동학대 금지 명문화	• 영유아에 대한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 명문화
아동학대 처벌강화	•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영구 퇴출 • 학대 발생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 정부지원 중단·환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신고·감시체계 강화	• 아동학대 예방교육, 아동인권 교육 강화 • 포상금 상향 (최대 30만 원→ 최고 300만 원) • CCTV 설치 유도

출처: 보건복지부(2010.12.20).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2013. 5. 3.)

2013년 5월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발표되었다. 주요 안건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제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처벌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이 포함되었다.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3. 5. 3.).

먼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동복지법상 학대 행위로 인해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해당자들의 법 위반 이력과 그 밖에 구별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해당자들의 재취업과 재개원에 대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3. 5. 3.).

다음으로 보육환경과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 등에 대한 보육환경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부모들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2013년 3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의 확대 및 내실화를 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5. 3).

이어 보육교사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강화안을 제시하였다.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육교직원의 임금수준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대체교사를 확대하여 보육교직원의 법정연가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중장기 양성체계 개편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윤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리정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3. 5. 3). 이상에서 제시한 주요 과제와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23>과 같다.

▶▶ <표 2-23> 201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주요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아동학대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발생 어린이집 원장 및 가해자 명단공개 •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의 재취업, 재개원 제한 강화 • 시설폐쇄조치 규정 강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실시 •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투명성·접근성 제고 •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여건 조성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환경, 임금수준 개선 •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 • 윤리·인성 교육강화 • 스트레스·분노 관리프로그램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출처: 보건복지부(2013. 05. 0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2015. 1. 27.)

2015년 1월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이 발표되었다. 해당 시기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충격적인 아동학대 주요 사건에 의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진 시기로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큰 시기에 해당된다.

해당 대책은 부모와 보육기관 종사자, 전문가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기반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이전 대책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대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의견수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부모의 경우 부모 참여 활성화 등을 통한 어린이집 개방, 영유아에 대한 양육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체계적인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감시·처벌 위주보다 교사 처우개선 및 양성체계 개편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27.). 보육교직원의 경우 보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보육이 가능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며, 인력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부모·교사 간의 네트워크 강화, 어린이집 개방을 통한 부모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27.). 전문가의 경우 보육교사의 역량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직무교육과 인성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27.). CCTV 의무화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방지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각지대의 존재, 보육교직원의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혼재되어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1. 27.).

해당 대책은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CCTV 설치 의무화, 부모 참여 활성화,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보육교사 근로 여건 개선, 공공성 높은 보육 인프라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지원이라는 7개의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 2015. 1. 27.).

먼저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관련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중대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의 도입, 아동학대 보육교사와 원장의 경우 영구히 관련 직종에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영정지, 폐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처분시점 단축,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과 가해 보육교사에 대한 명단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1. 27.).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대폭상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상향, 신고자 보호 강화, 원장이 학대사례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를 방지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1. 27.).

7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다음으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모든 어린이집에도 CCTV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하고 아동학대 의심 시 CCTV 영상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1. 27.).

부모참여 활성화와 관련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를 수요자인 부모 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기존의 선택적 평가제를 의무 평가제로 전환하며 매년 평가 결과를 등급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부모 모니터링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있어 부모 역할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개방을 유도하는 내용과 부모가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부모 협동 어린이집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보건복지부, 2015. 1. 27.).

우수한 보육교직원 양성을 위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는 국가시험 제도 개편, 자격개편, 현장실습 강화 등을 통해 신규교사 및 원장이 되기 위한 자격제도 강화, 채용단계에서의 인성검사, 직무교육 이수 여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등에 대한 검증 강화, 현직교사에 대한 보수교육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부담임(보조교사) 배치, 업무 공백 시 대체교사 파견, 행정 간소화 등을 통한 장시간의 근로여건 개선,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직장 어린이집의 활성화 등의 계획을 제시하였고 수요자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서는 시간제 보육 확대, 양육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가정양육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외에 피해아동 및 부모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폐쇄조치 시 피해아동과 재원아동에 대한 전원에 대한 지원,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각 과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24>와 같다.

▶▶ <표 2-24>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주요 내용

주요 과제	주요 내용
아동학대 처벌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발생 어린이집 즉시 폐쇄 •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영구 퇴출 • 학대 발생 어린이집 즉시 운영정지,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 학대 발생 어린이집 및 가해자 명단공개 • 포상금 대폭 상향(최대 1천만원→2천만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상향(현 5백만원 → 10백만원)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 강화 • 원장이 학대사례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학대를 방지했을 경우 행정처분 경감
CCTV 설치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등 설치 의무화 • 부모의 열람권 보장 • 아동학대 예방을 정보공시에 포함
부모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부모) 중심의 의무평가제 도입 • 부모안심인증제 도입 • 부모가 참여하는 열린 어린이집 여건 조성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교사 자격제도 강화 • 채용단계 검증 강화 • 현직교사 보수교육 강화
보육교사 근로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시간 근로여건 개선 • 정서·심리 상담 프로그램 신설
공공성 높은 보육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강화 • 국공립 어린이집 등 확충 •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양육 지원강화 • 수요자 맞춤형 보육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쇄조치 시 피해아동 등 전원계획 수립 • 피해아동 및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2015.01.27.).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3. 소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인해 가정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학대 대책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2010년, 2013년, 2015년도에 제시하였다. 그간 발표된 3번의 대책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정책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이 수립·발표된 시기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제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된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그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

▶▶ [그림 2-6] 어린이집 아동학대 주요사건과 정부정책



이어서 정책에 포함된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내용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당 정책들은 공통적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감시체계 강화, 보육현장에서의 부모 참여의 확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및 자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이며 후기 정책일수록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정부차원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처벌강화의 기초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모 참여 확대 또한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대안으로, 당사자인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과정과 이후의 절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체인 부모가 직접적으로 보육현장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과 관련한 과제들은 열악한 근로여건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자질 강화의 경우 우수한 보육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보육교직원의 자격 기준과 교육의 강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지 대책을 중심으로 시기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발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발전 과정을 부재기, 도입기, 확대기, 성장기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이전의 시기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었던 시기로 관련 정책 또한 부재한 '부재기'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시기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시기에 해당된다.

2010년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남에 따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처음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201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의 명문화, 행위자 처벌 및 신고강화, 인식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보다는 피상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즉 해당 시기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며 기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한 '도입기'로 정의할 수 있으며 정책발전과정의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2013년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이 발표된 해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에 2013년의 대책에서는 이전의 대책에 비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특히 부모에 의한 모니터링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즉 2013년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회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대응이 도입기를 넘어 한 단계 발전된

시기로 ‘확대기’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편적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구체성이 부족한 단계로 한계가 분명하다.

2015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언론에서 보도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관심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급증한 시기에 수립된 대책으로, 이전 대책과 비교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시기로 ‘성장기’로 정의할 수 있다. 해당 대책의 주요 과제였던 CCTV 설치 의무화가 실현된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2015년의 대책 또한 전반적으로 이전에 제시된 대책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에 초점을 두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함과 한계가 존재한다.

▶▶▶ **〈표 2-25〉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책 발전 과정**

구분	정책	특성
부재기 (2010년 이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부재 • 관련 정책 부재
도입기 (2010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201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형성 • 정책의 필요성 인식 • 개념 정립 • 피상적 대책 마련
확대기 (2013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201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상승 • 단편적 대책 마련 • 구체적 대안 제시
성장기 (2015년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2015.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심 증대 • 다차원적 대책 마련 • 구체적 대안 제시

제4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주요 제도 현황

1. CCTV 설치·운영 의무화

2015년 초 인천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였다³³⁾. 해당 사건을 계기

33) 매일경제, 2015.01.14., “인천 어린이집 무서운 교사, 아이 김치 남기자 강제로…충격”, <https://>

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영유아 학대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되었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표현 능력이 취약한 영유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발견, 보호라는 당위성 하에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사안이다³⁴⁾. 이에 서울시는 2009년 ‘안심보육’ 서비스 중 하나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한 IPTV 설치를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보육현장을 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유도한 바 있다(권건보, 2011). 또한 CCTV 설치·운영 의무화 이전에도 전체 어린이집의 약 31.6%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김정수, 2019). 2013년에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의 부재,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설치비용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의 사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김정수, 2019).

그러던 와중 앞서 제시한 인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사건이 계기가 되어 영유아보육기관이 오히려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내부고발 건이 매우 낮고,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중요한 사유로 제기되었다(이여진, 2015). 이러한 흐름 하에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되었다. 2015년 4월 「영유아보육법」(이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항은 아동학대 예방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해야 함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16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 홍콩에 이어 어린이집 CCTV를 의무화한 3번째 국가가 되었다(권정윤·송나리, 2018).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화는 입법 직후부터 현재까지도 찬반 입장이 팽팽히

www.mk.co.kr/news/society/6525046 (검색일: 2023.05.18.)

34) 머니투데이, 2015.01.28., “시민단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촉구 “억울한 죽음 막아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12811560221619> (검색일: 2023.05.17.)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에 해당된다. 보육기관 내 학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한다는 당위성과 보육교사의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양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유아보육법 개정 직후인 2015년 10월에 보육기관을 중심으로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의무화를 반대하는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되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7년 해당 청구에 대한 기각 및 각하결정을 내렸다(김정수, 2019).

헌법재판소는 CCTV 설치 의무화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와 안전사고 방지라는 목적에 정당하고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있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아동발달 단계상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인 부모 참관이나 모니터링 만으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거나 적발하기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보육활동을 지켜보아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김정수, 2019). 또한 CCTV 설치로 인한 보육교사 및 영유아의 사생활 등이 침해되는 것은 사실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적용되고 있고 보호자 전원이 CCTV 설치 반대에 동의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둠으로 무조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김정수, 2019). 무엇보다도 어린이집에서의 보육환경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히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수준을 넘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으로 인한 보육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안으로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김정수, 2019).

2. 아동학대 예방교육

가. 보육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내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근거하며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은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된다(중앙육아종합지원 센터, 2022). 그간의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신고의무자로서의 의무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예방 및 대응방안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중앙육아종합 센터, 2022;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보육교직원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부주의한 지도란 ‘니어미스’(Near Miss, 안전사고가 일어날 뻔했으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보육현장에서 유아 존중이 아닌 그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해당 매뉴얼은 어린이집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부주의한 지도를 탐지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여 부주의한 지도가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또한 영유아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존중 보육이 일상화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와 원장, 부모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육교사의 올바른 대처에 대한 예시를 제공하여 보육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의 원인을 이해하고 권리존중 보육을 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현재 어린이집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법적 의무교육 이외에도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참여교육, 온라인 교육, 전문가 초빙, 외부교육 참여 등의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 <표 2-26>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 방법, 제공기관

교육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교육(법적 의무교육, 각 연1회) • 아동학대 정의 및 유형, 학대사례 및 발생 원인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열람 요청 사유 및 절차 • 어린이집 내 영유아 권리존중 실천의 중요성과 실제 • 아동권리존중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 보육교직원의 정신건강 점검 및 스트레스 대처방법 	
교육 방법	제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장학 • 온라인 교육 • 전문가 초빙 • 외부 교육 참여(지역연합회 혹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최교육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 아동권리보장원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39.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에서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지표에 의해서도 실시 여부가 모니터링되고 있다.

▶▶▶ <표 2-27>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중 보육교직원 대상 학대예방 교육 관련 항목

3-5-2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을 준수한다.
평가내용	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필수] <기록> 보육교직원의 연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포함) 모든 보육교직원이 안전교육과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각각 연 1회 이상 받은 기록(이수증)이 있음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원장, 담임교사(반을 맡지 않은 경우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임용된 보육교직원 - 방법: 어린이집 자체교육, 외부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면담> (공동) 언제, 어떤 내용의 안전교육을 받았는가? (공동)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받은 후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변화가 있었는가? ② 비상시 보육교직원의 대처방안과 업무분장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보육교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있음 ③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직원이 있음 ④ 영유아 학대 예방 지침(체벌 금지 포함)을 준수함[필수]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필수요소 포함)을 충족해야 Y로 평정 ※ 필수요소 미충족 시 N 평정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207.

2018년을 기준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율이 97.9%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양미선 외, 2019).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에 의거한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교육³⁵⁾에도 포함되어 있다. 교육내용은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로 구성되며 보수교육 중 일반직무교육은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보육교직원 관련 자격취득 후 3년마다 이수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

▶▶▶ **〈표 2-28〉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중 아동권리, 아동학대 관련 교과목**

교육 영역	교과목	시간	보수교육
인성·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 이해 및 UN아동권리협약 이해 - 아동학대 예방교육 	4	(원장) 사전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중심 아동권리에 대한 민감성 증진 	4	(보육교사) 승급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와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에 대한 이해 (성인지 교육내용 포함) - 교사와 아동의 인권 존중 이해 	4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건강·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이해 및 예방 - 신고의무자의 역할 - 어린이집 성문제 대응교육 	3	(원장) 일반직무교육,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출처: 보건복지부(2023). 보육사업안내 pp.229-236.

나. 영유아 및 부모 아동학대 예방교육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유아 시기부터 형성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자기보호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지

35) 보수교육은 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3급 → 2급, 2급 → 1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말하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보육교직원 및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 보육사업안내).

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수준 제고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시설·기관의 장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실상 성학대 이외의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은 실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6).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과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021년 12월 통과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2023)³⁶⁾. 해당 법안으로 인해 2023년부터 성폭력 예방교육과는 별도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표 2-29>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과 실시주기

내용	실시주기
성폭력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	3개월에 1회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6개월에 1회 이상
교통안전교육	2개월에 1회 이상

출처: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별표 6]

이상에서 제시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의 실시결과는 교육일시, 시간, 교육아동 수 등에 대한 정보를 어린이집 정보공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75조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표 2-3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린이집 평가제의 평가지표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여부가 포함되어 있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재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교육에 대한 질적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6) 의안정보시스템 (최종검색일자: 2023.6.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0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표 2-30>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지표 중 영유아 대상 학대예방 교육 관련 항목

3-5-1	영유아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내용	① 영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에 적합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 <기록> 연간 영유아 안전교육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영유아 안전교육을 실시한 기록이 있음(보육일지 등).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의 기준(교육내용, 실시주기)을 준수하고 있음. - 안전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은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함. - 영아의 경우, 개별 또는 소집단 활동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함. <면담> (교사)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으로 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② 영유아가 정기 소방대피훈련에 참여함 ③ 영유아가 놀이감 및 활동자료, 놀이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함 ④ 계절 및 날씨 관련 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함
평정기준	4개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Y로 평정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203.

더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그간 주로 보육교사에 의해 실시되었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한계가 제기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2023). 이에 교육 대상이 영유아일 경우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행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전문가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앞서 제시한 성폭력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하는 안과 함께 통과되었다(의안정보시스템, 2023). 해당법안은 2022년 6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23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가정 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나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린이집을 비롯한 가정 외에서 일어나는 학대 예방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부모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주요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제9조의2(보호자교육),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은 대면교육과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구분된다. 대면교육은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주가 되고 있으며 연 1회 이상 신청자에 대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비롯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온라인 교육의 경우 주로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영상자료를 활용하는 형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2022년에는 「긍정 양육 129원칙」이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였다³⁷⁾. 이상의 자료는 아동을 존중하는 긍정양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그림 2-7]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자료



3. 어린이집 모니터링

가.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정례적인 평가는 궁극적으로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의 인권 증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평가제는 2005년도부터 도입되어 평가인증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실시되던 제도였으나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되도록 하였다(김희진·한영미, 2022; 보건복지부, 2023). 이로 인해 그간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에 대한 영역에 있어 취약성이 제기되어 온 미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37) 보건복지부 복파리 TV(2022. 3. 23.).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 129원칙', <https://www.youtube.com/watch?v=2Z1XaYDW7ek>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김희진·한영미, 2022).

어린이집 평가제는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강화 및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목적하에 보육환경, 보육과정, 보육인력의 전문성,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김희진·한영미, 2022). 평가는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등을 통한 사전평가와 현장평가로 이루어진다. 자체점검의 경우 부모를 포함한 어린이집 자체점검위원회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장평가의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하여 1일 동안 실시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평가결과는 A, B, C, D 4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평가의 주기는 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 주기가 부여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평가지표는 4개 영역, 18개 하위지표, 5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영역 중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직접적인 평가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건강·안전 영역에 해당된다.

▶▶ <표 2-31> 어린이집 평가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1.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18)	1-1. 영유아 권리 존중[필수]	2
	1-2. 보육계획 수립 및 실행	6
	1-3. 놀이 및 활동 지원	3
	1-4.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	4
	1-5. 보육과정 평가	3
2.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14)	2-1. 실내 공간 구성 및 운영	4
	2-2. 실외 공간 구성 및 운영	3
	2-3. 기관 운영	4
	2-4.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3
3. 건강·안전(15)	3-1. 실내외 공간의 청결 및 안전	3
	3-2. 급·간식	3
	3-3.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3
	3-4. 등·하원의 안전	3
	3-5. 안전교육과 사고예방	3

88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평가항목(항목수)	평가지표	평가항목수
4. 교직원(12)	4-1. 원장의 리더십	3
	4-2.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3
	4-3.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3
	4-4.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3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59.

건강과 안전은 일차적으로 신체적인 건강과 안전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동학대 등과 같은 문제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건강·안전 영역 중 아동학대와 관련된 직접적인 지표는 이상의 <표 2-31>, <표 2-32>에서 제시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안전 교육 실시에 대한 지표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학대 예방지침 준수에 대한 지표이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에서도 영유아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지표들을 통해 영유아의 권리 존중, 놀이 및 활동 지원, 영유아 간 상호작용 지원에 있어 아동의 권리가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 <표 2-32>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 영역 중 영유아 학대 관련 지표

1-1-1	교사는 영유아를 존중한다.
평가내용	1. 교사는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나 질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하게 반응함 2. 교사는 영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함 3. 교사는 인정과 격려를 통해 영유아의 말과 행동, 생각 및 감정을 지지해 줌 4. 교사는 위협, 비난, 조롱 등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음
평정기준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1-2-2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평가내용	1. 등원 시 영유아를 반갑게 맞이하고, 하원 시 안정된 분위기에서 귀가하도록 지도함 2. 식사와 간식 시간에 서두르지 않고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함 3. 영유아의 연령(월령)과 준비 정도, 개인차를 고려하여 배변 경험이 개별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함 4. 영유아의 개별적 특성에 맞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줌
평정기준	4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1-3-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한다.
평가내용	1. 교사는 놀이시간에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전체를 수시로 살펴 영유아의 놀이 진행과정을 파악함 2.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놀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수준의 지원을 함 3. 교사는 영유아의 놀이와 활동에 즐겁게 참여함
평정기준	3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1-4-1	교사는 영유아의 감정에 공감하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평가내용	1. 영유아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그대로 수용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반응함 2. 영유아의 정서 상태나 기분을 파악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반응하며 수용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1-4-2	교사는 영유아가 일상에서 자신의 의견, 생각 등을 토래와 나눌 수 있도록 격려한다.
평가내용	1. 교사는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토래에게 말로 표현하도록 격려함 2. 교사는 놀이나 활동 상황에서 토래 간 학습이 일어나도록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함
평정기준	2개 모두 충족해야 Y로 평정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pp.249-253.

이상에서 제시한 영유아의 권리존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의 실시, 아동학대 예방지침 준수와 관련된 지표 및 항목은 필수로 지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나. 어린이집 지도·점검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제42조(보고와 검사)에 근거해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령 및 사업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집의 고충 해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 2023).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보육교직원 및 보육환경과 관련한 필수충족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지자체 내 어린이집의 70%를 선정해 진행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전체가 조사 대상에 해당되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선정기준에 의거해 지도·점검 기관으로 선정된다. 최근 3년간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행정처분에 대해 미이행하였거나, 반복적인 부정사례가 발생하였거나, 회계검증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기관은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선정되며 3년간 아동학대가 발생한 기관도 이에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23). 특히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3항에 의해 즉시 조사·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 지도·점검 이외에도 수시

지도·점검 대상이 된다.

지도·점검은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며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을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8조에 따라 운영정지·폐쇄, 과징금 처분,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보육교직원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도·점검을 통한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 <표 2-3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주로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23). 이 중 아동학대 예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검사항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다.

▶▶▶ <표 2-33>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중점 점검사항

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등 상한선 준수 및 보육료 등 수납방법의 적정 여부 ②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준수 여부 ③ 회계처리의 적정성(회계규칙 준수 여부, 수입지출 근거 확인 시 구매품목·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히 첨부해야 함) ④ 교직원 자격·급여·4대보험 등 적정 여부 ※ (원장) 4대보험 신고 시 급여기본급, 직책급, 수당을 포함한 지출액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유의 ⑤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교사 대 아동 비율, 혼합반 등) ⑥ 운영시간 및 입소우선순위 준수 여부 ⑦ 급·간식 운영 및 건강·위생관리 실태 ⑧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가입 적정 여부, 비상대비시설 및 대피훈련 실시 여부, 교직원·차량기사 성범죄 경력 조회, 통학차량 차량신고 여부,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보고, 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및 <u>신고의무자 교육 실시</u> 여부 등) ⑨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CCTV 열람 포함 ⑩ 어린이집 정보공시 준수 여부

출처: 보건복지부(2023). 보육사업안내, p.130.

CCTV와 관련된 사항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사항에 해당된다. 지도·점검 시 CCTV 설치 기준 준수 여부와 기능, 영상기록 보관 기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CCTV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

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맞벌이 부모의 증가, 무상보육 시행 등으로 어린이집 중심의 영유아 보육사업의 양적확대와 함께 보육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을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양미선·이윤진, 2015). 부모 모니터링단 사업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 2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해당 제도는 부모가 직접 보육현장을 둘러봄으로 영유아 학대 의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평가지표에 아동학대와 관련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부모 모니터링은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 모니터링 단원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단원으로 구성되는데 재원아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전문가 단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위촉하는 형식을 취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3).

모니터링의 실시는 부모 모니터링 단원이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기록, 관찰, 보육교직원 면담을 통해 모니터링 지표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문가 단원의 경우 지표별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어린이집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3).

부모 모니터링 지표는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의 4개 영역에 대한 15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중 영유아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에 당일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전반에 걸쳐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 <표 2-34> 부모 모니터링 지표

영역	1. 건강관리(3)	2. 안전관리(4)	3. 급식관리(4)	4. 위생관리(4)
내용	1. 감염병 예방·관리 2. 비상약품 관리 3. 아프거나 다친 영유아 지원	1. 실내외 시설 관리 2. 등·하원 인계과정 3. 차량 안전관리 4. 아동권리존중 실천 및 안내	1. 식단 및 영양, 보존식 관리 2. 식품 알레르기 관리 3. 조리과정 위생 및 조리직원 복장 위생 4. 식자재 보관규정	1. 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2. 급·배식과정 및 식수(우유)등 위생 관리 3. 실내 공간(놀잇감) 청결 및 공기질 등 관리 4. 개별 침구, 칫솔 등 청결 관리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p.38.

아동학대와 관련한 직접적인 모니터링 지표는 안전관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와, 재원아의 가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실천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구분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평가지표는 보육교직원이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와 아동학대 발견 혹은 장기결석 아동 발생 시 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권리 존중과 관련한 지표는 영유아와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보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식사, 낮잠, 정리활동 등의 행동 거부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또한 보육교직원이 재원아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 권리존중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영유아 권리 존중을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 <표 2-35> 아동학대 예방 및 영유아 권리존중과 관련한 부모 모니터링 지표

영역	지표	지표설명	확인 내용 및 방법
안전관리 영역 2-4.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권리 존중	① 모든 보육교 직원이 아동학 대 신고의무자 로서의 역할 및 아동권리를 존 중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영유아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행동을 하지 않음 •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인지하고 있는지, 학대피해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장기결석 아동 인지 및 신고방법,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전화 속지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사실을 알고 있는가? - 학대피해아동을 보았거나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가? - 아동학대 신고 전화번호는 무엇인가? - 장기결석 아동이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존중 인지 및 실천 여부 확인(보육교직원 2인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는 평소에 영유아를 어떻게 부르는가? - 영유아와 이야기 할 때 어떤 자세로 이야기를 하는가? (눈높이, 자세, 억양, 목소리 크기 등) - 영유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교사에게 이야기 하거나 표현하는 경우 어떻게 반응하는가? - 자유놀이나 바깥놀이가 끝났을 때 정리하기 싫어 하거나 떼쓰는 영유아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 식사 시간에 특정 음식을 먹기 싫어하거나, 먹는 속도가 느린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지도하는가? - 낮잠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유아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는가? 	2-4-① : 관찰, 면담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역할 인지 여부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속지, 장기결석 아동 및 학대 피해 아동 발견 시 대처방법 등) □ 아동권리존중 인지 및 실천 여부 * 모니터링 진행 과정 중 체벌 등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시·군·구에 반드시 당일 통보
	② 가정에 자녀를 존중하는 방법과 내용 등 관련 정보에 대해 안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 부모 안내 여부 확인 (원장, 보육교사 1인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방법을 부모에게 안내하는가?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내용을 부모에게 어떤 방법(가정통신문, 오리엔테이션 자료, 게시판 등)으로 안내하는가? 	2-4-② : 면담 □ 아동학대예방 및 권리존중 실천 관련 내용 안내 여부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1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p.70, 74, 114.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부모 모니터링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부모 모니터링 제도의 활성화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수 운영사례 및 참여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부모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평가와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라. 열린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은 2015년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재원아 부모에게 보육공간을 개방하고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있어 부모의 일상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육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어린이집 운영형태이다(최혜영, 2017³⁸; 보건복지부, 2020³⁹).

열린어린이집은 언제든지 부모에 의한 적극적인 아동학대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운영전반에 있어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열린어린이집은 영유아 보호자의 참관과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법적 토대로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⁴⁰).

열린어린이집에 선정되면 선정기간동안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먼저 다양한 실태 점검 및 조사⁴¹)에서 제외되며 자체 정기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또한 교재·교구비 및 보조교사에 대한 우선지원 혜택이 있으며 공공형,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 심사 시 가점이 주어지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보육사업 평가 및 포상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보건복지부, 2023).

4. 소결

이상에서 제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과 조기발견, 보육교사와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부와 부모에 의한 정례적인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의 제도에 대한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8) 최혜영(2017).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부모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93-103.

39) 보건복지부(2020). 2020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40)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41)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

먼저, CCTV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는 그간 설치 의무화와 열람에 대한 규정 마련에 있어 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온 제도이다.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2015년 이래로 오히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와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고 일부 해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아동학대 '발생'이 CCTV 설치 후에도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CCTV가 없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사건들이 드러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발견'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추론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 제도는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는 영유아 보호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보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교육 또한 2023년부터 연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부모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다. 2015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은 남성 19.9%, 여성 39.3%로 나타났다⁴²⁾.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은 아동학대 발견과 관련된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의 권리존중에 대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은 그 주체에 따라 정부와 부모로 구분될 수 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례적인 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으며 부모가 주요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 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부모 모니터링 사업과 어린이집 개방을 통해 부모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열린어린이집 제도가 대표적이다.

42)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제5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23년 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 중인 만 30대에서 50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체벌이 적절한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훈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은 세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있어 왔다. 즉, 체벌은 그 행위 자체의 특성, 상황적인 맥락 등에 따라 훈육이 될 수도, 학대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그간의 일반적인 시각에 해당된다(정규희 외, 2021). 이에 따라 아동 대상의 체벌에 대한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안의 의결되면서 세계에서 62번째로 체벌을 금지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민감도가 상승함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즉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은 학대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체벌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알아보았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돌봄 중 한 행동에 대해 훈육과 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특히 판단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소지가 있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특히 학부모의 관점과 보육교사의 관점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판단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와는 구분되는 개념인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부모의 인식 수준을 조사함으로써 아동학대 판단에 있어서의 부모의 관점과 보육현장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주의한 지도는 권리 존중에 기반한 보육태도가 아닌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난 상태로 정의되며 아동학대사건의 니어미스⁴³⁾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학대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1). 그러나 부주의한 지도 행위는 아동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보육교사의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은밀성, 반복성, 고의성을 띠게 되면 아동학대로 심화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모호한 측면이

43) 자칫 사고로 이어질 뻔한 행동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1).

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1). 본 연구에서는 부주의한 지도가 부모의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함의 및 정책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1. 체벌에 대한 인식

체벌에 대한 인식조사에 앞서 먼저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1.3%로 가장 높았고 보통 24.1%, 심각하지 않음 4.6% 비율로 나타났다.

▶▶ <표 2-36>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매우 심각하다	대체로 심각하다	보통 이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종합			계
						심각함	보통	심각하지 않음	
우리사회의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	25.5	45.8	24.1	4.3	0.3	71.3	24.1	4.6	100.0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체벌을 훈육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부모의 관점과 아동의 반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부모의 관점에서 체벌을 훈육으로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설문한 결과 부모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체벌을 시작했다면 훈육이지만, 기준이 없이 시작했다면 학대라고 보는 답변이 58.9%로, 부모의 기준이 있는 경우 체벌을 학대보다 훈육으로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다음으로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따르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며 행해진 체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성적인 설명이 있는 체벌은 훈육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6%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명확한 기준과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행해진 체벌의 경우 훈육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약 60%로 확인되었다.

한편 아동의 반응을 고려한 체벌의 기준을 살펴보면 아이가 체벌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훈육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61.4%가 아이가 목적을 이해하고 있을 경우에는 훈육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체벌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는 결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을 경우 훈육이라고 인식하는 응답비율은 47.8%로, 아동의 행동교정 효과 여부에 따라 훈육으로 인지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다소 낮았다. 아동의 관점에서 체벌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을 경우 훈육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아동의 행동교정의 여부는 체벌을 훈육으로 정의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7> 체벌을 훈육으로 판단하는 기준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종합		계
					비동의	동의	
체벌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훈육이고, 기준없이 시작했다면 학대이다	16.8	24.3	42.8	16.1	41.1	58.9	100.0
부모가 자신의 화나 기분에 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며 행해진 체벌은 훈육이다	17.3	23.1	48.0	11.6	40.4	59.6	100.0
아이가 체벌을 받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 훈육이다	14.8	23.8	49.6	11.8	38.6	61.4	100.0
체벌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는 결과를 낳았다면 훈육이다	19.1	33.1	42.0	5.8	52.2	47.8	100.0

다음으로 체벌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체벌을 받지 않은 아동의 경우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28.2%로, 체벌과 반사회적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높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회초리(매)를 아끼면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1.1%로 직접적인 신체적 체벌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즉 체벌을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하거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되는 데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38> 체벌의 효과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종합		계
					비동의	동의	
체벌을 받지 않은 아동이 체벌을 받은 아동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34.0	37.8	22.5	5.7	71.8	28.2	100.0
회초리(매)를 아끼면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없다	35.6	43.3	17.0	4.1	78.9	21.1	100.0

체벌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체벌이 다른 훈육방식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고 체벌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응답비율은 2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48.1%로 나타나, 폭력 행동을 교정하는 체벌이라도 체벌은 정당하다고 보지 않는 응답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체벌의 효과성에 따른 정당성을 인정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이에 비해 폭력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체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비율은 높은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2-39> 체벌에 대한 정당성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종합		계
					비동의	동의	
체벌은 다른 훈육방식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므로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	32.5	46.5	18.5	2.5	79.0	21.0	100.0
자녀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17.3	34.6	38.9	9.2	51.9	48.1	100.0

다음으로 체벌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보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4%가 그렇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에서 행해지는 체벌이 여전히 가정사로 치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2-40>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종합		계
					비동의	동의	
자녀체벌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다	25.0	39.6	30.8	4.6	64.6	35.4	100.0

부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아동에 대한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결과 부모가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전체 응답비율의 49.9%, 잘못을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가 23.3%,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였기 때문인가 14.2%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아동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의 경우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가 40.1%로 가장 높았고,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인가 34.1%,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가 12.6%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훈육 시 체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모두 체벌이 훈육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동일하나, 보육교사의 경우 그 다음의 사유로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에 의한 체벌은 주로 아동의 잘못을 가르치기 위한 훈육의 방법 자체에 대한 고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보육교사의 경우 이와 더불어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체벌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표 2-41> 훈육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타	계
부모	49.9	23.3	14.2	3.4	8.3	0.9	100.0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40.1	12.6	8.3	3.6	34.1	1.3	100.0

2. 보육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인식

가. 가해자에 대한 인식

보육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먼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잠재적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34.8%, 양부모 25.9%,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20.1%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동발달에 가장 심각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가해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 60.3%, 양부모 16.9%, 어린이집 및 유치원 선생님 10.5%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주양육자인 부모 및 양부모가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가장 심각한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양육자 다음으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우려되는 잠재적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에 있어서도 주양육자 다음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2> 가해자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부모	양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부모 (베이비 시터)	학교 교사	기타	형제/ 자매	학원 교사	친인척	조부모	계
가장 우려되는 잠재적 자해자	34.8	25.9	20.1	9.2	4.1	2.0	1.6	1.3	0.6	0.4	100.0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해자	60.3	16.9	10.5	4.0	3.0	2.2	1.1	0.9	0.6	0.5	100.0

나. 장소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장소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정의 경우 전체 가정의 40%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전체 중 68.8%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의 58.2%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아동학대가 가정 내보다는 가정 밖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43> 장소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일어나고 있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종합		계
					발생	비발생	
가정	6.6	33.4	49.7	10.3	40.0	60.0	100.0
어린이집, 유치원	15.0	53.8	28.1	3.1	68.8	31.2	100.0
학교	11.3	46.9	38.3	3.5	58.2	41.8	100.0

이상에서 제시된 장소에 따른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의 경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9%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8.7%, 학교에서 발생한 학대의 경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로 나타났다.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의 경우 약 40%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심각도가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관점의 차이

다음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1). 먼저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모든 항목의 평균으로 학부모 인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학대가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5% 혹은 ‘학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응답자의 60.7%는 부주의한 지도를 아동학대와는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39.3%는 부주의한 지도로 정의되는 상황을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주의한 지도 상황 중 학부모의 관점에서 학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은 문제의 원인을 아동에게 전가해 죄책감을 갖게 한 상황으로, 응답자의 49.4%가 해당 상황을 학대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할 경우(49.0%),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여 놀리는 행위를 한 경우(48.8%),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상황(48.5%),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는 상황(48.2%) 순으로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상에서 제시한 상위 5개에 해당하는 부주의한 지도상황은 응답비율이 약 50%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학부모의 관점에서 부주의한 지도와 아동학대의 개념이 혼동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황은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23.4%가 학대라고 인식하였고, 기대 행동을 안 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28.2%,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하는 경우 31.3% 순으로 상대적으로 해당 상황을 학대로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이 낮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주의한 지도가 학부모의 관점에서는 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 비율이 39.3%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의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2-44>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학부모 인식

단위: %

구분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될 수도 있다	학대이다	계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들은 척 함 (예시: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10.9	53.5	35.6	100.0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예시: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우는데 교사를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7.9	43.1	49.0	100.0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예시: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13.5	55.2	31.3	100.0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예시: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13.9	50.6	35.5	100.0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예시: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깐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5.7	44.9	49.4	100.0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예시: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15.4	52.5	32.1	100.0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예시: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대!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7.4	44.4	48.2	100.0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예시: “친구들은 혼자 할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11.4	51.7	36.9	100.0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예시: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12.2	49.2	38.6	100.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예시: “놀잇감 가지고 한번 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20.7	51.1	28.2	100.0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예시: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12.4	49.9	37.7	100.0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결을 예고함 (예시: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9.3	49.7	41.0	100.0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예시: “선생님! 애 좀 달래 봐요! 애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10.4	48.1	41.5	100.0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예시: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찰래? 기저귀 찬 친구는 별로야.”)	6.7	44.5	48.8	100.0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예시: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17.8	45.5	36.7	100.0

구분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될 수도 있다	학대이다	계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예시: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9.4	44.9	45.7	100.0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예시: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밀며 이동시킴)	7.1	44.4	48.5	100.0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예시: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хват 잡음)	32.1	44.5	23.4	100.0
합계	12.5	48.2	39.3	100.0

4. 소결

이상에서 제시한 체벌과 훈육,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체벌에 대한 부모의 명확한 기준과 설명, 아동 스스로가 훈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서 행해진 체벌의 경우 훈육이라고 응답한 비율, 즉 체벌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경우 훈육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벌로 아동의 행동이 교정되었을 경우, 즉 결과에 따라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비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가 체벌을 훈육으로 인식하는 데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상의 적합성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체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체벌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감소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 25% 내외로 나타나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벌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폭력 행동의 교정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벌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의 비율이 48.1%에 달했다. 즉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체벌이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체벌을 가정사로 보는 비율이 35.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경우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 목적 이외의 이유로 체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살펴보면 민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의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체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하면 체벌 금지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수준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정 내 체벌을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보지 않고 아동의 권리 측면에서 보편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사회적인 위법행위로 보는 시각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체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 더 면밀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주양육자인 부모가 가장 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해자로 응답하였다. 주양육자 다음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우려되는 잠재적 아동학대 가해자이며 동시에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를 비교하여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핵심 보호체계인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2.5%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조사 결과 나타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학대에 대한 우려의 수준은 실제 현상과 비교해

볼 때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으로 보는 이러한 인식은 부모와 교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긴장감을 안겨 주게 되며 결국 그에 따른 악영향은 아동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영유아보육기관과 부모 간의 신뢰를 강화해 과도한 우려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부주의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이 부주의한 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로 인식되는 부주의한 지도 상황 중 학대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응답자의 23.4%는 부주의한 지도를 학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의 응답자의 비율은 49.4%로 이는 부주의한 지도 상황과 아동학대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주의한 지도와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기준은 판단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부주의한 지도가 관점에 따라, 특히 부모의 관점에서는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주의한 지도가 발생하는 상황적인 맥락과 지도의 강도, 아동의 성향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의 조사결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보육기관내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판결문 분석

홍영오·추지현

제3장

보육기관내 아동학대의 발생 현황: 판결문 분석

이 장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현황과 특성, 형사처분의 실태와 쟁점을 살펴본다.

제1절 | 사건 현황

1. 심급과 법적 다툼

210건 사건의 기본 정보의 하나로 진행 심급을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선고가 이뤄진 사건에 국한된 바, 해당 기간 이후 상고나 항소가 이뤄질 수 있어 각 사건의 최종심이 라 보기는 어렵다. 이 중 1심까지 진행된 경우는 전체의 39.0%, 2심까지 진행된 경우는 51.0%에 해당했다. 대법원의 선고까지 이뤄진 사건은 21건으로 10.0%를 차지했다.

▶▶▶ <표 3-1> 심급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		가정		χ^2
	N	(퍼센트)	N	(퍼센트)	
최종심	1심	82 (39.0)	678 (76.8)	129.024***	
	2심	107 (51.0)	193 (21.9)		
	3심	21 (10.0)	12 (1.4)		
	계	210 (100.0)	883 (100.0)		

*** $p < .001$

이러한 결과는 사건이 1심에 그치는 경우가 76.8%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정 내 아동학대와 차이가 두드러진다. 즉,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서 상소가 더욱 많이 이뤄지고 있는 편이라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탐색코자 누가 상소를 제기했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2〉 상소 제기 주체). 46건 중 35건이 보육교사, 누리교사에 의한 것이었고, 원장 등 시설운영자에 의한 것은 9건,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의 경우 2건이었다. 종사자 대다수가 해당 직위인 점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학대를 직접 실행 혹은 방조하지 않고 학대 가해자인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양벌규정이 상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해당 조항만 적용된 피고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44명 중 5명이 3심까지 상소를 이어갔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상소를 야기한 다툼의 쟁점에 대해서는 5절의 4에서 보다 상세히 살펴본다.

▶▶ 〈표 3-2〉 상소 제기 주체

단위: 건, (%)

구분	심급						χ ²	
	1심		2심		3심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종사자 지위	시설장, 원장, 원감, 대체원장	29	(40.3)	34	(47.2)	9	(12.5)	5.083
	보육교사, 누리교사	73	(29.4)	140	(56.5)	35	(14.1)	
	대체교사, 보조교사	3	(37.5)	3	(37.5)	2	(25.0)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보육교직원	0	(0.0)	1	(100)	1	(0.0)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기소	해당	14	(31.8)	25	(56.8)	5	(11.4)	.318
	비해당	91	(31.9)	153	(53.7)	41	(14.4)	
계		105	(31.9)	178	(54.1)	46	(14.0)	

아래 〈표 3-3〉 1심 변호인 선임 여부는 1심 기준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 여부를 나타낸다.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총 329명의 피고인 중 319명으로 97.0%에 달했다. 변호인을 선임한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76.3%)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영유아보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물론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달리 어린이

집 학대에 있어 유죄의 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두드러진 다툼의 쟁점이 존재하는지,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여전히 설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의 18.5%가 국선 변호인을, 46.8%는 법무법인, 31.6%는 개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국선 변호인의 선임 비율은 가정 내 아동학대의 수치 52.3%에 비해 현저히 낮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78.4%)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 <표 3-3> 1심 변호인 선임 여부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		가정		x ²	
	N	(퍼센트)	N	(퍼센트)		
없음	10	(3.0)	228	(23.8)	312.8***	
국선	61	(18.5)	502	(52.3)		
사선	개인	104	(31.6)	230		(24.0)
	법무법인	154	(46.8)			
계	329	(100)	960	(100)		

*** p< .001

변호인 선임 여부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처벌로 인한 이해관계 및 계층적 지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아래 <표 3-4>와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 중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원장 등 시설운영자(12.5%)보다 보육교사, 누리교사(20.2%)가 더욱 많은 편이었고, 개인이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는 그 반대였다. 전반적으로 사선 변호인의 선임이 많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의 기준을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변호인의 선임 여부와 자격, 피고인의 종사상 지위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 <표 3-4> 1심 변호인과 종사상 직위

단위: 건, (%)

구분	1심 변호인 여부										x ²	
	없음		국선		사선				계			
	N	(퍼센트)	N	(퍼센트)	개인		법무법인		N	(퍼센트)		
종사상 지위	시설장, 원장, 원감, 대체원장	2	(2.8)	9	(12.5)	24	(33.3)	37	(51.4)	72	(100)	8.904
	보육교사, 누리교사	8	(3.2)	50	(20.2)	79	(31.9)	111	(44.8)	248	(100)	
	대체교사, 보조교사	0	(0.0)	2	(25.0)	0	(0.0)	6	(75.0)	8	(100)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보육교직원	0	(0.0)	0	(0.0)	1	(100)	0	(0.0)	1	(100)	
	계	10	(3.0)	61	(18.5)	104	(31.6)	154	(46.8)	329	(100)	

2. 적용법조 및 경합범

적용법조와 경합범의 내용은 학대의 유형뿐만 아니라 학대에 수반된 사전, 사후행위 등 학대의 양태, 나아가 피고인의 습벽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다.

가. 학대의 양태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를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5>에 제시돼 있다. 329명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는 앞서 <표 1-1>의 17개 법 조항 중 8개였다. 가정 내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아동복지법 제17조제1호(아동매매), 제17조제7호(장애아동관람), 제8호(구결강요·이용), 제9호(곡예강요·제3자인도), 제10호(양육알선금품취득), 제11호(아동금품유용)가 적용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구체적 학대유형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조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1.1%, 정서적 학대가 29.4%로 많았고, 음행강요는 4건, 0.5%에 그쳤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권리보장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의 결과와

도 부합한다(보건복지부, 2021). 신체적, 정서적 학대 순으로 적용 법조가 많은 경향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도 유사했는데,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31.1%, 20.2%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어린이집에서는 성적 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1항1의2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적용 비율(0.5%)이 가정 내 아동학대(4.4%)보다 낮았다. 어린이집에서의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 피고인은 3명, 사건 기준 2건으로, 어머니가 원장인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평소 아이들에게 화를 내거나 체벌을 하면서 위력을 행사하다, 잠든 아이의 옆에 체위를 조정해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거나 끌어안았던 남성 가해자의 사례와 이를 묵인한(성별 불명)보육교사⁴⁴⁾, 마찬가지로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지속해 오면서 아동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스킨십”을 반복해 온 이른바 기습 추행의 반복(성별 불명)행위자⁴⁵⁾의 사례가 여기 해당했다. 가정과 비교할 때, 어린이집 성적 학대의 낮은 비율은 보육교사의 95% 이상이 여성을 차지하는 돌봄노동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 <표 3-5> 심급 및 적용법조

단위: 건, (%), (%)

구분	어린이집			가정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1	(0.1)	(0.3)	46	(2.5)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0	(0.0)	(0.0)	8	(0.4)
	제6조(상습)	0	(0.0)	(0.0)	9	(0.5)
	제7조(신고의무)	229	(29.0)	(71.8)	0	(0.0)
적용법조	제71조1항1의2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3	(0.5)	(1.3)	83	(4.4)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2호(신체적학대)	246	(31.1)	(77.1)	588	(31.4)
	제71조제1항제2호(정서적학대)	232	(29.4)	(72.7)	377	(20.2)
	제71조제1항제2호(유기·방임)	16	(2.0)	(5.0)	153	(8.2)
	제72조(상습)	14	(1.8)	(4.4)	606	(32.4)
	제74조(양벌규정)	48	(6.1)	(15.0)	0	(0.0)
계	789	(100.0)	(247.6)	1,870	(100.0)	

*주: 다중응답 결과

4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15. 선고 2020고합126 판결.

45) 수원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20고합222 판결, 판결문상 아동들은 가해자가 “고추”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으나 그 의미가 불분명해 성별을 “알 수 없음”으로 처리함

나. 학대행위자와 “보육교직원”

위 <표 3-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 경우는 전체 범조 중 29.0%, 양벌규정은 6.1%를 차지했다. 전자의 경우, 케이스를 기준으로 할 때 71.8%로 피고인 중 해당 범조가 적용된 경우는 10명 중 7명 남짓이다. 이는 나머지 30%가량은 동법 제10조제2항12호의 신고 의무자(「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과 그 교직원)로 인정되지 않는 보육 종사자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판결문에서는 학대행위자, 즉 피고인의 종사상 지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법 적용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법원의 “직원” 판단기준은 물론 이 범주에서 제외됐으며 사실상 보육을 수행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다른 보육 교직원들과 어떠한 직무 및 노동 배경의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다. 학대 양태와 가해자 특성

위 <표 3-5>를 통해서는 학대의 행위 양태와 행위자 특성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우선 상습범 가중의 비율을 살펴보면,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른 상습범 가중이 이뤄진 경우가 각 0.52%, 32.4%였던 것에 반해, 어린이집의 경우 그 비율이 0.0%, 1.8%로 해당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아동학대 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가 적용된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경우 1건(0.1%), 가정 내 아동학대에서는 46건(2.5%)이었다. 각 자료의 시간적 범위가 3년(2020년~2022년), 2년(2021년~2022년)으로 상이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는 그 비율뿐 아니라 절대적 수치가 갖는 함의 역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 내 아동학대가 어린이집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의 상습성이나 결과에 있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살해치사 혐의가 인정된 1건은 친자매가 가정 어린이집 운영자이자 보육교사를 함께 맡았던 상황으로, 원장이 아동들을 강압적으로 재우고자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결박하는 행위를 한 달, 35회에 걸쳐 지속하다 질식사하게 하고, 그 과정의 일부를 지켜봐 온 상피고인이 목인 혹은 제어하지 않은 혐의⁴⁶⁾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성적 학대와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의 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던 데에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종사자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지만,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중상해나 상습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다.

수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상태에 있는 동시적 경합범에는 아동학대와 전혀 무관한 죄가 존재할 수도 있고, 이와 달리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죄, 학대의 맥락이나 사후행위로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죄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 329명에게 적용된 죄명을 경합범 여부와 내용을 중심으로 보았다(〈표 3-6〉). 1장의 〈표 1-1〉에 제시된 적용법조들 중 단 하나만 적용된 경우는 44명으로 전체의 13.4%를 차지했고, 이들 법조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적용된 경우가 73.6%로 대다수였다.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다른 법조까지 함께 적용된 경우는 37명, 11.2%로 가정 내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동종경합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학대 행위의 태양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 〈표 3-6〉 경합범

구분	단위: 건, (%)				x ²
	어린이집		가정		
	N	(퍼센트)	N	(퍼센트)	
해당없음	44	(13.4)	336	(35.0)	433.1***
동종경합	242	(73.6)	130	(13.5)	
동종+이종경합 (아동학대 관련)	37	(11.2)	350	(36.5)	
동종+이종경합 (아동학대와 무관)	6	(1.8)	144	(15.0)	
계	329	(100.0)	960	(100.0)	

*** p < .001

46) 대전지방법원 2021. 11. 11. 선고 2021고합180 판결.

이중경합이 있는 피고인에 한해 그 구체적 죄명을 살펴보았다. 형법상 상해에 관한 죄가 적용된 경우가 10명, 전체의 71.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이 2명,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에 따른 보호처분 등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조가 적용된 경우가 1명이었다. 신체적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폭력범죄와 경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상황은 가정 내 아동학대는 물론 2010년부터 2015년 사이 발생한 전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의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한 2015년의 연구(강은영·김희균, 2015) 결과와도 유사하다. 다만 가정 내 아동학대에서는 살인, 사체유기, 성폭력 등의 행위가 더욱 빈번한 바, 이 역시 어린이집에서의 학대가 상대적으로 (법정형 기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덜 수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 3-7> 아동학대 관련 이중경합의 적용법조

단위: 건, (%), (%)

구분	가정			어린이집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살인/미수/사체유기/손괴/ 은닉	12	(2.6)	(3.3)	1	(7.1)	(7.1)	
상해/폭행(치사상 포함)/협박	261	(54.8)	(70.7)	10	(71.4)	(71.4)	
강간과 추행의 죄/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	119	(25.0)	(32.2)	2	(14.3)	(14.3)	
강요	4	(0.8)	(1.1)	0	(0.0)	(0.0)	
유기와학대의죄	1	(0.2)	(0.3)	0	(0.0)	(0.0)	
체포와감금의죄	4	(0.8)	(1.1)	0	(0.0)	(0.0)	
가정폭력처벌법	3	(0.6)	(0.8)	0	(0.0)	(0.0)	
아동학대 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 불이행)	15	(3.2)	(4.1)	1	(7.1)	(7.1)
	제60조(피해자 등 강요)	3	(0.6)	(0.8)	0	(0.0)	(0.0)
	제61조(업무수행 등 방해)	4	(0.8)	(1.1)	0	(0.0)	(0.0)
주거침입/손괴/절도/ 기타(공무집행방해/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50	(10.4)	(13.5)	0	(0.0)	(0.0)	
계	476	(100.0)	(129)	14	(0.0)	(100.0)	

*주: 다중응답 결과

3. 피해 인지 경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보호자에 의한 신고가 더욱 용이하거나 빈번할 것으로 짐작되어 이를 확인코자 했다. 하지만 피해의 인지 및 입건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판결문에 부재한 경우가 각 94.5%, 80.0%로 대다수였고, 가정 내 아동학대에서는 해당 자료가 부재했다.

▶▶ <표 3-8> 피해 인지 및 입건 경로

		단위: 건, (%)	
구분		N	(퍼센트)
피해인지경로 (N=781)	피해자 발화	5	(0.6)
	피해자의 이상행동이나 외상 발견	12	(1.5)
	보호자가 의심 혹은 추궁	19	(2.4)
	기타	7	(0.9)
	미상	738	(94.5)
입건경로 (N=210)	고소	38	(18.1)
	고발	3	(1.4)
	인지	1	(0.5)
	미상	168	(80.0)

제2절 | 피해자 및 가해자 특성

1.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아래 <표 3-9>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역시 판결문에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30.7%에 달해, 특정 성별의 아동이 피해에 취약한 상황이라 단언하기는 어려웠다.

영유아보육법상 원칙적으로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보육하도록 하고 있기에 6세 이상의 피해자 비율은 6.7%에 그쳤다. 그중에서는 1세 미만 영아보다 3~5세 아동이 296명, 37.9%로 가장 많은 편이었다.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 2021)에 따르면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의 대다수는 7~12세로, 이 역시 전체 아동

학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6세 미만 중에서는 3~5세가 전체의 3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2세(27.0%), 1세(20.1%), 0세(1.4%) 순이었다.

아동의 장애 여부는 돌봄노동의 강도와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지만, 이 역시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 피해자의 95.1%가 관련 정보가 없는 가운데 신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는 2명(0.3%), 지적, 정신상 장애를 가진 경우는 36명(4.6%)이었다.

▶▶▶ <표 3-9>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및 연령)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n=781)		가정 (n=1,223)	
		N	(퍼센트)	N	(퍼센트)
성별	미상	240	(30.7)	201	(16.4)
	남성	307	(39.3)	408	(33.4)
	여성	234	(30.0)	614	(50.2)
연령	미상	53	(6.8)	65	(5.3)
	0	11	(1.4)	50	(4.1)
	1	157	(20.1)	55	(4.5)
	2	211	(27.0)	45	(3.7)
	3~5	296	(37.9)	180	(14.7)
	6~7	48	(6.1)	150	(12.3)
	8~12	5	(0.6)	416	(34.0)
	13	0	(0.0)	262	(21.4)
	비해당	744	(95.1)	1,164	(95.2)
장애	신체적 장애	2	(0.3)	59	(4.8)
	지적, 정신상 장애	36	(4.6)		

2. 가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보육교사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나(보건복지부, 2021), 판결문을 통해서는 학대의 가해자 성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96.4%)이었다. 가해자가 장애를 가진 것이 확인된 경우는 1명으로 조현병⁴⁷⁾을 가진 보육교사가 8회에 걸쳐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몸을 붙들었던 것으로 근무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조현병이 학대에 영향을

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3. 선고 2022고단15 판결.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지 않았다. 연령 역시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 이하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⁴⁸⁾.

▶▶▶ <표 3-10> 피고인의 인구학적 특성(성별 및 장애 여부)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n=329)		가정 (n=960)		χ ²	
	N	(퍼센트)	N	(퍼센트)		
성별	미상	317	(96.4)	300	(31.3)	416.8***
	남성	3	(0.9)	418	(43.5)	
	여성	9	(2.7)	242	(25.2)	
장애	비해당	328	(99.7)	868	(90.4)	31.52***
	해당	1	(0.3)	92	(9.6)	

*** p< .001

3. 가해자의 범죄경력

학대행위자에게 범죄 및 수사경력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본 바, 관련 경력이 확인된 것은 11명으로 3.3%였으며, 이는 가정 내 아동학대 43.6%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 <표 3-11> 범죄 및 수사경력

단위: 명, (%)

구분	어린이집		가정		χ ²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범죄, 수사경력 (n=960)	비해당	318	(96.7)	541	(56.4)	13.38***
	해당	11	(3.3)	419	(43.6)	
	계	329	(100.0)	960	(100.0)	

*** p< .001

48) 20대 및 30대 각 1명이 확인될 뿐이었다.

제3절 | 시설 및 보육 업무 특성

1. 시설 특성

피해가 발생한 시설의 특성을 유형과 지역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설의 유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83.8%를 차지하는 가운데 협동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고, 가정 어린이집(9.5%), 민간 어린이집(2.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0.5%)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어린이집은 아동의 정원이 20명 이하이지만 보육교사의 인원 역시 적어 보육 부담이 가중되거나 교사들 간 학대가 묵인될 수 있는 환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했으나 이를 지지할만한 근거는 부재했다.

▶▶ <표 3-12> 시설 유형

시설유형 (n=210)	구분	단위: 개소, (%)	
		N	(퍼센트)
	국공립	8	(3.8)
	사회복지법인	1	(0.5)
	가정	20	(9.5)
	민간	5	(2.4)
	미상	176	(83.8)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관련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4.8%로 적어도 95.2%는 법정 의무가 이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이행 현황은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표 3-13> CCTV 설치 여부

구분		지역단위						계		χ^2
		서울		광역시		기타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CCTV 설치여부	있음	49	(100.0)	57	(95.0)	94	(93.1)	200	(95.2)	3.505
	미상	0	(0.0)	3	(5.0)	7	(6.9)	10	(4.8)	
계		49	(100.0)	69	(100.0)	101	(100.0)	210	(100.0)	

2. 가해자의 종사상 지위와 직무

가해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329명 중 보육교사, 누리교사인 경우가 전체의 7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은 원장 등 시설운영자 21.9% 순이었다. 어린이집 종사자의 대다수가 전자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원장 등 운영자 중 학대의 실행에 공모, 방조 등 관여를 한 바 없이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기소가 된 경우는 전체 어린이집 사건의 13.4%에 해당했다. 이들도 보육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들이 학대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전체의 8.5%였다. 생활교사나 생활보조원, 강사, 명예교사 등에 의한 학대는 단 한 건도 없었고, 그 밖의 보육 교직원에게 의한 경우는 1건만 존재했다. 장애아동전문 보육시설의 작업치료사가 보육교사의 신체, 정서적 학대를 방조한 것이었다⁴⁹⁾.

▶▶▶ <표 3-14> 가해자 지위

단위: 명, (%)

구분	계		주의의무위반으로만				χ ²	
			해당		비해당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시설장, 원장, 원감, 대체원장	72	(21.9)	44	(13.4)	28	(8.5)	181.303***	
종사상 지위	보육교사, 누리교사	248	(75.4)	0	(0.0)	248		(75.4)
대체교사, 보조교사	8	(2.4)	0	(0.0)	8	(2.4)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보육교직원	1	(0.3)	0	(0.0)	1	(0.3)		
계	329	(100.0)	44	(13.4)	285	(86.6)		

*** p < .001

위의 사례와 같이 영아나 장애아를 주로 보육하는 상황은 노동의 강도와 질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방과 후 전담 및 연장보육반 담당 등 가해자의 주된 업무를 파악코자 했으나 관련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82.8%를 차지했다. 나머지 중 영아 전담은 12.5%, 장애아 전담 및 통합반 담당은 4.7%였다.

49) 인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4600 판결.

▶▶ <표 3-15> 가해자의 주 업무

구분		N	단위: 명, (%) (퍼센트)
주 업무	없음, 비해당, 미상	212	(82.8)
	영아전담	32	(12.5)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12	(4.7)
계		256	(100.0)

제4절 | 피해 특성

1. 학대 당시 상황

앞서 <표 3-5>와 같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학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한 결과가 아래 <표 3-16>에 제시되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 학습 및 놀이 지도 등의 훈육 상황으로 전체의 39.8%를 차지했다. 훈육이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다음은 식사 제공(29.2%), 재우기(19.2%) 순이었다. 그 밖에 시설 운영 과정에서 난방 및 피복을 불충분하게 제공하는 등의 경우는 5건으로 0.9%에 불과했다. “기타”에는 특정한 보육 활동과 연계되지 않은 상황, 예컨대 아동이 잠든 상황에서 수시로 성추행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아동을 의자에 장시간 앉혀 두거나 얼음을 옷에 집어넣는 등 학대가 훈육 과정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로서 전체의 1.9%에 그쳤다.

▶▶ <표 3-16> 학대상황 빈도

구분		N	단위: 건, (%) (퍼센트)
학대상황	먹이기	155	(29.2)
	재우기	102	(19.2)
	입히기	47	(8.9)
	그 외 훈육	211	(39.8)
	불충분한 서비스	5	(0.9)
	기타	10	(1.9)
계		530	(100.0)

*주: 다중응답 결과

학대 당시 가해자가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바, 329명의 피고인 중 88.8%는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를 이용해 학대를 했고, 그 다음은 의자, 책 등 물리적 도구를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25.9%였다. 도구 없이 다른 아동들과 공간적으로 분리시키거나 대꾸하지 않는 등의 무형의 위협을 가한 경우는 전체 피고인의 36.8%로 학대의 도구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4%로 세 번째로 높았다.

▶▶ <표 3-17> 학대 도구

단위: 건, (%), (%)

구분	구분	반응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도구	알 수 없음	3	(0.6)	(1.1)	
	있음	물리적 도구	127	(25.9)	(44.6)
		디지털 매체	2	(0.4)	(0.7)
	없음	신체	253	(51.6)	(88.8)
		따돌림	105	(21.4)	(36.8)
계		490	(100.0)	(171.9)	

*다중응답 결과

2. 피해의 중복과 지속

210건의 사건(모두 동일 시설)에서 329명의 피고인이 78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은 학대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피고인들 간 공모나 묵인 혹은 독립적 실행의 중첩이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피해의 중복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210개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의 총 피해자와 가해자 인원을 살펴보았다. 한 시설에서 피해자는 최대 45명, 피고인은 11명까지 있었다. 즉,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앞서 적용 법조 및 경합범에서도 알 수 있듯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학대 행위의 비난 가능성(법정형 기준)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은 편이었다. 피해자가 1명인 경우는 전체 사건에서 43.8%로 가정 내 아동학대(71.7%)에 비하여 그 비율이 크게 낮았으며 피해자가 4명 이하인 경우는 29.5%로 가정 27.7%보다도 다소 높았다.

▶▶ <표 3-18> 피해자 수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		가정		x ²
	N	(퍼센트)	N	(퍼센트)	
총 피해자 수	1명	92 (43.8)	633 (71.7)	223.4***	
	4명 이하	62 (29.5)	244 (27.7)		
	5명 이상	40 (19.0)	6 (0.7)		
	10명 이상	16 (7.6)	0 (0.0)		
계	210 (100.0)	883 (100.0)			

*** p < .001

각 사건에서 총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원을 교차해 피해의 집중 정도를 확인코자 했다. 1명의 가해자가 1명에 대해서만 학대를 한 경우가 전체의 35.2%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은 1명이 4명 이하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가 19.5%, 1명이 5명 이상의 아동에게 혹은 2명의 가해자가 4명 이하의 아동에게 학대를 한 경우가 각 7.6%를 차지했다. 대체로 가해자가 많아질수록 피해자 역시 많아지고 있었다.

그 밖에 종사자의 지위나 시설 특성(지역, 유형)에 따라 피해자 및 가해자 인원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했으나 미상값이 많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 <표 3-19> 피해자와 피고인 인원

단위: 건, (%)

구분	총 피고인 수								x ²
	1명		2명		3명 이상		계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총 피해자 수	1명	74 (35.2)	15 (7.1)	3 (1.4)	92 (43.8)	43.936***			
	4명 이하	41 (19.5)	16 (7.6)	5 (2.4)	62 (29.5)				
	5명 이상	16 (7.6)	15 (7.1)	9 (4.3)	40 (19.0)				
	10명 이상	3 (1.4)	6 (2.9)	7 (3.3)	16 (7.6)				
계	134 (63.8)	52 (24.8)	24 (11.4)	210 (100.0)					

*** p < .001

위 <표 3-19>에는 양벌규정으로만 기소가 된 피고인이 포함된 바, 이들을 제외하고 학대를 직접 실행한 285명에 한해 공범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수를 확인해 보았다. 아래 <표 3-20>과 같이 피해자가 1명인 경우는 공범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43.9%로 공범이 존재한 경우(37.1%)보다 많았지만, 4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범

의 비율이 43.5%로 높았다. 이는 공범 여부와 피해자의 인원이 선형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 공범은 4명 이상 다수 피해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 <표 3-20> 피해자 수와 공범 여부

단위: 건, (%)

구분	공범 여부				계		χ^2	
	있음		없음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피해자 수	1명	23	(37.1)	98	(43.9)	121	(42.5)	6.082
	2명	7	(11.3)	32	(14.3)	39	(13.7)	
	3명	4	(6.5)	23	(10.3)	27	(9.5)	
	4명 이상	27	(43.5)	62	(27.8)	89	(31.2)	
	미상	1	(1.6)	8	(3.6)	9	(3.2)	
계	62	(100.0)	223	(100)	285	(100.0)		

1명의 피해자에게도 반복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학대의 지속 여부와 피해자의 인원을 교차해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21>에 제시되어 있다.⁵⁰⁾ 학대가 1회에 그친 경우가 전체의 17.3%를 차지했고, 피해가 1회에 그치는 경우보다는 지속된 경우가 82.7%로 훨씬 많았다. 이 중 4명 이상의 피해자에게 지속된 경우가 31.4%, 1명에게만 지속된 경우가 25.4%로 나타난 바,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된 학대보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동시 학대가 더 많은 편이었다.

▶▶ <표 3-21> 피해자 수와 학대지속 여부

단위: 건, (%)

구분	학대지속 여부				계		χ^2	
	1회		지속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피해자 수	1명	49	(17.3)	72	(25.4)	121	(42.8)	79.341***
	2명	0	(0.0)	39	(13.8)	39	(13.8)	
	3명	0	(0.0)	25	(8.8)	25	(8.8)	
	4명 이상	0	(0.0)	89	(31.4)	89	(31.4)	
	미상	0	(0.0)	9	(3.2)	9	(3.2)	
계	49	(17.3)	234	(82.7)	283	(100.0)		

*** $p < .001$

50) 앞서의 결과가 보여주듯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동시 발생하는 경향이 큰 것이 확인되었지만 판결문의 범죄일람표상에는 학대의 지속 기간 혹은 횟수 어느 한쪽만 기재되거나 각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표기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만으로 기소된 이들을 제외한 285명의 피고인 중 학대의 기간을 고려할 때 학대 지속횟수는 2회 이상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 횟수를 알 수 없는 2건은 제외됐다.

학대의 지속기간을 살펴본 바, 1회에 그친 경우가 전체의 17.2%를 차지하는 가운데 1개월 초과~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42.8%, 1개월 이내가 34.4%를 차지했다. 수치가 적어 아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3개월 초과와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해 학대가 지속된 경우가 2건, 6개월 이내 10건, 1년 이내 4건이 존재했다. 공범이 존재하는 경우 피고인의 학대가 1회에 그치는 경우보다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더욱 많았다.

▶▶ <표 3-22> 공범 여부와 학대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학대지속기간								계	x ²
	1회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공범 여부	있음	6 (2.1)	18 (6.3)	35 (12.3)	3 (1.1)	62 (21.8)	6.795			
	없음	43 (15.1)	80 (28.1)	87 (30.5)	13 (4.6)	223 (78.2)				
계	49 (17.2)	98 (34.4)	122 (42.8)	16 (5.6)	285 (100.0)					

피해지속기간을 가정 내 아동학대와 비교한 결과가 아래 <표 3-23>에 제시되었다. 기간의 범주가 동일하지 않아 위 표의 결과를 재범주화했다. 피해가 1일에 그치는 비율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더욱 높았던(17.2% 대 3.2%) 반면, 1개월을 초과하는 비율은 가정 내 아동학대가 더 높았다(48.4% 대 70.0%).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가정에 비해 더욱 단기간에 그치거나 피해가 더욱 이른 시기에 인지된 결과로 보인다.

▶▶ <표 3-23> 피해지속기간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		가정		x ²
	N	(퍼센트)	N	(퍼센트)	
피해 지속기간	알 수 없음	0 (0.0)	92 (12.5)	148.0***	
	1일	49 (17.2)	24 (3.2)		
	1개월 내	98 (34.4)	106 (14.3)		
	1개월 초과	138 (48.4)	517 (70.0)		
계	285 (100.0)	739 (100.0)			

*** p < .001

3. 피해 결과

781명의 피해자가 학대로 인해 어떠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23>에 제시되어 있다. 피해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판결문에 부재한 경우가 81.6%로 많은 가운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를 포함해 신체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전체의 5.6%였고, 심리나 행동상의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는 12.8%에 해당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에서는 사망 및 상해 등 신체적 어려움이 야기된 경우는 전체의 19.0%, 행동 및 정서적 발달 지연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등을 겪은 비율은 5.5%로, 상해의 결과가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피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각 81.6%, 75.6%에 이르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 <표 3-24> 피해 결과

단위: 건, (%), (%)

구분	어린이집			가정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비해당	650	(81.6)	(309.5)	959	(75.6)	(78.4)	
피해 결과 (n=1,269)	사망			43	(3.4)	(3.5)	
	상해	45	(5.6)	(21.4)	177	(13.9)	(14.5)
	골절 등 외상			21	(1.7)	(1.7)	
	영양결핍 등 기타신체기능손상						
심리, 행동 어려움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102	(12.8)	(48.6)	11	(0.9)	(0.9)
	불안, 우울, 외상후스트레스등				58	(4.6)	(4.7)
계	797	(100.0)	(379.5)	1,269	(100.0)	(103.8)	

*주: 다중응답 결과

제5절 | 처벌 및 처분

1. 보호조치 및 행정처분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제12조),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입시조치(제13조)가 작동한 경우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130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않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서만 관련 정보가 판결문에 적시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나 시설 운영자의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면서 법률상 응급 및 임시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 <표 3-25> 피해자 보호조치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n=329)		가정(n=1,240)	
	N	(퍼센트)	N	(퍼센트)
보호조치	알 수 없음	0	25	(2.0)
	퇴거, 격리	0	15	(1.2)
	접근금지(통신포함)	0	30	(2.4)
	보호시설, 의료기관인도	0	12	(1.0)
	피·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0	9	(0.7)
	친권, 후견인 권한 제한	0	4	(0.3)
	기타	0	1	(0.1)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있음	0	24	(1.9)
	없음	0	1,120	(90.3)
	합계	0	(0.0)	1,240

*주: 다중응답 결과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처분 이외에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 <표 3-26>과 같이 관련 정보가 판결문에 부재한 경우가 대다수인 가운데 시설 폐쇄나 휴원 명령이 이뤄진 경우는 6건(1.8%),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혹은 취소가 이뤄진 경우는 1건이 있었다.

▶▶ <표 3-26> 시설행정처분

단위: 건, (%)

구분	N	(퍼센트)
	시설행정처분	
시설폐쇄, 휴원명령	6	(1.8)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혹은 정지	1	(0.3)
미해당, 미상	322	(97.9)
계	739	(100.0)

2. 선고형

형 선고의 현황에 앞서 양형 기준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다. 현행 양형위원회의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중 아동학대의 양형기준은 2022. 3. 28에 의결되었고 이전 기준에 따르면 상해 및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만 그 적용의 범위가 제한되었던 상황인 바, 모든 행위가 양형 기준을 적용해 선고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아래 <표 3-27>이 보여주듯,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된 경우는 전체의 21.9%로 가정 내 아동학대 30.9%보다는 낮은 편이었다.

▶▶ <표 3-27> 양형 기준 적용 여부

단위: 건, (%)

구분	어린이집		가정		χ^2	
	N	(퍼센트)	N	(퍼센트)		
양형 기준 적용 여부 (n=960)	미적용	257	(78.1)	664	(69.2)	9.619**
	적용	72	(21.9)	282	(29.4)	
	일부 적용			14	(1.5)	
계	329	(100.0)	960	(100.0)		

** $p < .01$

329명의 피고인 중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행위와 무관한 행위가 동시적 경합범으로 선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 피고인 6명을 제외한 324명에 한해 1심 선고형을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28> 선고형에 제시돼 있다. 각 형은 병과될 수 있기에 다중응답으로 집계됐다. 피고인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선고형은 징역의 집행유예로 전체의 37.5%였으며 그 다음은 벌금 33.7%였다. 징역의 집행유예가 3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 내 아동학대와 유사하지만 그 비율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서 53.4%로 훨씬 높았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징역이었다(26.3%).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보다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11.8%에 달해 가정 내 아동학대의 그것 1.7%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이 역시 사건의 심급을 살펴본 앞서 <표 3-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법적 다툼의 쟁점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 <표 3-28> 신고형

단위: 건, (%), (%)

구분	어린이집			가정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무죄	38	(11.7)	(11.8)	14	(1.6)	(1.7)
징역	46	(14.2)	(14.2)	220	(24.8)	(26.3)
징역의 집행유예	121	(37.3)	(37.5)	446	(50.3)	(53.4)
자격정지, 상실	0	(0.0)	(0.0)	1	(0.1)	(0.1)
벌금	109	(33.6)	(33.7)	135	(15.2)	(16.2)
벌금의 집행유예	3	(0.9)	(0.9)	16	(1.8)	(1.9)
몰수	0	(0.0)	(0.0)	46	(5.2)	(5.5)
선고유예	7	(2.2)	(2.2)	7	(0.8)	(0.8)
기타	0	(0.0)	(0.0)	1	(0.1)	(0.1)
계	324	(100.0)	(100.3)	886	(100.0)	(106.0)

*주: 다중응답 결과

3. 합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전체의 48.0%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다수 피해자 전부 혹은 일부와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피고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합의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나, 대체교사 및 보육교직원의 빈도가 적고 미상 값이 많은 가운데 뚜렷한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

학대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채 주의의무 위반으로만 기소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밖의 피고인들, 실제 보육을 실행하는 종사자들의 피해자측과 합의에 비하여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이 역시 미상값이 많아 경향성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밖에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7명이 있었다.

▶▶ <표 3-29> 합의 여부

단위: 명, (%)

구분	합의								계	x ²		
	전혀없음		일부있음		전부		미상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총사상 지위	시설장, 원장, 원감, 대체원장	33	(45.8)	7	(9.7)	8	(11.1)	24	(33.3)	72	(100.0)	12.841
	보육교사, 누리교사	121	(48.8)	49	(19.8)	21	(8.5)	57	(23.0)	248	(100.0)	
	대체교사, 보조교사	4	(50.0)	0	(0.0)	1	(12.5)	3	(37.5)	8	(100.0)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보육교직원	0	(0.0)	1	(100.0)	0	(0.0)	0	(0.0)	0	(100.0)	
주의 의무 위반 으로만	해당	19	(43.2)	4	(9.1)	3	(6.8)	18	(40.9)	44	(100.0)	7.235
	비해당	139	(48.8)	53	(18.6)	27	(9.5)	66	(23.2)	285	(100.0)	
계		158	(48.0)	57	(17.3)	30	(9.1)	84	(25.5)	44	(100.0)	

1심 선고형의 형종을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는 약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그 기간을 비교해 보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인해 징역을 선고받은 46명의 선고 기간은 평균 23.83월로 2년 남짓이었고, 이는 가정 내 아동학대의 평균 20.13월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피고인은 평균 11.17월의 징역형에 24.69월의 집행유예 기간이 선고됐다.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평균 11.17월의 징역형에 25.98월의 유예 기간이 선고된 바, 이 역시 큰 차이는 없었다.

▶▶ <표 3-30> 징역 및 집행유예의 기간

단위: 월

구분	어린이집					가정					t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징역(월)	46	2	12	23.8261	24.025	220	6	300	20.13	53.205	1.055	
징역의 집행유예 (월)	징역 유예 기간	121	4	12	11.17	10.821	446	2	36	11.17	8.473	1.744
			12	36	24.69	5.649		12	60	25.98	10.082	3.000

4. 법적 다툼과 쟁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와 비교할 때, 1심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무죄 선고 및 변호인 선임 비율, 상소의 빈번함, 낮은 법정형의 적용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 영향요인을 탐색코자 했다.

첫째, 아동학대와 무관한 법조의 이종경합이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 323명 피고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학대 행위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학대 가담이 적은 편이거나 법인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등 시설 운영자와 나머지 보육교사들 간의 사회자본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래 <표 3-31> 종사상 지위와 1심 무죄 선고 여부와 같이 피고인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1심 선고 기준 무죄의 선고 여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 <표 3-31> 종사상 지위와 1심 무죄 선고 여부

단위: 명, (%)

구분	1심 무죄 선고				계		x ²	
	비해당		해당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종사상 지위	시설장, 원장, 원감, 대체원장	63	(2.1)	5	(13.2)	68	(21.1)	2.924
	보육교사, 누리교사	215	(75.4)	31	(81.6)	246	(76.2)	
	대체교사, 보조교사	6	(2.1)	2	(5.3)	8	(2.5)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보육교직원	1	(0.4)	0	(0.0)	1	(0.3)	
계		285	(100.0)	38	(100.0)	323	(100.0)	

둘째, 무죄를 선고받은 38명의 피고인들의 사건에서 다뤄진 다툼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1심에서 무죄 선고에 이르기까지 검사와 변호인, 판사가 주된 쟁점으로 판단한 것은 전체의 58.8%를 차지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인정 여부로, 가해자의 행위자 훈육 차원에서 정당한 것이었는지,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쪼그려 앉아 아동과 눈높이를 맞춘 상태에서 13초가량 이야기하면서 화장실 사용을 방해하거나 입 부분에 손을 댄 상황⁵¹⁾, 장난을 치는 것을 말리기 위해

5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0. 14. 선고 2020고단58 판결.

누워있는 상태의 이불을 잡아당겨 다른 원아와 멀어지게 한 행위⁵²⁾ 등이 피고인의 “거친” 행위가 훈육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유형력 행사였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 등이 이에 해당했다.

그다음은 사실인정과 관련해 공소사실의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여부(19.6%)였다.

▶▶ <표 3-32> 다툼의 쟁점(무죄)

구분		N	단위: 건, (%) (퍼센트)
다툼의 쟁점	없음	3	(5.9)
	행위자체 여부	10	(19.6)
	고의_위법성조각	30	(58.8)
	사망상해인과의 관계	3	(5.9)
	아동진술증거능력	2	(3.9)
	양벌규정	3	(5.9)
계		51	(100.0)

*주: 다중응답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전체 사건에서(아동학대와 별개의 이중 경합이 있는 피고인 제외) 다툼과 쟁점을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33>에 제시되어 있다. 판결문에 항소와 상고의 쟁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하는 가운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마찬가지로 학대의 고의가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인지를 둘러싼 다툼이 이뤄진 경우가 전체의 38.5%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가정 내 아동학대 21.5%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원장 등의 주의·감독 의무가 충분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사건의 10.9%를 차지했다. 반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이나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이 문제가 된 경우가 각 10.5%, 1.3%로 어린이집의 경우와 비교할 때 두드러졌는데, 가정 내 보호자가 가해자인 경우, 아동의 진술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확보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5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6. 26. 선고 2019고단3667 판결.

▶▶ <표 3-33> 다툼과 쟁점(전체)

단위: 건, (%)

	어린이집		가정	
	N	(퍼센트)	N	(퍼센트)
없음	47	(30.1)	84	(27.5)
행위 입증	23	(14.7)	74	(24.3)
고의 및 위법성조각	60	(38.5)	66	(21.5)
사망, 상해등과의 인과관계	3	(1.9)	18	(5.9)
아동 진술 증거능력	3	(1.9)	32	(10.5)
아동 처벌(불원)의사의 진정성	-	-	4	(1.3)
보호자 지위	-	-	1	(0.3)
공모 여부	2	(1.3)	5	(1.6)
양벌규정	17	(10.9)	-	-
공소권 남용 등 절차상 하자	-	-	5	(1.6)
재범위험성 판단	1	(0.6)	14	(4.6)
기타	-	-	2	(0.7)
계	156	(100.0)	305	(100.0)

*주: 다중응답 결과, %는 응답 기준

5. 부수처분

형벌 이외에 부가된 형사처분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가 아래 <표 3-34> 부수처분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역시 아동학대와 무관한 이종경합의 법조가 존재하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비교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피고인의 65.8%가 예방 강의에 대한 수강 명령을 받았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것은 취업제한(54.7%)이었다. 아무런 부수처분이 없는 경우도 피고인의 31.7%에 달했다. 반면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73.2%로 가장 많아 각 내용의 순위에 있어서는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이지만 그 비율을 고려할 때, 해당 보호처분의 활용도가 큰 편이라 볼 수 있다. 그다음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37.1%), 보호관찰(19.2%),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13.2%) 명령 순이었다. 유죄 선고를 받고 아무런 보호처분을 받지 않은 피고인은 13.9%였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성폭력 치료를 위한 수강 명령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수처분의 부과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낮았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온정이 작동했다기보다는 학대가 가정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진(〈표 3-5〉, 〈표 3-6〉 및 〈표 3-7〉 참조) 영향으로 보인다.

▶▶▶ 〈표 3-34〉 부수처분

단위: 건, (%), (%)

구분	어린이집			가정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N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없음	102	(18.4)	(31.7)	114	(8.3)	(13.9)
보호관찰	0	(0.0)	(0.0)	158	(11.5)	(19.2)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3	(0.5)	(0.9)	6	(0.4)	(0.7)
사회봉사	58	(10.5)	(18.0)	56	(4.1)	(6.8)
수강 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0	(0.0)	(0.0)	601	(43.7)	(73.2)
취업제한	176	(31.8)	(54.7)	305	(22.2)	(37.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	(0.4)	(0.6)	108	(7.9)	(13.2)
신상정보 공개, 고지	0	(0.0)	(0.0)	1	(0.1)	(0.1)
전자장치부착	0	(0.0)	(0.0)	3	(0.2)	(0.4)
가정폭력 치료강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212	(38.3)	(65.8)	6	(0.4)	(0.7)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0	(0.0)	(0.0)	9	(0.7)	(1.1)
기타	0	(0.0)	(0.0)	6	(0.4)	(0.7)
합계	553	(100.0)	(171.7)	1,376	(100.0)	(167.2)

*주: 다중응답 결과

제6절 | 아동학대 요인별 판결 사례

1. 교사요인

가. 전문성 및 능력

1) 사례 1

피고인(보육교사)은 2020. 5. 21. 10:31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B 어린이집 00반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교탁 앞에 앉아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피해자 D가 앞으로 나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담임교사 F의 품에 안겨 **집중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후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더 밀었다.

피고인은 2020. 7. 7. 11:15경 위 어린이집 00반 교실에서, 다른 원아들이 바닥에 흩어진 블록을 정리할 때 피해자가 교실을 뛰어 다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앞에 세운 후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앞뒤로 세계 수회 흔드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1고단722 판결)

-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명령

2) 사례 2

피고인(보육교사)은 교실 안에서 피해자가 블록을 정리하는 와중 블록을 집어 던지며 장난을 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팔 한쪽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바닥에 던진 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다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교실 문밖으로 끌어내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1. 27. 2020고합198 판결)

-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3) 사례 3

피고인A(만0·1세반 보육교사)는 2019. 12. 2. 11:33경 피해아동 H(여, 당시 1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쳐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중략)

피고인D(만0·1세반 보육교사)는 2019. 12. 3. 19:00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다른 아동의 분유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머리로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

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고단1139 판결)

- 선고: [피고인A]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D]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A,D]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4) 사례 4

피고인(보육교사)은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E(남, 2세)이 교구장 위에 엎드려 **장난을 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위험한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주저 앉혔다. 2019. 4. 5. 무렵부터 2019. 4. 19.까지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밀치고, 가방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만 2세 정도에 불과한 피해아동들에게 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미숙한 행동을 한 아이들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질책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마치 초등학생들에 대한 훈육 행동처럼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아직 영유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서 **피해아동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결여된** 행동이며, 그 자체로써 영유아보육법의 이념이나 규정에 반하고,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울산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단3754 판결)

-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명령,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나. 학대 목격 시 개입 및 대응 어려움

1) 사례 1

피고인B(00반 보육교직원2)는 피고인A(00반 보육교직원1)가 F(피해아동)에게 간식을 입에 넣어주다가 간식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해자를 밀쳐 뒤에 있는 책꽂이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1~2019. 1.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는 것을 제지하거나 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A의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방조하였다.

B는 00반 담당교사로서 같은 방에서 A과 아이들을 함께 보육하면서 위와 같은 A의 훈육 방법 및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A도 경찰 조사에서 '매번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한두 번 정도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행동한 것은 아니어도, CCTV상에는 선생님의 행동이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1 중 순번 12, 13, 17, 25, 27, 29, 30을 제외한 나머지 각 순번에 기재된 A의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1. 18. 선고 2019고단5963 판결)

- 선고: [피고인B]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다. 복합적 원인

1) 번아웃(소진)

피고인A(장애아동 담당 보육교사)는 B(보육교사)와 공모하여 교실에서 잠을 자지 않는 다른 아동이 있음에도 유독 피해아동 E에게만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피고인 A는 갑자기 피해아동을 향해 다가가 이불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지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무서워서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손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아동이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자 피고인 B는 그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몸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른 뒤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밀치고, 피해아동이 울음을 터뜨리자 피고인 B는 인형으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아동이 벗어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잡아 거칠게 다시 누히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보육교사)는 역지로 피해아동을 재우려는 과정에서 낮잠을 거부하는 피해아동과의 계속되는 실랑이에 지쳐 어느 시점부터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감정을 표출하며 학대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21. 8. 27. 선고 2021노1373 판결)

2) 과다 업무와 휴식시간 부족

피고인A(장애아동 담당 보육교사)는 피해아동 E이 낮잠을 자지 않아 서류작업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계속 야근하게 되고 낮잠시간에 휴식도 취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며 몸이 힘들어지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다의 1)과 동일사건)

3) 장애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 부재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대부분 낮잠을 자지 않으려 하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재우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 A(장애아동 담당 보육교사)는 피해아동의 모친을 통해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원장이 부모 면담과정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놀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A는 현실적 여건이 어렵고(특별활동 중인 반에는 피해아동을 참여시키기 어렵고 I반은 영아반 옆에 있어 영아들 잠을 방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원장에게 말을 해도 바뀌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피해아동을 재우려고만 하였다. (중략)

피해아동은 낮잠 시간에 잠자는 아동들 사이를 돌아다니거나 베개로 누르는 등 수면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다소 강한 훈육과 통제가 필요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으므로 비장애아동과 달리 그 특성에 맞추어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발달단계와 특징이 다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을 통합하여 보육하는 것이 쉽지는 않고, 이 사건 어린이집도 시흥시와 위탁계약을 하고 시립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통합반을 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의지하는 측면이 있어 전적으로 피고인들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다의 1)과 동일사건)

- 선고: [피고인A]징역1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

라. 학대에 대한 인식정도

1) 사례 1

2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식사준비를 다소 늦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핀잔하듯이 잡아당겼고 그럼으로써 피해아동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3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큰 장난을 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피해아동의 손가락을 빼앗아 빠르게 피해아동의 머리를 톡톡 2번 치는 모습과 피해아동이 머리를 감싸안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중략)

7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피해아동의 뒤에 식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식판으로 위에서 가볍게 내리치는 장면과 피해아동이 잠시 후에 머리를 감싸 쥐면서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8번 범행의 경우, 피해아동이 낮잠 시간에 다리를 들어올리면서 뒤척거리자 피고인이 귀찮은 듯 일어나 피해아동을 힘으로 제압하고 거칠게 뒤집어 엉덩이를 빠르게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아동의 잘못에 비하여 과도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단순한 폭행에 불과하고, 정당한 훈육행위나 돌봄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8. 14. 선고 2020고단550 판결)

- 선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 명령

2) 사례 2

피고인(보육교사)은 2019. 6. 13.경 피해자 D(여, 3세)의 머리카락을 묶던 중 피해자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2회에 걸쳐 정서적 또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8. 12. 선고 2020고단1285 판결)

-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마. 직무스트레스

1) 사례 1

피고인 A(보육교사)는 피해아동 F(1세)의 등을 세계 2회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손을 잡아끌고 세면대 옆으로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왼손을 1회 세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0.부터 2019. 6. 21.까지 총 9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피해아동F의 배변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아동이 많이 징징대거나 똥을 싸고 만지는 일로 힘이 든다’고 호소한 적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고합129 판결)

- 선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바. 원장의 리더십

1) 사례 1

피고인 B(원장)는 피고인 A(보육교사)가 담당 원생을 훈육하면서 머리위로 손을 들게 한다는 사실, 낮잠시간에 다리 사이에 아이를 끼우고 잠을 재우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를 목격한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A의 훈육태도가 부적절해 보인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A와 면담하면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실 내에서 배변훈련용 좌변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것이 부적절하나 이를 용인하였고, 사용실태나 위생관리에 관하여 점검하지도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6239 판결)

- 선고: 벌금 1,000만 원

2) 사례 2

피고인은 자신의 사용인인 B(보육교사)의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평소 원장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교실 내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B는 원장인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 전 피해아동 F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아 힘들다는 이유로 F를 직접 데리고 가 3회에 걸쳐 개별상담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B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라는 등의 지극히 추상적인 구두 지도만을 반복하고 F를 달래기만 한 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사건 학대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21. 선고 2019고정402 판결)

- 선고: 벌금 3,000,000원

사. 보육교사의 인성·성격·정신문제

1) 사례 1

피고인(보육교사)은 불상의 이유로 들고 있던 책을 피해아동 H(4세)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밀며 찌를 듯이 행동하고, 책을 책상에 던지듯이 놓는 행위를 비롯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7. 15.까지 총 1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11. 15. 선고 2021고단298 판결)

-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2) 사례 2

피고인(보육교사)는 교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아동 F(2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깨우고 졸린 피해 아동이 탁자에 엎드리자 탁자를 옆으로 밀어 엎드려 자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아동들은 식사를 하게 하면서 피해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아동들과 같이 양치질을 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칫솔을 빼앗아 같이 양치질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이 울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차별대우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31. 선고 2019노51 판결)

-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

3) 사례 3

피고인(보육교사)은 2018. 11. 26.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교실(5세반)에서 수첩 또는 교재 등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주위 가계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모멸감을 느끼도록 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3753 판결)

- 선고: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 윤리의식

1) 사례 1

피고인은 만3~5세 반 담임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교실 내에서, 낮잠 시간에 눈을 뜨고 누워있는 피해자(여, 6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성인변기 칸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며, 소풍을 갔다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는 등 2019. 9. 말부터 2019. 11. 말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및 유사강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판단·대처능력이 결여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격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 보육교사로서 어린 아동들을 성실히 보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돌보는 아동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수원고등법원 2021. 10. 26. 선고 2021노604 판결)

- 선고: 징역 5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 및 아동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2. 아동요인

가. 아동개인특성

1) 사례 1

피해아동 G(여, 2세)는 또래 아동들보다 대근육 운동의 발달이 빠르고 매우 활발하여 행동반경이 넓고 종종 산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 아동들과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동일 반 보육교사 3인)의 반 지도 및 통솔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들은 업무편의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아기식탁의자(부스터)에 앉혀 놓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이 이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보조 보육교사)는 아기식탁의자를 가지고 오고, 피고인 A(담임교사)는 피해아동을 아기식탁 의자에 앉혔으며, 피고인 B(보육교사)는 아기식탁의자 상판을 가지고 와 상판을 설치한 후 약 36분간 다른 아동과 달리 피해아동만 아기식탁의자에 강제로 앉힌 채 움직일 수 없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5.경부터 2019. 5. 13.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4059 판결)

- 선고: [피고인 A]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 B, C]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명령, 각 1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2) 사례 2

피고인(원장)은 교실에서 피해자(여, 3세)가 계속 울고 보챤다는 이유로 뒷목을 움켜 쥐고, 복도에 나가는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세계 잡아 방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멍이 들게 하였다.

멍을 발견한 피해아동 부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첫 날이라서 기를 죽이려고 강제진압을 했다. 죄송하다.”, “오전에 피해아동이 너무 많이 울고, 발버둥 쳐서 잡고 있었는데 아이를 케어하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말하였다.

입소 전 상담에서 피해아동 부모는 피해아동이 언어발달이 느리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밥을 잘 안 먹어 간식을 따로 집에서 챙겨주는 등 피해아동의 성격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이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다소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이 어린 이집에 등원한 첫날은 더욱 각별한 주의와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9. 선고 2020고단277 판결)
- 선고: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 환경요인

가.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의 불명확성

1) 학대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

피고인(보육교사)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훈육의 목적이었을 뿐이므로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동학대행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 및 정서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피해아동들은 6세에 불과하고, 피해아동들이 큰 잘못을 하거나 통제가 불가능한 문제행동을 하여 신체적·물리적 제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이고 사소한 이유들로 피해아동들을 연필 또는 식판으로 때리고 몸을 치거나 찌르는 등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을 한 점, 강제로 음식을 급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로 하여금 서서 밥을 먹게 하거나, 옆에 서서 다 먹을 때까지 지키고 있거나, 아이의 얼굴이 뒤로 밀려 젖혀질 정도의 힘으로 과격하게 손가락을 입에 넣어 떠먹이

는 등 그 행위 태양 자체가 아동을 상대로 한 일반적인 급식지도의 정도를 벗어났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단2914 판결)

- 선고: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명령

2) 학대에 있어서 고의가 아닌 점은 참작

피고인(보육교사)은 교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피해아동(2세)의 배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1.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인천지방법원 2020. 10. 23. 선고 2020고정
1010 판결)

- 선고: 벌금 400만 원

나. 적정 교사 대비 아동 수 초과

1) 사례 1

피고인 A(보육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불과 2개월 정도의 범행기간에만 장난감을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 앞으로 온 피해아동
F(여, 2세)의 팔을 잡아 특별한 이유 없이 거칠게 앞뒤로 흔들고, 이에 피해 아동이
당황해하는 표정을 짓자 피해 아동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웃는 것을 비롯
하여 총 66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 B(원장)는 피고인 A가 보육하는 어린이를 자신이 보육하는 것처럼 교사
대 학생 비율을 조작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피고인 A의 아동학대 범행이 이루
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든 잘못이 있다. 피고인 A는 실제로는 총 6명의 아동을 보육하
였으나, 피고인 B는 피고인 A 담당반 교사 대 아동비율을 1:5로 조작하였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연령(2세) ‘교사
대 아동비율’ 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노
4576 판결)

- 선고: [피고인 A]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벌금 1,000만 원

2) 사례 2

피고인 A(00반 담임교사)는 피해자 F(남, 2세)가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리고 억지로 간식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2020. 3. 26.경부터 2020. 7. 3.경까지 총 8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반 담임교사)는 피해자 F(남, 2세)의 손등을 수저 보관통으로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3. 27.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B는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학대하였는데, **의사소통이나 통제가 쉽지 않은 연령의 아동들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충분한 인원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이나, 일부 범행은 훈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태양 및 대상을 고려하면 범행의 내용이 나쁘다. (인천지방법원 2021. 10. 8. 선고 2021노2400 판결)

- 선고: [피고인 A]징역 8개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B]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다. 과다 업무

1) 사례 1

피고인 A, B, C, D는 만0~1세반에서 피해아동들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12. 2경 피해아동 H(여, 당시 1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쳐 머리가 좌우로 흔들리게 하는 등 2020. 3. 2.까지 총 71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12. 2.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이불을 정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아동의 복부 부위를 거칠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2020. 1. 31.까지 총 1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2. 2.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화장실 방향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의 팔을 한 손으로 거칠게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울며 일어나려는 아동의 양팔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2020. 2. 27.까지 총 89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 D는 2019. 12. 3.경 피해아동 I(남, 당시 1세)이 다른 아동의 분유를 빼앗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가슴을 머리로 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아동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2020. 2. 25.까지 총 3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동들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로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피해 아동들의 인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2. 13. 선고 2021노943 판결)

- 선고: [피고인 A]징역10월. [피고인 B, D]징역 6월. [피고인 C]징역 1년 2월. [피고인 A, B, C, D]집행유예 2년,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라. 물리적 공간

1) 사례 1

피고인 A(원감, 보육교사)는 교실에서 피해아동(3세)이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어깨 부위를 재차 밀쳐 피해자가 사물함에 부딪히게 하는 등 2017. 6. 2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범행 중 CCTV의 보존기간이 지나거나 **촬영장소가 아니어서**

사건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고단524 판결)

-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

2) 사례 2

피고인(보육교사)은 2020. 7. 17.경 피해아동이 간식을 입안에 모아두고 씹지 않고 늦게 먹거나 고개를 숙이며 선생님의 말에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턱 부위를 올려 치고,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몸이 뒤로 젖혀지자 손으로 잡아당겨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5.경까지 별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피해아동을 아동용 변기가 있는 곳으로 팔을 잡아당겨 용변을 보기 위해 앉히려 했지만 아동용 변기에 앉지 않고 서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거칠게 잡아 앉히려다 피해아동의 좌측 발이 뒤로 젖혀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골 비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신체적 학대행위의 횟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학대행위에는 열악한 물리적 보육환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1노2282 판결)

- 선고: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

마. 평가인증제도 실효성 부재

1) 사례 1

피고인(보육교사)은 2019. 8. 12.경 당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으로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이불에 눕혔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일어나려고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바닥 쪽으로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였으며, 재차 피해자가 일어나려는 모습이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제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노413 판결)

- 선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

바. 장애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

1) 사례 1

피고인 A(5세 장애통합반의 일반아동 담당교사)는 2018. 6. 5.경 보육실에서 영역수업 중 피해아동(남, 4세)을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혼자 교실 뒤편 의자에 앉아있게 하여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8. 7. 6.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5세 장애통합반의 장애아동 담당교사)는 2018. 6. 6.경 보육실에서 다른 원생과 놀다 앉아서 책을 보려는 피해자를 교실 뒤 좌식 테이블로 데려가 혼자 앉아 있게 하여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고, 2018. 7. 12.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다른 원생들과 분리시켜 피해자가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특별히 훈육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아동 외의 다른 원아들에 대한 보육활동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피해아동을 보육활동에서 단순히 배제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고단2758 판결)

- 선고: [피고인 A, B]각 벌금 300만원

제7절 | 소결 및 제언

주요 연구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타 형태의 아동학대와도 유사했다. 다만 살인, 사체유기,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거나 성적 학대를 수반한 비율,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중상해나 상습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종경합에 그치는 경우, 피해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학대 범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낮고 벌금형의 선고 비율은 더욱 높았으며 부수처분의 부과 비율도 낮았다.

다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더욱 많았으며, 공범은 4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의 상호 묵인과 방조 속에서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바, 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조직 차원의 문제, 예컨대 고립된 보육 노동과 상호지지가 결여된 열악한 근무환경(장영인·정민자, 2016; 이명순, 2017)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원장, 시설장 등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부과되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원감도 포함된다. 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관리자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지만(이세라피·임여정, 2021) 이들의 학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1심에서의 무죄 선고 및 변호인 선임, 상소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으며, 이때 다툼의 주요 쟁점은 훈육의 정당성 여부로 그 비율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다. 피해자 이외의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육 과정에서의 특정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훈육인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동일한 학대 사례를 두고 부모와 보육교사 간 인식의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이지혜·김숙령, 2018). 학대 의심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오히려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윤주연 외, 2020; 이상화·김순임, 2022)을 고려할 때, 학대 신고가 만연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게 사례판정의 적정성 제고나 조정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들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의 비율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커 보였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변호인 선임), 심리적 지원, 그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해외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조수정·김춘례

제4장

해외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제1절 | 해외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현황

1. 미국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1980년대 이전에는 미국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부모 등 보호자가 아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리양육자 등 보호자 이외의 주체(Non-caregiver entity)로 여겨 체계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Gelardo & Sanford, 1987). 그러나 1983년 이후로 미국 전역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는 부모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어 왔다. 더욱이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두드러진 사회 현상 중 하나는 취업한 기혼 여성의 수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 맡겨지게 되어 가정 이외에서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돌봄의 사회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보육시설 내의 양육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었다. 2009년까지 영국, 미국 및 호주에서의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과 유병률이 각각 0.27%에서 2%, 그리고 3%에서 19%까지 다양하게 증가했다(Biehal, 2014). 대규모 기관에서의 아동학대율이 다른 대체 양육 형태나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서의 아동 양육에서의 학대가 상당한 규모의 문제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Sherr et al., 2017).

198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맥마틴(McMartin)유치원에서 아동들이 성적 학대(Sexual abuse) 및 의식적 학대(Ritual Abuse)에 대한 주장을 처음으로 제기했고, 이는 1984년에 더 크게 알려졌다(Waterman et al., 1993). 유명한 사회 상류층의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성학대 맥마틴사건은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든 형사 재판으로 알려져 있다(Time, 1990. 01. 29). 이 사건 이후에는 미국 전역에서 다른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규모는 작지만 다수의 피해자 및 가해자 그리고 의식적 학대(Ritual Abuse)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12개 주에서 입증된 아동학대 사례를 기초로 한 Finkelhor, Williams 및 Burns (1988)의 연구에 따르면, 1985년에 267개의 어린이집에서 대략 1,300명의 어린이가 성학대를 당했다고 보고했다. 쓰다듬기, 만지기, 구강성교, 디지털성범죄, 물체 상입 등이 주로 나타난 아동 성학대 형태였지만,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공개하지 않았고, 사례의 발생 장소는 2/3 이상이 화장실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했다. 이는 10,000명의 어린이가 등록된 어린이집당 발생률이 5.5%에 해당된 반면에 6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성학대 발생률은 8.9%이었다. Finkelhor와 동료들(1988)이 발견한 대부분의 어린이집 성학대 사례에서 사례의 17%는 다중 가해자가 관여되었으며, 38%는 성학대가 사건이 발견되기 전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었고, 피해자 중 66%는 12명 이상의 피해자가 관여된 사례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다중 가해자 사례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승배의식적 성격 및 포르노 제작과 관련된 사례가 더 많았다. 가정 내에서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의 학대의 발생 빈도가 더 높을지라도 보육기관 내에서의 대리 양육자에 의한 학대가 성장기 아동에게 더욱 심각한 부정적 영향(예를 들면, 두려움, 행동 문제, 신체적 증상)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는 평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국가 아동학대 및 방임 데이터 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아동학대 연례보고서인 “Child Maltreatment 2021”에 의하면, 2021년에 미국에서 약 583,476명의 어린이가 학대나 방임을 당했다. 이는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피해자 비율이 8.1명에 달하고, 한 명의 어린이가 54초마다 학대나 방임을 당해 하루 총 1,599건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1년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의 대부분(76%)은 방임 사례였으며, 신체적 학대는 16%, 성적 학대는 10%였다. 추산에 따르면 인구 100,000명당 2.46명의 아동들이 학대 또는 방임을 당한 것이다.

2021년 전체 아동학대사건의 절반 이상이 6세 미만 어린이였고, 15%가 1세 미만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쳤다. 1세 미만 아동의 피해율이 가장 높았으며(1,000명당 25.3), 이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전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는 388,963명의 아동이 위탁 보호를 받고 있어 최소 10년 만에(2012년 이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러한 추세는 2020년 대비 4% 감소, 2017년 최고치인 437,000명에 비해 11% 감소한 것이다.

2. 영국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영국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주간 학교, 기숙 학교, 스포츠 클럽 및 교회 등과 같은 주거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비주거 시설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돌봄과 교육을 맡은 성인들에 의한 학대가 발생해 왔다. ‘Lost in Care’ 보고서(House of Commons, 2000)에 의하면, 1974년부터 북웨일스의 주거 시설과 양육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재판이 201일 동안 진행되었고, 264명의 증인이 증언을 했고, 311명의 증인으로부터 서면 진술이 제출되었다. ‘Lost in Care’는 기관적 아동학대에 대한 독특한 세부 내용을 제공하며, 남성들에 의한 성학대의 양상을 드러냈다. 당시 사회 서비스 감사관의 최고 감사관인 Sir William Utting(Utting, 1997)과 ‘Choosing with Care’(Warner, 1997)의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은 어린이 보호·양육 문제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부족한 직원들로 인해 어린이 보호시설의 질이 저하됨으로 인한 시스템 문제였다. 그러나 주거 어린이 보호시설이나 비주거 시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개선이 어린이 보호시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시설 직원들의 전문적 수준·지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영국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공공 어린이 보호 체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다(Wardhaugh & Wilding, 1993).

Article 39 “아동 보육기관에서의 학대: 얼마나 알려져 있나요 (December 2021)?” (Abuse in children’s institutional settings: How much is known? December 2021)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Article 39, 2021), 아래 <표 4-1>이 보여주듯, 64개 지방 자치단체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 보호 시설에 고용된 성인에 대한 6,106건의 혐의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자체당 연간 평균 32건의 혐의에 해당한다. 55개 지방 자치단체는

2020/21년에 아동 보호 시설에 고용된 성인에 대한 1,758건의 혐의를 기록했는데, 이는 특정 연도에 지자체당 평균 32건의 혐의에 해당한다.

▶▶ <표 4-1>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총합

Year	Number of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providing data	Number of allegations against adults work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Average per local authority per year
2020/21	55	1,758	32
2018 to 2021	64	6,106	32

출처: Article 39. (2021, December). Abuse in children’s institutional settings: How much is known? Child Maltreatment 2021 Annual Report. p.10

아래 <표 4-2>가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관 내 혐의의 대부분은 아동 보호소에 서 일하는 성인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3년 동안 총 2,900건에 달했다. 2020/21년에 한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권 내 아동 보호소 직원에 대해 83건의 혐의를 보고했다.

3년 동안 청소년 교도소와 보안 훈련 센터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가 1,305건 발생했다(2020/21년에는 355건). 그러나 이 데이터는 5개 기관에만 해당되며 기관 당 보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한 지방 자치단체는 관할권에 청소년 교도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21년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했다.

2020/21년에 한 지방 자치단체는 90명 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훈련 센터의 직원에 대해 184건의 혐의를 접수했다. 청소년 교도소나 보안 훈련 센터를 감독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이러한 주장이 section 47 조사를 촉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Article 39의 이전 연구와 일치하게, 기관 환경에서 일하는 성인에 대한 기소 건수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2020/21년에 각 지방 자치단체에 대해 보고된 수치는 해당 연도의 특정 유형의 시설에 대해 0에서 184까지 다양했다.

▶▶ <표 4-2>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환경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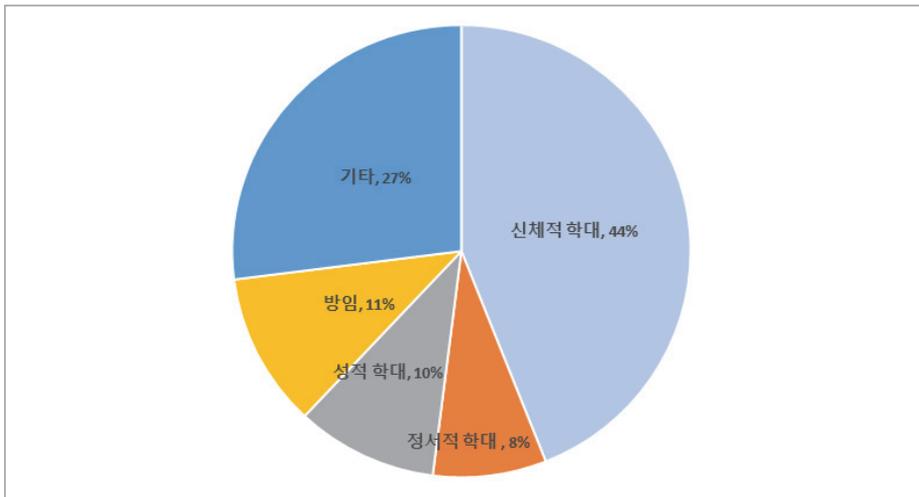
Year	Number of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providing data	Number of allegations against adults work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Average per local authority per year
2020/21	55	1,758	32
2018 to 2021	64	6,106	32

출처: Article 39. (2021, December). Abuse in children’s institutional settings: How much is known? Child Maltreatment 2021 Annual Report. p.10

Institutional setting	Number of allegations against adults work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2018 to 2021 – 3 years (data from 64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2020/21 – 1 year (data from 55 local authorities in England)
Children’s home	2,900	858
Secure training centre	748	211
Young offender institution	557	144
Mental health inpatient unit	435	106
Residential special school	394	113
Hospital not falling into category above	336	77
Semi-independent / independent accommodation	334	98
Independent boarding school	244	68
Secure children’s home	86	51
Policy custody	41	7
State boarding school	29	23
Immigration detention	2	2

아래 [그림 4-1]이 보여주듯, 59개 지방 자치단체 중 제공된 정보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장된 학대의 주된 유형은 신체적 학대(44%)였다. 이 외에 방임 11%, 성적 학대 10%, 정서적 학대 8%였다.

▶▶▶ [그림 4-1]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학대 유형(영국 59개 지방 자치 단체의 데이터)



출처: Article 39. (2021, December). Abuse in children’s institutional settings: How much is known?
Child Maltreatment 2021 Annual Report. p.11

아래 <표 4-3>이 보여주듯, 16개 지방 당국만이 section 47 조사로 이어진 혐의 수에 중에서 3년 동안 이들 당국은 총 1,200건의 혐의를 기록했지만, 그 중 11%만이 법정 아동 보호 조사를 실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28%는 확인되었고, 43%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10%는 진행 중이었고, 19%는 지원 제공 또는 직원 이동/해고와 같은 어떤 형태의 조치로 이어졌다(예: 어린이에게 도움을 제공하거나 직원을 재배치/해고). 비교를 위해 전체 아동에 대해 입증된 우려 사항(아동이 지속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초기 아동 보호 회의로 이어지는 경우)의 비율은 37%였다.

▶▶▶ <표 4-3> 기관 환경에서 근무하는 성인에 대한 학대 혐의
- 공식 아동 보호 조사(영국 16개지방 자치 단체의 데이터)

	2018 to 2021	2020/21
Total number of allegations against adults work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where it was known whether a section 47 enquiry was undertaken	1,200	403
Total number of section 47 enquiries undertaken in respect of allegations against adults working in institutional settings	125	67
Proportion of allegations against adults in institutional settings resulting in section 47 enquiries	11%	17%

출처: Article 39. (2021, December). Abuse in children’s institutional settings: How much is known? Child Maltreatment 2021 Annual Report. p.11.

3. 호주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호주에서는 공공, 커뮤니티 또는 사설 부문의 주거 또는 비주거 환경(예를 들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 보호 센터, 스포츠 클럽, 교회 등)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기관 내 학대”로 일컫는다(Irenyi et al., 2006). 기관 내 학대의 가해자는 교사나 가사 도우미와 같은 보조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관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성인은 물론 또 다른 아동이나 청소년이다. 학대 행위는 주거 또는 비주거 환경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가 기관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지만 학대 행위 자체는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유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이거나 사회적 권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에게 의존하며 어른보다 신체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호주에서의 아동 성학대에 대한 기관 차원 대응을 위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2017), 2013년 7월에서 2017년 12월 동안, 왕립위원회와의 비공개 세션을 통해 종교기관, 정부운영기관, 비정부·비종교기관 내에서 아동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자 및 생존자 7,981명에 대해 보고된 성적 학대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 및 생존자들은 주로 남성(63.6%)
- 4.2%는 학대 당시 장애를 가짐
- 거의 50% 이상이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초기 성적 학대를 경험했으며,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어린 나이로 보고됨
- 거의 모든 피해자 및 생존자는 남성 성인 또는 아동에 의한 성적 학대를 경험했음 (93.3%)
- 85.2%는 아동 성적 학대 당시 성인에게 성폭행을 당했음
- 성인 가해자의 가장 일반적인 역할은 교사와 종교 단체와 관련된 개인이었음

4. 기타 국가의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특성 등 현황 및 사례 분석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사회 문제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체벌은 부모로서 당연한 훈육의 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Huang et al., 2022). 아동학대의 개념이 중국 사회의 큰 이슈로 부상한 것은 유치원 교사들에 의한 학대의 심각한 사례들 때문이었다. Chen & Xiong (2019)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의 중요 매체에서 보도된 768건의 유치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했다. 총 768건의 사례 중에서, 바늘 찌르기(21%)와 심한 폭행(17%)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위협(18%), 약물 투여(12%), 언어적 학대(7%)도 흔한 학대유형으로 나타났다(Chen & Xiong, 2019; Huang et al., 2022에서 재인용). 특히, 2017년 베이징 사례에서는 유치원 교사가 점심 시간에 시끄럽게 떠드는 몇몇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바늘로 아이들의 몸을 찌러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2017년 상해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례는 샤이청이라는 유명한 회사의 보육시설에서 발생했다. 몇몇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교육 방법을 따르지 않을 때, 어린이들의 몸에 겨자를 바르는 방식으로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사건이 발견되기 전까지, 피해

어린이들은 수백 번의 학대로 큰 정신적 외상을 입었던 걸로 밝혀졌다. 서양의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와 비교할 때, 중국에서의 아동학대 원인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도덕체계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볼 수 있다(Luo, 2012; Huang et al., 2022에서 재인용). 이러한 집단주의 인식으로 인해, 교사들은 교육이나 일상적인 돌봄 활동 중에 개별 어린이의 성격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통일된 질서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 어린이가 교육 중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사의 지침에 협조하지 않을 때, 교사의 권위적 지위나 권력 및 신체적 힘을 이용해 문제적 행동을 보이는 어린이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하기에, 보육에서 아동학대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Huang et al., 2022; Margolin, 1990).

또한 탄자니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인도 및 케냐에서의 신체 및 성적 학대율이 13%에서 93%까지 증가했다(Sherr et al., 2017).

제2절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유형

1.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는 보육교사 등 대리 양육자가 아동을 때리거나, 물체로 때리는 것과 같은 명시적인 행동으로 정의된다(Margolin, 1990). 멍이 남거나 물린 경우와 아동을 흔들거나 차는 경우, 화상을 입히는 경우, 옷장과 같은 갇힌 장소에 가두거나, 약을 먹이는 경우 등 보육기관 내 신체적 학대 행위 또한 다양하다. 특히 아동에게 약을 먹인 경우에는 대리 양육자가 피해 아동에게 강제로 어떠한 물질을 섭취하게 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경우에는 아동들이 자세한 학대 행위를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약을 먹인 경우도 있었다(Kelley, 1994). 보육교사 등 대리 양육자의 75%가 학대 전에 학대 피해 아동의 다른 아동과 다툼, 화장실 사고, 지속적인 울음, 불복종, 무례함, 잠자리 문제, 식사 문제, 과다 활동 등 보육교사와 아동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이 드러났다(Margolin, 1990). 신체적 학대 사례의 23%에서 부모는 보육교사 등 대리 양육자에게 아동의 갈등 행동에 신체적인 처벌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고한다(Margolin, 1990). 결국 그러한 부모의 신체적 처벌에 대한 묵시적 허락은 후속 신체적 학대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성적 학대(Sexual Abuse)

성적 학대에 해당되는 성적 행위는 쓰다듬는 행동에서, 항문 또는 질에 연필, 바늘, 칼, 가위, 그리고 막대와 같은 외부 물체로의 삽입을 포함하여 성교까지 다양하다. 또한 아동과의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찍는 것 또한 포함된다(Faller, 1988; Finkelhor et al., 1988). 연구자들은 보육기관에서의 성적 학대는 다른 상황에서의 성적 학대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고해 왔다. Faller(1988)는 가해자의 엄한 위협 사용과 다수의 학대 가해자와 피해자의 증가를 강조했다. Kelly, Brant, 및 Waterman(1993)은 여성 가해자의 참여, 사탄주의와 결합된 성적 학대 행위, 그리고 피해 아동의 침묵을 강요하기 위한 위협은 심리적 공포심 유발을 위해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아동의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Ehrensaft(1992)은 Finkelhor와 Browne(1985)의 “성학대의 외상적 역할”을 활용하여 성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를 강조했다. 성적 학대 피해를 폭로한 후, 사회에서 성 피해자로서의 사회적 낙인과 커뮤니티 및 미디어의 개입으로 인한 영향이 더해져서, 가해자가 가족 이외에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접촉자가 될 경우,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아동이 다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도록 강요받으면, 그들은 종종 자신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여기게 되어 강한 죄책감을 느낄 수 있음이 드러났다. Waterman과 동료들의 연구(1993) 결과에 따르면, 보육 시설에서 발생한 성 학대 사례에서 조사 대상 아동들의 37%가 다른 아동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었으며, 피해 아동은 음란한 성적 사진이나 동영상이 찍혔다고 보고했다. 가끔은 성적 학대의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음란물을 상업 목적이나 사적 용도로 만들지 않고, 대신 아동에게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 스타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여 성적인 행위에 참여하게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일부 보육 시설 사례에서 피해 아동은 ‘벗은 영화 스타 게임’을 하는 동안 성적 학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Kelley, 1994). Faller(1988)는 성적 학대 피해자의 30%는 성매매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표 4-4>는 Faller(1990), Finkelhor et al.(1988),

Kelley(1986; 1989), Waterman(1993)의 보육 연구에서 보고된 성적 학대 유형과 각 유형의 상대적 발생률을 보여준다.

▶▶ <표 4-4> 성적 학대 유형

(단위: %)

구분	Faller	Finkelhor	Kelley	Waterman
성적 학대 전체	100	100	100	100
성기 애무	67	71	92	89
손가락, 발가락 등의 성기 삽입	-	29	80	-
구강 성교	71	30	74	65
질 성교	54	12	51	40
항문 성교	54	14	49	33
물체 삽입	-	15	64	51
음란물	-	14	74	37
아동 간 성행위	74	15	70	-
신체학대	-	31	85	64
협박 / 공포 조성 행위	13	13	52	80
의식적 학대	13	13	52	80

출처 : Kelley, 1994. p.16.

위에 언급된 연구들은 연구자들이 성적 학대를 동일한 방식으로 범주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들간의 비교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피해 아동들이 매우 침범적인 형태의 성 학대와 무기로 공격하거나 약을 강요하여 복용시키는 등 신체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했다(Kelley, 1989; Waterman et al., 1993). 성적 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들은 학대와 관련된 특정 사물, 시간, 장소 또는 개인과 관련된 두려움, 수면 장애, 초기 발달단계로의 퇴행, 성적 행동의 변화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Cozolino, 1989; Edwards, 1990; Finkelhor & Browne, 1985; Gould, 1988).

Faller(1990)의 성적 학대 유형화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 보육교사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성적 학대는 두 가지 유형, 즉 계획되지 않은 아동과의 성관계와 계획된 아동과의 성관계로 나눌 수 있다.

가. 계획되지 않은 아동과의 성관계

계획되지 않은 성적 학대는 세 가지 범주(상황적 성적 학대, 소아애 학대, 유발된 성적 학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상황적 성적 학대(situational sexual abuse)”는 아동과 성적 행동 경험이 없는 가해자가 신체적 또는 일상생활의 상황 때문에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유형이다. 신체적 상황으로는 아동과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아동의 성기를 보고 성적 흥분을 느끼는 경우를 일컫는다. 또 다른 일상생활 상황은 가해자의 성적 충동이 만족되지 않아서 야기되는 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두 번째 범주인 “소아애 학대(innocent pedophilic abuse)”는 가해자가 초기에는 자신의 소아애 경향을 인지하지 못하며, 아동에게서 성적 끌림이나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세 번째 범주인 “유발적 성적 학대(provoked sexual abuse)”의 경우 보육기관에서 가해자는 성적 학대를 할 의도가 없지만 다른 가해자에 의해 성적 학대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일컫는다(Faller, 1990).

나. 계획된 아동과의 성관계

계획된 성적 학대에는 네 가지 범주 1) 계산된 소아애 학대, 2) 상업적인 성적 학대, 3) 아동 혐오자에 의한 성적 학대, 4) 의식적 학대로 나누어진다. 첫째, “계산된 소아애 학대”는 가해자가 여러 피해 아동들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 자리를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 시설 등을 선택한다. 두 번째 유형인 “상업적 학대”는 이윤을 목적으로 음란물 제작 및 어린이 성매매를 포함한다. 세 번째 “아동 혐오자에 의한 성적 학대” 유형은 아동을 싫어하는 가해자에 의한 성적 학대로서, 피해 아동에게 큰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입히겠다는 의도로 행위 자체가 가학적인 경향이 있다. 마지막 유형은 “의식적 학대”로서, 종교(religion), 사탄주의(Satanism), 마녀술(witchcraft) 또는 다른 종교적 실천(other religious practice)과 관련된 의식의 일부인 상황에서만 성적 학대가 이루어진다(Faller, 1990).

3. 의식적 학대(Ritual Abuse)

의식적 학대(Ritual Abuse)는 악마숭배(satanic) 또는 준 악마숭배 활동의 맥락에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를 포함한다(Finkelhor et al., 1988; Young, Sachs, Brown & Watkins, 1991). 의식적 학대를 겪은 아동은 동물과 인간의 절단 의식, 산 채로 매장되는 일, 희생 행위에 참여하거나 목격하는 일, 인간의 배설물, 혈액, 소변, 정액을 강제로 섭취하도록 강요받는 일, 학대 사실을 폭로할 경우 살해 위협을 받는 일 등의 경험을 묘사했다(Kelly, 1989; Young et al., 1991). 맥마틴(McMartin)유치원 사건(Waterman et al., 1993)과 플로리다 주(Florida)의 컨츄리 워크(Country Walk) 사건(Hollingsworth, 1986)과 같은 의식적 학대는 미국 전역의 보육기관에서 보고되었고, 형사 재판으로 이어졌다. 보고된 의식적 학대의 발생률은 성적 학대의 발생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Finkelhor et al., 1988), 의식적 학대로 인한 피해 아동의 심리적 악영향은 다른 유형의 학대에 비해 크다 할 수 있다(Kelly, 1989; Finkelhor et al., 1988; Waterman et al., 1993). Kelly(1989)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성적으로 학대당한 아동 중에서 다른 또래 아이에게 학대를 강요받은 경우(이는 의식적 학대에서 흔한 일이다),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다른 아이에게 해를 끼쳤다는 죄책감을 강하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러 가해자로부터 의식적 학대를 겪은 피해자는 단일 가해자에게 노출된 피해자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었다(Finkelhor et al., 1988; Kelly, 1989; Waterman et al., 1993). Kelly(1989)의 연구에서, 의식적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부모 중 88%는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자녀가 겪은 의식적 학대와 관련된 지속적인 두려움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다. Waterman과 동료들의 연구(1993)에 따르면, 맥마틴유치원 의식적 학대 피해 아동들의 17%가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임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피해아동들이 유년기든 성인기든 결국 치료를 받을 때, 약물 의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공포증, 우울증, 자해, 정신분열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ons, 1994; Keane & Wolfe, 1990; McLeer et al., 1992; Young et al.,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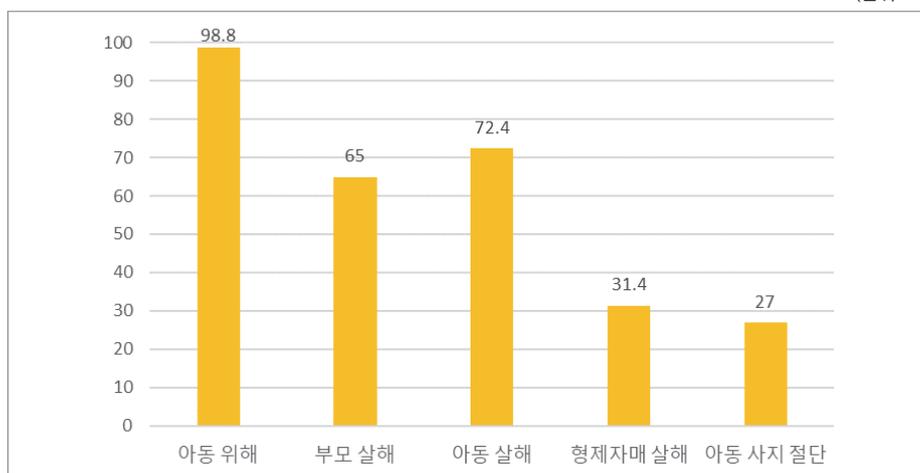
4. 협박 / 공포 조성 행위(Threats / Terrorizing Acts)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아동을 침묵시키기 위해 가족 구성원 간의 분리나 사랑 상실이라는 명분으로 가해자는 피해아동에게 위협을 가하지만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의 경우는, 대리 양육자가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위협한다.

[그림 4-2]는 Kelley의(1989) 보육 연구에서, 가해자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위협은 피해 아동에게 학대를 고발하면 피해아동과 그들의 가족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할 것이라고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데 사용된 위협 유형을 포함한다. 주의할 점은 위협이 단순히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 아동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아동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괴롭히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이다(Kelley, 1994).

▶▶ [그림 4-2] 학대 공개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사용하는 위협

(단위: %)



출처: Kelley, 1989; Kelley, 1994에서 재인용. p.18.

제3절 | 아동학대의 취약성과 관련된 위험요인

1. 가해자 특성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가해자의 프로파일은 다양하지만 일관적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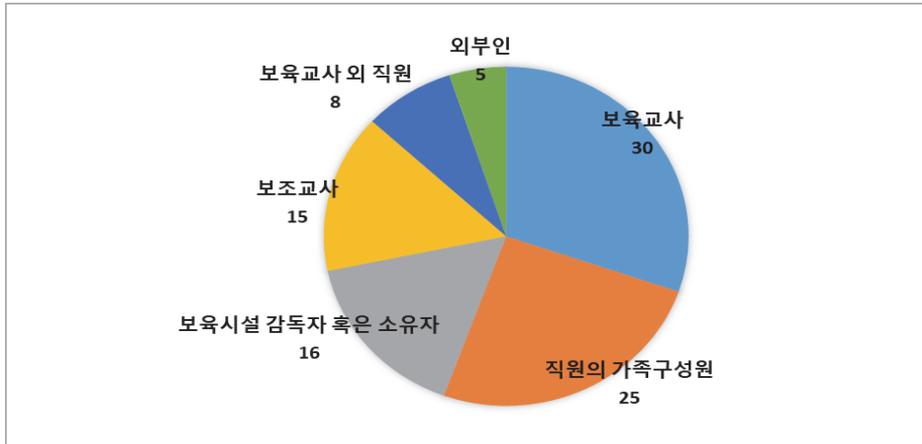
가. 가해자의 보육기관 내의 역할

[그림 4-3]은 Finkelhor와 동료들(1988)의 보육시설 내 아동학대 연구에서 가해자의 보육기관에서의 역할을 보여준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환경에서는 주요 보호자 외에

보조 직원 또는 직원 가족이 가해자로 나타났다(Finkelhor et al., 1988). 가해자들의 30%가 보육교사, 25%가 직원의 가족 구성원, 16%가 보육시설의 감독자 또는 소유자이며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에서의 가해자의 여성 비율은 가정 내 학대 사례보다 훨씬 높았다.

▶▶ [그림 4-3] 가해자의 보육기관 내의 역할(Perpetrators' roles in day care centers)

(단위: %)



출처: Finkelhor et al., 1988; Kelley, 1994에서 재인용. p.21.

나. 가해자 수

다수의 가해자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례는 한 명의 가해자가 관련된 사례보다는 덜 일반적이지만, Finkelhor와 동료들(1988)의 연구에서는 성적 학대 사례의 17%가 다수의 가해자와 관련된 사례인 반면, Faller(1990)의 연구에서는 다수 가해자에 의한 성적 학대 사례가 50%에 달했다. 다수의 가해자가 관련된 사례에서는 더 심각한 행위, 예를 들어 가해자 성행위의 다양성(Faller, 1990), 피해자의 외설적인 방식으로 사진이 찍힐 가능성(Finkelhor et al., 1988) 및 가해자의 승배의식적인 학대의 위험성(Finkelhor et al., 1988; Kelley, 1989)이 강조되었다.

다. 가해자의 연령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보육기관 내에서의 대리 양육자가 성인보다 청소년일 때

어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Margolin, 1991)와 신체적 학대(Margolin & Craft, 1990)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가해자의 사회 적응 문제

10건 중 1건에서 참석자들은 가해자가 알코올이나 마약 문제(7.10%), 정신건강 문제(2.20%), 과거 범죄 이력(1.30%) 등 사회 적응 문제를 가졌다고 응답했다(Carr et al., 2019).

마. 가해자의 돌봄 능력과 감정적 통제

중국 문헌에서 Margolin(1991)은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메커니즘은 교사의 돌봄 능력(아동이 돌봄 활동에 협조하는 능력)과 감정적 통제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즉, 그들은 어린이들로부터의 교사로서의 인정과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감정적으로 의존하기에 어린이들이 협조하지 않을 때 폭력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아동학대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드러냈다. 55% 이상의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 사례가 다른 아이들과 싸우기, 화장실 훈련, 끊임없이 우는 것, 복종하지 않고 무례한 것 등 충돌 상호작용 범주에서 발생했다(Margolin, 1990). Liu와 Li(2019)는 유치원 교사에 의한 신체적 학대의 네 가지 동기를 밝혀냈다. 첫째 동기는 부적절한 교육 방법이나 신체적 처벌이었고, 두 번째 동기는 유치원 교사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동기는 2012년 가해 교사가 피해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는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업로드하며 즐거움을 느꼈음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가해 교사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위가 낮고 힘이 없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함이 드러났다.

바. 가해자의 보육기관 내의 업무 만족도

가해자의 업무 만족도는 학대 가능성과 부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Atten & Milner, 1987), 또한 어린이에 대한 보살핌 행동(격려 및 아동 연령에 맞는 지도)과 관련이 있음이 보고됐다(Berk, 1985).

사. 보육시설 환경 내·외의 특징

보육기관의 그룹 규모, 어린이/교직원 비율 및 보육교사 교육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위험 요인에 관련해서는 일관적인 결론을 찾아내지 못했다. 직원 교육과 경험, 프로그램 평판 및 기관 감시의 강도나 교육 요건이 더 낮은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더 높음을 보였으나(Russell & Clifford, 1987),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 요건은 아동학대와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Finkelhor et al., 1988). <표 4-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Carr와 동료들(2019)은 위험 요인들을 6개의 넓은 범주(아동 보호시설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불리한 공개 관련 과정, 출생 가족에서의 어려움, 출생 가족 내에서의 학대, 어린이 보호시설 외부나 성년기에 발생한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 그리고 신경 발달 장애 및 개인적 취약성)로 분류하였다. 아동학대 사례의 10건 중에서 9건에서는 여러 위험 요인 중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전체 사례의 80%는 아동 보호 시설 환경에서의 부정적인 영향, 불리한 공개 관련 과정, 출생 가족에서의 어려움의 위험 요인들이 존재했다. 이러한 넓은 범주에서 구체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보호시설 환경에서 아동이 노출되는 것, 심각한 사회 적응 문제를 가진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경험하는 것,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도 보호자, 전문가 또는 시설 경영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것, 그리고 한부모 가정에서 출생한 것들이 있었다.

»» <표 4-5> 아동학대 위험 요인

구분	빈도	비율
보육환경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노출		
보육환경 내 부정적 요인 전체	215	95.60
아동학대가 발생하였거나, 의심되거나,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돌봄 환경에 대한 노출	201	89.30
적응 문제를 보이는 젊은 성인 돌봄자에 대한 노출	96	42.70
그루밍	51	22.70
장기돌봄 시 성인 돌봄자 간 심각한 갈등에 대한 노출	17	7.60
불리한 학대 공개 관련 과정		
불리한 학대 공개 관련 과정 전체	199	88.40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알았을 때 보호자, 전문가 또는 보호기관 관리에 의해 보호되지 않음	171	76.00

구분	빈도	비율
도망침	103	45.80
결과가 두려워 학대 사실을 밝히지 않음	97	43.10
가해자가 공개를 막음	81	36.00
불만족스러운 소송	53	23.60
학대가 공개되었으나 믿지 않음	51	22.70
학대 공개 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당함	22	9.80
학대 공개 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를 당함	19	8.40
출생 가족의 역경		
출생 가족의 역경 전체	193	85.80
부모, 미혼, 별거, 이혼	107	47.60
아버지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문제	57	25.30
어머니의 음주 또는 약물복용 문제	37	16.40
어머니 사망	31	13.80
어머니의 정신건강 문제	29	12.90
아버지 사망	23	10.20
어머니의 신체건강 문제	22	9.80
아버지의 정신건강 문제	11	4.90
출생 가족 내 학대		
학대 유형 전체	117	52.00
정서적 방치	60	26.70
신체적 학대	56	24.90
신체적 방치	49	21.80
정서적 학대	31	13.80
성적 학대	13	5.80
추가적 외상		
추가적 외상 전체	99	44.00
아동기에 보육기관 혹은 친가족이 아닌 외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함	44	19.60
아동기에 보육기관 혹은 친가족이 아닌 외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함	35	15.60
도래 괴롭힘	29	12.90
배우자나 연인으로부터의 폭력 피해	26	11.60
교사로부터의 학대	16	7.10
강간	6	2.70
강도	2	0.90
신경 발달 장애 및 독특한 개인적 취약성		
신경 발달 장애 전체	92	40.90
유뇨증(Enuresis)	81	36.00
아동을 학대에 취약하게 만드는 독특한 특성	21	9.30

구분	빈도	비율
난독증(Dyslexia)	11	4.9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4	1.80
자폐 스펙트럼장애(ASD)	1	0.40
총 위험 요인 수		
1개 또는 그 이상	225	100.00
2개 또는 그 이상	223	99.11
3개 또는 그 이상	203	90.22
4개 또는 그 이상	155	68.88
5개 또는 그 이상	84	37.33
6개 또는 그 이상	25	11.11

출처: Alan Carr et al.(2019). p.48.

2. 피해자 특성

Carr과 그의 동료들(2019)은 2015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스코틀랜드 아동학대 연구소(Scottish Child Abuse Inquiry; SACI)에서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에서 1931년부터 2013년까지 스코틀랜드의 주거 양육 시설에서 신체적이거나 성적 학대를 당했던 생존자들의 경험을 프로파일링하고, 아동학대 위험 및 보호 요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가.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총 225명의 신체적이거나 성적 학대를 경험한 생존자들은 주로 남성이며(66.2%), 평균 연령은 50대 후반이었고, 다양한 사회경제 계층 출신이며 교육 수준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절반은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었으며(첫 번째 장기 관계에서의 결혼 혹은 동거 30.20%, 두 번째 이상의 장기 관계에서의 결혼 혹은 동거 17.8%), 대략 절반은 싱글이었고(48.4%), 거의 2/3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Carr et al., 2019).

»» **〈표 4-6〉 피해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빈도 또는 평균	비율 또는 표준편차
성별 (여성)		76	33.80
연령		58.46	10.81
사회 경제적 지위	실업자	45	20.00
	고정직	8	3.60
	반(semi)고정직	8	3.60
	기술직	17	7.60
	중견직	7	3.10
	하위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22	9.80
	고위 관리직, 행정직, 전문직	13	5.80
	은퇴	26	11.60
	알 수 없음	79	35.10
교육 수준	없음	38	16.90
	초등학교 마지막 시험	18	8.00
	O 레벨 혹은 중고등학교 시험	23	10.20
	A 레벨 혹은 고등학교 마지막 시험	8	3.60
	자격증, 졸업, 견습 시험	33	14.70
	기본 학위 (예: 학사)	24	10.70
	고등 학위(예: 석사 이상)	8	3.60
	알 수 없음	73	32.40
결혼 상태	싱글 (미혼 혹은 동거경험 없음)	23	10.20
	싱글 (별거 혹은 이혼)	74	32.90
	싱글(사별)	12	5.30
	결혼 혹은 동거 (초혼)	68	30.20
	결혼 혹은 동거 (재혼)	40	17.80
	알 수 없음	8	3.60
부모 상태	부모가 아님	41	18.20
	부모 (자녀를 입양함)	2	0.90
	부모 (자녀가 대부분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6	2.70
	부모 (별거나 이혼 후 자녀가 대부분 다른 부모와 지내는 경우)	20	8.90
	부모 (자녀가 대부분 다른 가족 구성원과 지내는 경우)	8	3.60
	부모 (자녀를 대부분 직접 양육하는 경우)	146	64.90
	알 수 없음	2	0.90

출처: Alan Carr et al.(2019). p.42 번역

나.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어린이 성학대의 원인으로는 유치원 아이들이 독립적이지 않으며,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함을 강조했다(Briggs, 2014).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은 적절한 목격자가 없고, 피해 어린이들의 표현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에 유치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적합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Briggs, 2014; Moulden et al., 2007). 이는 가해교사와 피해 어린이 및 그 가족과의 신뢰 관계 및 위협, 유인 등에 의해 피해 아동들이 아동학대 경험을 공개하려는 의사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Paine & Hansen, 2002).

다. 피해자의 보호시설 기록(Childcare history)

아래 <표 4-7>에서 알 수 있듯이, 참가자의 약 절반(51.10%)이 부모의 방임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겨지는 가장 흔한 이유였으며,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은 약 6세 10개월 정도 되던 시기에 양육에 들어가서(6.76세), 8년 동안 3~4번의 이동을 겪었다. 거의 절반 이상이 주로 가톨릭 종교 수도원에서 양육을 받았고(44.90%), 약 1/3은 비종교적 수도원(40.50%)에서 양육을 받았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동 보호시설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거나(33.80%), 친부모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로(27.60%), 보호 양육시설을 떠났다(Carr et al., 2019).

» **<표 4-7> 피해자의 보호시설 기록**

구분		빈도 또는 평균	비율 또는 표준편차
보호 시작 연령	나이(년)	6.76	4.01
보호 기간	시간(년)	8.02	4.83
주요 보호 유형	가톨릭 거주돌봄	101	44.90
	비종교 거주돌봄	71	31.60
	비종교 위탁양육	20	8.90
	기숙학교	15	6.70
	거주지 혼합	12	5.30
	개신교 거주돌봄	6	2.70
보호 장소 수		3.59	2.82
입양 실패		3	1.30
형제자매와의 분리		137	60.90
보호시설 입소	부모의 방임	115	51.10

구분		빈도 또는 평균	비율 또는 표준편차
이유	학교 미출석	16	7.10
	경범죄	14	6.20
	기숙학교 재학	14	6.20
	불법행위	4	1.80
	부모로부터 신체적 학대	4	1.80
	부모의 사망	3	1.30
	부모로부터 버려짐	2	0.90
	부모로부터 성적 학대	1	0.40
	알 수 없음	52	23.10
보호시설 퇴소 이유	나이가 많아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음	76	33.80
	본래 집으로 돌아가야 함	62	27.60
	형의 집행 종료	27	12.00
	도망침	14	6.20
	쫓겨남	7	3.10
	기타	7	3.10
	시설 폐쇄	1	0.40
	알 수 없음	31	13.80

출처: Alan Carr et al.(2019). p.43 번역

제4절 | 국가별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예방 정책

1. 미국

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제도(Mandatory reporting)

미국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 CAPTA)은 각 주정부가 아동학대 및 방임이 발생했거나 의심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특정인들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 조항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약 47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령 사모아(American Samoa), 괌(Guam), 북마리아나 제도(the Northern Mariana Islands),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및 버진 아일랜드(the Virgin Islands)에서는 어린이들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지정해 아동학대를 신고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직업은 사회복지사, 교사(혹은 학교 관계자), 의사 및 의료 관계자, 상담가, 보육기관 담당자, 경찰관 등이다. 이 직업군에 속하는 개인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일하는 기관에서도 기관 신고(institutional reporting)를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아동 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 혹은 적절한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CPS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뿐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담당하면서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14세 이상의 보육기관, 학교, 학교 프로그램, 활동 그리고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 조사할 의무가 있다(Rizvi et al., 2023). 어떤 주의 경우 CPS 안에 기관 내 학대 조사팀(The Institutional Abuse Investigation Unit)을 따로 설치하여 위탁가정(foster home), 학교, 구치소와 같은 가정 이외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학대 조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State of New Jersey, n.d).

나. 보육기관 인허가(Child Care Licensing)

미국 연방법은 모든 주와 미국령의 보육기관 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보육 인허가(Child Care Licensing) 요건을 지정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허가된 보육기관을 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ChildCare.gov, n.d.).

- 보육기관 직원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등 아동에게 감독 없이 접근이 가능한 모든 성인의 범죄경력 조사(교사, 버스 운전자, 주방 담당자 등)
 - 보육기관 직원들의 꾸준한 훈련(아동학대에 관련된 훈련 포함)
 - 위생
 - 비상시 계획 수립
 - 어린이와 보호자의 건강
 - 보육프로그램이 모든 건강과 안전 요건을 갖추는지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 범죄경력 조사의 경우, 보육기관은 직원이 고용되기 전 조사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특별한 조사가 요구된다.

- 지문을 이용한 미국연방수사국(FBI) 범죄경력 조사
- 국립범죄정보센터(National Crime Information Center)의 전국적 성범죄 등록소(National Sex Offender Registry) 조사
- 현재 직원의 주거지역 및 지난 5년 동안 주거하였던 각 주의 범죄등록소(State Criminal Registry) 혹은 저장소(Rrepository), 성범죄 등록소 혹은 저장소, 아동학대 및 방임 등록 데이터베이스(State Bbased Child Abuse and Neglect Registry and Database) 조사

다. 아동 보호 및 발전 정액 보조금법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Act, CCDGD)

아동 보호 및 발전 정액 보조금법(CCDGD)은 저임금 노동 가족의 보육을 돕기 위해 연방정부가 주 정부를 통해 보조금을 제공하는 법이다. 보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폭력적인 두뇌 외상(Abusive head trauma)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 연방정부는 CCDGD를 받기 위한 보육기관의 요건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에 의하면 CCDGD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보육기관의 직원들은 매해 모든 건강 및 안전 관련 훈련 요건에 맞춘 꾸준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전문적인 개발에 참여하여야 한다. 훈련 주제로 아동학대,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 폭력적인 두뇌 외상(Abusive head trauma)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보육기관 직원은 아동을 감독 없이 보호를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이 훈련은 새롭게 직원이 고용될 경우 고용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직원은 연간 최소 12시간 이상의 건강 및 안전 훈련에 관한 보육 훈련을 거쳐야 한다(The Pennsylvania Key, 2022).

라. 에린법(Erin's law)

에린법은 아동 성적 학대 생존자이자 활동가인 에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으로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뉴욕(New York), 오하이오(Ohio), 일리노이(Illinois) 주 등을 포함한 미국의 38개의 주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아리조나(Arizona), 위스콘신

(Wisconsin), 그리고 하와이(Hawaii)를 포함한 12개의 주에서 계류 중이다.

에린법은 모든 공립학교(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에서 학생, 학교 관계자, 그리고 부모 혹은 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아동 성적 학대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Erin's Law).

에린법의 핵심 구성은 다음과 같다(erinslawillinois.org, n.d.).

- 프로그램은 아동들에게 성학대를 깨달을 수 있고, 취약점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를 장려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해야 한다.
- 프로그램은 하나의 세션 이상이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최소 4번의 세션을 포함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최소한 지난해에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발달과정에 맞춰 교육 내용이 진행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아동을 능동적 참여자로 포함시켜야 하며, 최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토론, 모델링 그리고 롤플레잉과 같은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다양한 영역의 담당자가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측정할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 평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문화적으로 민감하고 다양한 학교 맥락(나이, 인종, 특수 요구 등)에 맞춰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은 행정직원, 교사 및 이들 이외의 학교 직원 등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포함시켜야 한다.
-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

에린법과 비슷하게 2009년 버몬트(Vermont)주를 시작으로 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21년 기준 34개의 주에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학생, 그들의 부모, 학교 직원 그리고 허가된 보육기관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아동 성적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Bright et al., 2022).

마. 품질 등급 및 개선 시스템

(Quality Rating & Improvement System, QRIS)

초기 및 학령 전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오클라호마에서 1998년에 처음 시작된 이후로 현재 미국의 절반 이상의 주와 콜롬비아 지구에서 실행되고 있다. QRIS는 5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National Center on Early Childhood Quality Assurance, n.d.).

1) 프로그램 기준(Program Standards)

QRIS 기준은 QRIS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등급을 부여하는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주는 대부분 인허가 기준(licensing standards)을 시작점 혹은 기준점으로 두고 사용한다. 모든 QRIS는 주에서 정한 질적으로 높은 수준까지의 점진적인 진전을 위해 인허가 기준으로부터 둘 혹은 그 이상의 높은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질적 기준을 평가하는 범주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아래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y, 2011).

- 인허가 준수(Licensing compliance)
- 환경(Environment)
- 직원 자격(Staff qualifications)
- 가족 파트너십(Family partnership)
- 행정 및 관리(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 인증(Accreditation)
- 커리큘럼(Curriculum)
- 비율 및 그룹 사이즈(Ratio and group size)
- 아동 평가(Child assessment)
- 건강 및 안전(Health and safety)
- 문화적/언어적 다양성(Cultural and linguistic diversity)
- 특수 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조항(Provisions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 지역 사회참여(Community involvement)

2) 프로그램 및 실무자들을 위한 지원(Supports for Programs and Practitioners)

QRIS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원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훈련, 멘토링, 기술적 도움 등의 지원을 포함한다. 모든 주에서 대부분 현재 실무자를 위한 전문적인 개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시스템은 훈련 기회를 구성하고 실무자들의 성취를 인정하며 이용가능한 훈련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일부 주의 경우 영유아 돌봄 또는 특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해 특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비정부기관에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 교실 평가, 기술 지원, 훈련 및 기타 지원 등을 제공한다.

3) 금전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s)

QRIS는 교육 환경을 향상하고 높은 등급을 유지하며 장기간의 높은 질을 유지시키기 위해 영유아 돌봄 및 교육 제공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든 주에서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아동돌봄 발전 기금(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의 보조금 환급을 증가, 보너스, 품질 보조금 혹은 실무자 임금 개선 등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품질 보증 및 모니터링(Quality Assurance and Monitoring)

QRIS 기준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 등급을 정하고 꾸준히 준수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과정을 제공한다. 대부분 주에서 인허가 기관 혹은 보조금 기관과 협력하여 QRIS의 기준을 모니터링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QRIS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지방문, 프로그램 자기평가, 문서 검토 및 확인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5) 소비자 교육(Consumer Education)

QRIS는 아동 보호 및 교육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모 교육을 위한 기준을 제공한다. 대부분 QRIS 수상(award)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별과 같은 표식으로 되어 있어 부모들은 아동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바. 아동 및 성인 돌봄 급식 프로그램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CACFP)

CACFP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으로서 아동보육센터와 같은 곳에 등록된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와 간식 값을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CACFP 또한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 및 긴급 대피소에 거주하는 아동 등의 식사와 간식에 대해서도 보상해준다.

아동보육 서비스로 등록된 공립 혹은 비영리 어린이 보육 센터, 학교 밖 돌봄 센터(outside school hours care centers),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 start programs) 및 기타 기관은 CACFP에 참여가능하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23).

CACFP는 또한 아동 프로그램 참여자 혹은 일반인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프로그램 담당자는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나 행동을 발견할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CACFP는 정기 방문 시 건강 및 안전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 규칙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지만 항상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급박한 위험 상황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 아동 실종
- 아동학대 의심
- 아동 보육 기관 내에서의 직원, 자원 봉사자 혹은 가족구성원의 의심스러운 성적, 신체적, 정신적 학대
- 의료 혹은 치과 치료를 요하는 아동의 부상
- 입원 혹은 응급실 치료를 요하는 질병 혹은 부상
- 정신건강 비상상태
- 아동보육 시설을 방문하는 부모 및 보호자의 건강 및 안전 비상 상태
- 아동 혹은 직원의 죽음
- 위험한 인물의 아동보육 시설 침입 시도 및 침입

만약 아동 보육기관이 CACFP프로그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된다면 프로그램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프로그램 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육기관과의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3).

2. 캐나다

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제도(Mandatory reporting)

모든 캐나다 주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관련된 법이 있다. 온타리오(Ontario)주의 경우 모든 어린이들과 근접하게 일하는 일반 사람이나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이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법이 있다(아동 및 가족 서비스 법,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Act). 만약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혹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느낄 경우 아동 보호기관(children's aid society)에 연락해야 한다. 만약 아동의 상황이 긴급할 경우 경찰에 연락해야 한다. 직업 특성상 개인의 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전문가의 경우도 아동학대는 개인정보 비밀 유지에 앞서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단, 변호사와 변호사의 의뢰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Ontario, 2023).

2018년 1월 1일 온타리오는 보호대상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하고 16세 혹은 17세의 청소년이 보호가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법에 의하면 아래의 전문가 혹은 아동 관련 공식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심리학자와 같은 의료 종사자
- 교사 및 학교 장
- 사회복지사 및 가족 카운슬러
- 신부, 유대교 지도자 랍비와 같은 종교 지도자
- 보육기관 직원 및 담당자
- 청소년 지도사 혹은 레크레이션 지도사(자원봉사 외)
- 보안관(Peace officers) 및 사체 검사시관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자 및 직원
- 전문적이고 공식적으로 아동 관련 의무를 행하는 사람

전문가 혹은 공직자가 의심스러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 캐나다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College of Physiotherapists of Ontario, n.d.).

나. 아동과 일하는 사람 심사제도

(Screening of people working with children)

1994년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는 아동과 근접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국가적인 심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 이 시스템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범죄 이력을 캐나다 경찰 정보 센터(the Canadian Police Information Centre, CPIC)를 통해 심사하고, 보육기관이 알려진 성범죄자들을 선별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개정된 범죄자 리포트 법(Criminal Report Act)을 통해 경찰이 개인의 범죄경력을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경찰은 CPIC 등록소에서 사면을 받은 성범죄자도 아동이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할 경우 범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The Government of Canada, n.d.).

다. 범죄경력이 있는 교육자 정보 대중 공개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주는 2022년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가 아동의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사 혹은 보육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성범죄 및 다른 심각한 범죄에 연관된 형사 소송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을 마련하였다. 이는 아동의 부모 및 보호자가 아동의 안전과 보안에 필요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및 보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판결이 나기 전의 형사 소송 절차를 공개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Ontario, 2022).

이와 더불어 온타리오주는 아래와 같은 정책을 만들어 실행 중이다(Ontario, 2022).

- 아동과 신체적 성관계를 가진 교육자 혹은 아동 포르노와 어떤 방식으로 연루된 교육자의 평생 아동과 관련된 일 금지
- 과거의 비슷한 법에 적용되지 않았던 사례의 경우도 소급적용하여 교사나 아동 교육자들 중 교육자 멤버십이 새롭게 복귀되거나 처음에 취소되지 않았을 경우도 아동을 신체적 성 학대를 저지른 경우 아동과 관련된 일 평생 금지
- 온타리오 교생학교(Ontario College of Teachers)와 유아교육 교사 교생 대학교(the College of Early Childhood Educators)에서 성범죄, 포르노 등 금지된 행위,

그리고 캐나다 형법(Criminal code)에 위반된 범죄 피해자들에게 카운슬링 혹은 테라피를 제공할 수 있는 펀딩 제공

라. 스포츠 아동학대 예방 트레이닝(Abuse prevention training)

캐나다 온타리오(Ontario)의 매니토바(Manitoba)주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12학년)의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코치의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괴롭힘에 대한 트레이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코치뿐 아니라 교사의 경우도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학대, 괴롭힘 그리고 차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조직적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CBC News, 2022). 스포츠 내에서의 존중 프로그램(the Respect in Sport Program)이라고 불리는 이 트레이닝은 스포츠 내 발생하는 괴롭힘, 폭력 및 차별을 인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리스펙트 그룹(Respect Group)에 의해 진행된다(Manitoba, 2022).

3. 영국

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제도(Mandatory reporting)

현재 잉글랜드(England)의 경우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는 없다. 정부의 안전보호에 대한 법적 지침(Government statutory guidance on safeguarding)에 의하면 “아동의 복지에 관한 걱정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부의 아동 보호 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아동의 안전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즉시 연락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비록 법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정부의 안전보호에 대한 법적 지침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기대 행동을 제공하고 있다.

웨일즈(Wales)의 경우 2016년 이후 특정 공공기관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 경우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의무는 특정 공공기관에만 해당하며 개인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협에 처한 아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다.

2023년 4월, 영국 정부(UK Government)는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확정된 바는 없다(Foster, 2023).

나.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제도(Child sex offender disclosure schemes)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제도(사라의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를 실시하고 있다. 누구나 경찰서에 아동과 접촉이 있는 사람의 아동 성범죄 기록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정보 공개가 아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결정하면 아동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대상(대부분 부모, 보호자 혹은 돌보미)에게 비밀리에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준다.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경우 일반시민도 특정인의 성범죄 이력을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그 특정인이 아동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될 경우 정보를 공유한다.

스코틀랜드(Scotland)의 경우 18세 이하의 아동의 부모, 돌보미 그리고 보호자는 아동과 접촉이 있는 사람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또한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범죄 경력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NSPCC Learning, 2023).

다. 의무 보호장치 및 아동 보호 트레이닝

(Mandatory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training)

영국의 4개의 영토 -영국,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는 각각의 아동을 학대 및 방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스템과 법을 실행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영토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법상으로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영역(교육, 의료, 영유아 보육 그리고 사회복지) 및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동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지에 따라 다른 필요조건이 정해져 있다. 영유아보육기관의 경우, 보육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보육자나 스텝들의 아동 보호나 우려가 있을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아야 한다(NSPCC Learning, n.d.).

트레이닝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커버해야 한다.

- 문제 발생 시 인식하고 대응
- 안전한 조직적 문화 설립
- 안전한 채용
- 안전장치 정책 및 절차 설립
- 정보 공유
- 지역 아동 보호 절차
- 관련 법 및 지침

4. 호주

가. 아동학대 의무 신고법 및 형법(Mandatory reporting laws & criminal law)

호주의 아동학대 의무 신고법은 아동학대 및 방임을 확인하고 학대 및 방임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무 신고법은 커뮤니티 안에서의 수용 가능한 행동 기준을 정하고 아동 보호 서비스의 정책 및 실행에 영향을 준다. 의무 신고법은 특정한 개인의 알려진 혹은 의심이 가는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례를 정부 당국에 신고하게 되어 있다. 이 법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아동과 접촉이 많은 직업군의 특정한 개인들을 의무 신고자로 특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사, 영유아 교사, 사회복지사, 의료기관 종사자, 경찰, 성직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노던 테러토리(the Northern Territory, 이하 NT)주의 경우, 모든 성인을 의무 신고자로 지정하고 있다.

어떤 종류의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해야 하는지도 주 혹은 영토에 따라 다르게 지정한다.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NSW)주, NT 및 태즈마니아(Tasmania, 이하 Tas)주의 경우,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그리고 가정폭력 노출을 포함한 5가지의 학대 및 방임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South Australia(SA)의 경우, 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방임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수도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 및 빅토리아(Victoria: 이하 Vic)주의 경우, 신체학대와 성적 학대만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몇몇 주(ACT, NT, Tas, Vic, WA)는 합리적인 학대에 대한 믿음(reasonable belief)이 있을 경우 의무 신고자가 신고하도록 하며 NSW, Qld, SA, Tas와 같은 주는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을 경우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무 신고법 외에 대부분 주 및 지역에서는 형사법(criminal law)을 통해 알려진 아동 성범죄에 대해 성인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주의 경우 아동의 신체 학대의 신고 의무도 형사법에 포함되어 있고 태즈마니아주는 심각한 신체 폭력, 심각한 방임 및 학사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형사법에 포함되어 있다. 형사법은 관할 구역에 따라 범위 및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성인은 모두 경찰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Australian Government, 2023).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러 수 있는 위험을 가진 직원을 아동 곁에서 제거하지 못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NSW Government, 2023).

나.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드 (Working with Children Card, WWCC)

호주에서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 혹은 직원은 그 적합함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다. 지정된 주기관은 지원자의 일생 동안의 형사 범죄 혐의(criminal charges), 형사 사범(criminal offense), 유죄 인정 그리고 직업상 적절한 행동 리포트와 같은 경찰 정보를 확인한다. 주 및 지역마다 하나의 스크리닝 부서가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스크리닝을 진행하고, 카드, 등록증 혹은 허가증을 발급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지원자가 스크리닝 과정을 통과하면 주 혹은 지역에서 정한 기간 동안 아동 혹은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다(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2023).

모든 스크리닝 과정은 각각의 주 법 혹은 지역법에 따라 아래의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2023).

- 지원자의 어떤 종류의 과거 사건이 등록증 혹은 아동과 일하는 사람 카드(Working with Children Card, WWCC) 발급에 영향을 줄지
- 얼마 동안 등록이 유효한지
-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해야 하는지

다. 아동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내 차별 금지법

호주에서 아동에 대한 차별 사용은 상황에 따라 정당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의 모든 주 및 지역에서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합리적 차별 사용은 합법이다.

하지만 육아 교육 및 보육기관에서의 차별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2011년에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국가법(the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이 소개되고 빅토리아주에서 2010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국가법이 통과되면서 다른 주 및 지역에서도 비슷한 법이 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허가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 직원 및 자원봉사자 혹은 가족 보육자들의 차별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13세 이하의 아동과 일하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기관에만 적용되며 호주의 모든 주 및 지역의 모든 아동 교육 기간과 보육기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21). 초등학교(Primary school) 및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의 경우, 퀸즐랜드(Queensland)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에서 차별의 사용을 금하고 있다. 법상 공립학교가 아닌 학교에서의 차별을 명확하게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법적 해석은 모든 학교에서의 차별 금지로 적용되고 있다(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21).

라. 보육시설 관계자 아동 보호 트레이닝

(Child protection training for childcare workers)

아동 교육 및 서비스 국가법(Children Education and Care Services National Law)은 지정된 감독자와 아동과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아동 보호 수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2017년 법이 바뀌기 전에는 뉴사우스웨일스주만이 이 트레이닝 수업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유일한 주였으나, 2017년 이후 모든 호주 영토에 적용되게 되었다(NSW Government, n.d.a).

정부가 정한 프로토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승인된 아동 보호 트레이닝 수업을 받아야 한다.

- 아동 및 어린이의 권리 및 안전 지원(CHCPRT002, CHCPRT026)

- 아동 및 어린이의 위험 발견 및 신고(CHCPRT025)
- 교육부의 아동 보호 및 인식 트레이닝 코스
 - 교육부의 아동 보호 및 인식 트레이닝 코스의 경우 가정폭력, 위험하거나 문제스러운 성적 행동에 대한 확인 및 대응, 교육적 방임의 확인 및 대응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된다.
 - 2020년에는 학교와 밀접하게 일하는 기업 직원도 트레이닝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는 일반 직원, 계약직원 혹은 수습 직원에게도 포함되었다(NSW Government, n.d.b).

또한 지정된 감독자 및 직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최근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모든 보육기관의 직원이 일을 시작하는 시점 및 직원 평가 시 현재 아동 보호 인지를 평가하고, 매 12~24개월마다 혹은 아동 보호법 및 신고 의무 조건이 바뀌는 등의 법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며, 규칙적으로 직원들과 토론 및 정책을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한다(NSW Government, n.d.a).

제5절 | 국가별 아동학대 대응 체계

1. 미국

가. 다중대응 시스템(Multiple Response System, MRS)

미국 내 각 정부는 아동학대 및 방임을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전략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노스캐롤라이나(North Carolina) 주는 MRS라고 불리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는 학대 발생 시 특정 신고에 대한 카운티 수준의 차별화된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은 아동의 안전(child safety), 대응 시간의 적절성(timeliness of response), 서비스 조정(coordination of services) 그리고 비용 효율성(cost effectiveness)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에

관한 법률도 수립하였다(Lowrence & Synder, 2009).

MRS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카운티 사회복지 부서가 전통적인 수사 트랙 혹은 가족 평가 트랙 중 선택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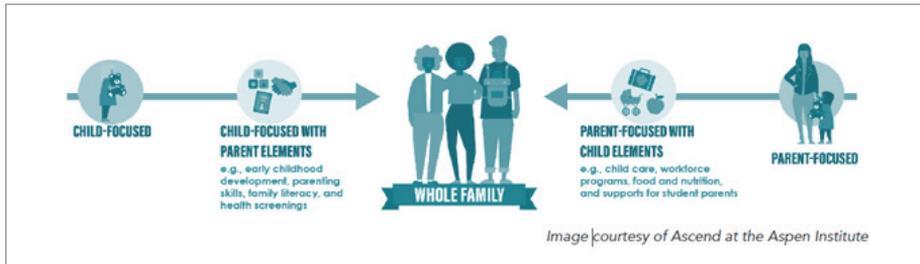
- 수사 트랙: 모든 아동학대 신고 중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사건은 수사트랙으로 배정된다.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민감도와 성격 상 부모의 동의없이 사회복지사는 이 사건에 대해 진행한다. 사회복지사는 아동, 부모 및 다른 삼자를 각각 인터뷰하고 모든 학대 신고는 신고가 접수된 후 24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방임 리포트는 접수된 후 72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평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가정 방문을 진행한다.
- 가족 평가 트랙: 많은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의 경우가 이 트랙에 배정받게 된다. 이 트랙은 처음부터 가족의 참여를 중시하며 사회복지사는 가정 방문 전 가족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가족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더 이상의 개입이나 중재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모든 신고는 접수된 후 72시간 내에 시작되어야 한다 (Craven County, n.d.).

전통적인 수사 트랙과 달리 가족 평가 트랙은 가정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가족과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가족이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아동이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함이다. 가족 평가 트랙은 가족의 강점, 지원 체계 및 지역 사회 서비스를 식별하여 가족이 자원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향후 학대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Lowrence & Synder, 2009). 또한 MRS는 하나의 방식으로 모든 가족 및 아동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을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가 중-저 위험군에 속하는 사례를 더욱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함으로써 가족의 요구를 보다 잘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안 대응, 차등 대응, 다중 대응 또는 이중 트랙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2019년 현재 23개의 주에서 법률로 재정하였으며 7개의 주에서는 규정이나 정책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나. 2세대 접근 방식(Two-generation(2Gen) approach)

아동의 안전은 그 아동 가족의 안전과 따로 분리해서 다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2Gen방식(전체 가족 방식이라고도 불림)이 도입되었다. 2Gen방식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 뿐 아니라 가족 전체와 함께 일하면서 트라우마가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아동과 가족의 안녕감(wellbeing)에 서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관들이 아동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부모 혹은 보호자만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와 달리 2Gen 방식은 아동과 아동의 삶에 같이 있는 어른들과의 상호 협력을 중시하여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 [그림 4-4] 가족을 강화하기 위한 2Gen방식 채용



출처 :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p. 30

2Gen방식은 5개의 주요 요소를 갖추고 있다 - 고등 교육 및 직업 경로(postsecondary education and employment pathways), 초기 유아교육 및 발달(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development), 경제적 자산(economic assets), 건강 및 웰빙(health and well-being) 및 사회 자산(social capital). 2Gen방식을 채용한 아동중점 프로그램(예: 초기 아동교육 개발 프로그램)의 경우 부모교육 트레이닝(parenting skills training), 가족 문해력(family literacy), 건강 체크(health screening)와 같은 아동보호자의 서포트를 구축하기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2Gen방식을 채용한 아동보호자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예: 직장내 교육)의 경우 초기 교육(early learning) 혹은 영양가 프로그램과 같은 아동중심의 지원을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다. 트라우마 인지 & 트라우마 대응 케어 (trauma-informed and trauma-responsive care)

트라우마 인지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시스템은 아동, 보호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해 시스템과 접촉한 모든 사람들의 트라우마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방식이다. 기관 및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트라우마 노출을 확인하고 트라우마적 스트레스를 치료할 수 있도록 증거 기반, 문화적으로 적절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모든 기관 및 프로그램은 트라우마에 취약한 아동 및 가족의 저항성 및 보호 요소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진행한다. 트라우마 인지 및 대응 기관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n.d.).

- 가족이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 모든 가족이 다르게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는 것을 인지한다.
- 가족, 아동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와의 파트너십을 독려한다.
- 관내 스텝 트라우마와 이차성 외상 스트레스에 대응한다.

2. 캐나다

가. 아동학대 의심 시 대응 프로토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주(British Columbia)는 보육기관내 아동학대 의심 시 보육기관 종사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존재한다. 이 프로토콜은 어떤 것을 신고하고 어떻게 다른 기관들이 함께 의심되는 아동학대 상황을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British Columbia, 2017).

1) 아동과 얘기하기(Talking with the Child or Youth)

- 진정하고 들어주기(Stay Calm and listen)
- 천천히 진행하기(Go slowly)

- 서포트 해주기(Be supportive)
- 중요한 정보만 받기(Get only the essential facts)
- 아동에게 다음에 발생할 내용 알려주기(Tell the child or youth what will happen next)
- 노트하기(Make notes)

2) 신고하기

아동이 기관내 직원, 계약자, 서비스 제공자, 혹은 자원봉사자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의심된다면 기관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담당자가 의무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에게도 연락을 취해 상황을 의논해야 한다. 만약 범죄가 발생했다고 여긴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3) 신고 후

신고를 한 이후에 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을 서포트하거나 도울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가 아동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아동이 인터뷰시 서포트가 필요할 경우 인터뷰 자리에 같이 동석하는 등의 서포트를 제공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후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제공자(보육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 신고에 대한 예상되는 대응시간
- 아동학대 신고 사건 평가 결과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줄지, 어떻게 알려줄지
- 아동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책임
- 신고자의 신원이 비밀로 유지되고 법정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 확인

나. 차별적 대응 모델(Differential Response Models)

미국의 MRS와 비슷하게 대안모델(alternative response models), 다중 트랙 시스템(multi-track systems)이라고 불리는 DR 모델이 캐나다에서도 아동학대 및 방임을

대응하는 방식으로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차별적 대응 모델은 캐나다 내 주 및 영토 및 학대의 종류 및 심각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DR 모델은 다중의 트랙 시스템을 기반으로 성학대 혹은 심각한 신체학대와 같은 고위험군의 사례는 수사트랙(investigation track)으로 대응하고, 덜 심각한 경우는 대안평가(alternative assessment) 혹은 지역사회 트랙(community)을 통해 대응해 아동과 가족의 장단기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Trocme et al, 2003).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2003년 아동 서비스 부의 아동복지 프로그램 평가보고서(the Ministry of Children's Services Child Welfare Program Evaluation Report)를 통해 아동에게 필요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아동복지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았다. 그 중 하나가 DR 모델이다. DR 모델은 결정과 서비스 계획 단계에서 아동과 가족 및 그들의 서포트 시스템의 참여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강점중심(strengths-based approach)의 접근 방식을 촉구한다(Ontario, 2016).

온타리오 DR 모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의 안전과 웰빙, 그리고 영속성에 강한 중점을 둔다.
-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례에 민감하고 사례 맞춤형 대응을 한다.
- 가족중심의 팀 의사 결정 모델(Family Centered teamdecision making model) 및 다음 세대 임상 툴(next generation clinical tools)을 실시함으로써 평가와 의사결정을 강화한다.
- 더 넓은 임상 중심의 임상 도구 사용을 통합한다.
-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과 가족의 참여를 늘린다.
- 기존의 장점을 더 강화하고 가족의 역량을 늘린다.
- 서비스 계획 및 실행 시 더 넓은 분야의 공식적 그리고 비공식적 지원을 참여시킨다.

3. 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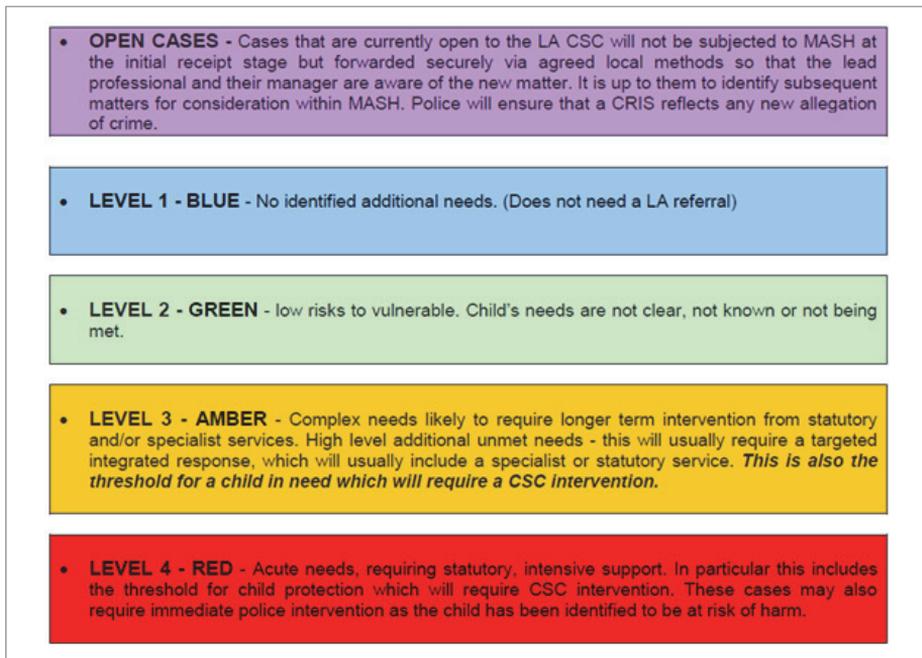
가. 다기관 보호 허브(Multi Agency Safeguarding Hubs, MASH)

영국에서는 아동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다기관 모델(Multi Agency

Models)이라고도 불리는 MASH가 도입되었다. MASH는 다기관간의 정보 공유 및 양질의 시의적절한 대응을 통해 어린이와 취약층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Home Office, 2014).

지역 및 정부에 따라 다양한 MASH의 기본원칙이 있지만 대부분 다음 3개의 원칙이 주를 이룬다. 정보 공유(Information sharing), 공동 결정(joint decision making) 및 협력적 개입(coordinated intervention) (Home Office, 2014). MAHS는 아동 사회복지(Children's social care), 경찰, 보건, 교육, 주택, 집행유예, 청소년 범죄 서비스(Youth Offending Services) 등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함께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권고한다.

» [그림 4-5] MASH 신고 분류



참고: LA (local authorities), CSC (Child Social Service)

출처 : MASH, 2013, p.14.

MASH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Home Office, 2014).

- ① 단일 진입 지점으로 작동한다(Acting as a single point of entry) : 모든 아동 보호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

- ② 연구를 통해 각각 사례의 가능한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한다(그리고 그 위험요소를 해결한다).
- ③ 공유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통해 기관 사이에 정보를 공유한다.
- ④ 의견이 합치된 위험 평가를 통해 분류(Triaging referrals)한다.
- ⑤ 후속 단계에서 더욱 강도 높은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개입을 촉진시킨다.
- ⑥ 사례를 서로 협약된 개입으로 관리한다.

런던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될 경우에 MASH 직원은 아래와 같은 4단계의 분류를 통해 지방당국에 통지한다. 각 단계에 따라 어떤 개입이 진행될지가 결정된다(Henson, 2013).

나. 치료적 개입(Therapeutic interven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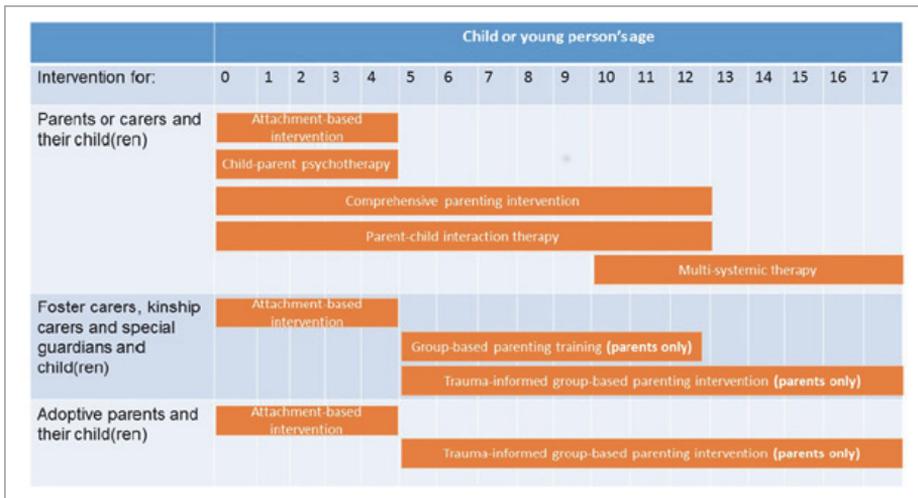
아동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과 가족의 빠른 회복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다른 기관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돕는다. 아동의 나이 및 대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적 개입이 존재한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7). 아래 [그림 4-6]과 [그림 4-7]은 아동의 연령 및 학대 경험, 그리고 학대 대상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치료적 개입의 예이다.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을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치료적 개입을 추천한다([그림 4-6] 참조).

- 1) 애착 기반 개입(Attachment-based intervention):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을 바탕으로 한 개입으로 아동과 아동의 주요 애착 대상(부모 혹은 양육자, 보호자)의 관계에 중점으로 한 개입을 말한다. 애착 기반 개입은 5살 이하의 어린이가 부모 혹은 양육자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방임되었을 경우 사용가능하다. 이 개입은 아동이 고통을 겪을 때를 포함하여 아동을 어떻게 양육하는 방법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감정의 신호나 표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며, 아동을 돌볼 때 어떻게 자신들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둔다.
- 2) 아동-부모 심리치료(Child-parent psychotherapy): 부모 혹은 양육자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학대했거나 방임했을 경우 혹은 가정폭력

- 에 노출되었을 경우, 아동-부모 심리치료를 진행할 수 있다. 훈련된 심리치료사가 부모 혹은 양육자의 집에서 진행하며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부모의 감정적인 표현과 아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계를 조사한다.
- 3) 포괄적인 양육 개입(Comprehensive parenting intervention): 아동이 12살 이하이며 부모나 양육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방임을 받았다면 포괄적인 양육 개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개입은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 양육 방식 및 양육 루틴, 양육 스트레스, 가족 안전에 관련된 치료로 진행된다.
 - 4)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Parent-child interaction therapy): 부모의 그룹 세션과 아동-부모의 개인 세션을 합친 것으로 아동중심의 상호작용 및 효과적인 훈육 기술에 초점을 맞춘 치료이다.

» [그림 4-6]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 및 방임 후 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7, p.38.

아동이 성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치료적 개입을 추천한다(그림 4-7 참조).

- 1) 트라우마 중심의 인지적 행동 치료(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성적 학대를 경험했고 불안감, 성적인 행동,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 아동 및 어린이를 위한 치료방법이다.

- 2) 치료 프로그램(Therapeutic programme)
- 3) 집단 혹은 개인 정신분석 치료(Group or individual psychoanalytic therapy)

▶▶ [그림 4-7] 성적학대 후 할 수 있는 치료적 개입

Intervention for:	Child or young person's age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their parents or carers	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lower age limit not specified)																
	Therapeutic programme, e.g. Letting the Future In																
	Group or individual psychoanalytic therapy (girls only)																

출처: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7, p.42.

4. 호주

가. 4개의 중요한 조치(Four Critical Actions)

호주에서는 보육기관 내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했거나 아동학대를 폭로했거나 혹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다음 4개의 중요한 조치(Four Critical Actions)를 취하도록 되어있다(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2016).

- 1) 긴급 상황 대응(Responding to an emergency)
 - a) 즉각적인 안전 보장: 만약 아동이 학대를 당했다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해자 등 사건에 연관된 사람들을 서로 분리하고 양측 모두 직원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긴급한 의료 관리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긴급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 b) 증거 보존(Preserving evidence): 아동학대사건이 발생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학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해당 지역을 청소하지 말고 보존하며 아동 및 가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도록 하며 불가능할 경우 세탁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외 다른 물품(무기, 콘돔 등)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한다. 만약 잠재적 증인이 존재한다면 아동학대에 연관된 모든 사람(다른 아동 포함) 사이의 대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2) 당국 신고(Reporting to the authorities)

a) 아동학대 의심이 보육기관 내에서의 일 경우: 만약 아동이 스태프나 계약자, 자원봉사자 혹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지역 경찰서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b) 아동학대의심이 가족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했을 경우: 아동학대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아동이 학대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의 안전 및 발달에 심각한 위험이 있거나 혹은 있을 것 같을 경우 아동보호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성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 경찰서에 신고해야하며 내부 관리기관에도 신고해야 한다. 품질 평가 및 규제 부서(the Quality Assessment and Regulation Division)에 보육기관 내에서 교육받고 보호받는 아동의 안전, 건강 및 안녕감에 관한 심각한 사건, 환경 혹은 불만을 통보해야 한다.

3) 부모나 보호자 연락하기(Contacting parents/carers): 대부분의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아동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아동학대가 보육기관에서 발생했다고 의심될 경우 24시간 내에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할 경우 아동을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연락을 취하기 전에 아동보호 서비스국 혹은 경찰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4) 지속적인 지원 제공(Providing ongoing support): 아동학대 경험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발생시키며 아동의 정신건강 및 안녕감에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트라우마를 줄이고 아동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a) 아동이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아동의 안전과 지원을 보장하도록 한다.

b) 아동과 가족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추천하도록 한다.

c) 아동의 발달 및 문화에 적절히 지원하도록 한다.

d) 아동학대사건 관련 영향을 받은 직원을 지원하도록 한다.

다. 다학제적 팀 접근(Multi-disciplinary team approaches)

호주에서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호주의 많은 주들은 다양한 기관과 분야의 협조 및 협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적인 프레임을 실행한다. 이는 아동학대를 대응하는 모든 관계자가 최대한 아동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전문가의 분야 혹은 기관이 맡은 역할에 따라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의도치 않게 사례 대응을 적절하게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학제적 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다. 모델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다학제적 팀은 기관간의 대응을 협력하고 계획하기 위한 사례검토 혹은 정보 공유과정을 가진다. 보통 팀들은 효과적인 수사와 아동과 아동의 가족의 회복 및 학대 사실 발설 후 필요한 지원에 집중을 둔다. 또한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들 사이의 협조는 사례 검토 회의를 넘어 담당자간의 공동 위치를 통해 팀 구성원간의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사례 검토, 컨설팅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게 돕는다. 대부분의 주에서 팀에는 경찰, 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on) 및 보건기관이 포함된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18).

제 5 장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면담

김남희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면담

제1절 | 심층면담 개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의 상황적 맥락에 기반한 대안 모색을 위해 관련자 면담을 실시하였다. 당초 아동학대 피해자(아동·가족)와 행위자(교사·원장),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면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면담진행 초기 과정에서 교사와 원장 간 서로 입장이 상이함을 파악하고 면담대상을 1) 아동·가족 측, 2) 보육교사 측, 3) 원장·기관 측, 4) 아동학대전담 공무원·경찰(APO) 측으로 구분하고, 총 27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⁵³⁾

연구의 목적이 아동학대 발생 전 예방,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후 보호·지원의 개선안을 도출하는 것에 있으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라 1) 아동학대 발생 전, 2)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3) 아동학대 소송 전후로 면담내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적 특성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편적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어 두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과 세 번째, 아동학대 소송 전후의 면담내용은 주로 아동학대 당사자의 ‘보호, 지원’, 더 나아가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은 내용이 방대하고 각자의 입장이 상충하기도 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라 관련 주체자인 아동, 가족, 교사(보육교직원),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주제를 재분류하였다.

53) 심층면담 조사대상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1장 제3절 연구 방법 참조.

제2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 특성

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아동’ 관련 특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은 일반적인 보육환경과 아동발달, 사회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아동 관련 주제는 ‘환경에 의한 발달수준 변화’, ‘사회로 내몰림’, ‘아동 기본권리 침해’로 주제가 도출되었다.

면담내용 중에 많이 언급된 내용 중 하나는 최근 발달지연 아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음이 체감된다는 것이었다. 진단기준에 의해 장애로 판단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경제선에 있는 영유아가 과거에 비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수성을 나타내는 영유아가 많아진 원인 중 하나로 코로나 시기 태블릿 등의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민감성이 증가하고, 외동자녀가 많아지면서 올바른 훈육이 되지 않는 점 등이 거론되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이를 환경변화에 의한 영유아 발달 지연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영유아가 가정 내 생활습관이 충분히 형성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며 집단생활을 요구받아 연령대에 맞지 않게 규율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도 변화된 보육환경의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너무 이른 시기에 사회로 내몰려 시간에 맞추어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연령대에 할 수 없는 것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면담참여자들은 어린이집에 설치·운영되는 절차에서 이미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언급하였다. 일례로,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어린이집이 설치 가능한데 이는 아이들의 놀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아동은 실외에서 활발하게 신체활동을 해야 낮잠도 잘 자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식사나 음식도 잘 먹을 수 있는데, 실외활동이 제한되니 낮잠 및 식사를 하지 않으면서 그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간적으로도 좁은 공간에서 영유아들이 먹고, 자고, 놀고의 모든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아동권리 측면에서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 그간 행동수정이라는 명목하에 강압적으로 훈육을 해 온 것이 목인되어

왔음을 지적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 <표 5-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아동’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환경에 의한 발달수준 변화	민감성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로 가정에서 태블릿 등의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감각이 예민해짐
	특수아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비교하여 최근에는 발달지연 아동이 증가한 것이 체감됨. 장애는 아니지만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 많아졌음 • 아이를 한 명만 낳은 집이 많음. ‘오냐오냐’ 키워서 아이 중심이 왜곡됨. 상호작용이 안됨. 놀이 중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억울하다’고 표현함 • 코로나 상황 이후에 발달지연이 많아짐. 환경이 그렇게 되어 버렸음
사회로 내몰림	너무 이른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전에는 어린이집 입소 전 기본생활습관을 이미 형성한 채로 어린이집에 입학했으나 지금은 너무 이른 나이에 어린이집에 오랜 시간 있다보니 가정에서 생활습관이 형성 안됨
	집단생활 적응을 요구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지 못하는 나이부터 집단생활을 하며 틀에 맞추어지도록 요구받음. 자기조절이 불가능한 나이에 불구하고 집단규율대로 생활해야 함
아동 기본권리 침해	놀이권 침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설치가 실외놀이터가 없어도 가능하여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김 • 코로나 상황에서 실외활동을 많이 못 했음. 실외활동이 부족하여 아이들이 졸리지 않아 낮잠을 안 잠
	유희공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고, 자고, 놀고를 한 공간에서 모두 해야 해서, 아이 역시 자기 자리를 계속 정리해야 함 • 딱 교실만 있음. 유희공간이 없음. 낮잠시간에 자는 아이들은 자고, 안자는 아이들은 놀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공간에서 불가능함
	장애아동에 대한 강압적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전담 어린이집의 경우 치료과정에서 강압적 교육이 목인된 것이 많음(예: 행동수정)

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가족’ 관련 특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가족 관련 주제는 ‘가정과 어린이집의 분리’, ‘제한적 정보취득’, ‘아동 특수성 인정의 어려움’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학부모가 가정과 보육기관을 분리하여 바라보는 특징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는 주로 보육교사와 원장의 의견이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나서는 보육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집에서도 하기 어려운 지도를 어린이집에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교사와 기관의

입장에서 학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하지 않고 부당한 요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황적 특성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서로 소통하지 않고 분리되어 상호협력적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아동보육에 대해 제한적으로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가족의 특성으로 언급되었다. 상호협력적 보육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진다. 보육교사 한 명이 최대 20명의 영유아를 보육하며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었다. TV나 유튜브 등에서 습득한 일반적인 육아정보를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하려고 하여 이 과정에서 보육교사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좋은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개되는 어린이집 정보는 너무 일반적인 정보만 제시되어 있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분 정보 등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입장에서는 부모가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얻고 싶은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아동학대 발생 전 가족과 관련한 상황적 특성으로 자녀의 특수성 인정에 어려움이 있음이 거론되었다. 교사가 보육전문가로서 아동발달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해도 학부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교사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반응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자녀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 상황은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특수아동을 살피는 동안 다른 아동들이 방치되는 상황적 맥락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 <표 5-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가족'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가정과 어린이집의 분리	어린이집에 보육 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는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나서 신경을 안 씀 • 차량운행을 하니 집 앞에서 아이를 차에 태워 보내면 끝임
	과도한 보육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 안 먹으니 어린이집에서 먹여 달라고 함. 교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함 • 집에서 엄마가 하듯이 해달라고 요구함. 먹고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게 해달라고 함 • 과학계 개별화시켜서 아이를 대해 달라고 요구함 • 소중한 내 아이에게 보육교사도 똑같이 해주길 요구함
제한적 정보취득	보육현장 이해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1명이 최대 20명을 보육할 때 어떤 상황인지 보육현장에 대해 잘 모름.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함 • 부모가 '우리 아이만 앞쪽에 세워주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요구하는데 보육현장을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 같음
	범람하는 육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프로그램 범람으로 부모들이 너무 많은 정보를 얻음. 부모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교사가 물러나야 함
	어린이집 정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아동학대범죄 이력이 있는 교사에 대한 정보,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기관 정보를 찾아볼 수 없음(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정보 제공이 도움 안됨)
아동 특수성 인정의 어려움	아동발달지연 수용 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아이 부적응 모습 이야기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교사가 볼 때 특수(경계선)가 맞는데 부모는 인정을 못함 • 교사가 아이를 ADHD라고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함. 교사는 '상담기관을 찾아가보세요'까지만 할 수 있음. 보통 부모가 인정해야 상담기관으로 넘어감. 어린이집에서는 순회지원을 요청하는 수준임
	교사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교육이 부족해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반응함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교사' 관련 특성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교사와 관련한 주제는 '아동학대 유발 환경', '과중한 보육노동의 스트레스', '폐쇄된 좁은 공간', '불신의 악순환', '인정받지 못함', '실효성 낮은 예방교육'으로 설명된다.

먼저 아동학대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늘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 1인당 보육해야 하는 아동수가 최대 20명⁵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적 아동학대가 아닌 방임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은 특수성을

54) 교사 1인당 아동정원수: 0세-3명, 1세-5명, 2세-7명, 3세-15명, 4세-20명, 5세-20명. 0+1세는 0세(하위연령) 기준으로 3명, 3+4세는 3세 기준으로 15명(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p.68, 72).

가진 아이가 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교사는 행동이 역동적인 특수성을 가진 아이를 돌보다 보면 그 외 다른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 공통된 표준지침으로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상황 역시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보육기관은 끊임없이 표준화가 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아동들은 더욱 개별화되고 있으므로 지침에 따라 일률적으로 먹이고 재우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들의 과중한 보육노동 스트레스도 아동학대 가능성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설명되었다. 교사들은 보육과 행정, 부모상담을 동시에 해야 하는 만능인이어야 한다. 출근 후 퇴근까지 ‘짬’을 낼 수 없고, 계속해서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 일반 직장인은 점심시간이 있고, 중간에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보육교사들에게는 그러한 쉼이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아동권리를 강조하며 아동이 맘껏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독려하며, 부모 역시도 어린이집에서 자신의 자녀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하도록 독려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교사들은 1대 다수로 아동을 보육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모든 책임은 교사가 져야 하는 스트레스 상황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보육교사가 이렇듯 과중한 보육노동의 스트레스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에 대한 논의가 부재하여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 역시 부족한 것으로 보였다.

공간적인 문제도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우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아이들과 치이며 교사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폐쇄된 공간에서 교사가 무엇을 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폐쇄된 공간의 왕’으로 권력을 가지게 되어 아동학대 발생 상황이 쉽게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부모와 교사 간 상호 불신이 아동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며 악순환을 반복시킨다는 평가도 있었다. CCTV는 불신의 대표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견율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CCTV가 모든 아동학대를 발견해 내는 것은 아니며(예: 정서학대), 때로는 아동학대가 아님에도 단편적인 장면만으로 아동학대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아동학대를 판단할 때는 앞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하나, 보육교사들은 자신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아

동학대로 보여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이들에게 더 친밀한 스킨십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을 검열하게 된다. 보육교사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로 보는 현재 사회적 분위기도 보육 품질 저하에 기여한다. 보육교사는 낮은 임금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리기 쉽다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보육교사가 되는 것을 기피하거나, 경력직 보육교사들도 보육현장을 떠나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낮은 교사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 보육의 질이 점점 더 저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CCTV 설치의 골레와 보육교사가 잠재적 가해자로 여겨지는 사회적 불신,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가 계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위의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나, 노동자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라는 전문직으로 아동보육에 대해 부모에게 제언하더라도 부모들은 보육교사는 그냥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며 교사로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로서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요구하면 교사의 정신을 요구하며 노동자로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인식은 이들에 대한 임금수준으로 대변된다. 보육교사 임금은 최저 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은데 이마저도 지역 간 격차가 있으며, 초과근무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이 받는 예방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 중 하나이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이 일반화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포함한 의무교육 대부분이 동일한 양상으로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아동인권선임교사⁵⁵⁾를 지정하는 어린이집도 있으나 이 역시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행 예방교육 콘텐츠가 최근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슈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평가도 있었다.

55) '아동인권선임교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임. 대상은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이며, 국공립 및 서울형어린이집은 의무대상, 그 외 어린이집은 권고대상임. 보육교사 1명을 아동인권선임교사로 지정하여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예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출처: 서울특별시(2023). 2023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p.193.).

▶▶▶ <표 5-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교사'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아동학대 유발 환경	너무 많은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십수 명의 아이를 혼자 보육해야 함. 한 아이에게 집중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교사는 여러 명을, 동시에, 일정 양을 먹이고 치우고, 본인 식사도 해야 하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야 함
	특수아동 외 방치되는 아동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문제행동 아동이 많음. 경계선 아동이 많을수록 다수 아동 보육이 어려움 아들 문제행동이 발생해서 포커스가 가다 보면 다른 아이들에게 집중하기가 어려움
	보육표준화 vs 아동개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은 표준화된 반면 아이들 캐릭터는 강해짐 발달권 관련 아동학대가 발생함. 아동발달을 위해 먹이고, 재워야 하는 지침이 있고, 교사들도 아이를 위해 억지로 먹이고 재우며 아동학대 상황이 발생함 발달지연 아동이 많아지면서 기존 방식이 통하지 않음
과중한 보육노동의 스트레스	만능 보육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과 함께 행정업무를 같이 처리해야 하고, 내일수업준비, 사 진찍기, 키즈노트, 부모상담계획 등 한꺼번에 해야 함. 아이들이 싸우면 말리고 중재해야 함 아이를 놀려 재우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음. 당시 교사가 핸드폰을 하고 있었다고 비난받았으나, 교사는 키즈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음. 한 시간 낮잠 시간에 15~20명 것을 전송해야 함
	'짬' 없는 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근-퇴근 사이 '짬(휴식)'이 없음. 노동이 계속 이어짐. 업무스트레스 흐름을 끊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보육함
	요구는 그들이, 책임은 교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들에게 맘껏 놀아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하지만, 그 책임은 교사가 다 져야 함 학부모 요구가 너무 1:1임. 과도한 책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음 학습하는 장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함. 부모요구, 원장요구에 따라 아이들 학습을 시켜야 하고, 그 사이 사진찍어 공유해야 함
	정신건강 논의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엄마들 육아스트레스, 우울증은 인정하면서 보육교사 우울증은 인정하지 않음
폐쇄된 좁은 공간	좁은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좁은 공간에서 아동을 돌보고 치이며 스트레스 받음 좁은 방에서 보육교사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보육환경임
	폐쇄된 공간의 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어린이집은 방문을 닫으면 안이 안 보임. 폐쇄형은 들어가면 교사가 왕임.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음 내부사람들만 있으면 아동학대가 쉬운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음. 학대해도 바로 발견도 어려움
불신의 악순환	CCTV 굴레, 보육 품질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편적인 모습만 비춰지는 CCTV로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마음이 늘 있음. CCTV의 굴레가 교사입장에서 큰 짐임 아이와의 스킨십이 조심스러움. 아이들이 좋아서 한 행동이 '안 좋게 보이면 어찌지' 하는 생각에 아이에게 못 다가감 갑자기 CCTV가 공개되었을 때 내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까 두려움이 있음 어린이집에서 원장의 CCTV 관리는 아동학대예방이 아니라 노동감시 목적임

주제	소주제	내용
	전문성 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가해자가 되려고 하나’라고 하면서 어린이집 취업을 말림.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사들이 진입을 안하거나 떠남. 빈자리를 신입교사 또는 전문성이 낮은 교사들이 채우며 악순환이 반복됨. 아이들, 학부모가 피해자임 • 정규교육을 받지 않고 그냥 아이를 보는 경우도 있음. 아동존중이 아닌 그저 보육임
인정받지 못함	교사로 인정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선 아동의 학부모에게 전문기관 상담을 권유했는데, ‘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라고 함. 교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하려면 대체교사가 있어야 하나 구하기 어려움. 다른 보육교사가 대신 근무해야 함 •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함.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감 • 휴게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교사의 정신이 없다’, ‘권리만 찾으려는 교사’라는 식으로 말 함
	낮은 임금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교사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임. 민간은 국공립 1호봉 권고임. 권고라서 여전히 최저임금임 • 보육교사 교육이 굉장히 많은데 퇴근 후나 주말에 교육을 들음. 시간외수당 없음. 공짜노동임 • ○○지역 보육교사 채우는 유난히 엉망이라고 함. ‘○○(지역)은 (아동학대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함
실효성 낮은 예방교육	형식적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이 너무 많음. 코로나 때문에 동영상 강의가 더 많아졌음. 잘 안 듣게 됨. 형식적임 • 아동인권선임교사가 있어서 아동학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형식적인 경우가 많음
	뒤처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방교육 자체가 현재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특성

아동학대 발생 전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차원의 주제는 ‘생존을 위한 투쟁’,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한 평가체계’, ‘관리자 리더십 부재’, ‘폐쇄성과 근거없는 신뢰 요구’로 제시할 수 있다.

한국의 출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어린이집 관리자는 정부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한 원아모집에 주력한다. 때문에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학부모가 지나친 요구를 해도를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러한 보육기관의 상황은 오히려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돌아온다. 운영비 절약을 위해 낮은 급의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추가인력을 고용하거나 초과근무수당 지급도 어려워 보육교사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

현행 어린이집 평가체계는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이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체계는 형식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점검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3년에 한 번 준비된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 외 행정감독기관의 평가도 주로 회계, 관리 등 행정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궁극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허술하게 운영되어도 교육 이수증을 통해 교육 여부만 확인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거의 방치되는 수준이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어린이집 상황을 보면 대체로 원장이 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행위 자체는 아이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교사에 의해 발생하지만,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드백을 주고, 작은 위험행동에 경고를 보내면 더 큰 아동학대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률에 근거하여 어린이집 원장은 CCTV를 모니터링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⁵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CCTV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위 규정이 의무이기는 하나 관리자가 CCTV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그에 대한 후속책임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언급되었다.

보육기관의 폐쇄성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케 하고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상황적 요소이다. 어린이집이 개방되어 있으면 학부모와 교사, 어린이집이 함께 보육상황을 공유하며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어린이집이 더욱 폐쇄적으로 되어 부모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어린이집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평가이다.

56)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함. 또한 주1회 이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점검한 후 영상정보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출처: 보건복지부(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192, 194면).

▶▶▶ <표 5-4>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발생 전 -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생존을 위한 투쟁	과도한 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1인당 보육료 지원을 받는 민간어린이집은 아동 정원을 채워야 함 • 관리자 입장에서 원아모집이 중요 화두임. 가장 주요한 영향요인은 주위 평판임. 부모의 과도한 요구가 있어도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다보니 교사업무도 과중됨
	운영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절감을 위해 1급, 2급보다 3급 보육교사를 채용함 • 보조교사 채용이 의무가 아님. 보조교사 채용 시 지원금이 나오기는 하지만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가 채용을 안함 •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어려움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한 평가체계	평가인증과 아동학대 예방은 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과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음 • 평가인증은 형식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평가함 • 사전공지하고 평가인증 위원이 방문하기 때문에 점수를 낮게 받는 것이 더 이상함
	행정중심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현장전문가가 많아 전문성이 높은 편이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상대적으로 행정전문성이 취약함. 그러다보니 회계, 급식 등 관리체계 평가만 강화함
	예방교육 방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판매업자들이 ○○협회라고 하고 어린이집 의무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줌. 그러면서 보험판매를 함. 어린이집 평가인증할 때 이수증만 보여주면 됨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위탁교육이 있는데 아무나 교육을 함
관리자 리더십 부재	관리자 역할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곳을 보면 원장이 제 역할을 안하는 경우가 많음 • 행위주체가 교사라 하더라도, 원장이 원을 비우는 일이 많고 의무 점검을 안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작은 일이 점점 커짐
	영상정보 모니터링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의무가 있음. 원장 방에 CCT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가 소홀함 • 관리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CCTV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나 후속관리가 되지 않음. 아동학대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몰랐다고 하는데 원장은 무혐의로 나옴. 원장은 점검 후속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음
폐쇄성과 근거없는 신뢰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이전에는 어린이집 안까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개방을 차단하였음 • 어린이집이 폐쇄적이어서 학부모의 불안감이 많고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아동학대로 확산되는 부분임 • 아이에 대해 물어보면 '저 못 믿으세요?' 방식임 • 충분히 상황을 공유하지 않은 채 신뢰하라는 것은 말이 안됨

제3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상황 특성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아동’ 관련 특성

이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은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이의제기를 하는 단계부터 신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아동 관련 주제는 ‘직접피해아동의 추가피해’, ‘간접피해아동의 방치’로 설명된다. 아동학대 당사자인 직접피해아동은 2차 피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아동학대처리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 학대(의심)행위자와 아동 분리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⁵⁷⁾ CCTV로 아동학대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동안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학대의심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비난하여 피해아동은 추가피해에 노출된다. 한편 아동학대의 모든 과정이 학부모와 교사 등 성인에 의해 주도되면서 아동에게 과정을 설명하거나 아동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소홀하여 정작 피해당사자인 아동이 소외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간접피해아동에 대한 대응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교사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헤어짐의 과정이 생략되어 아이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남기며 간접피해아동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직접 피해아동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간접적으로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피해아동이라는 인식이 없어 간접피해아동이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이다.

57) 출처: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p.44. (상시모니터링) 만약 보육교직원 모니터링 중 아동학대(의심) 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 원장은 즉각적으로 보육교직원을 영유아와 분리시킨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해당 기관에 신고 및 보고해야 한다(p.44).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대한 조사시 유의사항)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관련 지침에 따르거나 가용 자원이 있을 경우, 신고당한 보육교직원에게 휴가를 주거나 다른 업무를 배정함으로써 이들이 영유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p.99).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 피해(의심)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 경찰,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p.94).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경우) 경찰: 학대 피해(의심)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할 수 있다(p.95).

▶▶ <표 5-5>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아동'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직접 피해아동의 추가피해	2차 피해와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찰이 CCTV를 보는 수개월 동안 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분리되지 않았음.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한 것임. 행정기관은 경찰조사가 끝나야 분리가 가능하다고 함 교사들은 변호의 방향을 '이 아이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다'로 많이 함. 아이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함
	절차에서 소외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5~6세 아동만 해도 자신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원함. 수사 진행사항에 대해 아동에게도 설명 필요함
간접 피해아동의 방치	분리 과정의 트라우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 신고 시점에 교사와 즉각 분리되는 경우, 교사와 헤어짐의 인사도 하지 못함. 또 다른 트라우마에 놓이므로 절차개선 필요함
	간접피해 대응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인 피해아동 이외에 간접피해아동은 피해아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가족' 관련 특성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가족과 관련한 주제는 'CCTV 열람신청의 부담감', '공동체와 멀어짐', '끝장보기'로 설명할 수 있다. 학부모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싶지만,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곧 어린이집과의 관계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CCTV 열람 신청 시 10일간의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린이집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는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CCTV 열람 절차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 놓인다.

아동학대를 의심, 신고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신고한 학부모를 '별난 엄마'라고 소문 내며 명예훼손을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동시에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기며 학부모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문제를 일으킨 엄마라는 낙인으로 어린이집 전 원에도 어려움을 경험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가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학부모가 직접 모든 기관에 문의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계속해서 문의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진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학대행위자나 어린이집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함으로써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끝장을 보겠다고 결심하며 소송의 단계로 진입한다. 감정적 폭발이 행동으로 표출되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역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표 5-6>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가족’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CCTV 열람신청의 부담감	CCTV 열람요구는 관계의 종결	• CCTV 열람을 요구하려면 어린이집을 그만둔다고 생각해야 함
	CCTV 열람 절차 불신	• 열람신청 10일(이내) 사이 열람결정을 통보함. 열람 동안 은폐하려는 것은 아닌지 더 예민해짐. 그냥 경찰에 신고함
공동체와 멀어짐	2차 피해와 비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엄마가 별나서 그런 거라고 소문을 퍼트리며 원장이 명예 훼손함 • 다른 부모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 원장이 피해 신고 학부모를 험담하고 아동학대 사실을 은폐, 왜곡하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음 •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학부모를 비난하는 것임(예: 낮잠을 재우려면 집에서 생활습관을 잡아줘야 하는데 엄마가 그걸 못한다고 비난)
	학부모 간 갈등	• 학대피해아동 때문에 어린이집이 폐원될까봐 다른 학부모들과 갈등이 생김
	별난 학부모 낙인	• 별난 학부모로 낙인찍힘. 다른 원으로 가기도 어려움
끝장보기	‘진상’이 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본인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고 행정처분 요청하고 절차진행 알아보고 해야 함 • 피해자 입장에서 연락을 해야 할 곳이 너무 많음(경찰,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변호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변경 등) • 피해당한 것만으로도 학부모는 감정과잉인데 이것저것 기관마다 물어보고 다녀야 함. 진상이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
	감정적 폭발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교사와 원장이 사과하지 않음. 죄송하다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지 않아 끝까지 형사처벌 받게 만들기로 결심함
	역소송 휘말림	• 맘카페에 초성으로 어린이집 이름을 거론하며 아동학대를 알리다 명예훼손 소송당함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교사’ 관련 특성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상황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됨’,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 ‘소명기회 제한’으로 설명된다. 교사는 아동학대 행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됨과 동시에 아동학대교사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고 아동학대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범죄자가 되어 준비 없이 보육현장에서 사라지고, CCTV 영상정보 점검 과정에서 학대의심행동으로 지적받은 모든 보육행동을 하나하나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학부모와 원장 간 갈등 상황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도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이 있을 때 원장이 먼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책임을 면피하기도 하며,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내보내기 위해 부당한 대우를 하기도 한다. 아동학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피해자가 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내부신고자로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예민한 교사로 찍혀 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역시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가 됨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자신이 CCTV 영상자료의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보면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 등에 보육전문가가 없어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소 불리하게 아동학대행위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 <표 5-7>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교사'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아동학대 범피자가 됨	준비 없는 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로 신고된 시점에는 학대가 판결난 것이 아닌데 아동과 즉각분리됨 아동학대 신고로 즉각분리되면서 반 아이들과 어떠한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져야 함
	모든 행동 의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당한 순간부터 아동학대 교사라는 프레임이 씌워짐 관할행정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경찰서로 이관했으나 경찰조사 시 5일치 CCTV 영상을 보고 학대의심행동을 지적함. 하나하나 소명함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	보복성 신고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와 교사(혹은 원장) 간 관계가 안 좋으면 아동학대 신고로 곤장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아동이 부적응행동을 보여 며칠 다니다 퇴소했는데, 그 사이 교육비 갈등이 있었음. 학부모가 퇴소하면서 아동학대 신고함 국공립원장이 퇴직하면서 남은 교사들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나감
	재판기간 중 부당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장은 교사 하나 자르면 끝난다는 생각임 아동학대 신고 후 조사기간 중 급여는 기본급만 받음. 보직을 행정직으로 변경함. 갑자기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음(* 무혐의판결이 나서 복직한 사례)
	원장 면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사건이 났을 때 원장이 교사를 먼저 신고하면 책임으로부터 면피됨
	내부 신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에서는 보임. 내부신고한 교사는 예민한 교사로 찍힘
소명기회 제한	방어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대신고 시 교사 방어권이 주어지지 않음. 영상정보 행위주체인 보육교사가 열람이 불가함
	사례결정시 보육전문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시 학대결정 위원들이 어린이집 상황을 전혀 모름. 피해자 중심이라 교사들이 불리한 경우도 많음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중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특성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보육기관의 상황은 ‘CCTV 열람 이행의 부담’, ‘소문으로 망함’, ‘사건이 없었던 듯’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육기관의 입장에서 학부모가 CCTV 열람을 요청했을 때 정말 아동학대가 발견될까 두려움도 있지만, CCTV 영상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학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정해진 절차⁵⁸⁾대로 10일간의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즉 법률에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을 언급하며 CCTV 열람 이행의 부담을 표현하였다.

아동학대사건이 거론됨과 동시에 보육기관은 소문으로 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이를 빠르게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맘카페나 언론보도를 통해 소문이 나면 아동학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에 소문이 퍼져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련된 사람들을 빠르게 조치하고 마치 아동학대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수습해 간다. 아동학대가 없었던 듯 상황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사과를 할 경우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아 소송단계로 넘어가기도 한다.

▶▶▶ <표 5-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CCTV 열람 이행의 부담	CCTV 공개 두려움	• CCTV 열람시켜달라고 하면 ‘정말로 아동학대가 발견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린 망했다’ 생각함
	즉시 신고의 두려움	• CCTV 열람 절차(10일 이내)를 안내하면 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약식절차로 CCTV를 보여줌
	CCTV 열람 절차 준수의 어려움	• CCTV 열람을 요청하면 다른 부모 동의, 불러처리 등이 필요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10일 이내 통보하는 등의 절차가 있으나 곧바로 신고하기 때문에 절차 이행이 어려움
소문으로 망함	맘카페 위협	• 맘카페에 소문이 나면 끝임. 맘카페에서 마녀사냥 하듯이 퍼질 때가 있음. 진위 여부와 상관없음. 맘카페의 가장 큰 역기능은 여론몰이를 하기 쉽다는 것임
	언론보도 공포	• 언론보도 되는 것 자체로 어린이집은 망했다고 생각함

5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②에 따라 열람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자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제외).

주제	소주제	내용
사건이 없었던 듯	제복경찰 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의심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 정도의 위협감을 갖고 항상 공포를 갖고 있음 • 학대신고 접수 시 제복입은 경찰이 옴. 그것만으로도 지역에 소문남
	신속한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아동학대범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빠르게 조치함. 교사에게도 시끄러워지니 분리 조치를 취함 • 경쟁구도 속에서 평판이 중요하므로, 학대 사실 여부보다 수습이 우선임
	사라지는 사람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위탁운영 국공립의 경우 교사와 원장이 동시에 사라짐
	사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사과하지 않음. 사과를 하면 아동학대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임

제4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상황 특성

1.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아동’ 관련 특성

아동학대 소송 과정은 장기적이다. 따라서 이 단계는 소송과 관련된 사안을 초점화하기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피해자 및 학대행위자 보호·지원, 재학대 예방과 관련한 사안을 중심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먼저 아동 관련 주제는 ‘치료지원 기준 모호’, ‘장애아동 차별’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학부모 경험에 의하면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치료서비스보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미 규정해 놓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말로 갈수록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다른 측면에서 아동학대 후유증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학부모가 과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전반적으로 아동학대 서비스 치료지원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아동학대 피해 후유증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심각성에 따라 아동 특성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나 예산과 부모요구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앞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도 장애아동에 대해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학대가 발생해도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되었는데, 아동학대 소송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이 나거나 처벌이 경미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 <표 5-9>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아동'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치료지원 기준 모호	아동 맞춤형 치료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지원'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여 놀이치료, 언어치료는 서비스가 안된다고 함 아이들은 집중시간이 짧음, 회기당 짧은 시간, 장기치료 필요함
	예산부족으로 치료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11월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이 없어서 아동 심리치료지원을 못 해준다고 함. 민간상담기관은 보험도 안되고 비용이 높음
	과도한 서비스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검사 등 전문가 판단으로 아동학대 후유증이 아닌데도 학부모가 계속해서 서비스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장애아동 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똑같은 유형력 행사인데 장애아동에 대한 것은 무죄가 나오거나 처벌이 경미한 경향이 있음

2.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가족' 관련 특성

아동학대 소송 과정에서 가족의 상황은 '가족 회복력 붕괴', '대체자원 없음', '낮은 정책신뢰도'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동학대사건 소송은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동안 가족 간 불화가 생기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린이집이 아동학대로 폐원할 경우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우며, 지자체별로 활용가능한 자원에도 지역격차가 있어 지방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아동학대 피해가족은 아동학대 소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전원을 해야 하는데 대체가능한 자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정부가 제공하는 아동학대 서비스 지원은 선별기준이 모호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결국 그러한 상황적 맥락이 정부의 정책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표 5-10>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가족'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가족 회복력 붕괴	전 가족이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이 피해를 겪음. 가족간 불화가 생김(서로 질책). 스트레스 상황에 예민해지면서 서로에게 쏟아냄. 아이도 더욱 트라우마에 시달림
대체자원 없음	폐원 후 대안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원 후 다른 원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이 없음. 과거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원이었는데, 당시 다른 아동이 피해를 볼 것 같아 부모가 처벌불원 동의하여 운영을 계속한 것임 폐원하면 근처에 다른 어린이집이 없어 대안이 없음
	지역자원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전원 등 절차를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과 지역이 서비스 격차가 있음
낮은 정책신뢰도	기준없는 정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할 시에서 심리치료 연계를 '00회+연장'으로 이야기 했으나 이후 예산이 없다고 0회로 줄였음. 시에 항의하니 이후 00회로 늘렸음. 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서 처음부터 안해 준 것임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리치료말고는 없음. 시에는 아무런 기대조차 없음

3.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교사' 관련 특성

아동학대 소송 과정에서 교사의 상황은 '교사 지원체계 부재', '보상없는 무혐의'로 설명된다. 교사들은 아동학대행위자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지원받지 못하고 개인이 아동학대 소송을 해결해야 했다. 어린이집이나 관련 단체에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교사에 대해 지원하지는 않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이며 가정 내 아동학대에 초점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동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때문에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 서비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다.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이 나도 아동학대 신고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는 오롯이 혼자 모든 과정을 감내해야 하며, 보상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 <표 5-11>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교사'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교사 지원체계 부재	기관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부모와 기관 간 갈등 중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원장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음.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
	관련 단체 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단체에서 무료상담을 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지원은 없음
	정부지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기본적으로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초

주제	소주제	내용
		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가정 내 아동학대는 가족기능 강화 측면에서 학대행위자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어린이 집 학대가해자를 위한 서비스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
	보상없는 무혐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 신고가 가능해서 무혐의가 나와도 신고자(학부모)는 아무 책임이 없음

4.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특성

소송 과정에서 원장의 상황은 ‘사회적 책임감 없음’, ‘행정처분 기준 모호’로 설명된다. 어린이집은 국가지원금을 받기는 하지만 운영주체는 대부분 민간이다. 때문에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폐원처분을 받으면 폐원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갑자기 폐원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역을 이동하여 다시 개원하는 것이 용이하여 어린이집에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보육기관 행정처분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원장이 CCTV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는데 행정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국공립과 민간이 행정처분이 다른 점 등이 지적되었다.

▶▶▶ <표 5-12>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상황: 아동학대 소송 전후 - ‘원장(보육기관, 관리자)’ 관련

주제	소주제	내용
사회적 책임감 없음	폐원절차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니 원장이 갑자기 폐원해 버림. 어린이집 폐원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음. 대체할 어린이집이 없어 부모들이 난감해 함
	폐원 후 개원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자격정지 6개월 이후에 다시 개원함 • 어린이집은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감 부여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처분 같은 것도 많이 없음 • (민간) 폐원하면 됨. 일정 시간이 지나고 다른 지역에서 다시 개원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개원하면 됨
행정처분 기준 모호	내부신고 행정처분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이 모니터링하며 교사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함. 이후 행정기관에서 아동학대 발생기관이라고 행정처분을 내려 억울해 하는 사례가 있음
	기관유형별 처분 기준 모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분 결과가 국공립과 민간이 다름. 원장이 어떤 경우는 처벌을 받고 어떤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아 기준을 모르겠음

제5절 | 요약 및 소결

1. 연구결과 요약

본 장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의 상황적 특성을 파악하고 예방, 보호·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총 27명을 면담하였다. 면담내용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에서 아동은 코로나, 저출생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아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른 나이에 사회로 내몰리며 집단생활을 강요받고,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기본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상황에 놓인다.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며 보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에 일임한다. 육아 및 보육정보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보육교사가 발달지연을 의심할 때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교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발생 전 보육교사는 상당한 보육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교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아동학대가 유발되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쉽없이 계속되는 보육노동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과 폐쇄된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외부에서는 방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발견하기 어렵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로 아이와의 스킨십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도,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영상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원장, 즉 관리자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체계는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하며, 관리자의 리더십 부재와 어린이집 폐쇄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욱 강화된다.

다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추가피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에서 소외당하기도 한다. 직접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아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나 방치되고 있다. 가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CCTV 열람을 하고 싶어도 이를 요청하면 어린이집과의 신뢰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이미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열람 요청 시 10일간 대기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곧바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이슈화하면서 학부모 공동체와 멀어지고 별난 학부모라는 낙인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도 어렵게 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진상' 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의 대응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소송을 통해 '끝장보기' 단계로 나아간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학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진다. 다른 한편으로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원장의 갈등 사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 결정 시 보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중심 결정으로 교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육기관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영상정보 공개와 미공개 모두에 대해 부담감을 가진다. 공개하면 진짜 아동학대가 발견될까 봐, 미공개하면 학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한다. 때문에 CCTV 열람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어린이집 관리자는 지역에 아동학대 소문이 나면 원아모집에 차질이 생기므로 빠르게 사건을 수습하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아동은 치료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아동은 학대판결 시 학대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피해아동 가족은 전 가족이 피해자가 되어 가족 회복력이 붕괴되는 상황에 놓이며, 아동학대 신고 후 대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한다. 교사 역시 아무런 지원체계가 없으며, 무혐의 결정이 나와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어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또 판결 이후에 쉽게 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논의 및 제언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에 대한 면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은 일반적인 보육환경 개선과 관련이 있다. 주요 내용은 개방과 협력적 보육, 발달수준을 고려한 보육, 보육 전문성 강화, 교사 노동환경 개선, 실현적 예방교육, 관리자 리더십 강화, 객관적 외부자의 모니터링으로 제시되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절차지원은 아동중심의 관점에 기반해야 하며, CCTV 열람절차 개선, 학대피해자 안내, 법적절차 안내, 내부신고자 보호 등 아동학대 신고 절차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중재기구 설치, 사례결정위원회에 보육전문가 참여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대응 방안으로는 예산과 인프라 확충, 가족중심 치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처우 강화, 그리고 어린이집에 특화된 대응체계 마련이 제안되었다. 이와 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에 대한 의견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권리를 중심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피해대상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에서 성인들이 관여하게 된다.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을 처리하는 각 절차에서 아동들이 소외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간접피해아동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자체에 초점화하기보다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선 물리적 공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다수가 아동보육은 가정과 어린이집이 상호협력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며 어린이집이 더욱 폐쇄적으로 변화하여 어린이집과 학부모 간 소통이 단절되어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과거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정부가 재원을 투입했다면, 이제는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을 개방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부지원이 투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보육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이 요구된다. 면담 내용을 보면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이 현실적이지 않으며, 보육교사들은 과중한 보육노동을 하고 있어 상당한 스트레스 속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쩌면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건강한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기에 보육교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 중재기구 설치 검토가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신고가 되면 경찰이 60일 동안의 CCTV를 검토하며 사실 확인을 해야 하는데, 경찰수사 단계로 진입하기 이전에 중재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가정 내 아동학대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안에 있어 어린이집과 부모 간 아동학대에 대한 의견차를 중재하는 별도의 전문기관이 필요하는 의견이었다. 노동위원회와 같은 중재기구를 통해 어린이집과 아동 부모 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차에 대해 상호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경찰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중재기구가 설치된다면 아동권리중심의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중재기구가 학대행위자의 처벌을 회피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절차의 체계화가 요구된다. 일례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학부모는 CCTV 확인을 통해 아동학대가 아님을 확인받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상황에서 CCTV 열람 신청 후 10일의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절차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 하지만 경찰에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여 CCTV 영상정보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할 것이라는 불신감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이렇듯 불신에 기반한 CCTV 열람 요청 및 진행절차는 아동학대 신고율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경찰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절차의 각 단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에 특화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에 대해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성범죄피해자 중심으로 국선변호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아동학대, 그중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국선변호사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선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선임해야 한다면 제도운영의 목적에 따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아동을 중심에 두고 가해부모에 대해서만 대응하면 되지만,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변호사가 아동 부모와 보육교사·기관의 양측에 대해 모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의무교육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발달지연, 경계선에 있는 특수아동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들은 특수아동을 돌보는 사이 다른 아동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표출되었다. 이러한 보육환경의 열악함은 우리 사회의 특수아동에 대한 낙인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발달 수준에 따라 가능한 이른 시기에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빠른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거나, 발달이 지연되었거나, 경계선에 있는 아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보다 보통의 아이가 되길 바라는 희망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거시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문화에 기반한 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특수성에 따른 조기개입의 중요성 및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 실시한 면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때문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부모는 어린이집과 소통하며 협력적인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비교하면 연간 신고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2022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27,971건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600건으로 2.1%로 집계되었다. 초·중·고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1,602건(5.7%)인 것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모든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사, 모든 학부모에 대한 내용이 아님을 다시 한번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결론

홍영오·김남희·박미숙·추지현·윤수경

제1절 | 연구의 주요 결과

1.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현황

2022년을 기준으로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27,971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22,738건(81.3%)으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 613건(2.2%)이었다.

전체 아동학대행위자 중에는 부모가 8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대리양육자 10.9%, 친인척 3.1%, 타인 2%의 비율을 보였다. 부모 중에는 친부가 45.7%, 친모가 34.2%로 대다수 비율을 친부모가 차지하였고, 대리양육자의 경우 초·중·고교 직원이 5.7%로 가장 높았고, 보육교사가 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재학대 행위자 중에는 부모가 전체의 96.5%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친인척 2.2%, 대리양육자 0.9%, 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각 0.2%)와 보육교직원(0.1%)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는 68명으로 확인되었고,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이 82.4%(56명)로 가장 높았으며, 대리양육자 13.2%(9명), 친인척 2.9%(2명) 순이었다. 대리양육자 9명은 청소년 관련 시설종사자 4명, 보육교직원과 위탁모 각 2명, 위탁부 1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2020년의 자료를 합한 결과, 어린이집 유형 중 민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47.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미입력을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14.07%, 국공립 어린이집이 10.44%,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3.98%,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 3.24%였다.

또한 국회로부터 공개된 2018~2022년 8월 자료 확인 결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019년 68명, 2020년 75명, 2021년 80명, 2022년 8월현재 68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원장은 2019년 7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7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육교사는 2018년(75명)에 가장 많은 수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자격 취소되었다. 2019년에는 61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출한 이슈

언론에 보도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이슈를 시기, 중요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회적 관심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관련 기사의 양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2010년 이래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의 수는 우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특정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언론에 보도된 뉴스기사들의 전반적인 내용 구성을 살펴보면 주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CCTV 영상과 함께 아동학대사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사와 이후 가해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법적인 처벌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룬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나 정부정책을 다룬 기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 차원의 대응이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슈 위주의 자극적인 보도와 관련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인물, 기관, 장소, 키워드 간의 관계도를 살펴본 결과 가중치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보육교사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도출된 용어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처벌과 관련한 용어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행위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빅카인즈 관계도

분석은 분석 가능한 개체명이 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의미 범주 분류에 의한 관계를 살펴보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연관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이슈를 도출한 결과 주요 주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사법적 판단, 주요 사건, CCTV로 나타났다. 연관어 역시 앞의 키워드 트렌드 분석이나 관계도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아동학대 발생과 처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제도 현황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의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는 CCTV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과 조기발견, 보육교사와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부와 부모에 의한 정례적인 현장 모니터링 등으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CCTV 모니터링과 관련된 제도는 그간 설치 의무화와 열람에 대한 규정 마련에 있어 법적,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온 제도로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라는 기본적인 권리가 상충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당위성과 효과성에 대해 이견이 존재한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2015년 이래로 오히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건수와 비율이 감소하지 않았고 일부 해에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상을 아동학대 '발생'이 CCTV 설치 후에도 유지 또는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CCTV가 없었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사건들이 드러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발견'이 증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한 추론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일부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CCTV 모니터링 제도는 의사표현에 제약이 있는 영유아 보호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현재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근본적인 인식개선과 보육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당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교육

또한 2023년부터 연 1회 이상 실시될 예정이다. 부모에 대한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조한 참여율을 보인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은 아동학대 발견과 관련된 신고의무자 교육과 아동의 권리존중에 대한 내용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은 그 주체에 따라 정부와 부모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은 보육사업 운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정례적인 어린이집 평가제, 어린이집 지도·점검이 있으며, 부모가 주요 주체가 되는 모니터링 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부모 모니터링 사업과 어린이집 개방을 통해 부모에 의한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한 열린어린이집 제도가 대표적이다.

4. 체벌과 훈육,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

체벌과 훈육,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의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체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체벌에 대한 부모의 명확한 기준과 설명, 아동 스스로가 훈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한다는 조건 하에서 행해진 체벌의 경우 훈육이라고 응답한 비율, 즉 체벌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질 경우 훈육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체벌로 아동의 행동이 교정되었을 경우, 즉 결과에 따라 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에는 비동의 비율이 다소 높았다.

체벌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체벌이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감소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약 25% 내외로 나타나 체벌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벌의 정당성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응답이 79%로 높게 나타났으나 폭력 행동의 교정을 위해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체벌이 정당하다고 보는 의견의 비율이 48.1%에 달했다. 즉 아동에 대한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나 일부 응답자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체벌이 정당한 훈육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체벌을 가정사로 보는 비율이 35.4%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가정 내 체벌에 대한 소극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부모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가 체벌을 사용하는 이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의 경우 아동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훈육 목적 이외의 이유로 체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제시한 체벌에 대한 인식을 종합해 살펴보면 민법상 아동에 대한 체벌 조항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에 의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에 대한 체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주양육자인 부모가 가장 학대의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가해자로 응답하였다. 주양육자 다음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우려되는 잠재적 가해자이며 동시에 영유아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가해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를 비교하여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장소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핵심 보호체계인 가정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부주의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이 부주의한 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인식하는 부모의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로 인식되는 부주의한 지도 상황 중 학대로 인식한 비율이 가장 낮은 상황에서도 응답자의 23.4%는 부주의한 지도를 학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기준을 다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학대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의 응답자의 비율은 49.4%로 이는 부주의한 지도 상황과 아동학대에 대한 차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

5.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정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인해 가정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보육교직원에게 의한 학대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앞 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학대 대책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2010년 12월 인천 남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2010년 12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2013년 5월 부산 어린이집 상습 학대 사건 및 어린이집 횡령, 급식 부실 문제 이후 2013년 5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 2015년 5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제시하였다.

6. 판결문 분석 결과

판결문 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타 형태의 아동학대와도 유사했다. 다만 살인, 사체유기,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거나 성적 학대를 수반한 비율,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중상해나 상습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종경합에 그치는 경우, 피해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학대 범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낮고 벌금형의 선고 비율은 더욱 높았으며 부수처분의 부과 비율도 낮았다.

다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더욱 많았으며, 공범은 4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원장, 시설장 등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부과되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셋째, 1심에서의 무죄 선고 및 변호인 선임, 상소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으며, 이때 다툼의 주요 쟁점은 훈육의 정당성 여부로 그 비율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다. 피해자 이외의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들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의 비율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커 보였다.

7.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자 심층면접 결과

면담내용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전,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 그리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학대 발생 전 상황에서 아동은 코로나, 저출생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아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른 나이에 사회로 내몰리며 집단생활을 강요받고,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기본권리가 침해당한다는 상황에 놓인다.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보육을 맡기며 보육의 책임을 어린이집에 일임한다. 육아 및 보육정보에 제한적으로 노출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져 마찰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로 자신의 자녀에 대해 보육교사가 발달지연을 의심할 때는 이를 수용하기 어려워 교사를 비난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학대 발생 전 보육교사는 상당한 보육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 교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아동을 보육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아동학대가 유발되는 환경에 놓이기도 하고, 쉽없이 계속되는 보육노동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아이들과 폐쇄된 공간에 하루 종일 있으면 외부에서는 방 안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도 발견하기 어렵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로 아이와의 스킨십에 두려움을 느끼고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도, 노동자로서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영상 중심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원장, 즉 관리자는 생존을 위해 경쟁하며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어린이집 평가체계는 아동학대 예방과 무관하며, 관리자의 리더십 부재와 어린이집 폐쇄성으로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욱 강화된다.

다음,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추가피해에 노출되기도 하고 아동학대사건 처리과정에서 소외당하기도 한다. 직접피해아동뿐만 아니라 간접피해아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나 방치되고 있다. 가족은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CCTV 열람을 하고 싶어도 이를 요청하면 어린이집과의 신뢰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다. 이미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CCTV 열람 요청 시 10일간 대기해야 하는 절차로 인해 곧바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이슈화하면서 학부모 공동체와 멀어지고 별난 학부모라는 낙인으로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도 어렵게 된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진상' 민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자녀에 대한 죄책감과 아동학대에 대한 어린이집의 대응에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소송을 통해 '끝장보기' 단계로 나아간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학대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아동학대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진다. 다른 한편으로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원장의 갈등 사이에서 아동학대 '신고'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 결정 시 보육전문가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중심 결정으로 교사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보육기관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할 때 영상정보 공개와 미공개 모두에 대해 부담감을 가진다. 공개하면 진짜 아동학대가 발견될까 봐, 미공개하면 학부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할까 봐 두려워한다. 때문에 CCTV 열람 절차를 준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어린이집 관리자는 지역에 아동학대 소문이 나면 원아모집에 차질이 생기므로 빠르게 사건을 수습하며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만들려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송 전후, 아동은 치료지원 기준이 모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아동은 학대판결 시 학대가해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는 등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피해아동 가족은 전 가족이 피해자가 되어 가족 회복력이 붕괴되는 상황에 놓이며, 아동학대 신고 후 대안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감소한다. 교사 역시

아무런 지원체계가 없으며, 무혐의 결정이 나와도 그간의 과정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사회적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는 아동학대행위자로 지목된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고, 또 판결 이후에 쉽게 개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절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

1. 공식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한 정책 제언

아동학대에 대한 통계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아동학대주요통계」로 바뀌면서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관련 통계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국회의원실의 자료로 분석하거나 추이 분석을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사실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많은 통계들이 집적되고 있으나, 「아동학대주요통계」로 제공되는 통계 외에는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에서 수집된 자료 중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데이터를 공개하여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합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이슈 중심의 단발적 사건에 대한 반응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정책 수립, 홍보 등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행위자 처벌에 집중된 관심을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위자 처벌강화로만은 해결될 수 없으며 아동과 부모, 보육기관 종사자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이 이슈화 될 때마다 제기되는 처벌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정책들과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기

도 하나, 반대로 처벌강화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앞으로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정책의 기초는 처벌강화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셋째, 분석 결과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기사에서 언급되는 가장 주요한 주체는 보육교사이다. 이는 언론보도가 가해자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아동에 대한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중요 키워드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어린이집 학대가 피해아동과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책 또한 미흡한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아동의 회복이다.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피해아동 회복에 대한 지원은 아동학대 사례관리전담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 또한 피해자라는 특수성이 있다. 그러나 사례관리가 피해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부모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에 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부모 또한 포함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아동학대 대응체계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함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보육기관 종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 혹은 주양육자 등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먼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주요 주체는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로 양자로 구분되어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인 아동과 가해자인 보육교사 이외에 피해아동의 부모가 주요 주체자가 된다.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 아동 부모의 의견 또한 중요한 근거가 되며 어린이집과 피해아동 부모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아동학대 판단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서학대 혹은 경미한 학대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사례관리 체계는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혹은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한 긴급사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판단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복을 위한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별도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경우 그 피해자가 아동으로 한정되지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도 피해자가 된다. 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의 부모는 사건 발생 후 사법적, 행정적 처리과정과 자녀의 회복을 위해 많은 물질적·심리적·신체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 아동보호체계 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후관리 체계는 주로 부모가 가해자인 가정 내 학대피해아동을 중심으로 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서 피해아동 부모의 회복에 대한 관심과 대책에 대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 또한 피해자로 보고 부모의 회복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시 부모는 아동의 회복을 위한 치료는 물론 이외의 사법적, 행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이상의 많은 과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절차가 부재하다. 모든 지자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나 담당 공무원의 경험과 지식 부족, 잦은 보직변경 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이다. 이에 따라 피해 아동의 부모가 정부차원의 안내와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알아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학대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참조할 수 있는 별도의 대응 매뉴얼을 정부차원에서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배포하는 방안이나, 별도의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피해아동 부모 차원에서의 대응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아동학대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아동학대 관련 정책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합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그간의 정부차원의 대책들은 이슈

가 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립되어 왔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단편적, 피상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어린이집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아동학대 관련 대책은 특정 촉발사건이 계기가 되어 급증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전략의 특성을 보인다. 유사한 대응책들이 반복되는 형식으로 이어지는 것에서 한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그간 제시된 대책들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나, 처벌에 중점을 두어서는 그 한계가 명백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열악한 근무환경,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 등과도 관련이 깊다.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휴게 시간 및 휴가일수, 급여 및 복지수당 등에서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1⁵⁹⁾). 보육교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낮은 처우에 의한 직무스트레스는 결국 아동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의 처벌강화 중심의 정책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면 다음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보육환경의 개선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가차원의 대책들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발생에 초점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 발생 후 아동학대 피해자인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은 피상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 있을 뿐이며 미흡함과 한계가 존재한다. 학대 발생을 낮추는 예방적인 접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예방적인 접근에 대한 강조가 사후대응에 대한 상대적인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4. 아동학대 관련 제도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아동학대 관련 제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합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CTV 모니터링과 아동학대 방지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사

59)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아동학대 증감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CCTV 모니터링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CCTV 모니터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상황이나, 여전히 존재하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부모 및 아동 대상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내용은 신고의무자로서의 보육교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었으며, 일부 아동권리 존중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보육교사에 의해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권리주체로 보는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여 최근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권리 존중에 중심을 둔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발간되었다(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해당 매뉴얼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의 기준과 부주의한 지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육 중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예와 같이 근본적인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 교육 내용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보육교사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전달의 문제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징후를 조기포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모대상의 아동학대 교육은 현재 주로 지자체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에 접근성이 낮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린이집을 전달체제로 활용한 부모교육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부모대상의 아동학대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접근성이 증가되어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아동학대 교육은 보육교사와 부모가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와 전문 인력이 배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과도기 단계에 있는

아동 대상의 학대 예방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내용과 전달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전달의 객관성과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전달체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보육교사와 부모 간의 신뢰 관계 향상을 위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신뢰 관계 강화를 위해서는 개방적인 보육환경에서 정기적인 부모 참여를 통해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에서 제시한 부모 모니터링 제도와 열린어린이집 제도 운영의 확대 및 내실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 모니터링 제도는 부모가 보육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평가지표를 통해 영유아 학대와 권리존중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과 권리존중에 대한 정보 안내와 관련된 지표를 포함하고 있어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의 측면에서 간접적이지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기능 측면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한정된 시간동안 사전 고지된 공개적인 방문으로는 보육현장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는 영유아 학대나 권리존중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부모 모니터링 제도를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한 평가 위주의 현재의 점검형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부와 부모 및 보육기관 종사자가 함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아동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는 지자체에서 대표로 선출한 부모가 지역 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으나 반면에 피상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모 모니터링단의 구성을 다원화하여 재원아 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부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열린어린이집 제도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폐쇄적인 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보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주목적으로 한 기존의 부모 참여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최혜영, 2017). 열린어린이집은 부모의 일상적 참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함으로 아동학대 예방의 효과와

더불어 부모와 보육교직원 간 신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와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개방과 부모의 참여 확대가 아동학대 예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유계숙 외, 2016)⁶⁰). 이러한 조사결과는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40%를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열린어린이집 형태로 운영되도록 국가차원의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해당 제도의 확산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인식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합의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판단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와 구분되는 부주의한 지도의 개념의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주의한 지도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개념에 대한 보육현장과 부모의 의견 일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과 그 차이를 보다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개념이 보육현장에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까지 해당 개념에 대한 국민적인 인식 수준이 낮다. 보육현장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도 부주의한 지도의 개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교육하여 보육교사와 부모 사이의 부주의한 지도와 학대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아동 당사자에게도 아동의 수준에 맞는 아동학대와 부주의한 지도에 대한 교육으로 아동 당사자가 해당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0) 유계숙·양수진·조선아(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 10(1), 241-268.

6. 판결문 분석을 통한 정책 제언

아동학대 관련 판결문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합의와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타 형태의 아동학대와도 유사했다. 다만 살인, 사체유기,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거나 성적 학대를 수반한 비율,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중상해나 상습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종경합에 그치는 경우, 피해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학대 범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낮고 벌금형의 선고 비율은 더욱 높았으며 부수처분의 부과 비율도 낮았다.

다만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한 시설에서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지속되는 경우가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더욱 많았으며, 공범은 4명 이상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보육교사들의 상호 묵인과 방조 속에서 학대가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바, 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조직 차원의 문제, 예컨대 고립된 보육 노동과 상호지지가 결여된 열악한 근무환경(장영인·정민자, 2016; 이명순, 2017)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원장, 시설장 등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가 부과되는 직위에 있는 이들이 직접 보육에 참여하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도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원감도 포함된다. 학대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들의 어려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관리자 등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지만(이세라피·임여정, 2021) 이들의 학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1심에서의 무죄 선고 및 변호인 선임, 상소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으며, 이때 다툼의 주요 쟁점은 훈육의 정당성 여부로, 그 비율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보다 높았다. 피해자 이외의 다른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보육 과정에서의 특정한 행위가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의 훈육인지 여부는 판단이 어렵고, 동일한 학대 사례를 두고 부모와 보육교사

간 인식의 차이도 보고되고 있다(이지혜·김숙령, 2018). 학대 의심으로 인한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오히려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윤주연 외, 2020; 이상화·김순임, 2022)을 고려할 때, 학대 신고가 만연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게 사례 판정의 적정성 제고나 조정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고인들의 경우,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국선 변호인 선임의 비율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아, 사선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커 보였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법적 지원(변호인 선임), 심리적 지원, 그 범위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

앞 장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한 상황적 특성을 아동, 가족, 교사, 원장의 범주에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은 여러 대안이 각 집단에 통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므로 집단을 구분하기보다 시간적 순서에 따라 1) 예방, 2) 절차지원, 3) 보호·지원, 재학대 예방으로 주제를 도출하였다.

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 의견은 대체로 일반적인 보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언급되었다. 주요 주제는 ‘개방과 협력적 보육’, ‘발달수준을 고려한 보육’, ‘보육전문성 강화’, ‘교사 노동환경 개선’, ‘실현적 예방교육’, ‘관리자 리더십 강화’, ‘객관적 외부자의 모니터링’으로 도출되었다.

면담참여자 다수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다는 인식에 기반한다. 실제 아동학대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상호 기준 차이와 이해 부족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하는 것이라는 평가다. 따라서 상호 이해를 위해 보육공간을 개방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학부모로 하여금 어린이집의 상황을 이해하고 협력적 보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부모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현행처럼 보육기관에 부모교육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리

적 공간개방은 당연히 기능보강 비용이 소요되므로 국가는 CCTV 설치에 비용을 지원했듯 공간개방에 대한 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아동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보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하기 전에 발달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세분화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이들은 점점 개별화되고 특수아동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아동 발달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여 전문적인 보육이 필요한 경우 그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육교사는 학부모에게 아동발달 수준에 대해 의견을 전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학부모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서비스로 아동발달을 평가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 대 아동수 비율을 연령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영유아발달은 월령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령보다 월령으로 세분화하여 교사 대 아동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되었다.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는데, 특히 대안적 교육방법을 계속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금지해야 할 보육방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장려해야 할 보육방법 및 대안적 방법을 많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교사의 노동환경 개선이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은 이미 오랫동안 사회적 요구가 있었고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으나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력충원은 곧 노동자의 권리인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휴게시간이 확보되지 않은 보육교사는 하루 종일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그대로 영유아에게 전달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공간의 분리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보다 실현적인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너무 많고 그 방법이 대부분 온라인 동영상 시청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의견을 주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례중심, 소집단 토의 등 실현적 방법을 통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방교육의 콘텐츠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근의

동향을 반영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저녁이나 주말에 교육에 참여할 경우 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교육참여를 동기부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원장, 즉 관리자의 리더십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모아졌다. 원장, 즉 관리자가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면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동보육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와의 의견상충이나, 학부모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도 상당부분 원장이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장의 관리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장에게 아동학대 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원장의 아동학대 예방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CCTV는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CCTV 영상 점검관리 의무를 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아동학대 예방의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외부체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표 6-1>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예방

주제	소주제	내용
개방과 협력적 보육	보육공간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에게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볼 수 있게 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음 • 보육공간을 개방하면 떳떳해 질 수 있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의심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있음 • 특정 아동의 부모가 잠깐 왔다 가면 아이들이 어수선해질 수 있지만, 그것이 일상화가 되면 됨
	학부모 참여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활동에 수시로 참여하며 상호협력적 보육에 참여해야 함 • 차량운행을 지양하고 학부모가 어린이집으로 수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제도적 부모교육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바우처 수령시 부모교육 의무화 • 원장이 부모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보다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의무교육 실시. 원장이 교육하는 것은 잔소리로 받아들임
	공간개방 기능보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의 공간적 개방성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지원. CCTV 설치지원처럼 통유리설치 등 기능보강 지원
발달수준을 고려한 보육	아동발달 사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입소 전에 아이 기질, 부모 성향 파악 등을 의무적으로 해주면 좋겠음

252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주제	소주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할 때 아이가 너무 특수하다고 생각되면 전문기관 인계가 되어야 어린이집 생활에 어려움이 줄어들 것임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순회지원을 와서 특수성을 보이는 아이를 발견하고 부모상담을 조언하여 담임, 순회지원교사, 학부모가 상담을 한 사례가 있음(확대추진)
	아동발달 세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여부를 포함하여 월령에 따라서도 아동발달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 장애, 월령 등을 고려하여 보육서비스를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함
보육 전문성 강화	보육교사자격 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만으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격취득이 너무 쉬움. 보육교사 진입 시 가치를 높이는 게 필요함
	대안적 보육방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 말라'는 것은 많지만 대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부족함. 대안적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면 좋겠음
교사 노동환경 개선	현실적 인력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대비 아동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함 • 아동이 낯설어 하지 않도록 어린이집에 상주하는 비담임교사 인력 충원이 필요함 • 인력이 현실적으로 충원되어야 교사스트레스를 낮추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음
	시공간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심시간, 휴게시간 확보 • 보육공간과 업무공간을 분리하여 적합한 근로환경 조성
실현적 예방교육	사례중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화된 사례중심, 소그룹 토의 등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필요함
	아동학대 적용범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다른 아동학대 적용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함.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깐 예전에 했던 것들이 지금 아동학대가 될 수 있음을 모름(예: 정서학대)
	교육시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녁, 주말 교육 시 근무시간 인정
관리자 리더십 강화	원장 관리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가 관리를 철저히 하면 아동학대는 일어나지 않음 •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고, 관리하면 교사들도 조심함 • 교사가 보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협의하는 역할 수행 필요함
	아동학대 예방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점검 후 후속조치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리자의 아동학대 예방 책임 강화 필요함
객관적 외부자의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모니터링을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인이 객관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 필요함

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절차지원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신고, 수사 과정은 절차지원의 대안으로 대주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동중심의 관점', '아동학대신고 절차지원', '중재기구 설치', '사례결정시 보육전문가 참여'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어린이집 아동학대 절차지원에 있어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아동의 발달단계 수준에 맞추어 현재 아동이 처한 상황과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안내하는 과정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사건의 주체가 아동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모든 진행 절차에서 아동중심(children-centered)을 고려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아동학대 조사 중 필요한 경우 즉각분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상은 즉각분리가 되지 않고 피해아동이 계속해서 2차 피해를 당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는 물론 다른 아동들에게 트라우마를 주지 않도록 즉각분리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비체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CCTV 열람 요청 시 10일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만으로도 절차적 불신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때문에 이러한 불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 열람 절차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 외 학대피해신고 후 체계적으로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내부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때 내부신고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대피해 아동가족과 학대행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중재기구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의심만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면 곧바로 경찰이 출동한다. 면담참여자는 이를 ‘모 아니면 도’라고 표현하였다. 극과 극을 치닫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처리는 서로에게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재기구를 통해 중간절차를 마련하고 회복적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직 구성은 피해자-가해자의 입장을 각자 대변하는 이분법적 구성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중립적 구성체계가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뿐만 아니라 중재기구의 결정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적권한을 가진 기구형태로 구성되어야만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례결정위원회 등 아동학대 사안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보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의미가 있었다. 사례결정위원회에 아동학대 전문가가 참여하지만, 대체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구성되어 어린이집 보육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생활지도 사안과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보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표 6-2〉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절차지원**

주제	소주제	내용
아동중심의 관점	절차 안내	•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아동에게 아동학대 처리절차, 결과에 대해 안내
	어린이집 즉각분리 지침 마련	• 학대피해 아동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 지침 명료화 및 실효성 있는 이행 필요
아동학대 신고 절차지원	CCTV 열람 절차 개선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CCTV 열람에 감정적, 불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식적 절차개선 필요
	학대피해자 안내	• 학대피해 신고를 한 이후 수사절차, 행정처분과정, 서비스기관 등 전체 내용을 안내하고 연계해 주는 서비스체계 필요
	법적절차 안내	• 어린이집과 개인적인 마찰을 줄이고 명예훼손 등 역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주요한 내용을 안내해 주는 절차 필요
	내부신고자 보호	• 내부자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신고 절차 지침을 명확화 하고, 내부신고자 보호 방법 마련
중재기구 설치	회복적 중재	• 신고하자마자 당장 경찰조사, 소송,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중재할 수 있는 위원회 체계가 바람직 • 서로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생활사고는 치료비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함 • 경찰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음
	중립적 구성	• 아이와 부모는 착하고, 보육교사는 악한, 이분법적 사안이 아님. 여러 쟁점을 중재할 기구 필요 • 양쪽을 다 절충할 수 있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체계 필요
	법적 지위 담보	• 중재기구는 법적기구로 구성.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함
사례결정위원회 보육전문가 참여		• 아동학대 사례결정위원회에 보육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함. 안전관리, 생활지도, 어린이집운영 등 상황을 잘 알고 있어야 사례판정에 타당성 확보 필요

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호·지원, 재학대 예방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호·지원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예산, 인프라 확충’, ‘가족중심 치료’,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처우 강화’, ‘어린이집 특화 대응체계 마련’이 언급되었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지원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되는 한계로 연말에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면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며,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마련하거나, 민간상담기관 이용 시 보험급여 적용을 고려하는 등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되었다. 지역의 서비스 확충도 요구된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아동학대

발생으로 어린이집이 폐원해도 대체할 자원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지만, 지역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아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학대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 내 아동학대도 가족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처럼 어린이집 아동학대 역시 가족중심의 치료지원이 필요하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성은 학대행위자와 분리되기 때문에 재학대 위험은 적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족을 위한 치료지원이 다소 부족하다. 하지만 소송과정에서 학부모 역시 죄책감 등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소송에 몰입하다 보니 가족 내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가족의 일상회복에 초점화하고 부모치료를 지원하는 등 가족중심의 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처우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동학대 피해가족의 입장에서는 학대교사의 재취업을 제약하고 원장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희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보육교사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범죄자로 살지 않도록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특화된 대응체계 마련이 제언되었다.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대응체계는 주로 가정 내 아동학대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포섭하여 대응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선변호사 역시 주로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초점화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영역의 국선변호사 인력양성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학대에 초점화하고 있는데 그 영역을 확장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가능한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표 6-3>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응 개선안: 보호, 지원, 재학대 예방

주제	소주제	내용
예산, 인프라 확충	예산확보	• 피해아동가족이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방안 마련
	보험급여 적용	• 학대피해아동가족 심리치료 보험급여 적용
	지역 서비스 확충	• 지역은 자원이 매우 부족함. 특히 장애아동어린이집 경우는 폐원을 하면 대안이 없음. 서비스 자원 확대 필요함
	보육공백 지원	• 하루아침에 폐원하여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있어야 하며,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이후 전원 등의 절차 이행
가족중심 치료	일상회복에 초점	• 학대행위자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재학대피해 위험은 적음. 아이와 가족 모두 일상회복이 가장 포커스임
	부모치료 지원	• 가정, 직장 그리고 소송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치료지원 강화 필요함(예: 술, 정신과 약물 등 의지하지 않도록 치료지원) • 외부인에 의한 학대이므로 부모 역할이 중요. 아이가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려면 학부모가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함
재학대 예방을 위한 처우 강화	재취업 제약	• 아동학대 범죄경력 있는 교사에 대해 재취업 제약이 필요함
	원장처벌 강화	• 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의무가 있음. 원장 관리감독이 철저하다면 교사들이 아동학대를 할 수 없음. 원장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
	학대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체계화	• 학대행위자에 대해 충분한 교육 등 처우를 통해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범죄자로 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함
어린이집 특화 대응체계 마련	아동학대 대응체계 다양화	• 현재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있으나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가 많아 대응체계 역시 가정 내 아동학대 중심임. 아동학대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함
	국선변호사 인력양성	• 국선변호사는 성폭력, 장애, 아동학대 인력풀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중심으로 세팅되었음 •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를 대해야 하는 등 가정 내 아동학대와 차이가 있으므로 그 특수성에 맞는 인력풀 구성이 필요함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 전문성 강화	• 현행 아보전 체계는 가정 내 아동학대 중심이므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함

제3절 | 종합 결론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마련하였고,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조기 개입을 위한 법제도 및 정책의 지속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지난 2년간 가정 내 아동학대와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의 발생구조를 밝혀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1. 아동학대 대응체계

2022년의 1차 연도 연구(장다혜 등, 202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사법적 대응과 복지적 대응이 결합되어 있다. 아동학대 복지적 대응의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통한 피해아동 보호, 치료 및 복지 증진 촉진”에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전반에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전문화하면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를 통해 판정하고, 이에 따른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을 결정하는 절차(사례결정위원회)를 마련함으로써, 조사-판정-사례관리로 이어지는 복지적 대응에서의 ‘행정적 개입’ 모델을 구축하였다.

아동학대처벌법 상 아동학대 대응체계로서의 ‘사법적 대응’은 범죄적 성격의 아동학대행위에 대응하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사법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처벌적 개입’을 통한 형사사건처리가 가능하지만,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근거하여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보호사건처리절차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접근금지 및 친권 제한 등)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교육명령(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등)과 같은 ‘보호적 개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장다혜 등, 2022).

아동학대는 아동의 돌봄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abuse)만이 아니라 방임(neglect)이 모두 아동학대(child maltreatment)로 개념화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기본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가정 내에서의 양육과 보호의 실패에 그 가정을 조력·지원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가정 내에서 양육과 보호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범죄화된 성격의 아동학대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구축력과 강제성이 요청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법적 대응체계가 복지적 대응체계와 함께 구축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변화하였다(장다혜 등, 2022).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의한 맞벌이 가구의 증가, 무상보육 실시 등으로 인해 가정과 더불어 어린이집이 영유아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주요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는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보육교직원에게 의한 학대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아동학대 대책과는 별개로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2010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 2013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2015년도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사후 대책으로서 근절대책 중심으로 대책이 제시되어 왔으나 아동학대 예방대책 중심의 대책 수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방대책을 보다 선제적이고 중점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호주의 다학제적 팀 접근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다학제적 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이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함께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관 간의 대응을 협력하고 계획하기 위한 사례검토 혹은 정보 공유과정을 가지게 된다.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하되 다양한 기관의 담당자들 사이의 협조를 통해 사례 검토 회의를 넘어 담당자 간의 공동 위치를 통해 팀 구성원 간의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사례 검토, 컨설팅 및 기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정 내 아동학대와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정 내 아동학대를 5개의 집단으로 유형화한 바, 전체의 2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재구성형으로 친부모 일방과 그 이성에 상대가

공동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가정이 대부분으로서, 학대 발생 시 아동과 가해자의 동거 기간이 1년 이하 혹은 5년 이하인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아 아동과 가해자의 관계성이 시간 측면에서는 짧은 특징을 갖고 있었다. 학대 상황에서는 아동에 대한 개인적 짜증, 분노 표출 형태 비율이 높고 공범의 비율도 두 번째로 높았다. 가족재구성형은 가족 재구성 이후 보호자 관계의 불안정성 혹은 보호자 관계가 우선 되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거나 지속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왜곡훈육형(23.5%)으로, 공격형(18.1%)과 유사하게 친부모 양쪽이 아동을 상대적으로 장기간 양육해오던 와중에 일방적인 분노 표출을 하고 있었지만 왜곡훈육형은 공격형과 달리 별다른 양육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았고, 훈육 과정에서 학대가 이뤄지거나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이 두드러졌다. 대체로 돌봄부담형은 빈곤이나 돌봄 등이 양육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주로 공범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 비율은 가해자 단독범이 아내학대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야기하는 아내학대중첩형의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었다(장다혜 등, 2022).

가정 내 아동학대와 달리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사례가 많지 않았고 유형이 다양하지 않아 판결문을 통한 사례들을 유형화할 수 없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는 여타 형태의 아동학대와도 유사했다. 다만 살인, 사체유기,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거나 성적 학대를 수반한 비율, 범죄 및 수사 경력이 있는 피고인의 비율이 가정 내 아동학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고,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중상해나 상습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동종경합에 그치는 경우, 피해가 1회에 그치는 경우가 훨씬 많아 학대 범행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는 크게 교사요인, 아동 및 부모요인, 환경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바, 판결문에서 확인된 요인으로는 먼저 교사요인으로서 교사의 전문성 및 능력, 번아웃(소진), 과도한 업무와 휴식시간 부족, 직무스트레스, 학대에 대한 인식정도, 보육교사의 인성·성격·정신문제, 윤리의식, 환경요인으로는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의 불명확성, 적정 교사 수 대비 아동 수 초과, 과도업무, 장애아 보육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담당 아동의 수가 적정 인원을 초과한 상태에서 업무가 과도하고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울거나 보채거나 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떼를 쓰거나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을 때 이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살핌이 강조되는 보육교사의 경우 영유아를 보살필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면서 긍정적인 감정만을 표출하도록 기대되므로 강도 높은 감정노동 또는 정서노동을 하게 된다. 심지어 보육교사 1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보육교사 대 아동의 비율이 높은 상황⁶¹⁾에서 좋은 말로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보살피는 보육현장에서는 상당한 양의 감정노동 또는 정서노동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은 상황이며, 정서노동과 관련된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 역시 미비한 실정이다(신동주·김승욱, 2016). 최근 서울시의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시범사업’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1년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정책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었고(보육교사 초과근무 및 기타 업무 시간 감소, 보육교사 스트레스 및 업무 피로도 감소, 일-생활 균형 개선 등) 교사와 영유아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안전사고도 대폭 감소한 것으

61) 부록 3.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 통계 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가)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만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로 나타났다(서울시 보도자료, 2022.07.22.일자)⁶²⁾⁶³⁾. 비록 이 사업이 안심보육환경을 마련하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시행되어서 분석결과에 아동학대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육교사의 업무스트레스나 피로도가 감소되는 등 근무여건이 개선된다면 아동학대 역시 감소될 것이다.

보육의 질뿐만 아니라 보육교사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정책은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일 수 있고(김송이·김명순·김한나, 2020), 특히 보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아동당 교사비율을 개선⁶⁴⁾하려는 과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기도 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를 보살피면서 행해지는 정서노동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정서노동 또한 상당한 실정으므로 이를 통한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정도가 보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애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므로(박미경·이홍재, 2022), 이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긴장 완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특히 최근 어린이집에서의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면서 잠재적 아동학대행위자로 보기도 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므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 및 정서노동과 관련된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과 더불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의 어려움에

62) 서울시 보도자료, 2022.07.22., “서울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이니...안전사고 3배이상 감소”

【시험사업 전·후 비교 : 보육교사 대상 설문 분석결과 요약】

- 영유아-교사 간 상호작용(평균)* : 만0세반 4.05 → 4.47, 만3세반 4.06 → 4.39
* 5점 만점 기준(1점-5점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임
-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 만0세반 3.25 → 2.69, 만3세반 3.87 → 2.77
* 5점 만점 기준(1점-5점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함
- 보육교사 신체 피로도* : 만0세반 3.76 → 2.80, 만3세반 4.13 → 3.03
* 5점 만점 기준(1점-5점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피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함
- 근무시간*(시간) : 만0세반 (1차)9.18 → 9.12, 만3세반 9.70 → 9.24
* 3차례 조사 중 2차 조사 시 0세반 8.15시간, 3세반 8.42시간으로 감소하였으나, 3차 조사 시점인 '22년 2월은 신학기 준비로 인해 근무시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분석
- 동료 교사와의 협력시간(분) : 만0세반 73.6 → 92.0, 만3세반 86.5 → 92.3

63) 2023년에는 성동구청에서도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를 법정 기준 보다 축소하여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소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성동형 보육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성동구 보도자료 2023.08.17. “성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실시...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줄인다”)

64) 해외의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및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도남희·구자연·신나리·강규돈(2022)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험사업 모형개발 기초연구’ 참조.

대해서도 알려주어 이들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재욱, 2012; 박으뜸·최인이, 2023; 조미숙·전홍주, 2016; 한유진·최인숙·이대균, 2015). 사실 이들은 부모 다음으로 영유아 발달과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서 돌봄 서비스 또는 돌봄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이숙진, 2011; 장지연, 2020; 정효정, 2021; 함선유·권현지, 2017)에 대한 인식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즉,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보육교사의 보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애 및 사명감만으로 보육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돌봄노동 및 감정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대 아동의 비율 개선 등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식통계 및 빅데이터분석, 판결문 분석 및 다양한 아동학대 관련인에 대한 면담에서 드러난 아동학대의 원인과 현실을 고려하여, 충분하지 않은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보육에 대한 열의와 교육애 및 사명감만으로 보육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돌봄노동 및 감정노동의 가치 및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 대 아동의 비율 개선 등 이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앞 절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대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훈육과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 이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응답자의 60.7%에 불과하였다. 물론 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21년 4월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녀체벌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못한 것에 비해서 인식률이 상당히 증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한국일보, 2021.05.20.일자)⁶⁵. 당시에도 아동학

65) 한국일보, 2021.05.20., “자녀체벌금지법 인다” 40% 불과... 훈육·학대 구분 모호,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716240001150?rPrev=A2021062814510002291>(검색일: 2023.11.29.).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30~50대 일반 국민으로 조사 대상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비율이 74%에 이를 정도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으나 자녀체벌금지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밖에 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 자녀 체벌금지법에 대한 찬성의견은 76.6%이었으며, 여성이 81.2%로 남성의 72.2%에 비해 상대적으로 찬성의견이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 70.5%로 가장 낮았고, 자녀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즉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72.8%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찬성비율이 65.4%로 가장 낮았고, 인천/경기 지역이 80.8%로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가사를 전담하는 경우의 찬성비율이 82.4%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판매직이 70.0%로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 <표 6-4> 자녀체벌금지법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전 체		(1,000)	76.6	23.4
성	남성	(511)	72.2	27.8
	여성	(489)	81.2	18.8
연령	30대	(283)	71.7	28.3
	40대	(348)	78.7	21.3
	50대	(369)	78.3	21.7
권역	서울	(187)	75.4	24.6
	인천/경기	(338)	80.8	19.2
	부산/울산/경남	(145)	80.7	19.3
	대구/경북	(92)	68.5	31.5
	대전/세종/충청/강원	(134)	77.6	22.4
광주/전라/제주		(104)	65.4	34.6
자녀수	1명	(473)	79.9	20.1
	2명	(456)	74.3	25.7
	3명 이상	(71)	69.0	31.0
자녀 연령대	미취학자녀	(302)	72.8	27.2
	초등자녀	(409)	75.6	24.4
	중/고등자녀	(481)	77.3	22.7
	성인자녀	(164)	78.0	22.0

구분		사례수	찬성	반대
가구 소득	300만원 미만	(112)	70.5	29.5
	300~600만원 미만	(524)	79.6	20.4
	600만원 이상	(364)	74.2	25.8
직업	전문직/고위관리직	(117)	76.1	23.9
	사무직/준전문직	(481)	76.5	23.5
	서비스/판매직	(99)	70.7	29.3
	기능/생산/기계관련직	(80)	70.0	30.0
	가사전담	(165)	82.4	17.6
	정년퇴직/무직/기타	(58)	81.0	19.0
학력	고졸 이하	(103)	76.7	23.3
	대학교 졸업	(782)	76.6	23.4
	대학원 졸업 이상	(115)	76.5	23.5

자녀 체벌금지법에 대한 찬성의견이 76.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체벌을 훈육과 관련해서 질문했을 때는 다소 체벌에 대해 관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은 “어떠한 형태의 체벌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이가 체벌을 받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 훈육이다”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61.4%나 되었고, “부모가 자신의 화나 기분에 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며 행해진 체벌은 훈육이다”에 대해서는 59.6%, “체벌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훈육이고, 기준없이 시작했다면 학대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58.9%, “자녀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58.9%나 되었다.

▶▶ <표 6-5> 훈육 및 학대에 대한 의견

단위: %

	내용	①	②	③	④	동의여부	
						①+②	③+④
1	체벌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훈육이고, 기준없이 시작했다면 학대이다	16.8	24.3	42.8	16.1	41.1	58.9
2	아이가 체벌을 받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 훈육이다	14.8	23.8	49.6	11.8	38.6	61.4

	내용	①	②	③	④	동의여부	
						①+②	③+④
3	부모가 자신의 화나 기분에 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며 행해진 체벌은 훈육이다	17.3	23.1	48.0	11.6	40.4	59.6
4	체벌을 받지 않은 아동이 체벌을 받은 아동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34.0	37.8	22.5	5.7	71.8	28.2
5	회초리(매)를 아끼면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없다	35.6	43.3	17.0	4.1	78.9	21.1
6	체벌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는 결과를 낳았다면 훈육이다	19.1	33.1	42.0	5.8	52.2	47.8
7	자녀체벌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다	25.0	39.6	30.8	4.6	64.6	35.4
8	체벌은 다른 훈육방식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므로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	32.5	46.5	18.5	2.5	79.0	21.0
9	자녀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17.3	34.6	38.9	9.2	51.9	48.1
10	아이가 부모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을 경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5.6	9.4	41.4	43.6	15.0	85.0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또한, “아이가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30.3%,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에 대해서는 41.2%나 되었다. 다만, “체벌을 해야만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은 13.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 <표 6-6> 체벌 및 학대에 대한 인식

단위: %

	내용	①	②	③	④	동의여부	
						①+②	③+④
1	아이가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24.6	45.1	25.6	4.7	69.7	30.3
2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19.0	39.8	36.9	4.3	58.8	41.2
3	체벌을 해야만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	42.6	43.8	12.3	1.3	86.4	13.6
4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24.8	49.4	22.1	3.7	74.2	25.8
5	학대하는 부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4.0	20.3	48.7	27.0	24.3	75.7

*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③ 대체로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

체벌정도에 따른 훈육 및 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체벌의 강도가 약하면’ 훈육이라는 비율이 39.2%, ‘체벌의 빈도가 적으면’ 34.5%, ‘체벌의 목적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47.4%, ‘체벌에 고의성이 없으면’ 훈육이라는 비율이 36.9%나 되었다. 즉, 자녀 체벌금지법에 대한 찬성의견이 76.6%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의 강도가 약하거나 빈도가 적거나, 목적이 아이의 행동 교정을 위한 것이거나, 고의성이 없다면 훈육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7> 체벌정도에 따른 훈육 및 학대에 대한 인식

단위: %

내용		훈육	학대
1	체벌의 강도가 약하면(약해도)	39.2	60.8
2	체벌의 빈도가 적으면(적어도)	34.5	65.5
3	체벌의 목적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라도)	47.4	52.6
4	체벌에 고의성이 없으면(없어도)	36.9	63.1

또한,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이유로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라는 내용이 부모에 대해서는 23.3%,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34.1%나 되었다.

▶▶▶ <표 6-8> 훈육을 위해 체벌하는 이유

단위: %

구분		부모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교사
1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49.9	40.1
2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23.3	34.1
3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14.2	12.6
4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8.3	8.3
5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3.4	3.6

이상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해 보면, '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금지'하고 있는 노르웨이나 스웨덴 등 북유럽에 비해 여전히 훈육을 위한 체벌을 일부 용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캠페인이나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체벌이외에 훈육방법에 대해서 부모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

어져야 할 것이다.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 스웨덴⁶⁶⁾에서는 당시 법무부가 이 법에 관해 대대적인 대중 교육 캠페인을 벌였다. “때리거나 때리지 않고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팜플렛을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배포하였으며, 부모는 아동 및 산부인과 진료소에서 정보를 받았고, 가족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토론을 장려하기 위해 체벌금지에 대한 정보를 우유팩에 인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높아져서, 1981년에는 스웨덴 가정의 90% 이상이 체벌 금지에 대해 알았다. 자녀체벌금지 이후 성인의 체벌 승인 및 사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대에는 어린이의 절반 가량이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나 1980년대에는 이 비율이 약 3분의 1로 떨어졌고, 2000년 이후에는 불과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Modig, 2009;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3에서 재인용).

2014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청년부터 중년까지 3개 집단(1958, 1981, 2011)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53년 동안 스웨덴에서 권위주의적인 양육 관행과 가족 역할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에 뺨을 맞았다고 보고하는 참가자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58년 코호트와 1981년 코호트 참가자의 체벌 경험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2011년 코호트 참가자는 1981년 코호트 참가자에 비해 어린 시절에 뺨을 맞았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다. 1958년에는 참가자 중 20%가 부모에게 자주 뺨을 맞았다고 답했으나, 981년에는 그 수치가 18%, 2011년에는 2%로 감소했다. 1958년 코호트 참가자의 17%가 부모가 자신을 때린 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2011년 코호트 참가자는 그 수치가 77%로 증가했다. 53년 동안 참가자들이 부모로부터 따귀를 맞을 가능성은 93% 감소했고, 1981년부터 2011년 사이의 감소율은 92%였다. 이

66)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2020). 1957년에 체벌로 자녀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부모를 면제하는 법은 형법에서 삭제되었고, 1966년에는 아동 및 부모 법에서 “견책”을 허용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육아에 있어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체벌은 1979년 아동 및 부모법 개정안(6조 1항)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었다. “어린이는 보살핌, 안전 및 좋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은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대우받아야 하며 체벌이나 기타 굴욕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금지 사항은 헌법을 구성하는 4개 법률 중 하나인 정부문서 2장 5조에 반복적으로 명시되었다. “모든 사람은 체벌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형법은 폭행(“타인에게 신체 상해, 질병 또는 고통을 가하는 것”)을 최대 2년의 징역으로 처벌하거나 경미한 경우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3장 제5조). 가중 폭행은 1년에서 6년 사이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3장 제6조).

연구는 또한 1981년에서 2011년 사이에 권위주의적인 양육 관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평등주의적인 가족 환경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를 시사한다(Trifan 등, 2014;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3에서 재인용).

1983년 체벌을 금지한 핀란드 역시 체벌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대중교육 캠페인을 벌였으며,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의 2010-2015 실행계획인 “Don’t hit the Child”을 통해 아동 체벌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1;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3에서 재인용). 특히 체벌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아동 그룹(어린 아동, 장애 아동, 이민자 가족의 아동 포함)에 대한 체벌 감소에 중점을 두었다. 2020년에는 비폭력 아동을 위한 새로운 국가 계획(National Plan for Non-Violent Childhoods) 2020-2025가 승인되었다. 이런 노력으로 인해 체벌금지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아져서, 2012년 조사에 따르면 97%의 부모가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2012;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성공적인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해 볼 때, 체벌금지에 대한 법제화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자녀에 대한 징계권이 폐지되면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도 금지되었으나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국민이 거의 40%나 될 정도로 많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교육⁶⁷⁾ 및 캠페인과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학교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아이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부모들은 체벌이 학대라는 점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앞의 <표 2-44>에 제시된 결과는 일반 국민의 의견이긴 하나 학대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보육교사 또한 학대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한 정의를 사례를 들어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체벌금지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End

67) 아동학대대응체계를 알아보기 위한 노르웨이 출장에서 만난 유아교육 전공의 이민자 등 여러 명의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해 준 내용은 노르웨이에 이민을 와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이 들은 내용이 “아동에게는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금지되어 있고, 아동학대는 엄하게 처벌 받는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3), 스웨덴은 1970년대에는 어린이의 절반이 정기적으로 구타를 당했으나, 2000년대에는 10% 미만에 불과하였고, 핀란드는 성인의 체벌 수용률이 1981년 47%에서 2014년 15%로 감소했다. 독일은 1992년에는 젊은이의 30%가 매를 맞았으나 2002년에는 그 수치가 3%에 불과하였고, 뉴질랜드의 체벌 찬성률은 1981년 90% 이상에서 2018년 19%로 감소했다. 루마니아는 체벌 금지 후 10년 동안 보호자의 체벌 사용이 22% 감소했으며, 심각한 체벌 형태에 대한 아동의 보고도 절반으로 줄었고, 일본의 체벌 승인율은 4년 만에 19% 감소했다. 영국의 웨일즈는 '때로는 아이를 때릴 필요가 있다'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5년 만에 49%에서 62%로 증가하였다.

즉 체벌금지법이 입법 초기 상당한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체벌금지법⁶⁸⁾은 체벌 등 아동학대를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법 삭제 및 훈육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다.

4.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 권리의 법규정화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 제2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8) 2023년 현재 체벌금지법이 제정된 국가(65개국) 목록 : 알바니아(2010), 안도라(2014), 아르헨티나(2014), 오스트리아(1989), 베닌왕국(2015), 볼리비아(2014), 브라질(2014), 불가리아(2000), 카보베르데(2013), 콜롬비아(2021), 콩고(2010), 코스타리카(2008), 크로아티아(1999), 키프로스(1994), 덴마크(1997), 에스토니아(2014), 핀란드(1983), 프랑스(2019), 조지아(2019), 독일(2000), 그리스(2006), 기니(2020), 온두라스(2013), 헝가리(2004), 아이슬란드(2003), 아일랜드(2015), 이스라엘(2000), 일본(2020), 케냐(2010), 대한민국(2021), 코소보(2019), 라트비아(1998), 리히텐슈타인(2008), 리투아니아(2017), 룩셈부르크(2008), 모리셔스(2022), 북마케도니아(2013), 몰타(2014), 몰도바(2008), 몽골(2016), 몬테네그로(2016), 네팔(2018), 네덜란드(2007), 뉴질랜드(2007), 니카라과(2014), 노르웨이(1987), 파라과이(2016), 페루(2015), 폴란드(2010), 포르투갈(2007), 루마니아(2004), 산마리노(2014), 세이셸(2020), 슬로베니아(2016), 남아프리카공화국(2019), 남수단(2011), 스페인(2007), 스웨덴(1979), 토고(2007), 튀니지(2010), 투르크메니스탄(2002), 우크라이나(2003), 우루과이(2007), 베네수엘라(2007), 잠비아(2022), <https://sweden.se/life/society/children-in-sweden>

또한 제17에 다음과 같이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2024. 1. 2.>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이에 비해 노르웨이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과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이 법률에 포함되어 있다. 노르웨이 헌법 104조에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과 결정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 양육과 관련된 폭력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Child Welfare Act)⁶⁹⁾에는 제1-4조~제1-6조에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10-3조 및 제10-7조에는 특정한 형태의 물리적 강제력과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4조(참여권)은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아동은 이 법에 따라 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아동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에게 사전 대화 내용을 알리지 않고도 아동복지서비스에 문의할 권리가 있다. 아동은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아이의 말을 들어주어야 하며, 아이의 나이와 성숙도에 맞춰 아이의 의견에

69)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221b1c050f72434b8fb56564af085ea7/ny-barnevernslov-1.-januar-2023-en.pdf>

정당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아동이 제공한 정보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지, 누가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아동은 정보 공유가 결정되기 전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아동의 견해에 적절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아동복지서비스와의 면담에서 아동은 자신이 특별히 신뢰하는 사람과 동행할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이 신뢰인은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아동의 참여 권리와 수탁자의 의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5조(아동의 보살핌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는 “아동은 가급적이면 가족 내에서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복지국이 부과하는 조치는 필요 이상으로 침해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필요한 아동복지 조치를 받을 아동의 권리)는 “아동은 조치 조건이 충족되면 필요한 아동복지 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복지기관에 대한 규정(chapter 10. Child welfare institutions etc.) 중 제10-3조(아동의 돌봄과 안전 및 안녕에 대한 책임에 근거하여 가벼운 형태의 신체적 힘의 사용)는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분명히 필요한 경우, 기관은 아동을 잠시 제한하거나 손으로 이끄는 등 가벼운 형태의 신체적 힘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관의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제10-7조(급박한 위험상황에서 강압의 사용)는 “아동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해(harm)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재산 상의 물질적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경우, 기관은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 제17조 및 형법 제18조에 따라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조치는 위해나 위험을 모면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엄격하게 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cf. 첫 번째 항), 최소 1명의 직원이 방 또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이웃 방에 있어야 한다. 아동 격리는 창문과 면적이 최소 8m인 방에서만 허용된다. 격리는 기관장 또는 기관장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5조(신체적, 정신적 강압 및 강제력의 사용 금지)는 “아동을 처벌하거나 아동을 보살피거나 치료하기 위해 강제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격리하거나, 기계적 강압

수단이나 기타 정신적, 육체적 강압 또는 강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0-3조 및 제10-7조에 따라 특정 형태의 물리적 강압 및 강제력이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아동에 대한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금지”하는 노르웨이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추구하는 아동의 권리를 법에 규정하되, 특정한 형태의 물리력과 힘의 사용도 법에 규정했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는 기본이념만을 규정했을 뿐 아동의 권리를 규정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의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자녀에 대한 징계권 삭제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형의 폭력도 금지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범죄로 규정된 심각한 범죄 이외에 ‘아동복지법’의 금지규정 자체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규정자체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부모나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의 많은 경우에는 훈육과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혼란스럽고 훈육이라고 생각하여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장의 <표 2-44>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는 거의 대부분 학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학대여부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다.

5.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 심리치료

아동기 학대피해의 후유증은 성인기에 당한 피해의 후유증에 비해 훨씬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인생의 궤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어린 시절 학대피해를 당한경험을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아동 개인의 정상적인 발달에 크게 영향을 주고 심각한 장애를 장기간 초래하여, 이 후유증은 아동 또는 청소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어린 시절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피해 경험은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애착 장애, 반사회적 및 경계성 인격 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결과를 초래하고, 약물남용 장애, 및 알코올 관련 장애 또는 의학적 장애(관상 동맥 질환 및 심근경색, 뇌혈관 질환 및 뇌졸중, 및 특정 형태의 암)를 초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수명을 단축시키거나 자살 위험을 증가시키며,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에 장애를 초래한

다. 아동기 학대피해경험은 성인기의 폭력 및 범죄 행동과도 관련성이 있어서, 아동학대 피해 경험이 있었던 성인들은 체포 가능성, 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았고,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대피해경험은 피해유형과 관계없이 초기 성인기의 체포 횟수 및 폭력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더 높였다. 학대피해경험과 성인기의 폭력 및 범죄 행동은 특히 신체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었던 성인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아동학대와 같이 어린 시절의 외상이 자살 시도 또는 자살의 주요 위험요인임을 발견하였다(장다혜 등, 2022).

사실 지난 1차 연도의 연구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피해의 후유증은 사례에 따라서는 매우 심각하나 피해 당사자 및 부모들도 아동피해 피해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어 심리치료를 거부할 수 있으니 사례관리를 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 및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심층적인 심리치료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가 미흡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중위험군과 저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만으로 그치고 심리치료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대피해가 아주 경미하지 않은 이상은 기본적으로 일정회기 동안 심리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필요도 있다(장다혜 등, 2022).

현재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정책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되어 피해아동에 대해 심리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전문인력에 한계가 있고 지역적 편차도 큰 실정으로서 전문심리치료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지원을 확대하면서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심리지원팀을 설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즉 ① 심리평가 결과, 정신과적 증상의 심각도가 높고 정신장애로 판단되는 사례, ② 심리적 어려움으로 사회·직업적 기능손상이 명백하고 주관적 고통감을 느끼는 사례, ③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반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사례, ④ 지속적으로 자살사고를 호소하고 이전 자살시도 경험, 자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사례 등의 고난도 사례 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적으로도 수행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서 지원하게 하는 등 심리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학대부모에 대한 보다 차별없는 양육방식 및 가족회복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상담이나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처럼 훈련된 심리치료사가 부모 혹은 양육자의 집에서 아동-부모 심리 치료를 진행하며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부모의 감정적인 표현과 아동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관계를 조사하거나 포괄적으로 양육에 개입하고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행위자, 그 가족들은 특히 피해아동이 어린 경우에는 경찰이나 지자체 등에서 중복하여 조사나 모니터링 명목의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에 2차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은 바르나투스(Barnahus)라는 기관을 마련하여 폭력 및 성적 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중심에 두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 보호, 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피해아동이 보호·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반복적으로 진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들을 하나의 지붕 아래에 통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Johansson at el., 2017; 장다혜 등, 2022에서 재인용). 이 바르나투스 모델⁷⁰⁾은 아동에 대한 폭력과 학대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촉진하고 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지원과 치유를 보장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분야 전문가 간의 협력 방식(Multi-professional approach)과 하나의 문 원칙(the One Door principle)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통해, 다분야 전문가 간의 협력 방식은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경찰 및 검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사례회의를 통해 구현하고, 하나의 문 원칙은 조사, 보호, 신체치료와 심리치료라는 네 가지 영역이 아동에게 안전감을 주는 하나의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Johansson at el., 2017:5-7; 장다혜 등, 2022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르웨이에서는 바르

70) 바르나투스 모델에 대해서는 장다혜 등(2022)의 1차 연구 참조.

나후스(Barnahus)에서 폭력 및 성적 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 보호, 치유,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랜기간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조사관이 아이들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술분석과 상담사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 이들은 진실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아이들이 법정에서 가야하면 이들이 아이를 대신해서 맞서서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년 전에 세 번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진술을 강요해서 아이들이 겁먹은 사건 이후로 아이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게 강조되었다고 한다.

바르나후스(Barnahus)에는 아동복지교육자, 사회복지교육자, 경찰, 그리고 심리전문가들이 있으며, 심리치료사가 경찰인 경우에는 유니폼을 입지 않고 아이가 놀라지 않게 사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으며 면담에 앞서 아이들에게 면담자의 사진을 보여준다고 한다. 바르나후스(Barnahus)에서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는데, 가정에서 피해가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이야기해서 어떻게 치료할 건지 협의하게 되고, 만약 가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가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도움을 줄 지 협의하되 아이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한다. 일단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아이의 변호역할을 하는데 경찰과 상담하면서 아이가 만약 좀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하면 이 사람이 중재시키는 역할도 하게 된다.

따라서 아동의 안정을 최우선시하여 가능하면 조사는 전문조사관 한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지고 모든 설명은 이 전문조사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바르나후스 모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해아동이 어린 경우에는 반복적인 진술과 상대가 바뀌어가며 하는 진술이 상당히 힘든 과정일 것이므로 바르나후스 모델의 하나의 문 원칙(the One Door principle)의 시사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2Gen방식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뿐 아니라 가족 전체와 함께 일하면서 트라우마가 아동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강조하는데,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아동과 가족의 안녕감(wellbeing)에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아동만을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부모 혹은 보호자만을 중점으로 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2Gen 방식과 같이 아동과 아동의 삶에 같이 있는 어른들과의 상호 협력을 중시하여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킬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국내문헌

- 강복화. (2022). 보육교사가 바라본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원인에 관한 연구.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3(2), 263-288.
- 강영욱·채신영. (2021).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2), 315-329.
- 강은영·김희균. (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고영숙·이대균. (2018). 아동학대에 관한 보육교사의 어려움과 바람. *열린유아교육연구*, 23(2), 121-145.
- 고재욱. (201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연구*, 16(20), 271-294.
- 권건보. (2011). 보육현장에 대한 전자적 감시의 법적 문제점. *세계헌법연구*, 17(3), 79-105.
- 권성민·권화숙. (2020). 유아교사의 아동학대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사인성, 교사전문성, 직무스트레스, 교사효능감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5(4), 219-241.
- 권정윤·송나리. (2018).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인한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유아교육연구*, 38(2), 233-259.
- 권혜진·이순형. (2001). 보육시설의 집단 크기에 따른 영아의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아동학회지*, 22(4), 201-212.
- 김미향·박영주·이주현. (2021). COVID-19 시대, 캠핑 체험의 의미 변화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5(3), 245-257.
- 김송이·김명순·김한나. (2020). 국공립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방안.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김영미·강지연. (2015). 보육교사가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양육태도가 아동학대에 미치

- 는 영향에서 직무스트레스의 조절효과. 한국아동복지학, (51), 133-161.
- 김우태. (2017).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방안. 한국경찰연구, 16(3), 47-68.
- 김정수. (2019).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헌법적 쟁점과 과제: 헌법재판소 2017. 12. 28. 2015 헌마 994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62, 255-290.
- 김혜정·김세곤. (2020).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아동학대 인식 및 방지노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4(2), 1-23.
- 김혜진. (2008).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 정서적 부조화의 매개효과에 대한 탐색. 인간발달연구, 15(4), 93-113.
- 김희진·한영미. (2022). 영유아교육기관 건강·영양·안전 평가 지표 비교 연구: 한국,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교육과학연구, 53(3), 327-354.
- 도남희·구자연·신나리·강규돈. (2022).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모형 개발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박금식·강하라·배정은. (2022).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 분석 및 예방 방안. 부산 여성가족개발원.
- 박미경·이홍재. (2022).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감정노동 잠재 프로파일 분석 -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유형이 직무열의와 교육애에 미치는 영향. GRI연구논총, 24(2), 93-122.
- 박소윤·서현아·강현미. (2017).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윤리의식이 아동학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319-336.
- 박으뜸·최인이. (2023). 보육교사의 노동경험과 감정노동: 대전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4(1), 195-224.
- 박정은·최지훈·안선희. (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인식, 원인 및 예방에 관한 인식 비교-보육교사, 예비 보육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8(4), 163-182.
- 박진아·이경숙. (2015).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보육교사의 경험, 인식 및 상담요구도에 관한 연구-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5(3), 27-54.
- 백지은. (2022). 빅데이터를 통한 '노인요양시설' 관련 언론기사 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30(4), 156-179.
- 보건복지부. (2012-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8-2022). 아동학대 주요통계.
- 보건복지부. (2020). 2020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1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1; 2023).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2023).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 서울특별시. (2023). 2023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 신동주·김승옥. (2016).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유형과 사회적지지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유아지원연구, 11(1), 119-141.
- 양미선·김은영·염혜경. (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 양미선·이윤진. (2015).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운영 현황 및 평가.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우진경·차인영. (2021). 영유아보육· 교육기관 내 아동학대 대응의 어려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교사의 인식. 어린이미디어연구, 20(4), 99-128.
- 유계숙·양수진·조선아. (2016).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어머니와 보육교사의 원인 인식 및 대책 요구도. 육아정책연구, 10(1), 241-268.
- 윤주연·장경은·박지연. (2020). 아동학대 의심자로서 보육교사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2), 1-24.
- 이명순. (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대응방안. 아동보호연구, 2(1), 99-120.
- 이미화·김은설·이진화·김길숙·윤지연. (2015). 부모교육 제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표준교육과정 개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육아정책연구소.
- 이상화·김순임. (2022).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의심받은 보육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인문사회21, 13(3), 1339-1354.
- 이세라피·임여정. (2021).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원장의 역할에 대한 연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4(2), 79-109.

- 이세원. (2021). 빅카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인문사회 21, 12(1), 2941-2954.
- 이숙진. (2011).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연구, 11(2), 49-83.
- 이여진. (2015).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1012, 467-489.
- 이용주. (2020). 어린이집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과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4(2), 149-169.
- 이용주·조숙영. (2022). 보육교사의 인성과 아동학대 인식이 아동학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 21, 13(2), 2743-2754.
- 이주연·최지훈. (2019). 보육교사의 일·생활균형,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소진과 영유아 학대인식 간의 구조적 관계: 혼인여부에 따른 집단분석을 중심으로. 가정과삶의질연구, 37(3), 181-197.
- 이지혜·김숙령. (2018). 영아전담어린이집 어머니와 교사의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인식 차이.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9(1), 163-182.
- 장영인·정민자. (2016). 어린이집 학대예방지침과 매뉴얼의 기본원칙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5-55.
- 장지연. (2020). 돌봄노동의 임금 수준은 향상되었는가?. 월간노동리뷰, 2020(11), 7-22.
- 전희정·전유영·김주후. (2019). 보육교사가 지각한 교권 수준과 직무만족도 및 교사-영유아 상호작용 간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4(5), 19-40.
- 정규희·김희송·김종한·양경무·최인석·박재홍. (2021). 훈육과 학대의 경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을 통해 살펴본 자신과 타인의 체벌 기준. 보건사회연구, 41(4), 225-242.
- 정선아·장화정·김경희·김미경·박보영. (2018).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연구. 아동과 권리, 22(3), 351-382.
- 정효정. (2021). 보육교사의 권익보호 저해 요인에 대한 논점과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30, 137157.
- 조미숙·전홍주. (2016). 만 1세 영아반 교사의 정서적 노동에 대한 경험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6(4), 23-50.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022).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 최혜영. (2017).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부모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5(1), 93-103.
- 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빅카인즈 사용자 매뉴얼.
- 한유진·최인숙·이대균. (2015). 한 어린이집에서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보육교사들의 이야기.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0), 563-591.
- 함선유·권현지. (2017). 돌봄직 종사자의 저임금 기제 연구. *산업노동연구*, 23(3), 131-175.
- 현정환. (2022). 교사의 번아웃 및 아동 행동에 대한 피해 인식이 아동학대 행동의 수용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36, 57-76.

2. 국외 문헌

- Atten, D. W., & Milner, J. S. (1987). Child abuse potential and work satisfaction in day-care employees. *Child abuse & neglect*, 11(1), 117-123.
- Berk, L. (1985). Relationship of caregiver education to child-oriented attitudes, job satisfaction, and behaviors toward children. *Child Care Quarterly*, 14, 103-129. <http://dx.doi.org/10.1007/BF01113405>.
- Biehal, N. (2014). Maltreatment in foster care : A review of the evidence. *Child Abuse Review*, 23(1), 48-60. <https://doi.org/10.1002/car.2249>.
- Briggs, F. (2014). Child sexual abuse in early-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ettings.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184(9-10), 1415-1435.
- Bright, M. A., Roehrkaase, A., Masten, S., Nauman, A., & Finkelhor, D. (2022). Child abuse prevention education policies increase reports in child sexu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134, 105932.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7).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development,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pp.795-828). DOI: 10.1002/9780470147658
- Carr, A., Nearchou, F., Duff, H., Mhaoileoin, D. N., Cullen, K., O'Dowd, A., & Battigelli, L. (2019). Survivors of institutional abuse in long-term child

- care in Scotland. *Child abuse & neglect*, 93, 38-54.
- Chen, W., & Xiong, B. (2019). Generating mechanism of children abuse by preschool teacher and the mode of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an empirical analysis of 264 cases of child abuse by preschool teacher.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Philosophy and Social Sciences Edition*, 1, 55-64 (In Chinese).
- Coons, P. M. (1994). Reports of satanic ritual abuse: Further implications about pseudomemories. *Perceptual & Motor Skills*, 98, 1376-1378.
- Cozolino, L. J. (1989). The ritual abuse of children: Implications for clinical practice and research. *The Journal of Sex Research*, 26, 131-138.
- Edwards, L. M. (1990). Differentiating between ritual assault and sexual abuse. *Journal of Child Youth Care, Special Issue*, 67-89.
- Ehrensaft, D. (1992). Preschool child sex abuse: The aftermath of the Presidio cas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2(2), 234-244. <https://doi.org/10.1037/h0079332>
- Faller, K.F. (1990). Sexual abuse in day care, *In Understanding Child Sexual Maltreatment*, Sage, Newbury Park, CA, pp. 191-210.
- Finkelhor, D., & Browne, A. (1985). The traumatic impact of child sexual abuse: A conceptualizatio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5, 530-541.
- Foster, D. (2023). Duties to report child abuse in England. House of Library.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SN06793/SN06793.pdf>
- Gelardo, M. S., & Sanford, E. E. (1987). Child abuse and neglect: A review of the literature. *School Psychology Review*, 16(2), 137-155.
- Gould, C. (1988). *Sign and symptoms of ritualistic child abuse*. Encino, CA: Author.
- Henson, R. (2013). London MASH project Tool Kit V9 Risk Assessment & Research. <https://www.londonscb.gov.uk/wp-content/uploads/2016/04/MASH-Research-Tool-Kit-V-9.pdf>
- Hollingsworth J. (1986). *Unspeakable acts*. New York, NY: Congdon & Weed.

- Huang, G., Qiao, D. P., Lu, M., & Lian, T. T. (2022). How child abuse by kindergarten teachers (CAKT) happens in a Chinese context: Findings based on 35 cases of CAK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41*, 106616.
- Huang, Y., Wang, Y., Chen, C., Gao, Y., KC, A., Wang, X., Zou, S., & Zhou, H. (2022). Association between violent discipline at home and risk of illness and injury in children: findings from a cross-sectional study in rural western China.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7*(13-14), NP11413-NP11435.
- Irenyi, M., Bromfield, L., Beyer, L., & Higgins, D. (2006). *Child maltreatment in organisations: Risk factors and strategies for prevention* (Vol. 25). Melbourne, Australia: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Keane, T. M., & Wolfe, J. (1990). Comorbidity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 analysis of community and clinical stud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0*, 1776-1788.
- Kelley, S. J. (1986). Learned helplessness in the sexually abused child.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9*, 193-207.
- Kelley, S. J. (1989). Stress responses of children to sexual abuse and ritualistic abuse in day care cen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4), 502-513.
- Kelley, S. J. (1990). Parental stress response to sexual abuse and ritualistic abuse of children in day care centers. *Nursing Research, 39*(1), 25-29.
- Kelley, S. J. (1994). Abuse of children in day care centres: Characteristics and consequences. *Child Abuse Review, 3*(1), 15-25.
- Lowrence, N. & Synder, E. (2009). *Multiple response system and system of care*. Center For Child and Family Policy.
- Liu, L., & Li, X. (2019). Research on the child abuse behavior in kindergartens and legal intervention: An analysi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of judgment documents. *Journal of Social development, 6*(3), 172-188 +245 (In Chinese).
- Luo, G. J. (2012) 'A few issues regarding the collective principles.' *Leading Journal*

- of Ideological & Theoretical Education*, 6, 36-9 (In Chinese).
- Margolin, L. (1990). Child abuse by baby-sitters: An ecological interactional interpret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95-105.
- Margolin, L. (1991). Abuse and neglect in nonparental child care: A risk assess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94-704.
- Margolin, L., & Craft, J. L. (1990) Child abuse by adolescent caregivers. *Child Abuse & Neglect*, 14, 365-373.
- McLeer, S. V., Deblinger, E., Henry, D., & Orvaschel, H. (1992). Sexually abused children at high risk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1, 875-879.
- Modig, C. (2009), *Never Violence - Thirty Years on from Sweden's Abolition of Corporal Punishment*. Save the Children Sweden and Swedish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 Moulden, H. M., Firestone, P., & Wexler, A. F. (2007). Child care providers who commit sexual offences: A description of offender, offence, and victim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1(4), 384-406.
- Paine, M. L., & Hansen, D. J. (2002). Factors influencing children to self-disclose sexual abus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2), 271-295.
- Rizvi, M., B., Conners, G. P., King, K. C., Lopez, R. A., Bohlen, J., & Rabiner, J. (2023). *Pennsylvania child abuse recognition and reporting*. <https://www.ncbi.nlm.nih.gov/books/NBK565852/>
- Russell, S. D., & Clifford, R. M. (1987). Child abuse and neglect in North Carolina daycare programs. *Child Welfare*, 66, 149-163.
- Sherr, L., Roberts, K. J., & Gandhi, N. (2017). Child violence experiences in institutionalized/orphanage care. *Psychology, Health & Medicine*, 22, 31-57. <https://doi.org/10.1080/13548506.2016.1271951>.
- Smith, C. P., & Freyd, J. J. (2014). Institutional betrayal. *The American Psychologist*, 69(6), 575-587. <https://doi.org/10.1037/a0037564>.
- Time. (1990, 01. 29). *Six years of trial by torture*. (pp.26-27). Author.

- Trifan, T. A., Stattin, H., & Tilton-Weaver, L. (2014). Have Authoritarian Parenting Practices and Roles Changed in the Last 50 Year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4), 744-761.
- Trocme, N., Knott, T., & Knoke, D. (2003). *An overview of differential response models*. [https://cwrp.ca/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ifferential Response4E.pdf](https://cwrp.ca/sites/default/files/publications/Differential%20Response4E.pdf)
- Utting, W. (1997). *People Like Us: The Report of the Review of the Safeguards for Children Living Away from Home*. HMSO: London.
- Wardhaugh, J & Wilding, P. (1993). Towards an Explanation of the Corruption of Care. *Critical Social Policy* 37, 4-31.
- Warner N. (1997). Preventing Child Abuse in Children's Homes. In *Child Sexual Abuse: Myth and Reality*, Hayman S. (ed.). ISTD: London.
- Waterman, J., Kelly, R. J., Oliveri, M. K., & McCord, J. (1993). *Behind the playground walls: Sexual abuse in preschool*. New York: Guilford Press.
- Young, W. C., Sachs, R. G., Brown, B. G., & Watkins, R.T. (1991). Patients reporting ritual abuse in childhood: A clinical syndrome: A report of 37 cases. *Child Abuse & Neglect*, 15, 181-189.

3. 기타자료

- 경향신문, 2013.11.20., “어린이집 교사가 유아 8명 216차례 상습 학대”,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1311202233585> (검색일: 2023.06.08.)
- 경향신문, 2021.12.31., “5살 여아 성적 학대한 '원장 아들'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112311336001> (검색일: 2023.06.08.)
- 국민일보, 2013.05.27., “비리백화점 어린이집... '匾의원 원장' 등 국고 300억 꿀꺽”,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7219244&code=11131100> (검색일: 2023.07.12.)
- 국민일보, 2015.01.26., “국공립 어린이집서도 아동 학대 빈번 '충격'”, <https://news.kmib>.

co.kr/article/view.asp?arcid=0009078513&code=61121211&cp=kd (검색일: 2023.05.17.)

국민일보, 2015.01.16., “당정, 어린이집 폭력 발생 시 즉각 폐쇄… CCTV 의무화”,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046605&code=61111111&cp=kd> (검색일: 2023.05.17.)

국민일보, 2018.07.27.,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학대, 피해아동 4명 더 있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57291&code=61121211&cp=kd> (검색일: 2023.05.17.)

국민일보, 2021.01.22., ““물고문 어린이집 부실수사…경찰 파면하라” 피해 부모 청원”,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456953&code=61121111&cp=kd> (검색일: 2023.06.09.)

국민일보, 2021.05.20., “57일간 300번… CCTV에 다 찍힌 제주 어린이집 학대”,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866050&code=61121111&cp=kd> (검색일: 2023.06.13.)

동아일보, 2015.01.21., ““울음 그쳐라” 22개월 男兒 입에 물티슈-수건”,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121/69193849/1> (검색일: 2023.06.13.)

동아일보, 2015.01.29.,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시 포상금이 무려? CCTV 열람 거부하면…‘깜짝’”,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0129/69343935/5> (검색일: 2023.03.30.)

매일경제, 2015.01.14., “인천 어린이집 무서운 교사, 아이 김치 남기자 강제로…충격”, <https://www.mk.co.kr/news/society/6525046> (검색일: 2023.05.18.)

머니투데이, 2015.01.28., “시민단체,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 촉구 “억울한 죽음 막아야””,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5012811560221619> (검색일: 2023.05.17.)

보건복지부. (2010. 12. 20).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보건복지부. (2013. 05. 03).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

보건복지부. (2015. 01. 27).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보건복지부·강득구의원실. (2020). 시도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

보건복지부·강득구의원실. (2020).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건수.

보건복지부 북파리 TV(2022. 3. 23.).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공정 양육 129

- 원칙', <https://www.youtube.com/watch?v=2Z1XaYDW7ek>
- 보건복지부·최연숙의원실. (2022).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현황.
- 서울신문, 2011.10.25., “별써 식어버린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 2010년 12월 그날을 잊었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025009013> (검색일: 2023.08.03.)
- 서울신문, 2013.05.04., “아동학대 교사·원장 10년간 재개원 못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04007013> (검색일: 2023.04.19.)
- 서울신문, 2015.01.29., “어린이집 아동학대 “20대 보육교사, 학대 103건” 얼마나 학대 받았나 보니”,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29500247> (검색일: 2023.05.18.)
- 서울신문, 2015.01.14., “인천 소재 어린이집 폭행 교사, 4세 여아 김치 안 먹는다고 머리 내리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114500122> (검색일: 2023.08.03.)
- 서울신문, 2018.11.20., “김포 보육교사 사망사건…‘학대 주장’ 학부모, 원장 고소”,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120500019> (검색일: 2023.06.09.)
- 서울신문, 2021.09.06., “‘장애아동 집단학대’ 인천 보육교사 6명 실형…원장도 법정구속”,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906500167/> (검색일: 2023.07.24.)
- 세계일보, 2013.05.27., “나랏돈 빼돌려 쓰레기 급식…어린이집 ‘횡령 백태’”,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527003835> (검색일: 2023.04.19.)
- 세계일보, 2013.05.02., “부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4명…원장·교사 구속영장 신청”,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502002870> (검색일: 2023.05.17.)
- 세계일보, 2021.04.27., “어린이집서 21개월 아이 압박해 숨지게 한 원장 구속”,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427504682> (검색일: 2023.06.09.)
- 세계일보, 2021.02.16., “‘장애아동 상습 학대’ 인천 어린이집, 정부 평가는 최고점”,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16518434> (검색일: 2023.06.08.)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2023.09.28.). <https://www.ncrc.or.kr/ncrc/cm/cntnts/cntntsView.do?mi=1030&cntntsId=1033>
- 의안정보시스템. (최종검색일자: 2023.6.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1250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 조선일보, 2021.03.18. “6세 아이 밟고 던지고... 원장 딸 어린이집 교사 구속”,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3/18/7GNLZTEP3FFTVMSC73SZZXH53M/> (검색일: 2023.03.30.)
- 중앙일보, 2018.07.25. “어린이집서 소장 파열 사망, 11년만에 재조명된 ‘성민이 사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832780#home> (검색일: 2023.07.12.)
- 중앙일보, 2021.09.09. “토할 때까지 물 먹이고 원생 서로 때리게 시킨 어린이집 교사 징역 4년”,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5818#home> (검색일: 2023.04.19.)’
- 한국일보, 2021.05.20. “자녀체벌금지법 안다” 40% 불과... 훈육·학대 구분 모호,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051716240001150?rPrev=A2021062814510002291>.(검색일: 2023.11.29.)’
- Administration for Children Family. (2011). The quality rating and improvement system (QRIS) evaluation toolkit.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pre/qrisc_toolkit_0.pdf
- Article 39. (2021, December). Abuse in children’s institutional settings: How much is known? Child Maltreatment 2021 Annual Report. Retrieved from <https://www.acf.hhs.gov/cb/data-research/child-maltreatment>
- Australian Criminal Intelligence Commission. (2023). Working with children checks. <https://www.acic.gov.au/working-children-checks>
- Australian Government. (2023). Mandatory reporting of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aifs.gov.au/resources/resource-sheets/mandatory-reporting-child-abuse-and-neglect>
-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18). National comparison of cross-agency practice in investigating and responding to severe child abuse. https://aifs.gov.au/sites/default/files/publication-documents/47_national_comparison_of_cross-agency_practice_in_investigating_and_responding_to_severe_child_abuse_0.pdf
- British Columbia. (2017). The B.C. Handbook for action on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2.gov.bc.ca/assets/gov/public-safety-and-emergency-servi>

- ces/public-safety/protecting-children/childabusepreventionhandbook_serviceprovider.pdf
- CBC News. (2022). Province to require coaches, teachers of k-12 students to compete abuse prevention training. <https://www.cbc.ca/news/canada/manitoba/safe-sport-funding-announcement-1.6504084>
-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2012), Attitudes to disciplinary violence, Finland: Central Union for Child Welfare & Taloustutkimus Oy
- Child Family Community Australia. (2021). Physical punishment legislation.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s of Family Studies. <https://aifs.gov.au/resources/resource-sheets/physical-punishment-legislation#the-australian-legal-context>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19).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and neglec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https://www.childwelfare.gov/pubPDFs/manda.pdf>
- 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 (2020). Differential response: A primer for child welfare professional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hildren's Bureau.
- ChildCare.gov. (n.d.). What is child care licensing? <https://childcare.gov/consumer-education/how-is-child-care-regulated>
- College of Physiotherapists of Ontario. (n.d.). Duty to report- An important message for physiotherapists. <https://www.collegept.org/registrants/reporting-obligations/mandatory-reporting-PTs-required/professionals-should-never-hesitate-to-report-suspected-child-abuse-or-neglect>
- Craven County. (n.d.). Assessment Approaches. <https://www.cravencountync.gov/1851/Assessment-Approaches>
- Department of Education Victoria. (2016). Identifying and Responding to All Forms of Abuse in Early Childhood Services. https://www.education.vic.gov.au/Documents/about/programs/health/protect/EarlyChildhood_Guidance.pdf

-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23). 2023/2024 Prevention Resource Guide. https://cwig-prod-prod-drupal-s3fs-us-east-1.s3.amazonaws.com/public/documents/guide_2023.pdf?VersionId=ik6ovHzLC08_U6W6t7JQo5w4K_RpmsPo
-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0).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n Sweden. <http://www.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country-reports/Sweden.pdf>
-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 & End Corporal Punishment. (2023). The positive impact of prohibition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s lives: messages from research. <https://endcorporalpunishment.org/wp-content/uploads/2023/03/The-positive-impact-of-prohibition-of-corporal-punishment-on-children.pdf>
- Erin's Law. What is Erin's Law? <https://www.erinslaw.org/erins-law/>
- Erinslawillinois.org. (n.d.). Erin's law-what is it? Training, curriculum... <https://www.erinslawillinois.org/erins-law/the-key-components-of-erins-law/>
- Home Office. (2014). Multi agency working and information sharing project. Final repor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750ddb40f0b6360e472fa5/MASH.pdf>
- House of Commons. (2000). Report of the Tribunal of Inquiry into the abuse of children in care in the former county council areas of Gwynedd and Clwyd since 1974, Lost in Care. The Stationary Office: London
- Manitoba. (2022). Manitoba government enhances safe sport resources, services and programs for children and youth. <https://news.gov.mb.ca/news/index.html?item=55317&posted=2022-06-28>.
- MASH(Multi Agency Safequarding Hubs). (2016). London MASH Project TOOL KIT V(RISK ASSESSMENT & RESEARCH. https://safelives.org.uk/sites/default/files/resources/mash_research_tool_kit_v_9.pdf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1), Don't hit the child! National Action Plan to Reduce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2010-2015, Helsinki: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 National Center on Early Childhood Quality Assurance. (n.d.). QUIS Recourse Guide. <https://ecquality.acf.hhs.gov/about-qris>
-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2017).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nice.org.uk/guidance/ng76/resources/child-abuse-and-neglect-pdf-1837637587141>
- NSPCC Learning. (2023). Protecting children from sexual abuse. <https://learning.nspcc.org.uk/child-abuse-and-neglect/child-sexual-abuse>
- NSPCC Learning. (n.d) Mandatory safeguarding and child protection training. <https://learning.nspcc.org.uk/training/mandatory-safeguarding-child-protection-training>
- NSW Government. (2023). New child abuse related offences- failure to report and failure to protect. <https://www.health.nsw.gov.au/parvan/childprotect/Pages/criminal-justice-changes.aspx>
- NSW Government. (n.d.a). Child protection training requirements- Government protocol.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working-in-early-childhood-education/child-protection-training-requirements#Changes1>
- NSW Government. (n.d.b). Child protection training. <https://education.nsw.gov.au/student-wellbeing/child-protection/child-protection-training#Child1>
- Ontario (2016). Ontario child protection standards. <https://www.ontario.ca/document/ontario-child-protection-standards-2016/introduction>
- Ontario. (2022). Ontario takes action to protect students and children. <https://news.ontario.ca/en/release/1001561/ontario-takes-action-to-protect-students-and-children#quickfacts>
- Ontario. (2023). Report child abuse and neglect. <https://www.ontario.ca/page/report-child-abuse-and-neglect>
- 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 (2017). Final Report- Private sessions. https://www.childabuseroyalcommission.gov.au/sites/default/files/final_information_update.pdf
- State of New Jersey. (n.d.). Institutional Abuse Investigation Unit. <https://www.nj.gov>

gov/dcf/about/divisions/iaiu/

The Government of Canada. (n.d.). Protecting our children. <https://www.justice.gc.ca/eng/rp-pr/cp-pm/cr-rc/dig/prot.html#screening>

The Pennsylvania Key. (2022). Baby syndrome, abusive head trauma, and child maltreatment requirements. <https://www.pakeys.org/c-22-03/>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preventing/prevention-programs/>

Utting W. (1997). People Like Us: The Report of the Review of the Safeguards for Children Living Away from Home. HMSO: Londo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3). Health and Safety in the Child and Adult Care Food Program. <https://fns-prod.azureedge.us/sites/default/files/cacfp/CACFP13-2013os.pdf>

Abstract



A study on child abuse prevention and abused children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 occurrence structure of child abuse: Focusing on child abuse within the Child Care Centers

Hong, Young-Oh·Kim, Nang-hee·Park, Mi-sook·Choo, Jihyun·
Yoon, Sookyung·Cho, Sujung·Kim, Chunrye

According to <2022 Key Child Abuse Statistic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re were a total of 37,605 cases of child abuse in case judgments made through child protection agencies in 2022. Cases of child abuse continued to increase to 18,700 in 2016, 22,367 in 2017, 24,605 in 2018, 30,045 in 2019, 30,905 in 2020, and 37,605 in 2021, before decreasing to 27,971 in 2022.

Most abusers in child abuse cases in 2022 are parents (82.7%), but the next highest rate is abuse by surrogate caregivers such as kindergarten faculty, childcare faculty, foster parents, and workers at related facilities (10.9%). In order to prevent and respond to child abuse, attention must be paid to the occurrence of child abuse not only at home but also at childcare facilities that provide surrogate childcare.

In 2022, the effectiveness of preventive policies against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continues to be questioned, with cases such as the child abuse case of a childcare teacher at a family daycare center in Yangsan and the child abuse case of a childcare teacher at a daycare center in Saha-gu, Busan, being reported through the media and online communities.

In spite of the continuous changes in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for early intervention of child abuse, child abuse continues to occur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nd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which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perpetrators.

In order to build a fundamental child abuse prevention and protection support policy for children who are abused, rather than strengthening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perpetrator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reality of child abuse and analyze the structure of its occurrence to find fundamental countermeasures. Through an in-depth analysis of the causes and factors of neglect, abandonment, and physical and mental violence against children, we aimed to diagnose the underlying structures in which child abuse occurs within the home or in early childhood care institutions such as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These structures include existing family systems such as marriage and adoption, policies on child care services for children, and labor,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systems and policies surrounding child care, such as employment types and treatment of child care workers, and extend to the social structure of discourse on child care and child rearing, such as parents' and guardians' social attitudes toward child rearing and the social value of child care work. A sociostructural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child abuse can provide direction and concrete measures for response policies, not only in terms of judicial policies, but also in terms of social welfare and labor policies.

Currently,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families and child care institutions (daycare centers), where child abuse mainly occurs, in terms of their occurrence structure, factors, and responses. Therefore, following the study of child abuse in families in the first year,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causes, and factor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centers in the second year, and to propose differentiated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in-depth analysis.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focused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 we examined the incidence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care staff as abusers. Specifically, the main statistics on child abuse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2022) were used to analyze the location of child abuse,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rs and victims,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rs and victims in repeat cas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eceased children and abusers. Statistics on abuse cases by childcare staff were not provided in the main statistics on child abuse after 2018, so we were forced to analyze only the statistics from 2012 to 2017 through the Child Abuse Status Report (2012-2017) before the main statistics on child abuse.

Second, we analyzed issues related to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reported in the media. Through big data analysis, we discovered issues related to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that are not revealed in quantitative studies.

Third, we identified the incidence and punishment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For cases, we focused on victim characteristics, facility characteristics, and issues in the case, and for defendants, we identified defendant characteristics, labor conditions, abuse characteristics, sentences, temporary measures, and administrative penalties for facilities.

Fourth, we examined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abuse by childcare workers in daycare centers. In 2021, South Korea became the 62nd country in the world to ban corporal punishment when it passed an amendment to the Civil Code to prohibit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Nevertheless,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can be defined and judged differently, especially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perspectives and daycare teachers' perspectives, so we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perspectives and daycare centers' perspectives in judging child abuse by examining the level of parents' awareness of negligent guidance, a concept that is distinct from child abuse.

Fifth, we examined the response system to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which is divided into a child abuse investigation system centered on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a case management system centered on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ies, as well as policies related to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and the status of major systems for preventing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Sixth, from a socio-structural perspective on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we examined the causes of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and various opinions on support for child abuse protection in daycare centers.

Seventh, we identified the realities of child abuse that were not identified through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organizations by asking the general public about their perceptions of abuse by situation in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as well as their general perceptions of abuse, special cases of child abuse crimes and procedures, procedures for protecting victimized children, and perceptions of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Eighth, we examined the status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abroad and their prevention policies. We examined the vulnerability and risk factors of child abuse and child abuse prevention policies by country (US, Canada, UK, Australia), focusing on the mandatory reporting system.

Finally, based on the above research, we proposed policies to prevent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institutions

- Of the 27,971 total cases of child abuse in 2022, the most cases occurred within the home at 22,738 (81.3%), followed by 1,654 cases at school (5.9%), 1,353 cases near the house or on the road (4.8%), and 613 cases at daycare centers. case (2.2%).
- The rate of abuse occurring in daycare centers was 2019 (4.6%) from 2018 to 2022, followed by 2018 and 2021 (3.3%), 2022 (2.2%), and 2020 (2.1%),

with the number of cases in 2019. There were 1,371 cases, 658 cases in 2020, 1,233 cases in 2021, and 613 cases in 2022.

- Major issues related to child abuse in child care institutions
 - As a result of keyword trend analysis, there were a total of 4,707 articles related to daycare center abuse reported in the media over the past 14 years (2010~2023.9). Looking at the macroscopic change trend, an upward trend can be seen, with the number of daycare center abuse cases increasing in 2023 compared to 2010. It was found that the number of articles related to has increased by more than 10 times.
 -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institutions, places, and keywords related to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the keyword with the highest weight was found to be daycare teacher.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erms derived from daycare teachers, terms related to punishment were closely related. appeared to be related.

- Survey of parents'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discipline, and child abuse
 - Looking at perceptions of corporal punishment,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responded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discipline when it was carried out under the condition that parents' clear standards and explanations for corporal punishment and children themselves understand the purpose of discipline and acknowledge what they did wrong, that is, whether corporal punishment is appropriate The proportion of parents who believe that it is discipline if done through a process was found to be as high as 60%. On the other hand, when a child's behavior was corrected through corporal punishment, that is, the percentage of disagreement was somewhat high with the opinion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considered discipline depending on the results.

-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corporal punishment, the percentage of people who agree that corporal punishment will reduce anti-social behavior or help children grow is around 25%, showing that the percentage of parents who think that corporal punishment is effective is still high. In the case of the legitimacy of corporal punishment, the number of respondents who disagreed was high at 79%, but when corporal punishment was used to correct violent behavior, the proportion of opinions that believed that corporal punishment was justified reached 48.1%.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is a predominant negative view on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some respondents nevertheless showed an ambivalent attitude, recognizing that corporal punishment can be a legitimate method of discipline in some cases.
- It was recogniz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reasons why parents and daycare and kindergarten teachers use corporal punishment. Teachers at day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were found to be aware that they were using corporal punishment for reasons other than disciplinary purposes to correct children's behavior.

○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in child care institutions through analysis of rulings

- In the case of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accounted for the majority, which was similar to other forms of child abuse. However, the rate of murder, abandonment of a corpse, resulting in injury or involving sexual abuse, and the rate of defendants with a history of crime and investigation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domestic child abuse, and cases where serious injury or habitual injury under the Child Abuse Punishment Act were recognized. There was not a single case.

- The rate of acquittal, appointment of a defense attorney, and appeal in the first trial was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child abuse, and the main issue of dispute at this time was the legitimacy of discipline, and the rate was also higher than that of domestic child abuse.
 - Persons in positions that require considerable attention and supervision to prevent abusive behavior, such as directors and facility managers, were indicted on child abuse charges while directly participating in child care, accounting for 8.5% of all cases.
- Current status of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ose involved in child abuse at daycare centers
- In situations before child abuse occurs, children with special needs tend to increase due to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such as COVID-19 and low birth rates. They are forced into society at an early age and forced to live in groups, and their basic rights are violated due to poor childcare environments. It's in a situation. Parents of children entrust childcare to daycare centers, but with limited exposure to childcare and childcare information, understanding of daycare centers decreases, resulting in friction. Sometimes, when a childcare teacher suspects that his or her child has a developmental delay, it is difficult to accept this and some blame the teacher. Before child abuse occurs, the childcare teacher is under considerable childcare stress.
 - In the process of suspecting,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at daycare centers, victimized children are exposed to additional damage and are marginalized in the process of handling child abuse cases. Responses to not only direct victims but also indirect victims are needed, but are being neglected. Even if the family suspects child abuse and wants to view CCTV, they feel a significant burden because if they request this, their

trust relationship with the daycare center will end. As child abuse became an issue at the daycare center, they became distant from the parent community, and it was difficult to transfer to another daycare center due to the stigma of being an eccentric parent.

- Before and after child abuse lawsuits at daycare centers, children sometimes do not receive appropriate services due to vague standards for treatment support, and disabled children sometimes experience discrimination, with abusers receiving relatively minor punishments when abuse is judged. The victim's family was in a situation where the entire family became a victim and their family resilience collapsed, and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as they were unable to find an alternative after reporting child abuse. In this process, trust in government policies decreases. The teacher also had no support system, and even if a decision was made not to be charged, he did not receive any compensation for the process so far.

○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big data analysi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social attention to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is sustained and not just a reaction to a single, issue-driven incident. To achieve this,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ontinue to focus on the issue and draw attention to it through policy formulation, publicity, etc.

The focus on punishing perpetrators needs to shift to addressing the underlying issues.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is multi-dimensional and cannot be solved by increasing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lone, but require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children, parents, and daycare workers.

As case management is centered on the victimized child, support for the victim's parents is practically inadequate. In the case of child abuse in childcare centers, there is a need for a governmental alternative to include the parents of the victims in the recovery support, not just the children.

○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judgments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was more likely to involve multiple victims in the same facility than child abuse in the home, with complicity contributing to the occurrence of multiple victims of four or more. Reflecting a situation where abuse persists with the mutual acquiescence of child care workers, organizational issue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abuse occurring, such as isolated child care work and poor working conditions that lack mutual support, need to be addressed.

The role of managers in regularly checking in with child care workers about their difficulties and providing alternatives to prevent abuse is noted as important, but there is also a need for ways to monitor their behavior.

In addition, defendants accused of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were significantly less likely to be represented by a public defender than those accused of child abuse in the home, indicating a greater financial burden for private counsel. Legal support (appointment of defense counsel), psychological support, scope and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for childcare teachers.

○ Policy recommendations through in-depth interviews

Improvements to prevent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ed on improving the general childcare environment. The main themes were “open and cooperative childcare,” “childcare that considers developmental levels,” “strengthening childcare expertise,” “improving teacher working conditions,” “practical preventive education,” “strengthening managerial leadership,” and “monitoring by objective outsiders.”

In the process of suspecting, reporting, and investigating child abuse in daycare centers, alternatives to procedural support include a child-centered perspective, support for child abuse reporting procedures,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establishment of mediation mechanisms, and participation of childcare professionals in case decisions.

Alternative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hildren in childcare centers and preventing re-abuse include: “expanding budgets and infrastructure,” “family-centered care,” “strengthening treatment to prevent re-abuse,”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response system for childcare centers.”

○ Conclusion

Finally, by synthesizing the findings of the first and second years, we summarized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presented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and responses to child abuse at home and child abuse in childcare institutions, and emphasized the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corporal punishment, the legalization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child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active psychotherapy for abused children.

부록 1. 아동학대 기록조사표

아동학대 기록조사표

조사원	연번

1. 사건 단위

가. 사건 기본 정보

1) 당사자		총 피해자수	_____명
		총 피고인수	_____명
1심	2) 1심 사건번호		
	3) 최종심	① 1심 ② 2심 ③ 3심	
	4) 입건 경로	① 고소 ② 고발 ③ 인지 ④ 기타 ⑤ 미상	
2심	5) 2심 사건번호		
	6) 항소 이유 ※ 중복체크	1. 양형부당 3. 명령 부당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4. 기타
3심	7) 3심 사건번호		
	8) 상고 이유	1. 양형부당 3. 명령 부당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4. 기타

나. 피해 현황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
성별	① 미상 ② 남 ③ 여				
연령	① 미상 ② ___세				

30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피해자1	피해자2	피해자3	피해자4	피해자5
장애여부	① 있음_신체 ② 있음_지적·정신상 ③ 비해당				
행동/정서 어려움	① 있음 ② 비해당				
피해영향	① 있음_상해 ② 있음_심리·행동 어려움 ③ 비해당				
피해인지 경로	① 피해자 발화 ② 피해자의 이상행동 이나 외상 발견 ③ 보호자가 의심 혹은 추궁 ④ 기타 _____ ⑤ 미상				

다. 시설 특성

1) 유형	① 어린이집	①국공립 ②사회복지법인 ③법인*단체 등(학교법인, 종교단체, 근로복지공단, 교육훈련시설) ④직장 ⑤가정 ⑥민간 ⑦협동 ⑧미상
	② 유치원	①국립 ②공립(시립, 도립) ③사립
	⑤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양육, 일시보호, 보호치료, 공동생활가정, 상담소, 전용시설, 장애발달 지원센터 등
	⑥ 기타 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등
	④ 위탁가정	
	⑦ 베이비시터, 산후조리사	
	⑧ 기타 (학원, 과외 등)	_____
2) 지역 단위	① 알 수 없음 ② 서울 ③ 광역시 ④ 기타(기타 시 단위, 읍, 면, 군 단위)	

라. 다툼과 쟁점

1) 다툼과 쟁점 ※ 중복체크	① 없음	
	② 행위 자체 여부	
	③ 고의 부정(훈육 정당성-의심사례)	
	④ 사망, 상해와의 인과관계	
	⑤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	
	⑥ 공모 여부(방조, 교사 포함)	
	⑦ 양벌규정(주의의무 위반)	
	⑧ 공소권 남용(포괄일죄 소추 재량)	
	⑨ 재범위험성 판단	
	⑩ 기타 _____	
2) CCTV	설치 여부	① 없음 ② 있음
	증거 목록 해당	① 없음 ② 있음
	판단 근거 채택	① 없음 ② 있음

마. 메모(특이사항)

2. 피고인 단위

가. 피고인 특성

1) 피고인 연번	
2) 성별	① 알 수 없음 ② 남성 ③ 여성
3) 장애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알 수 없음
4) 평소 행동, 정서 어려움	① 있음 ② 없음, 알 수 없음
5) 연령	① 미상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6) 종사상 지위 (직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장, 원장, 원감, 대체원장 • 보육교사(정교사, 담임), 유치원교사, 누리교사(5-7세) [대부분 기간제] • 대체교사, 보조교사 • 생활교사, 생활보조원 • 강사, 명예교사 •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및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행정직원 등) • 기타(시설 외: 아이돌보미, 재할사)
7) 역할 (위 문항 2-5에 한해)	① 없음, 비해당 ② 영아전담 ③ 장애아 전담, 장애아 통합 ④ 방과후 전담, 방과후 통합, 야간연장, 휴일보육, 24시간(연장보육반)
8) 전과, 형사처분전력유무	① 해당없음, 알 수 없음 ② 있음

나. 범행 특성

1) 학대 상황 중복 체크		적극적 개입	관찰, 보호
	먹이기	①	②
	재우기	③	④
	그 밖의 교육, 훈육		
①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나쁜 음식, 난방, 피복 등) ② 기타 _____			
2) 도구 사용 여부	① 알 수 없음 ② 있음_물리적 도구 ③ 있음_디지털 매체 ④ 없음_손, 발 ⑤ 따돌림, 도구 없는 (언어적, 무형의)위협		

3) 공범 여부 (양벌규정 제외)	① 있음 ② 없음	
4) 피해자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_____명	
5) 학대지속기간(전체)	지속	① 1회
		② 1일 이내
		③ 7일 이내
		④ 1개월 이내
		⑤ 3개월 이내
		⑥ 6개월 이내
		⑦ 1년 이내
		⑧ 1년 초과
6) 학대지속횟수	① 1회 ② _____회	

다. 양형 및 처분, 결정

1) 적용 법조 ※ 중복체크	아동학대처 벌법위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6조(상습)
	아동복지법 위반	제71조제1항제1호[제17조제1호] (아동매매)
		제71조제1항1의2[제17조제2호]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제71조제1항제2호[제17조제3호] (신체적학대)
		제71조제1항제2호[제17조제5호] (정서적학대)
		제71조제1항제2호[제17조제6호] (유기·방임)
		제71조제1항제2호[제17조제7호] (장애아동관람)
		제71조제1항제2호[제17조제8호] (구걸강요·이용)
		제71조제1항제4호[제17조제9호] (곡예강요·제3자인도)
		제71조제1항제3호[제17조제10호] (양육알선금품취득)
		제71조제1항제3호[제17조제11호] (아동금품유용)
		제72조 (상습)
		제73조 (아동매매미수)
		제74조 (양벌규정)
2) 경합범 여부	① 해당없음 ② 동종경합(16개 적용법조들만 여럿 있는 경우) ③ 이종경합(아동학대 관련) ④ 이종경합(기타)	

308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⑤ 동종+③ ⑥ 동종+④
3) 아동학대 관련 이종경합 죄명	① 살인/ 사체유기, 손괴, 은닉 ② 상해, 폭행 (치사상 포함), 협박 ③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④ 강요 ⑤ 유기와 학대의 죄 ⑥ 체포와 감금의 죄 ⑦ 가정폭력처벌법위반 ⑧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제7조(신고의무자 가중처벌) ⑨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제59조(보호처분 등 불이행) ⑩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제60조(피해자 등 강요) ⑪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제61조(업무수행 등 방해) ⑫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 위반) ⑬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 ⑭ 기타 _____
4) 1심 변호인 여부	① 없음 ② 있음(국선) ③ 있음(사선)_개인 ④ 있음(사선)_법무법인
5) 1심 선고 ※ ① 제외 중복체크 (병과가능) 부정기형은 단기 기준	① 무죄(면소 포함) 유죄 선고형(일부 무죄 포함) ② 사형 ③ 무기징역 ④ 징역 _____년 _____월 ⑤ 징역의 집행유예 징역 _____년 _____월 집행유예 _____년 _____월 ⑥ 금고 ⑦ 자격정지, 자격상실 ⑧ 벌금 _____만원 ⑨ 벌금의 집행유예 벌금 _____만원 집행유예 _____년 _____월 ⑩ 구류, 과료 ⑪ 몰수 ⑫ 선고유예 ⑬ 기타 _____
6) 1심 부수처분 ※ ① 제외 중복체크	① 없음 ② 형 선고시 보호관찰 _____년 _____월 ③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_____년 _____월 ④ 사회봉사 _____시간 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_____시간 ⑥ (관련기관) 취업제한 _____년 _____월 ⑦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_____시간 ⑧ 신상정보 공개, 고지 ⑨ 전자장치 부착명령 ⑩ 치료감호 ⑪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강의) _____시간 ⑫ 기타 _____

<p>7) 임시조치</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54 278 598 517" rowspan="5"> <p>있음 ※ 중복체크</p> </td> <td data-bbox="598 278 1128 324"> <p>피해자로부터 가해자 격리</p> </td> </tr> <tr> <td data-bbox="598 324 1128 370"> <p>피해자를 관련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p> </td> </tr> <tr> <td data-bbox="598 370 1128 417"> <p>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p> </td> </tr> <tr> <td data-bbox="598 417 1128 463"> <p>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p> </td> </tr> <tr> <td data-bbox="598 463 1128 517"> <p>가해자의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p> </td> </tr> </table>	<p>있음 ※ 중복체크</p>	<p>피해자로부터 가해자 격리</p>	<p>피해자를 관련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p>	<p>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p>	<p>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p>	<p>가해자의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p>
<p>있음 ※ 중복체크</p>	<p>피해자로부터 가해자 격리</p>						
	<p>피해자를 관련 보호시설, 의료기관으로 인도</p>						
	<p>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통신 접근 금지</p>						
	<p>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위탁</p>						
	<p>가해자의 의료기관, 요양시설 위탁</p>						
<p>8) 시설 행정처분</p>	<p>① 시설 폐쇄, 휴원 명령 ② 평가인증 취소 ③ 기본보육료, 인건비, 기타 지자체 특수시책 지원 중단 ④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혹은 정지 ⑤ 미해당</p>						
<p>9) 양형기준 적용 여부 (아동학대에 한함)</p>	<p>① 미적용 ② 적용 ③ 일부적용</p>						
<p>10) 양형인자 ※ ① 제외 중복 체크</p>	<p>가중</p> <p>[특별양형인자] ① 없음 ② 다수 피해자 대상 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 ③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④ [아동복지법]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1, 2 유형에 한함) [아동학대처벌법] 학대 등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⑤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⑥ [아동학대처벌법] 사체손괴(2유형, 3유형에 한함) ⑦ 동종 누범([아동복지법] 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⑧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⑨ [아동복지법]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p>	<p>[일반양형인자] ⑩ 계획적인 범행 ⑪ 6세 미만의 아동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⑫ [아동학대처벌법] 사체유기(2, 3 유형) ⑬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아동복지법 2유형의 경우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포함) ⑭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p>					
<p>감경</p>	<p>[특별양형인자] ① 없음 ② 미필적 고의로 범행 저지른 경우 ③ [아동복지법] 유기·학대 정도가 경미한 경우(1, 2 유형에 한함) ④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비혈족에 대한 보호, 홀로 양육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p>	<p>[일반양형인자] ⑪ 소극가담 ⑫ 심신미약(본인책임 있음) ⑬ 진지한 반성 ⑭ 형사처벌전력 없음 ⑮ [아동학대처벌법] 범행 후 구호 후송 ⑯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포함)</p>					

310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 [아동학대처벌법]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1, 2유형에 한함) ⑦ 청각 및 언어장애인 ⑧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⑨ 자수 또는 내부고발 ⑩ 처벌불원 	
<p>11) 실시된 양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우발적 ② 부양가족, 고연령 등 고려 ③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④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무상보육으로 인한 무책임한 양육) ⑤ 영유아의 정서*행동 문제 ⑥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도록 돼서, 시설이 폐쇄돼서 ⑦ 훈육 여부 ⑧ 성실하게 근무해서 ⑨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⑩ 기타_____ (특이사항 기재) 	

부록 2.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설문지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안녕하세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는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제8조에 의거하여 통계적인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개인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경험하고 느낀 바를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면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설문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책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02-3460-5191)

SQ	Screening Question
----	--------------------

[PGM] Base 전체 | Screener 만 30~59세만 진행

SQ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SQ1-1. [PGM] 자동 기록

- | | | |
|-----------|-----------|-----------|
| 1. 30~34세 | 2. 35~39세 | 3. 40~44세 |
| 4. 45~49세 | 5. 50~54세 | 6. 55~59세 |

[PGM] Base 전체 | Screener 2 무자녀 설문 중단

SQ2.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1. 있다
2. 없다

[PGM] Base 전체 | Screener 1 or 2 or 3 응답이 1명 이상인 경우만 진행 (4만 응답된 경우는 설문 중단)

SQ3. 자녀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1. 미취학자녀(1~7세) ()명
2. 초등자녀(8세~13세) ()명
3. 중^①고등자녀(14세~19세) ()명
4. 성인자녀(20세 이상) ()명

[PGM] Base 전체

SQ4. 귀하의 성별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남성
2. 여성

[PGM] Base 전체

SQ5. 귀하의 현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입니까?

- | | | | |
|-------------|----------|----------|------------|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세종특별자치시 |
| 9. 경기도 | 10. 강원도 | 11. 충청북도 | 12. 충청남도 |
| 13. 전라북도 | 14. 전라남도 | 15. 경상북도 | 16. 경상남도 |
| 17. 제주특별자치도 | | | |

[PGM] Base 전체

SQ6. 귀하의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미혼
2. 기혼(사실혼 포함)
3. 이혼/별거/사별

314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A **훈육과 아동학대에 대한 경험 및 인식**

PGM: Base 전체 | Duration 1초

지금부터 훈육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PGM] BASE 전체 / 문항 Rotation

A1. 귀하는 훈육할 때 다음의 방법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가끔 사용한다	자주 사용한다
1	벌 세우기	1	2	3	4
2	말로 야단치기	1	2	3	4
3	신체적 처벌(체벌)	1	2	3	4
4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1	2	3	4
5	밥 안주기	1	2	3	4
6	말로 칭찬하기	1	2	3	4
7	선물 등으로 보상하기	1	2	3	4

[PGM] BASE 전체 / 문항 Rotation

A2. 귀하는 다음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체벌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시작했다면 훈육이고, 기준없이 시작했다면 학대이다	1	2	3	4
2	아이가 체벌을 받는 목적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면 훈육이다	1	2	3	4
3	부모가 자신의 화나 기분에 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설명하며 행해진 체벌은 훈육이다	1	2	3	4
4	체벌을 받지 않은 아동이 체벌을 받은 아동보다 반사회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많다	1	2	3	4
5	회초리(매)를 아끼면 자녀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없다	1	2	3	4
6	체벌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을 바로 잡는 결과를 낳았다면 훈육이다	1	2	3	4
7	자녀체벌은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이다	1	2	3	4
8	체벌은 다른 훈육방식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므로 체벌을 해서라도 아이를 교육해야 한다	1	2	3	4
9	자녀가 폭력을 저질렀을 때는 체벌을 해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1	2	3	4
10	아이가 부모 혹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학대를 받을 경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도록 하는 것이 맞다	1	2	3	4

[PGM] BASE 전체

A3.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의 가정에서 훈육을 위한 체벌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많이 일어나고 있다 | 2. 조금 일어나고 있다 |
| 3.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PGM] BASE 전체

A4. 우리 사회에서 아동 학대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매우 심각하다 | 2. 대체로 심각하다 |
| 3. 보통이다 | 4.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
|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 |

[PGM] BASE 전체

A5.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많이 일어나고 있다 | 2. 조금 일어나고 있다 |
| 3.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PGM] BASE 전체

A6. 귀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많이 일어나고 있다 | 2. 조금 일어나고 있다 |
| 3.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PGM] BASE 전체

A7. 귀하는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많이 일어나고 있다 | 2. 조금 일어나고 있다 |
| 3.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 4.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

[PGM] BASE 전체 / 문항 Rotation

A8. 귀하는 가정 또는 다음의 장소에서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심각하지 않다	대체로 심각하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1. 가정(집)	1	2	3	4	5
2. 어린이집/유치원 등 보육기관	1	2	3	4	5
3. 학교	1	2	3	4	5

[PGM] BASE 전체 / 보기 Rotation, 기타 마지막 고정

A9. 귀하는 다음 중 아동학대 가해가 가장 우려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부모 | 2. 양부모 | 3. 조부모 |
| 4. 형제/자매 | 5. 친인척 | 6. 부모(베이비시터) |
| 7.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 | 8. 학교 선생님 | 9. 학원 선생님 |
| 10. 기타 | | |

[PGM] BASE 전체 / 보기 Rotation, 기타 마지막 고정

A10. 다음 중 아동발달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학대 행위자(가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1. 부모 | 2. 양부모 | 3. 조부모 |
| 4. 형제/자매 | 5. 친인척 | 6. 부모(베이비시터) |
| 7. 어린이집/유치원 선생님 | 8. 학교 선생님 | 9. 학원 선생님 |
| 10. 기타 | | |

[PGM] BASE 전체

A11. 귀하는 유년시절에 부모님 또는 양육자로부터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PGM] BASE: A11=1

A11-1. 체벌을 학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PGM] BASE 전체

A11-2. 귀하는 유년시절에 부모님 또는 양육자로부터 신체적 학대 이외에 정서적 학대(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등)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1. 있다
2. 없다

[PGM] BASE 전체 / 문항 Rotation

A12. 귀하는 아이에게 행하는 다음의 행위가 학대라고 생각하시는지, 학대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될 수도 있다	학대이다
1	맨 손으로 아이의 손, 발, 엉덩이 등을 때리는 행위	1	2	3
2	아이를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거나 편애하는 행위	1	2	3
3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	1	2	3
4	딱딱한 물건으로 아이의 얼굴, 머리, 귀 등을 때리는 행위	1	2	3
5	아이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행위	1	2	3
6	아이에게 큰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른 행위	1	2	3
7	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한 행위	1	2	3
8	아이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행위	1	2	3
9	아이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거나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행위	1	2	3
10	아이가 싫어하는데도 옷을 벗겨 몸을 보거나 만지는 행위	1	2	3
11	아이에게 강제로 몸을 만져달라고 말하는 행위	1	2	3
12	아이를 혼자 집 혹은 고립된 장소에 있게 한 행위	1	2	3
13	아이에게 애정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행위	1	2	3
14	아이에게 제대로 끼니를 챙겨주지 않는 행위	1	2	3
15	아이가 아플 때 병원을 데려가지 않는 행위	1	2	3
16	별다른 이유없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1	2	3
17	어린 아이를 제대로 씻기지 않는 행위	1	2	3
18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아 아이를 더러운 환경에서 양육하는 행위	1	2	3
19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행위	1	2	3
20	아이를 바보나 멍청이 등으로 부르는 행위	1	2	3
21	아이를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행위	1	2	3

[PGM] BASE 전체 / 문항 Rotation

A13. 다음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시나요?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대체로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아이가 잘못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1	2	3	4
2	적절한 체벌은 아이를 가르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1	2	3	4
3	체벌을 해야만 아이는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	1	2	3	4
4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 것이다	1	2	3	4
5	학대하는 부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1	2	3	4

[PGM] BASE 전체

A14. 체벌과 관련된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주시시오.

	내용	훈육이다	학대이다
1	체벌의 강도가 약하면(약해도)	1	2
2	체벌의 빈도가 적으면(적어도)	1	2
3	체벌의 목적이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라면(이라도)	1	2
4	체벌에 고의성이 없으면(없어도)	1	2

[PGM] BASE 전체 / 단수

A15.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2.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3.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4.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6. 기타()

[PGM] BASE 전체 / 단수

A16.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이 아동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2. 아이의 잘못을 가르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3. 본인도 그렇게 성장하였기 때문에
4. 아이의 성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5. 아이를 다루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6. 기타()

[PGM] BASE 전체 / 문항 Rotation

A17.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음 상황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예시	학대가 아니다	학대가 될 수도 있다	학대이다
1	영유아의 요구를 일부러 못 들은 척함	영아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는 요구를 무시	1	2	3
2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방관함	영유아가 산책하다가 넘어져 있는데 선생님을 부를 때까지 돕지 않음	1	2	3
3	영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 전체에 맞추라고 함	낮잠 시간에 먼저 일어난 유아에게 일어나지 말고 다시 누우라고 함	1	2	3
4	실수 행동의 책임을 영유아에게 돌려 수치심을 갖게 함	"두 눈 똑바로 보고 다니지 않아서 넘어졌지"	1	2	3
5	문제의 원인을 영유아에게 전가하여 죄책감을 갖게 함	"네가 뭘 잘못 했으니까 안 놀아주지! 친구들이 괜히 그러겠냐?"	1	2	3
6	발달에 부적합한 기대를 하여 영유아의 실수를 추궁함	"이거 누가 흘렸어? 똑바로 앉아서 먹지 않은 친구 누구야?"	1	2	3
7	교사들끼리 영유아의 미성숙을 비웃음	"우리 반 큰 아기, 오늘 또 운대! 선생님 재 왜 또 울어요?"	1	2	3
8	다른 영유아들과 성취와 능력을 비교하며 비하함	"친구들은 혼자 잘 하는데 너는 왜 선생님 올 때까지 안하고 기다리니?"	1	2	3
9	대집단 활동 시 영유아의 행동과 처벌에 대해 토론을 함	"약속 어긴 친구들은 우리 반 아니었으면 좋겠지요?"	1	2	3
10	기대행동을 안하거나 못하면 기회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	"놀잇감 가지고 한번 만 더 싸우면 다른 반에 가져다 줄 거야"	1	2	3
11	서둘러 일을 해결하기 위해 조건을 걸어 강요함	"열까지 셀 동안 정리하지 않으면 오늘 점심 못 먹는다."	1	2	3
12	영유아 행동 통제를 위해 공포스러운 귀결을 예고함	"낮잠 자야 엄마 오시지? 안자면 엄마 오지 말라고 할 거야."	1	2	3
13	영유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비호감을 표시함	"선생님! 애 좀 달래 봐요! 애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1	2	3
14	다른 영유아와 비교하며 놀림	"아기처럼 언제까지 기저귀 찢래? 기저귀 찬 친구는 별로야."	1	2	3
15	발달이 늦은 영유아의 활동 참여 기회를 막음	현장학습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참여하지 못하게 함	1	2	3
16	영유아가 규범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다소 거칠게 물리력을 행사함	순서를 지키지 않는 아이에게 뒤로 가라고 손을 대는데 아이가 밀쳐짐	1	2	3
17	영유아가 사용 중인 사물을 함부로 다루어 불쾌감을 느끼게 함	낮잠시간에 영유아가 누워 있는 매트를 발로 밀며 이동시킴	1	2	3
18	안전사고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함	뛰면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계속 뛰어다녀서 손으로 확 잡음	1	2	3

[PGM] BASE 전체

A18. 아이에 대한 생각과 가까운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아이는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한다
2. 아이는 독립적인 인격체이므로 아이의 생각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줘야 한다

[PGM] BASE 전체

A19. 민법 개정을 통해 2021년부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을 인정하는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PGM] BASE 전체

A20. 자녀체벌을 금지 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PGM] BASE: A20=1 / 보기 Rotation, 기타 마지막 고정 / 단수

A20-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훈육을 빌미로 아이에 대한 폭력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2. 체벌을 통한 훈육보다는 설득과 훈련을 통한 훈육이 더 효과적이므로
3.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하므로
4. 체벌에 대한 법적 금지를 통해 부모의 인식 변화도 이루어질 것이므로
5. 기타()

[PGM] BASE: A20=2 / 보기 Rotation, 기타 마지막 고정 / 단수

A20-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 훈육을 하다 보면 체벌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3.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4. 체벌에 대한 법적 금지보다는 부모의 인식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므로
5. 부모의 권위가 떨어져 훈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6. 기타()

[PGM] BASE 전체 / 보기 Rotation, 기타 마지막 고정 / 2개 선택 강제

A2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정책 2가지를 골라주십시오.

1. 출생 신고,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에게 체벌 금지 관련 법률 내용 고지
2. 아동학대 처벌 수위 강화
3. 체벌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양육 가이드 마련 및 배포
4.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 교육 실시
5. 교육기관, 양육시설 종사자 의무 교육 강화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자 확대
7. 미디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강화
8. 기타()

[PGM] BASE 전체

A22. 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교사에 의한 ‘훈육’과 ‘학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나요?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학대일지 귀하가 생각하는 기준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예시나 묘사를 통해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옳고 그름, 정답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PGM] BASE 전체

A23. 그렇다면,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반적인 부모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교사에 의한 ‘훈육’과 ‘학대’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까요? 대략적으로 어떤 선을 넘어가면 학대로 보는지,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것 같은지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DQ	응답자 인구사회학적 배경
----	---------------

[PGM] BASE 전체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중학교 졸업 이하
- 2. 고등학교 졸업
- 3. 대학교 졸업(전문대 포함)
- 4. 대학원 졸업 이상

[PGM] BASE 전체

DQ2. 귀하의 **고용상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 1. 정규직
- 2. 비정규직(임시/일용근로자)
- 3. 휴직 혹은 실업 상태
- 4. 자영업자
- 5. 가사전담
- 6. 정년퇴직 상태
- 7. 기타 ()

[PGM] BASE 전체

DQ3. 귀하의 **직업**을 선택해 주십시오.

- 1. 고위관리직(기업체경영주, 기업체간부, 고급공무원, 사회단체 간부 등)
- 2.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 언론인, 예술가, 프로그래머 등)
- 3. 준전문직(건축도안사, 컴퓨터보조원, 임상병리사, 준교사, 운동선수 등)
- 4.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등)
- 5. 서비스/판매직
- 6. 농업, 어업, 축산업, 임업
- 7. 기능직/생산직
- 8. 장치 및 기계 관련직(장치 조작용, 기계 조작용, 운전기사 등)
- 9. 단순노무직(미화원, 관리원, 노무자 등)
- 10. 가사전담
- 11. 학생
- 12.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 13. 무직
- 14. 기타

[PGM] BASE 전체

DQ4. 귀하의 월 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귀하를 비롯한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근로·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모·친지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100만원 미만
2. 100~200만원 미만
3. 200~300만원 미만
4. 300~400만원 미만
5. 400~500만원 미만
6. 500~600만원 미만
7. 600~700만원 미만
8. 700~1,000만원 미만
9. 1,000~1,500만원 미만
10. 1,500만원 이상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발행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일
2023. 02.

조사기관
(주)

부록 3.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 통계

- 원장의 응답과 보육교사의 응답 간 차이가 약간 있어, 원장이 응답한 반별 정원과 보육교사가 응답한 담당 반 현원을 나누어 제시하였음

▶▶ <부록 표 3-1> [연령 비혼합] 연령반별 정원(교사 대 아동 비율)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준	3	5	7	15	20	20		
현황	전체	2.7	4.6	6.2	11.2	15.0	15.2	
	어린이집 유형 (2021)	국공립	2.8	4.7	6.5	12.1	15.5	16.1
		사회복지법 인	2.7	4.6	6.4	11.9	15.8	15.8
		법인단체	2.6	4.4	5.9	10.7	14.1	14.1
		민간	2.8	4.7	6.4	10.9	15.3	15.5
		가정	2.7	4.3	5.7	5.6	3.0	2.5
		직장	3.0	4.9	6.2	9.0	11.4	11.5
		F	4.8***	11.6***	17.5***	15.9***	10.5***	13.5***
	소재지 (2021)	대도시	2.7	4.5	6.0	11.1	14.8	14.5
		중소도시	2.8	4.6	6.2	11.0	14.8	15.5
		농어촌	2.8	4.8	6.4	11.5	15.6	15.5
		F	6.4**	9.3***	8.5***	1.5	1.6	2.2
	어린이집 규모 (2021)	20명이하	2.6	4.3	5.6	4.8	4.8	2.1
		21~39명	2.8	4.7	6.3	8.1	6.8	7.2
		40~79명	3.0	4.9	6.6	11.7	14.0	14.4
		80명이상	3.1	5.2	7.2	13.2	17.0	17.4
		F	29.4***	52.8***	78.4***	160.3***	80.3***	106.6***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어린이집조사 (원장 총 3,300명 답변);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동일연령 보육과정 및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등을 감안하여 1개의 보육실에서 2개 이상의 반을 함께 보육하는 것이 가능

326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부록 표 3-2> [연령 비혼합] 보육교사 담당 반 현원

단위: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기준		3	5	7	15	20	20	
현황	전체	3.1	5.3	7.1	10.7	12.7	15.0	
	어린이집 유형 (2021)	국공립	3.5	5.8	8.3	12.0	15.2	16.1
		사회복지법인	3.1	5.1	6.9	10.8	14.3	16.1
		법인단체	2.7	5.5	7.5	11.8	13.9	15.7
		민간	3.0	5.2	7.0	10.2	12.8	15.6
		가정	3.0	4.8	6.3	6.3	6.1	-
		직장	3.3	6.5	8.2	10.3	9.9	11.3
		F	3.9**	15.5***	19.2**	7.4***	10.1***	8.3***
	소재지 (2021)	대도시	3.1	5.4	7.2	11.4	12.0	14.1
		중소도시	3.1	5.2	7.1	10.2	13.1	15.4
		농어촌	3.1	5.3	7.1	10.6	13.2	15.6
		F	0.3	1.7	0.1	2.4	0.9	1.9
	어린이집 규모 (2021)	20명이하	3.0	4.9	6.2	5.7	7.0	6.0
		21~39명	3.2	5.4	7.3	8.1	6.7	8.6
		40~79명	3.3	5.7	8.3	11.9	14.1	14.4
		80명이상	3.4	6.2	8.1	12.9	15.9	18.2
		F	2.2	19.0***	41.6***	59.7***	44.5***	61.7***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보육교사조사 (보육교사 총 3,300명 답변)

▶▶▶ <부록 표 3-3> [연령 혼합] 연령반별 정원(교사 대 아동 비율)

단위: 명

구분		0,1세	1,2세	2,3세	3,4세	4,5세	3,4,5세	장애아	
기준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3	5	불가능 (예외 적용 시 7)	15	20	15	3	
현황	전체	3.5	5.3	6.1	10.8	15.5	11.1	9.3	
	어린이집 유형 (2021)	국공립	3.9	5.6	4.5	10.3	15.7	13.1	5.6
		사회복지법인	3.5	6.0	7.1	11.1	15.4	11.0	29.1
		법인단체	4.2	5.9	3.0	11.3	15.4	10.6	11.9
		민간	3.6	5.5	7.0	10.5	15.9	11.0	13.6
		가정	3.2	5.1	6.4	7.5	-	8.0	-
		직장	5.3	6.1	2.0	12.7	11.5	10.0	2.8
		F	4.0**	1.5	2.7	1.1	2.9*	2.1	21.8***
	소재지 (2021)	대도시	3.5	5.5	6.0	10.3	15.3	11.1	10.1
		중소도시	3.1	5.0	6.9	12.1	15.4	11.4	7.5
		농어촌	3.9	5.7	5.0	9.9	16.0	10.5	11.5
		F	10.9***	3.6*	1.9	3.2*	0.5	0.6	1.0
	어린이집 규모 (2021)	20명이하	3.2	5.1	5.8	6.3	7.7	7.9	5.5
		21~39명	3.9	5.6	7.2	10.4	12.8	12.9	19.3
		40~79명	4.3	6.8	6.8	13.0	16.3	15.0	7.7
		80명이상	4.3	5.8	-	18.4	20.7	26.9	7.1
		F	10.2***	7.9***	0.9	32.9***	27.1***	44.6***	7.3***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어린이집조사 (원장 총 3,300명 답변);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 만 2세반 이하 영아와 만 3세반 이상 유아 혼합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 다만 지역내 수급상황(인근지역 여유 정원이 없는 경우 등), 학부모의 요구(형제 등 동반입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군·구 사전 승 인 후 예외적으로 만 2세와 만 3세 아동의 혼합반 운영이 가능하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은 만2세아와 유아(방 과후 포함)의 혼합반 운영 가능

*** 장애아 경우, 장애아전문어린이집(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과 장애 아통합어린이집(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있음.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받을 편 성(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328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정책에 관한 연구(II)

▶▶ <부록 표 3-4> [연령 혼합] 보육교사 담당 반 현원

단위: 명

구분		0,1세	1,2세	2,3세	3~5세	장애인	누리 장애아반	
기준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낮은 연령의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		3	5	불가능 (예외 적용 시 7)	15	3	3	
현황	전체	3.6	5.3	6.4	12.1	4.2	4.1	
	어린이집 유형 (2021)	국공립	3.2	6.5	5.0	13.7	3.8	5.0
		사회복지법인	3.5	4.4	-	11.7	4.9	4.1
		법인단체	3.8	5.5	7.0	12.1	4.3	2.7
		민간	3.7	5.6	7.0	12.2	3.0	2.7
		가정	3.4	5.1	6.5	7.5	3.0	-
		직장	4.4	6.0	-	11.3	-	-
		F	0.8	4.7***	-	2.6*	0.4	0.6
	소재지 (2021)	대도시	3.4	5.3	6.3	12.1	5.0	5.3
		중소도시	3.6	5.0	7.0	12.9	4.2	3.6
		농어촌	3.6	5.6	6.0	11.4	2.8	2.8
		F	0.2	2.2	0.3	1.9	1.4	1.4
	어린이집 규모 (2021)	20명이하	3.3	5.1	6.3	8.1	3.0	3.0
		21~39명	4.0	5.9	7.0	12.1	3.5	3.4
		40~79명	3.9	6.1	-	15.3	4.6	5.3
		80명이상	6.7	5.0	-	19.5	-	3.0
		F	5.6**	3.0*	-	53.2***	0.5	1.0

출처: 보건복지부,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_보육교사조사 (보육교사 총 3,300명 답변)

연구총서 23-CB-02

23-85-01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I)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 행 인 | 하 태 훈

등 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re.kr

정 가 | 10,000원

인 쇄 | 세일포커스(주) 02-2275-6894

I S B N | 979-11-986225-5-6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



아동학대의 발생구조에 기초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대아동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II)

: 보육기관 내 아동학대를 중심으로

A study on child abuse prevention and abused children protection and support policies
based on the occurrence structure of child abuse

: Focusing on child abuse within the Child Care Centers

